

1997年度

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海 洋 水 産 部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目 次

| | |
|------------------------------|----|
| 第 1 篇 1996年度 水産業 動向 | 1 |
| 第 1 章 世界 水産業 動向 | 3 |
| 第 1 節 水産物 生産 | 3 |
| 第 2 節 水産物 交易 | 5 |
| 第 2 章 우리나라 水産業 動向 | 7 |
| 第 1 節 漁業 構造 | 7 |
| 第 2 節 漁家 經濟 | 22 |
| 第 3 節 水産物 生産 | 29 |
| 第 4 節 水産物 輸出入 | 39 |
| 第 5 節 水産物 需給 및 價格 | 44 |
| 第 6 節 漁場環境 | 48 |
| 第 2 篇 1996年度 水産施策 | 63 |
| 第 1 章 바다 淨化와 기르는 漁業 育成 | 65 |
| 第 1 節 바다 淨化 | 65 |

| | |
|-----------------------------------|-----|
| 第 2 節 水産資源 造成 | 69 |
| 第 3 節 養殖漁業 開發 및 整備 | 71 |
| 第 4 節 內水面漁業 開發 | 73 |
| 第 2 章 漁業 構造調整과 漁業秩序 確立 | 76 |
| 第 1 節 漁業構造 調整 | 76 |
| 第 2 節 漁業秩序 確立 | 78 |
| 第 3 章 漁村 綜合開發과 漁業 基盤施設 擴充 | 82 |
| 第 1 節 漁村 綜合開發 | 82 |
| 第 2 節 漁業人力 育成 | 86 |
| 第 3 節 漁港施設 擴充 | 89 |
| 第 4 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 92 |
| 第 4 章 水産物 流通改善과 加工産業 育成 | 95 |
| 第 1 節 水産物 價格 安定 | 95 |
| 第 2 節 流通構造 改善 | 97 |
| 第 3 節 水産物 加工産業 育成 | 104 |
| 第 4 節 水産物 檢査 | 110 |
| 第 5 節 水産物 輸出入 對策 | 112 |
| 第 5 章 遠洋漁業의 育成 | 115 |
| 第 1 節 國際漁業 協力 強化 | 115 |
| 第 2 節 海外漁場의 持續的 確保 및 競爭力 提高 | 117 |

| | |
|----------------------------|-----|
| 第 6 章 水産技術의 開發 및 普及 | 126 |
| 第 1 節 養植技術 開發 研究 | 127 |
| 第 2 節 水産工學 및 加工技術開發 | 136 |
| 第 3 節 漁場環境 및 資源調査 | 142 |
| 第 4 節 水産經濟 研究 | 148 |
| 第 5 節 水産技術 指導·普及 | 152 |
| 第 6 節 水産特定研究開發事業 | 156 |
| 第 7 節 水産技術訓練 | 157 |
| 第 7 章 支援體制 整備의 制度 改善 | 160 |
| 第 1 節 行政規制 改革 | 160 |
| 第 2 節 水産業法 하위법령 改正 | 165 |
| 第 8 章 漁業人支援 強化 | 169 |
| 第 1 節 水産資金 供給擴大 | 169 |
| 第 2 節 漁業人 負擔 輕減 | 173 |
| 第 3 節 漁船員共濟料 支援 | 175 |
| 第 4 節 水産關聯 稅制 改善 | 175 |
| 第 5 節 水産災害 및 被害復舊 支援 | 177 |
| 第 3 篇 1997年度 水産施策 | 179 |
| 第 1 章 基本方向 | 181 |

| | |
|---------------------------------|-----|
| 第 1 節 水産業의 與件 變化 | 181 |
| 第 2 節 重點 推進施策 | 182 |
| 第 3 節 豫算 및 資金支援 | 184 |
| 第 2 章 바다 淨化와 기르는 漁業 育成 | 186 |
| 第 1 節 漁場淨化 | 186 |
| 第 2 節 赤潮對策 | 188 |
| 第 3 節 油類汚染 被害對策 | 189 |
| 第 4 節 水産資源 造成 | 190 |
| 第 5 節 養殖漁業 開發 및 整備 | 192 |
| 第 6 節 內水面漁業 開發 | 199 |
| 第 3 章 漁業 構造調整과 漁業秩序 定着 | 200 |
| 第 1 節 漁業構造 調整 | 200 |
| 第 2 節 漁業秩序 確立 | 201 |
| 第 3 節 出入港 申告制度 改善 | 202 |
| 第 4 節 安全操業 指導 | 203 |
| 第 4 章 漁村 綜合開發과 漁業 基盤施設 擴充 | 205 |
| 第 1 節 漁村 綜合開發 | 205 |
| 第 2 節 漁業人力 育成 | 209 |
| 第 3 節 漁港施設 擴充 | 212 |
| 第 4 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 215 |

| | |
|-----------------------------------|-----|
| 第 5 章 水産物の 流通改善과 加工産業 育成 | 218 |
| 第 1 節 價格安定 對策 | 218 |
| 第 2 節 流通構造 改善 | 220 |
| 第 3 節 加工産業 育成 | 223 |
| 第 4 節 水産物 檢査 | 226 |
| 第 5 節 水産物 輸出·入 對策 | 227 |
| 第 6 章 遠洋漁業의 活性化 | 230 |
| 第 1 節 國際漁業 協力 強化 | 230 |
| 第 2 節 海外漁場의 持續的 確保 와 競爭力 提高 | 232 |
| 第 7 章 水産技術의 開發 및 普及 | 237 |
| 第 1 節 養殖技術 開發研究 | 238 |
| 第 2 節 水産工學 및 加工技術開發 | 246 |
| 第 3 節 漁場環境 및 資源調查 | 250 |
| 第 4 節 水産技術 指導·普及 | 254 |
| 第 5 節 水産特定研究 開發事業 | 256 |
| 第 6 節 水産技術 訓練 | 257 |
| 第 8 章 體制와 制度의 整備·改善 | 260 |
| 第 1 節 行政規制 改革 | 260 |
| 第 2 節 水産關係 下位法令 및 EEZ關聯法令 | 261 |

| | |
|------------------------------|-----|
| 第 9 章 漁業人 支援 強化 | 265 |
| 第 1 節 水産資金 供給 擴大 | 265 |
| 第 2 節 漁業人 負擔 輕減 | 268 |
| 第 3 節 水産關聯 稅制 改善 | 268 |
| 第 4 節 漁船員 및 漁船 共濟料 支援 | 270 |
| 第 10 章 新海洋秩序에 對應한 水産業構造改善 方向 | 271 |
| 第 1 節 背 景 | 271 |
| 第 2 節 新海洋秩序에 對應한 水産業 構造改善 方向 | 272 |
| 第 11 章 海洋水産部の 組織 改編 | 276 |
| 第 1 節 背 景 | 276 |
| 第 2 節 主要內容 | 276 |
| 〔統計로 본 水産業 動向〕 | 281 |

表 目 次

| | | | |
|----|-----|-----------------------|----|
| 〈表 | 1〉 | 世界 水産物 生産推移 | 4 |
| 〈表 | 2〉 | 世界 水産物 輸出推移 | 5 |
| 〈表 | 3〉 | 世界 水産物 輸入推移 | 6 |
| 〈表 | 4〉 | 漁家戸數斗 漁家人口 | 7 |
| 〈表 | 5〉 | 漁業従事者 性別・年齢別 構成 | 8 |
| 〈表 | 6〉 | 專業・兼業別 漁業家口 | 9 |
| 〈表 | 7〉 | 漁業形態別 漁業家口 | 9 |
| 〈表 | 8〉 | 漁業生産 現況 | 10 |
| 〈表 | 9〉 | 漁業 總生産(附加價値) 現況 | 10 |
| 〈表 | 10〉 | 漁業別 漁船勢力 | 11 |
| 〈表 | 11〉 | 船質別 漁船隻數 | 12 |
| 〈表 | 12〉 | 噸級別 漁船隻數 | 12 |
| 〈表 | 13〉 | 内水面 養魚場 現況 | 16 |
| 〈表 | 14〉 | 沿岸漁業 經營體 推移 | 17 |
| 〈表 | 15〉 | 近海漁業 經營體 推移 | 19 |
| 〈表 | 16〉 | 内水面漁業 經營體 推移 | 20 |
| 〈表 | 17〉 | 遠洋業體斗 經營規模 推移 | 21 |
| 〈表 | 18〉 | 漁家所得 推移 | 23 |
| 〈表 | 19〉 | 漁業外 所得構成 | 23 |
| 〈表 | 20〉 | 可處分所得 및 家計費 | 24 |
| 〈表 | 21〉 | 家計費 支出内譯 | 25 |
| 〈表 | 22〉 | 漁家資産 推移 | 26 |

| | | |
|--------|------------------|----|
| 〈表 23〉 | 漁家負債 推移 | 27 |
| 〈表 24〉 | 負債 規模別 漁家分布 | 27 |
| 〈表 25〉 | 漁家 便宜用品 保有現況 | 28 |
| 〈表 26〉 | 漁業別 生産推移 | 29 |
| 〈表 27〉 | 沿近海漁業 業種別 生産推移 | 33 |
| 〈表 28〉 | 内水面漁業 品種別 生産推移 | 36 |
| 〈表 29〉 | 遠洋漁業 業種別 生産推移 | 38 |
| 〈表 30〉 | 水産物 輸出推移 | 39 |
| 〈表 31〉 | 品目別 輸出実績 | 40 |
| 〈表 32〉 | 國家別 輸出実績 | 41 |
| 〈表 33〉 | 主要 魚種別 輸出実績 | 42 |
| 〈表 34〉 | 水産物 輸入動向 | 43 |
| 〈表 35〉 | 國家別 輸入実績 | 44 |
| 〈表 36〉 | 水産物 需給動向 | 45 |
| 〈表 37〉 | 1人當 水産物 消費量 推移 | 45 |
| 〈表 38〉 | 動物性 蛋白質 供給推移 | 46 |
| 〈表 39〉 | 水産物 利用動向 | 46 |
| 〈表 40〉 | 水産物 生産者 物價動向 | 47 |
| 〈表 41〉 | 水産物 消費者 物價動向 | 47 |
| 〈表 42〉 | 沿岸징기 水溫 月別 平年偏差度 | 53 |
| 〈表 43〉 | 清淨海域 指定現況 | 66 |
| 〈表 44〉 | 市·道別 人工魚礁 施設実績 | 69 |
| 〈表 45〉 | 國立水産種苗培養場 現況 | 70 |
| 〈表 46〉 | 民間 種苗買入 放流実績 | 71 |
| 〈表 47〉 | 淡水魚 集約養殖 支援実績 | 73 |
| 〈表 48〉 | 淡水魚 養殖用 機資材 供給実績 | 74 |
| 〈表 49〉 | 연어 放流 및 採捕 実績 | 75 |

| | | |
|--------|----------------------------------|-----|
| 〈表 50〉 | 不法漁業 團束實績 | 79 |
| 〈表 51〉 | 漁村綜合開發事業 支援實績 | 83 |
| 〈表 52〉 | '96 市·道別 支援實績 | 84 |
| 〈表 53〉 | 漁業人福祉會館 建立實績 | 85 |
| 〈表 54〉 | 漁村 觀光開發 推進實績 | 85 |
| 〈表 55〉 | 漁業人後繼者 育成實績 | 87 |
| 〈表 56〉 | 年度別 寄宿舍 食費 補助現況 | 88 |
| 〈表 57〉 | 韓國漁業技術訓練所 教育實績 | 89 |
| 〈表 58〉 | 全國 漁港 指定現況 | 90 |
| 〈表 59〉 | 漁港開發 現況 | 91 |
| 〈表 60〉 | 政府備蓄事業 實績 | 96 |
| 〈表 61〉 | '96 水產物 流通補給施設 支援現況 | 98 |
| 〈表 62〉 | 水產物 流通施設 | 100 |
| 〈表 63〉 | 水產物 標準出荷 規格 | 100 |
| 〈表 64〉 | 水產部類 都賣市場 및 水協 共販場 去來實績 | 101 |
| 〈表 65〉 | '96 規格出荷 事業實績 | 103 |
| 〈表 66〉 | 水產加工品 生産推移 | 105 |
| 〈表 67〉 | 加工業體 支援實績 | 107 |
| 〈表 68〉 | 水產傳統食品 品質認證 對象品目 | 108 |
| 〈表 69〉 | 水產特產物 品質認證 對象品目 | 109 |
| 〈表 70〉 | '96年度 輸入自由化 品目の 輸入現況 | 113 |
| 〈表 71〉 | 우리나라 近海 海況變動 調査 및 海況情報 提供 體系圖 | 143 |
| 〈表 72〉 | 水產特定研究開發事業 推進實績 | 156 |
| 〈表 73〉 | 海洋水產公務員教育院 教育訓練 實績 | 159 |
| 〈表 74〉 | 規制改革 課題發掘 및 推進狀況 | 161 |
| 〈表 75〉 | 營漁資金 供給實績 | 170 |

| | | |
|---------|---------------------------|-----|
| 〈表 76〉 |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 融資事業 規模 | 171 |
| 〈表 77〉 | 水協 自體資金 造成 및 運用 | 172 |
| 〈表 78〉 | 漁船員共濟料 國庫補助 金支援實績 | 175 |
| 〈表 79〉 | '97海洋水産部 豫算 | 184 |
| 〈表 80〉 | 人工魚礁 施設實績 및 計劃 | 190 |
| 〈表 81〉 | 品目別·年度別 漁場 面積 | 194 |
| 〈表 82〉 | 所有者別·年度別 漁場 面積 | 194 |
| 〈表 83〉 | '96品目別·所有者別 漁場 面積 | 195 |
| 〈表 84〉 | 養殖漁業 品種別 生産推移 | 195 |
| 〈表 85〉 | '96 養殖漁場 生産基盤施設 支援現況 | 196 |
| 〈表 86〉 | '97 養殖事業費 支援內譯 | 196 |
| 〈表 87〉 | '96 赤潮등으로 인한 漁業災害 復舊費 | 198 |
| 〈表 88〉 | '97 市·道別 漁村綜合開發事業 現況 | 206 |
| 〈表 89〉 | '97 漁村綜合開發 基本計劃樹立 用役推進 現況 | 207 |
| 〈表 90〉 | '97 漁業人 福祉會館 建立計劃 | 208 |
| 〈表 91〉 | '97 漁村觀光休養團地造成 計劃 | 209 |
| 〈表 92〉 | 漁業人後繼者 支援計劃 | 209 |
| 〈表 93〉 | 自營水産科 學生現況 | 211 |
| 〈表 94〉 | '97 海技士 및 漁船員 教育訓練 計劃 | 212 |
| 〈表 95〉 | '97 漁撈施設 事業計劃 | 217 |
| 〈表 96〉 | 政府備蓄事業計劃 | 219 |
| 〈表 97〉 | '97 規格出荷 事業計劃 | 222 |
| 〈表 98〉 | '97.7.1 輸入自由化品目 現況 | 228 |
| 〈表 99〉 | 漁業協定締結 現況(13個國) | 231 |
| 〈表 100〉 | '97年度 水産特定研究開發事業課題 | 257 |
| 〈表 101〉 | 規制改革 課題發掘 및 推進狀況 | 260 |

| | | |
|---------|---------------------|-----|
| 〈表 102〉 | 營漁資金 供給計劃 | 266 |
| 〈表 103〉 |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 融資事業 規模 | 267 |
| 〈表 104〉 | '97免稅油類 供給計劃 | 270 |
| 〈表 105〉 | 漁船別 共濟料 支援率 | 270 |
| 〈表 106〉 | 海洋水產部 組職圖表 | 279 |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and activities. It emphasizes that this is essential for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2.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outlines the various methods and tool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It highlights the need for consistent and reliable data collection processes to support informed decision-making.

3.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focuses on the role of technology in modern data management. It discusses how advanced software solutions can streamline data collection, storage, and analysis, leading to more efficient and accurate results.

4. The fourth part of the document addresse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data management, such as data security, privacy, and integration. It provides strategies to mitigate these risks and ensure the 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of the organization's data.

第 1 篇

1996年度 水産業 動向

第 一 章

緒 論

第 1 章 世界 水産業 動向

第 1 節 水産物 生産

'95 FAO 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은 112,910천톤으로서 '94년의 110,538천톤보다 2,372천톤, 2.1%가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전년보다 18%증가한 24,433천톤을 생산하여 전년에 이어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페루가 8,943천톤으로 전년보다 25.5% 감소하였고, 칠레가 7,591천톤으로 전년보다 3.2%가 감소하였으며 일본은 6,757천톤을 생산하여 4위를 지켰다.

그 다음 순위로 미국, 인도, 러시아, 인니, 태국, 노르웨이 등이 차지하였으며, 특히 노르웨이는 전년보다 10%가 증가한 2,807천톤을 생산하여 10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생산량은 전년의 2,700천톤보다 12천톤이 감소한 2,688천톤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2.4%를 차지하였으며 세계 제11위에 머무르게 되었다.

세계의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청어, 정어리, 멸치류는 22,017천톤을 생산하여 전년보다 3,839천톤이 감소하였고, 명태, 대구,

4 第1篇 1996年度 水産業 動向

민대구류는 10,617천톤을 생산하여 전년보다 652천톤의 증가를 보였다.

가다랭이, 참치류, 새치류는 4,782천톤을 생산하고 연어, 송어류는 2,100천톤을 생산하여 전년보다 각각 102천톤 및 286천톤이 증가하였다.

〈表 1〉

世界 水産物 生産推移

(單位 : 千噸)

| | '93 | '94 | '95 | '95/'94 |
|-------|---------|---------|---------|---------|
| 計 | 103,172 | 110,538 | 112,910 | 102.1% |
| 중 국 | 17,568 | 20,719 | 24,433 | 117.9 |
| 페 루 | 9,010 | 11,997 | 8,943 | 74.5 |
| 칠 레 | 6,035 | 7,838 | 7,591 | 96.8 |
| 일 본 | 8,081 | 7,396 | 6,757 | 91.4 |
| 미 국 | 5,934 | 5,922 | 5,634 | 95.1 |
| 인 도 | 4,546 | 4,738 | 4,904 | 103.5 |
| 러 시 아 | 4,461 | 3,780 | 4,374 | 115.7 |
| 인도네시아 | 3,685 | 3,917 | 4,118 | 105.1 |
| 태 국 | 3,395 | 3,537 | 3,502 | 99.0 |
| 노르웨이 | 2,561 | 2,551 | 2,807 | 110.0 |
| 한 국 | 2,649 | 2,700 | 2,688 | 99.6 |
| 기 타 | 35,247 | 35,443 | 37,159 | 104.8 |

資料 : FAO, Yearbook of statistics, 1995.

註 : 수산식물 제외

第 2 節 水産物 交易

'95년의 세계 水産物 輸出額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52,035백만 \$이었다.

이를 나라별로 보면 태국이 전년에 비하여 6.2% 증가한 4,449백만 \$을 달성하여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이 3,384백만 \$로서 제2위, 노르웨이가 3,123백만 \$로서 제3위이며, 우리나라의 水産物 輸出額은 전년의 1,411백만 \$보다 10.9%가 증가한 1,565백만 \$로서 제11위에 머물렀다.

〈表 2〉

世界 水産物 輸出推移

(單位 : 百萬\$)

| | '93 | '94 | '95 | '95/'94 |
|---------|--------|--------|--------|---------|
| 計 | 41,409 | 47,418 | 52,035 | 109.7% |
| 태 국 | 3,404 | 4,190 | 4,449 | 106.2 |
| 미 국 | 3,179 | 3,230 | 3,384 | 104.8 |
| 노 르 웨 이 | 2,302 | 2,718 | 3,123 | 114.9 |
| 중 국 | 1,542 | 2,320 | 2,854 | 123.0 |
| 덴 마 크 | 2,151 | 2,359 | 2,460 | 104.3 |
| 대 만 | 2,369 | 2,213 | 2,328 | 105.2 |
| 카 나 다 | 2,055 | 2,182 | 2,314 | 106.0 |
| 칠 레 | 1,125 | 1,304 | 1,704 | 130.7 |
| 인도네시아 | 1,419 | 1,583 | 1,689 | 106.7 |
| 러 시 아 | 1,471 | 1,720 | 1,628 | 94.7 |
| 한 국 | 1,335 | 1,411 | 1,565 | 110.9 |
| 네 델 란 드 | 1,286 | 1,485 | 1,447 | 97.4 |
| 기 타 | 17,771 | 20,703 | 23,090 | 111.5 |

資料 : FAO, Yearbook of statistics, 1995.

註 : 고래, 물개, 기타수산 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어망제외

한편, 세계의 水産物 輸入額은 56,025백만\$로서 전년에 비하여 9.7%가 증가하였다.

이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10.6%가 증가한 17,853백만\$로 제 1위, 미국이 7,141백만\$로 제2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水産物 輸入額은 전년의 718백만\$에서 '95년에는 825백만\$로 14.9% 증가하였고, 세계 제15위를 차지하였다.

<表 3>

世界 水産物 輸入推移

(單位 : 百萬\$)

| | | '93 | '94 | '95 | '95/'94 |
|---|-------|--------|--------|--------|---------|
| 計 | | 44,682 | 51,081 | 56,025 | 109.7% |
| 일 | 본 | 14,187 | 16,140 | 17,853 | 110.6 |
| 미 | 국 | 6,290 | 7,910 | 7,141 | 90.3 |
| 프 | 랑 | 2,556 | 2,796 | 3,221 | 115.2 |
| 스 | 페 | 2,630 | 2,639 | 3,106 | 117.7 |
| 독 | 일 | 1,884 | 2,316 | 2,479 | 107.0 |
| 이 | 탈 리 아 | 2,131 | 2,257 | 2,281 | 101.1 |
| 영 | 국 | 1,629 | 1,880 | 1,910 | 101.6 |
| 홍 | 콩 | 1,377 | 1,642 | 1,828 | 111.3 |
| 덴 | 마 | 1,094 | 1,415 | 1,574 | 111.2 |
| 기 | 타 | 10,904 | 12,086 | 14,632 | 121.1 |

資料 : FAO, Yearbook of statistics, 1995.

註 : 고래, 물개, 기타수산 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어망제외

第 2 章 우리나라 水産業 動向

第 1 節 漁業 構造

1. 漁家人口

정부에서 조사한 '96漁業基本統計調査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海面漁業에 종사하는 '96漁家戶數는 전년에 비하여 1.9%가 감소한 102千戶로 조사되었으며, 漁家人口는 전년에 비하여 4.9% 감소한 330千名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자는 169千名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하여 전년도 구성비 수준을 유지하였다.

〈表 4〉

漁家戶數와 漁家人口

(單位 : 千戶, 千名)

| | '93 | '94 | '95 | '96 | '96/'95 |
|-------------|------|------|------|------|---------|
| 漁 家 戶 數 | 114 | 110 | 104 | 102 | 98.1% |
| 漁 家 人 口 | 405 | 382 | 347 | 330 | 95.1 |
| 女 性 人 口 | 206 | 196 | 175 | 169 | 96.6 |
| 戶 當 漁 家 人 口 | 3.56 | 3.46 | 3.33 | 3.25 | 97.6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

漁業従事者は 172千名으로 전년도에 비해 2.3% 감소되었는데, 이 중 女性従事者 비율은 전년도 46.6%에서 49.4%로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구성비를 보면 50세이상 노년층이 전년도 51.7%에서 55.8%로 4.1% 포인트 높아져서 漁村의 인력구조가 점차 부녀화·고령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청년층 漁村人力의 도시유입 증가와 漁村 生活環境의 낙후, 3D 기피현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表 5〉 漁業従事者 性別, 年齡別 構成

(單位 : 千名)

| 區 分 | | '93 | '94 | '95 | '96 | '96/'95 |
|-------|------------------|---------------|---------------|--------------|--------------|------------------|
| 従 事 者 | | 207 | 197 | 176 | 172 | 97.7% |
| 性 別 | 男 子 | 107 | 101 | 94 | 87 | 92.6 |
| | 女 子 (構 成 比) | 100 (48.3) | 97 (48.8) | 82 (46.6) | 85 (49.4) | 103.7 (101.6) |
| 年 齡 別 | 15~19세 | 0.7 | 0.4 | 0.4 | 0.2 | 50 |
| | 20~49세 | 106 | 97 | 85 | 76 | 89.4 |
| | 50세이상 (構 成 比) | 100 (48.5) | 100 (50.8) | 91 (51.7) | 96 (55.8) | 105.5 (105.5)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

專·兼業別 현황을 보면 純粹專業家口는 22千家口로 21.2%, 兼業家口는 80千家口로 7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兼業漁家の 主業種은 農業으로 72.4%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외 봉급생활자 9.8%, 상업 5.0%, 기타 12.8% 등으로 나타났다.

〈表 6〉

專業·兼業別 漁業家口

(單位：千戶)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113.6(100) | 110.4(100) | 104.5(100) | 101.6(100) | 97.2% |
| 專業 | 25.3(22.3) | 24.2(21.9) | 26.0(24.9) | 21.5(21.2) | 82.7 |
| 兼業 | 88.3(77.7) | 86.2(78.1) | 78.5(75.1) | 80.1(78.8) | 102.0 |

資料：해양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

漁業經營者 家口の 漁業形態別 구성을 살펴보면 漁船漁業家口가 37千家口로 全體 漁業家口の 34.8%, 養殖漁業家口가 34千家口로 33.4%를 차지하였으며 漁船非使用家口는 29.8%인 30千家口로 나타났다.

〈表 7〉

漁業形態別 漁業家口

(單位：千戶)

| | '93 | '94 | '95 | '96 | '95/'94 |
|-----------------|----------------|----------------|----------------|----------------|---------|
| 總 漁 業 家 口 | 113.6 | 110.4 | 104.4 | 101.7 | 96.7% |
| · 動力船使用家口 | 35.2 (31.0) | 35.5 (32.2) | 35.1 (33.6) | 36.1 (33.5) | 102.6 |
| · 無動力船使用家口 | 1.8 (1.6) | 1.7 (1.5) | 2.0 (1.9) | 1.3 (1.3) | 50.0 |
| · 養 殖 業 家 口 | 42.8 (37.7) | 39.5 (35.8) | 33.9 (32.5) | 34.0 (33.4) | 100.3 |
| · 漁 船 非 使 用 家 口 | 33.8 (29.7) | 33.7 (30.5) | 33.4 (32.0) | 30.3 (29.8) | 89.8 |

資料：해양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

註：()內는 구성비임

2. 漁業 總生産

'96年度 漁業總生産은 3,244千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3.1% 감소하였으나 漁業總生産額은 6.4%가 증가한 4조4,21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表 8〉

漁業生産 現況

(單位：千噸, 億圓)

| | '95 | | '96 | | '96/'95 | |
|-----|-------|--------|-------|--------|---------|--------|
| | 生産量 | 生産額 | 生産量 | 生産額 | 生産量 | 生産額 |
| 計 | 3,348 | 41,572 | 3,244 | 44,215 | 96.9% | 106.4% |
| 沿近海 | 1,425 | 24,794 | 1,624 | 27,351 | 113.9 | 110.3 |
| 養殖 | 997 | 6,481 | 875 | 6,433 | 87.8 | 99.3 |
| 内水面 | 29 | 1,429 | 30 | 1,253 | 103.4 | 87.7 |
| 遠洋 | 897 | 8,868 | 715 | 9,178 | 79.7 | 103.5 |

資料：해양수산부, 어업생산량통계

〈表 9〉

漁業 總生産(附加價値) 現況

(單位：10億圓・%)

| | '95 | | '96(P) | | 增加率 | |
|------------|---------|---------|---------|---------|------|-------|
| | 經常 | '90不變 | 經常 | '90不變 | 經常 | '90不變 |
| 國民總生産(GNP) | 348,284 | 254,734 | 386,640 | 272,324 | 11.0 | 6.9% |
| 農林漁業 | 23,068 | 16,832 | 24,477 | 17,583 | 6.1 | 4.5 |
| 漁業 | 2,487 | 1,910 | 2,441 | 2,016 | △1.8 | 5.5 |
| (GDP構成比) | (0.7) | (0.7) | (0.6) | (0.7) | | - |

資料：국민계정(한국은행)

중 沿近海漁業의 생산량은 13.9% 증가한 1,624천톤, 생산액은 10.3% 증가한 2조7,351억원, 養殖漁業의 생산량은 12.2% 감소한 875천톤, 생산액은 0.7% 감소한 6,433억원, 内水面漁業의 생산량은 3.4% 증가한 30천톤, 생산액은 12.3% 감소한 1,253억원, 遠洋漁業의 생산량은 20.3% 감소한 715천톤, 생산액은 3.5% 증가한 9,17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생산액에서 중간투입액(유류, 어구, 얼음대등)을 공제한 '96년도 어업총생산액(부가가치)은 경상가격기준으로 전년도보다 1.8%가 감소

한 2조4,410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이는 남해안 기름유출사고, 적조발생등의 원인에 의하여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3. 漁船勢力

'96년말 漁船勢力은 75,244척에 971,808톤으로 '95년말에 비하여 隻數는 2.0% 감소하고, 톤수는 1.4% 증가하였다. 이중 동력어선의 척수는 92.0%, 톤수는 99.3%를 차지하고 있다.

漁業別 漁船隻數는 沿近海漁船이 67.7%, 養殖漁船이 25.4%, 內水面漁船이 3.1%, 遠洋漁船이 0.8%, 其他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表 10〉 漁業別 漁船勢力 (單位 : 隻, G/T)

| | | '94 | '95 | '96 | '96/'95 |
|-------|-------|---------|---------|---------|---------|
| 計 | 隻 數 | 77,391 | 76,801 | 75,244 | 98.0% |
| | · 動力 | 70,082 | 71,041 | 69,206 | 97.4 |
| | · 無動力 | 7,309 | 5,760 | 6,038 | 104.8 |
| | 톤 數 | 940,322 | 958,599 | 971,808 | 101.4 |
| | · 動力 | 930,076 | 951,213 | 965,276 | 101.5 |
| | · 無動力 | 10,246 | 7,386 | 6,532 | 88.4 |
| 沿 近 海 | 隻 數 | 50,061 | 51,357 | 50,927 | 99.2 |
| | 톤 數 | 444,109 | 445,197 | 439,261 | 98.7 |
| 養 殖 | 隻 數 | 21,483 | 19,906 | 19,102 | 96.0 |
| | 톤 數 | 26,867 | 27,140 | 24,876 | 91.7 |
| 內 水 面 | 隻 數 | 2,501 | 2,399 | 2,366 | 98.6 |
| | 톤 數 | 1,949 | 1,653 | 1,607 | 97.2 |
| 遠 洋 | 隻 數 | 616 | 625 | 623 | 99.7 |
| | 톤 數 | 320,913 | 352,002 | 356,933 | 101.4 |
| 其 他 | 隻 數 | 2,730 | 2,514 | 2,226 | 88.5 |
| | 톤 數 | 146,484 | 132,607 | 149,131 | 112.5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선정책과

〈表 11〉

船質別 漁船隻數

(單位：隻, G/T)

| | | '94 | '95 | '96 | '96/'95 |
|-----------------|----|---------|---------|---------|---------|
| 計 | 隻數 | 77,391 | 76,801 | 75,244 | 98.0% |
| | 噸數 | 940,322 | 958,599 | 971,808 | 101.4 |
| 木船 | 隻數 | 55,870 | 51,839 | 46,864 | 90.4 |
| | 噸數 | 183,735 | 172,668 | 152,424 | 88.3 |
| 鋼船 | 隻數 | 4,068 | 4,094 | 4,013 | 98.0 |
| | 噸數 | 700,633 | 714,645 | 733,143 | 102.6 |
| 合成樹脂船 (FRP船) | 隻數 | 17,453 | 20,868 | 24,367 | 116.8 |
| | 噸數 | 55,954 | 71,286 | 86,241 | 121.0 |

資料：해양수산부 어선정책과

〈表 12〉

噸級別 漁船隻數

(單位：隻, G/T)

| | '94 | | '95 | | '96 | | '96/'95 | |
|------------|--------|---------|--------|---------|--------|---------|---------|--------|
| | 隻數 | 噸數 | 隻數 | 噸數 | 隻數 | 噸數 | 隻數 | 噸數 |
| 計 | 77,391 | 940,322 | 76,801 | 958,599 | 75,244 | 971,808 | 98.0% | 101.4% |
| 1噸未滿 | 24,592 | 15,294 | 26,403 | 16,727 | 24,732 | 15,386 | 93.7 | 92.0 |
| 1~5噸未滿 | 39,753 | 90,337 | 36,809 | 89,103 | 37,129 | 89,611 | 100.9 | 100.6 |
| 5~50噸未滿 | 9,711 | 139,869 | 10,295 | 145,143 | 10,040 | 138,274 | 97.5 | 95.3 |
| 50~100噸未滿 | 1,938 | 154,004 | 1,904 | 150,603 | 1,966 | 155,501 | 103.3 | 103.3 |
| 100~200噸未滿 | 698 | 95,709 | 676 | 94,092 | 664 | 93,199 | 98.2 | 99.1 |
| 200噸以上 | 699 | 445,109 | 714 | 462,931 | 713 | 479,837 | 99.9 | 103.7 |

資料：해양수산부 어선정책과

船質別로는 목선이 척수에 있어서는 전체 어선척수의 62.3%를 차지하고 있으나 톤수에 있어서는 전체 어선톤수의 15.7%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성 어선인 合成樹脂船은 전년보다 척수와 톤수가 16.8%,

21.0%가 각각 증가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미만 어선은 전체척수의 82.2%, 톤수의 10.8%를 차지하고 있고, 5~50톤미만 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13.3%,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50톤이상의 대형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4.4%, 75.0%를 차지하고 있다.

4. 利用漁場

가. 沿近海漁場

우리나라 沿近海漁場의 범위는 “水産業法” 제2조제5호에서 동해·황해 및 東中國海와 북위 25도선 이북과 동경 140도선 이서의 太平洋 海域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海外漁場으로하여 遠洋漁船이 조업하는 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沿近海漁業은 60년대 제주도 근해수역에서 소코트라 어장으로 70년대에는 黃海, 東中國海, 東海의 대화퇴어장으로 操業漁場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어장은 우리나라는 물론 日本, 中國, 대만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장이며 우리나라의 沿近海水域도 그 일부가 韓·日 漁業協定 등에 의해 協定水域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에는 沿近海水域의 漁業資源, 특히 저어자원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中國의 개방화와 韓·中 修交에 따른 경제교류 확대로 中國漁船의 우리나라 沿近海水域 진출이 급증하고 있고, 日本은 우리나라 어선의 자국수역 違反操業 등을 이유로 새로운 韓·日 漁業關係 개선을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 어선들의 西日本水域 진출에 대하여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94.11.16 유엔해양법협약

이 발효됨으로써 주변국인 일본이 '96.7.20 排他的經濟水域을 선포하였고, 우리나라도 '96.9.10 排他的經濟水域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 周邊水域 및 沿岸海漁業을 둘러싼 새로운 해양질서에 알맞는 어업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韓·日 漁業協定の 개정 및 韓·中 漁業協定の 조기체결과 韓·中·日 共同資源管理體制 구축 등 周邊國과의 漁業關係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沿岸漁場의 매립·간척·오염 등에 의한 赤潮發生 등으로 漁場環境 變化와 어장축소에 의한 漁場利用의 제약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의 억제, 오염방지를 위한 海洋監視體制 確立 및 汚染漁場의 정화 등 沿岸漁場의 保全 및 합리적인 관리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나. 遠洋漁場

우리나라의 遠洋漁業은 '57년 처음 인도양에 참치漁船 進出을 始發로 '70년 중반 以前까지는 急進的으로 伸張되었다. 그러나 '70年代 中반에 이르러서는 2차에 걸친 석유波動과 '77년부터 미·러를 비롯한 世界 沿岸國들이 自國의 領域 擴大 및 海洋資源 確保라는 名分으로 200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함으로써 遠洋漁場은 急激히 縮小 또는 規制가 強化되어 生産活動에 莫大한 制約을 받게 되었다.

'96년도 遠洋漁業生産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참치延繩漁業은 前年對比 12% 증가 하였으나 오징어채낚기漁業, 北洋트롤漁業, 海外트롤漁業은 전반적인 不況으로 漁獲이 저조하여, 前年對比 20% 감소된 715천톤이 生産되었다.

한편 '96년말 遠洋漁船은 傭船漁船을 包含한 총607척이 五大洋에 出漁하여 명태, 오징어, 참치등을 주 捕獲對象으로 操業하였으며 漁獲物의

大部分을 國內로 搬入하여 水産物 需要 增大에 副應하고 있으나, 沿岸國의 資源自國化 政策 및 國際機構등의 操業規制強化로 入漁料 引上은 물론 公海操業마저도 規制가 強化되고 있어 遠洋漁業의 與件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實情이다.

5. 養殖漁場

가. 海面養殖

海面養殖漁場은 '96년말 현재 107천ha가 개발되었으며, 연간 100만톤 내외의 養殖水産物을 생산하여 약 6천 5백억원의 수입으로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地先漁業人에 대한 우선적인 養殖免許 取得施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漁村契(水協) 漁場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전체 어장의 72%인 77천ha를 지선 다수어업인이 소유·경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식어장 개발은 60년대에 김, 미역 등 海藻類 중심 양식에서 70년대에는 굴, 피조개 등 貝類養殖漁業으로 발전되었고, 80년대 부터는 넙치, 방어, 돔 등 어류와 진주조개 등 고소득 魚·貝類 養殖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양식되고 있는 품종은 넙치, 돔, 조피볼락, 굴, 피조개, 바지락, 김, 미역, 톳, 우렁쉥이, 새우 등 총 40여종으로서 매년 새로운 양식 품종의 적극적인 개발로 養殖品種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나. 內水面養殖

우리나라 內水面 水面積은 207千헥타로서 전 국토 9,900千헥타 대비 2%에 해당하며 水面別로 보면 댐·湖가 66千헥타(32%), 江·河川이 92千헥타(45%), 貯水池가 48천헥타(23%)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댐·湖등 大單位 水面(700헥타이상) 21개소, 69천헥타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치어방류등 자원을 조성 관리하고 그외의 水面은 시·도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內水面 養魚場은 '96년말까지 2,742개소(994헥타)를 개발하여 여기에 뱀장어·송어·항어·틸라피아·메기등 15종을 양식 생산함으로써 국민에게 고급단백질 공급은 물론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遊漁環境 造成으로 국민의 보건향상 및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表 13〉 內水面 養魚場 現況 (單位 : ha)

| | 計 | | 뱀 장 어 | | 항어(가두리) | | 송 어 류 | | 其 他 | |
|-----|-------|--------|-------|--------|---------|-------|-------|-------|-------|--------|
| | 個所 | 面 積 | 個所 | 面 積 | 個所 | 面 積 | 個所 | 面 積 | 個所 | 面 積 |
| 計 | 2,742 | 994.1 | 295 | 194.4 | 268 | 60.1 | 303 | 40.4 | 1,876 | 699.2 |
| 釜 山 | 71 | 39.91 | 2 | 0.17 | 2 | 0.02 | - | - | 67 | 39.72 |
| 大 邱 | 8 | 1.44 | 1 | 0.05 | - | - | 1 | 0.02 | 6 | 1.37 |
| 仁 川 | 65 | 22.44 | 1 | 0.28 | 3 | 0.68 | - | - | 61 | 21.48 |
| 光 州 | 8 | 1.22 | 3 | 0.46 | - | - | - | - | 5 | 0.76 |
| 大 田 | 6 | 0.40 | - | - | 1 | 0.04 | 3 | 0.08 | 2 | 0.28 |
| 京 畿 | 339 | 124.81 | 7 | 2.52 | 26 | 4.84 | 25 | 3.21 | 281 | 114.24 |
| 江 原 | 214 | 36.30 | 1 | 0.05 | 7 | 1.39 | 1.30 | 17.26 | 76 | 17.6 |
| 忠 北 | 253 | 54.15 | 1 | 0.27 | 83 | 40 | 45 | 5.48 | 124 | 32 |
| 忠 南 | 363 | 203.42 | 45 | 102.17 | 30 | 14.24 | 15 | 4.91 | 273 | 82.1 |
| 全 北 | 489 | 236.33 | 72 | 25.46 | 32 | 7.10 | 7 | 0.93 | 378 | 202.74 |
| 全 南 | 424 | 155.98 | 139 | 57.93 | 20 | 7.11 | 13 | 0.58 | 252 | 90.36 |
| 慶 北 | 226 | 44.63 | 3 | 0.55 | 35 | 4.34 | 48 | 6.45 | 140 | 33.29 |
| 慶 南 | 267 | 71.86 | 17 | 4 | 29 | 3.92 | 14 | 0.90 | 207 | 63.04 |
| 濟 州 | 9 | 1.26 | 3 | 0.46 | - | - | 2 | 0.55 | 4 | 0.25 |

資料 :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

6. 漁業經營體

가. 沿岸漁業

'96년말 현재 沿岸漁業 經營체수는 총 68,991개로서 '95년도의 68,496개보다 495개가 증가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許可漁業中 沿岸 漁船漁業은 60,682개로서 증가업종은 연안연승어업, 연안외줄낙시어업이고, 감소된 업종은 연안유자망어업, 낭장망어업, 연안통발어업 등으로서 沿近海漁業構造調整事業 및 영종도신공항건설, 새만금지구간척사업에 따른 폐업 등으로 어업허가가 消滅되었기 때문이며, 區劃漁業은 5,217개로서 실뱀장어안강망어업, 각망어업, 주목망어업 등에 대한 신규허가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免許漁業인 마을어업과 定置網漁業은 2,623개로 매립·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어장이 消滅되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表 14〉

沿岸漁業 經營體 推移

(單位 : 個)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61,033 | 66,066 | 68,496 | 68,991 | 100.7% |
| 沿岸 流刺網 | 18,030 | 18,691 | 18,646 | 18,071 | 96.9 |
| 沿岸 延繩 | 12,847 | 14,690 | 15,426 | 15,718 | 101.9 |
| 沿岸 채낙기 | 2,322 | 2,679 | 3,118 | 3,091 | 99.1 |
| 沿岸외줄낙시 | 4,813 | 5,772 | 5,986 | 6,280 | 104.9 |
| 沿岸 통 발 | 11,647 | 12,369 | 12,496 | 11,703 | 93.7 |
| 區劃 漁業 | 1,243 | 1,995 | 2,287 | 5,217 | 228.1 |
| 마을 漁業 | 2,940 | 2,784 | 2,077 | 2,029 | 97.7 |
| 定置網 漁業 | 652 | 635 | 613 | 594 | 96.9 |
| 其他 漁業 | 6,539 | 6,451 | 7,847 | 6,288 | 80.1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업제도과

沿岸漁業은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소규모 어업으로 兼業이 대부분이며 80년대 들어와서는 한정된 어장과 임해공단시설 및 도시의 확장 등에 따른 공장폐수와 도시하수 등의 유입 그리고 대형선박 또는 油槽船 등 사고에 의한 유류피해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 매립·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장축소 등 어장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漁業資源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또한 WTO체제 출범으로 수입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沿岸漁業의 경영은 날로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다.

나. 近海漁業

近海漁業 經營體는 '96년도에 7,572개로서 '95년보다 170개가 減少하였다. 이와같은 減少現象은 대부분의 近海漁業이 水産資源保護와 漁業調整側面에서 업종별로 許可의 定數가 설정되어 있으며 '92.9.8부터 新規許可가 全面 禁止되어 있고 '9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沿近海漁業構造調整計劃에 따라 '96년도부터 近海漁船을 위주로 沿近海構造調整事業을 추진하는등 어업여건 變化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漁獲努力量 減縮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許可定數가 設定되어 있거나 新規許可가 抑制된 대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선망어업, 근해트롤어업의 경우 각각 3개가 減少하였고, 잠수기어업은 6개, 기선선인망어업 2개, 근해안강망어업 12개, 근해통발어업 9개, 근해형망어업 85개가 減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許可定數가 設定되어 있지 않은 근해채낚기어업 15개, 근해연승어업 36개, 근해봉수망어업 3개가 減少하였다. 이는 新規許可가 全面 抑制된 이후 制度改善, 연근해어업 構造調整事業, 부실한 經營體 整備 등으로 근해어업의 業種間 構造改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타회망어업의 업종변경 및 휴업 또는 行政處分에 따른

猶豫期間 滿了 등에 따라 근해유자망어업은 7개가 增加하였으며, 중형 기선저인망어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變動이 없었다.

<表 15>

近海漁業 經營體 推移

(單位 : 個)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7,944 | 7,759 | 7,742 | 7,572 | 97.8% |
| 大型機底 | 280 | 280 | 280 | 277 | 98.9 |
| 中型機底 | 107 | 107 | 107 | 107 | 100.0 |
| 근해트롤 | 130 | 130 | 130 | 127 | 97.7 |
| 근해旋網 | 120 | 117 | 117 | 114 | 97.4 |
| 근해채낚기 | 1,522 | 1,618 | 1,631 | 1,616 | 99.1 |
| 機船船引網 | 109 | 103 | 108 | 106 | 98.1 |
| 근해流刺網 | 1,501 | 1,397 | 1,398 | 1,405 | 100.5 |
| 근해鮫鰈網 | 821 | 797 | 786 | 774 | 98.5 |
| 潛水器 | 254 | 251 | 251 | 245 | 97.6 |
| 근해통발 | 999 | 913 | 900 | 891 | 99.0 |
| 근해형망 | 409 | 373 | 321 | 236 | 73.5 |
| 근해延繩 | 1,642 | 1,575 | 1,619 | 1,583 | 97.8 |
| 근해棒受網 | 50 | 98 | 94 | 91 | 96.8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과

다. 養殖漁業

'96년말 양식어업 經營體는 8,874개소이며 품종별로는 김양식 경영체가 1,631개소로 전체의 18.4%이며, 다음이 굴 954(10.8%), 피조개 927(10.4%) 새고막 916(10.3%), 바지락 573(6.5%), 미역

527(5.9%), 우렁챙이 388(4.4%)개소 순이다

經營形態別로는 어촌계 및 수협경영체가 4,391개소로서 전체 양식어업 경영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協業經營體 2,195개소(25%), 個人經營體 2,288개소(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종별 경영형태를 보면, 魚類 및 其他水産動物 養殖은 개인 및 협업 경영체가 많고, 해조류양식은 어촌계 및 수협 경영체가 많은 경영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김, 미역 등 해조류양식은 양식기술이 보편화되고 자본이 적게들기 때문에 지선어촌계 위주의 소득원으로 개발토록 한 政府施策에 의해 영세어민들이 주로 경영하고 있는 반면, 어류와 진주조개, 우렁챙이, 새우 등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養殖技術이 요구되므로 개발능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內水面漁業

'96年末 內水面養殖業의 經營體數는 2,742개(994ha)로 전년보다 57개가 增加되었다. 이는 뱀장어·향어·송어·민물돔(틸라피아)등의

〈表 16〉 內水面漁業 經營體 推移

(單位 : 個)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2,295 | 2,476 | 2,685 | 2,742 | 102 % |
| 잉 어 | 486 | 478 | 440 | 424 | 96 |
| 향 어 | 264 | 270 | 279 | 268 | 96 |
| 뱀 장 어 | 293 | 299 | 284 | 295 | 104 |
| 송 어 | 323 | 324 | 299 | 303 | 101 |
| 기 타 | 929 | 1,105 | 1,383 | 1,452 | 105 |

資料 :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

양어기술 발달과 메기·관상어등의 양식품종 다양화 및 담수어의 需要 增加에 따라 民間投資에 의한 양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송어·향어·민물돔등과 메기·은어·쏘가리·참게 등 고소득 경제성 어종의 양식이 증가될 전망이다.

마. 遠洋漁業

'96년도에 遠洋漁業을 경영한 업체는 '95년도 183개사보다 7개사가 줄어든 176개사였으며, 業體別 규모를 살펴보면 1~2척의 遠洋漁船을 보유한 업체가 126개사로서 전체의 72%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원양업체 경영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17> 遠洋業體의 經營規模 推移

(單位 : 個社)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188 | 192 | 183 | 176 | 96.2% |
| 1隻 | 93 | 93 | 91 | 92 | 101.1 |
| 2隻 | 37 | 44 | 41 | 34 | 83.0 |
| 3~5隻 | 32 | 32 | 29 | 30 | 103.4 |
| 6~10隻 | 17 | 13 | 10 | 8 | 80.0 |
| 11~20隻 | 4 | 3 | 5 | 5 | 100.0 |
| 21以上 | 5 | 7 | 7 | 7 | 100.0 |

資料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과

한편 '96년도에 조업한 원양어선은 '95년도 637척보다 30척이 감소한 607척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참치선 246척, 오징어선 124척, 트롤선 207척, 기타 30척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원양업체의 漁船隻數가 감소한 것은 沿岸國 및 국제수산물기구들의 조업규제 강화로 인한 기존

해외어장의 상실과 入漁料, 임금등의 상승에 따른 漁撈 經費의 증가, 그리고 수산물 수입의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이 그 주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第 2 節 漁家 經濟

1. 漁家所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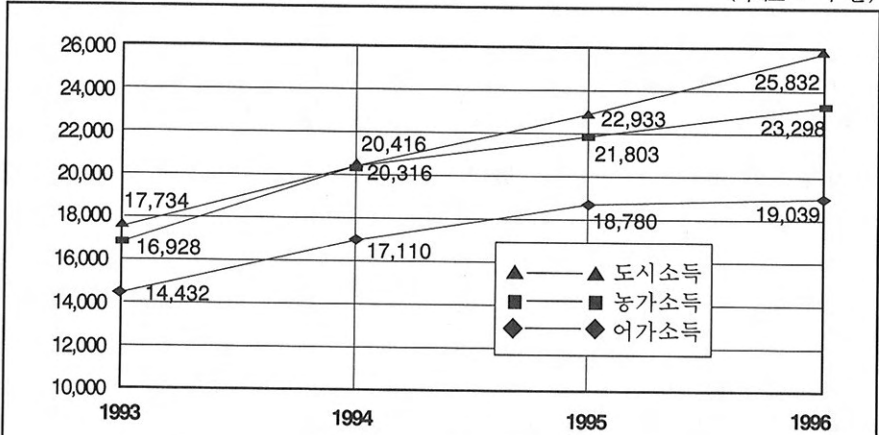
'96년 漁家所得은 19,039千원으로 '95년보다 1.4%가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평균증가율 13.4%보다 감소하였다. 이 중 漁業所得은 전년보다 11.5%가 증가한 10,526천원, 漁業外所得은 전년보다 10.9% 감소한 5,410천원이었다.

한편, 漁家所得 계층별 漁家分布는 '96년도 平均漁家所得 19,039천원 이상의 漁家比率이 전체의 46.7%로 전년도 51.7%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0만원 이상 高所得漁家가 차지하는 비율은 '95년도 18.9%에서 '96년도에는 19.0%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18〉

漁家所得 推移

(單位：千원)



| | '93 | '94 | '95 | '96(P) | '96/'95 |
|----------|--------|--------|--------|--------|---------|
| 漁家所得 | 14,432 | 17,110 | 18,780 | 19,039 | 101.4% |
| 漁業所得 | 6,222 | 8,665 | 9,437 | 10,526 | 111.5 |
| · 漁業粗收入 | 12,276 | 15,214 | 17,152 | 18,015 | 105.0 |
| · 漁業經營費 | 6,054 | 6,549 | 7,715 | 7,489 | 97.1 |
| 漁業外所得 | 4,685 | 5,719 | 6,075 | 5,410 | 89.1 |
| (構成比, %) | (32.5) | (33.4) | (32.3) | (22.1) | |
| 移轉收入 | 3,525 | 2,726 | 3,268 | 3,103 | 95.0 |
| 農家所得 | 16,928 | 20,316 | 21,803 | 23,298 | 106.9 |
| 都市家計所得 | 17,734 | 20,416 | 22,933 | 25,832 | 112.6 |

資料：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

〈表 19〉

漁業外 所得構成

(單位：千원)

| | '94 | '95 | '96(P) | '96/'95 |
|--------|-------|-------|--------|---------|
| 漁業外所得 | 5,719 | 6,075 | 5,410 | 89.1% |
| 農業所得 | 3,404 | 3,184 | 2,394 | 75.2 |
| 其他兼業所得 | 603 | 791 | 1,000 | 79.1 |
| 事業外所得 | 1,712 | 2,100 | 2,016 | 96.0 |

資料：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

2. 消費支出

'96년 漁家所得 19,039천원중 조세공과금 121천원을 공제한 가처분 소득은 '95년보다 1.3%가 늘어난 18,918천원이며, 이 중 가계비는 13,946천원으로 6.1%가 늘어났다.

〈表 20〉

可處分所得 및 家計費

(單位 : 千원)

| | '94 | '95 | '96(P) | '96/'95 |
|-------------|--------|--------|--------|---------|
| 漁 家 所 得 | 17,110 | 18,780 | 19,039 | 101.4% |
| 可處分所得(C) | 17,007 | 18,683 | 18,918 | 101.3 |
| 家 計 費(D) | 11,549 | 13,139 | 13,946 | 106.1 |
| 漁 家 剩 餘 | 5,360 | 5,425 | 4,779 | 88.1 |
| 平均消費性向(D/C) | 67.9 | 70.3 | 73.7 | |

資料 :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

이에 따라 漁家經濟剩餘는 전년보다 11.9%가 감소한 4,77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소비성향은 70.3%에서 73.7%로 높아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6년 漁家の 家計費 支出內譯을 보면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 등의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물비는 8.1%가 증가하여 가계비중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젤계수는 전년보다 0.4% 포인트 높은 21.5%로 나타났다.

〈表 21〉

家計費 支出內譯

(單位 : 千圓)

| | '94 | '95 | '96(P) | '96/'95 |
|-----------|--------|--------|--------|---------|
| 家 計 費 | 11,549 | 13,139 | 13,946 | 106.1% |
| 飲 食 物 費 | 2,638 | 2,770 | 2,995 | 108.1 |
| 住 居 費 | 857 | 832 | 888 | 106.7 |
| 被 服 費 | 642 | 738 | 774 | 104.9 |
| 光 熱·水 道 費 | 478 | 525 | 623 | 118.7 |
| 教育敎養娛樂費 | 1,640 | 1,936 | 2,234 | 115.4 |
| 醫 療 費 | 853 | 874 | 869 | 99.4 |
| 冠 婚 喪 祭 費 | 1,131 | 1,133 | 1,237 | 109.2 |
| 交 通·通 信 費 | 719 | 797 | 894 | 112.2 |
| 其 他 | 2,591 | 3,334 | 3,431 | 102.9 |
| 엔 겔 係 數 | 22.8 | 21.1 | 21.5 | |

資料 :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

3. 漁家資産

'96년의 漁家資産은 102,908천원으로 '95년의 97,123천원보다 6.0%가 증가되었으며 토지, 건물, 어선등 고정자산이 79,309천원으로 77.1%, 농어업용자재, 소동물, 재고 농산물등 유동자산이 5,284천원으로 4.5%, 현금, 예·적금등 유통자산이 18,315천원으로 16.5%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漁家資産이 증가한 요인을 살펴보면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대어구·대농구·대동식물 등이 증가하였으며, 토지자산은 서해안 매립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유통자산은 漁撈用 資産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22>

漁家資産 推移

(單位 : 千圓)

| | '94 | '95 | '96'(P) | '96/'95 |
|---------|---------|--------|---------|---------|
| 漁 家 資 産 | 107,968 | 97,123 | 102,908 | 106.0% |
| 固 定 資 産 | 92,097 | 76,344 | 79,309 | 103.9 |
| 流 動 資 産 | 5,141 | 5,056 | 5,284 | 104.5 |
| 流 通 資 産 | 10,730 | 15,723 | 18,315 | 116.5 |
| ・ 現 金 | 576 | 537 | 514 | 95.7 |
| ・ 預 績 金 | 6,631 | 10,983 | 12,386 | 112.8 |
| ・ 其 他 | 3,523 | 4,203 | 5,414 | 128.8 |

資料 :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

4. 漁家負債

'96년의 漁家負債는 전년보다 11.9%가 증가한 12,342천원으로 나타났는데, 농업자금 등 겸업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부채의 사용내역을 보면 생산성 부채가 9,848천원으로 79.8%, 가계성 부채가 1,845천원으로 14.9%, 채무상환을 위한 부채가 649천원으로 5.3%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차입처별로는 농·수·축협 등의 금융기관 부채가 8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차입은 전년보다 2.1%가 증가한 1,964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규모별 漁家分布는 '96년도 부채없는 漁家가 전체의 20.8%로 전년보다 3.6%가 증가하였고, 1,000만원이상의 고액 負債漁家 비율은 전년보다 3.7% 증가한 36.6%로 나타났으며, '96년도 平均 漁家負債 12,342천원이하의 漁家比率은 60.5%로 전년보다 3.7% 감소하여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3〉

漁家負債 推移

(單位 : 千원)

| | | '94 | '95 | '96(P) | '96/'95 |
|-------------|-----------|-------|--------|--------|---------|
| 漁 家 負 債 | | 9,293 | 11,033 | 12,342 | 111.9% |
| 借入 處別 | 金 融 機 關 | 7,892 | 9,109 | 10,378 | 113.9 |
| | 個 人 借 入 | 1,401 | 1,924 | 1,964 | 102.1 |
| 用 途 別 | 生 産 性 | 7,554 | 8,928 | 9,848 | 110.3 |
| | · 漁業資金 | 4,842 | 5,924 | 5,826 | 98.3 |
| | · 兼業資金 | 2,712 | 3,004 | 4,022 | 133.9 |
| | 家 計 性 | 1,382 | 1,724 | 1,845 | 107.0 |
| | 債 務 償 還 用 | 357 | 381 | 649 | 170.3 |

資料 :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

〈表 24〉

負債 規模別 漁家分布

(單位 : %)

| | '94 | | '95 | | '96 | | 分布增減 |
|------------|------|-------|------|-------|------|-------|------|
| | 分 布 | 累積分布 | 分 布 | 累積分布 | 分 布 | 累積分布 | |
| 負債없는 漁家 | 15.4 | 15.4 | 17.2 | 17.2 | 20.8 | 20.8 | 3.6 |
| 100만원 미만 | 2.5 | 17.9 | 2.7 | 19.9 | 3.4 | 24.2 | 0.7 |
| 100~200만원 | 7.4 | 25.3 | 7.7 | 27.6 | 4.5 | 28.7 | △3.2 |
| 200~300 | 7.8 | 33.1 | 7.8 | 35.4 | 7.7 | 36.4 | △0.1 |
| 300~400 | 7.9 | 41.0 | 8.0 | 43.4 | 5.5 | 41.3 | △2.5 |
| 400~500 | 5.9 | 46.4 | 5.5 | 48.9 | 5.1 | 47.0 | △0.4 |
| 500~600 | 5.9 | 52.3 | 5.2 | 54.2 | 5.4 | 52.4 | 0.2 |
| 600~700 | 4.6 | 56.9 | 3.7 | 57.8 | 2.7 | 55.1 | △1.0 |
| 700~800 | 4.8 | 61.5 | 3.5 | 61.3 | 2.4 | 57.5 | △1.1 |
| 800~900 | 3.5 | 65.0 | 2.9 | 64.2 | 3.2 | 60.7 | △0.3 |
| 900~1,000 | 3.1 | 68.1 | 2.9 | 67.1 | 2.7 | 63.4 | △0.2 |
| 1,000만원 이상 | 31.9 | 100.0 | 32.9 | 100.0 | 36.6 | 100.0 | 3.7 |

資料 :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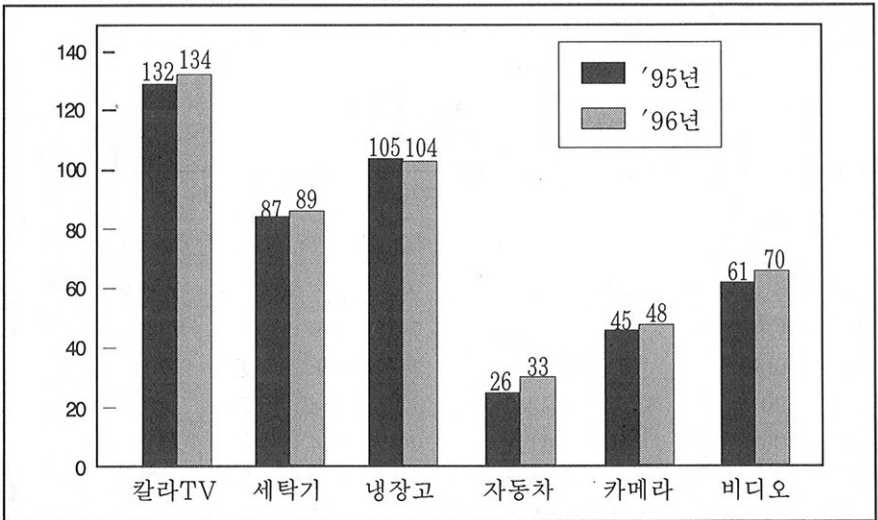
5. 文化生活 水準

'96년의 漁家 便宜用品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漁家 100호당 칼라 TV 134대, 세탁기 89대, 냉장고 104대, 자동차 33대, 비디오는 70대로 漁家の 便宜用品 보유가 많아져 文化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表 25〉

漁家 便宜用品 保有現況

(單位 : 百戶當 普及量)



資料 : 해양수산부, 어가경제조사

第 3 節 水産物 生産

1. 生産動向

'96년도 우리나라 水産物 總 生産量은 3,244천톤으로 전년도 3,348천톤보다 104천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漁業別로 보면 沿近海漁業이 1,624천톤으로서 고등어, 가자미, 오징어 등의 好況으로 전년도에 비해 199천톤이 증가한 반면, 養殖漁業은 875천톤으로서 김, 미역 등 海藻類養殖 作況이 不振하여 전년도보다 122천톤이 감소하였다. 內水面漁業은 전년도 수준인 30천톤을 생산하였고, 遠洋漁業은 명태어업 不振에 따라 전년도보다 182천톤이 감소한 715천톤을 생산하였다.

〈表 26〉

漁業別 生産推移

(單位 : 噸)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3,335,531 | 3,476,587 | 3,348,184 | 3,244,288 | 96.9% |
| 沿近海漁業 | 1,526,139 | 1,486,357 | 1,425,213 | 1,623,822 | 113.9 |
| 養殖漁業 | 1,038,119 | 1,072,126 | 996,451 | 874,810 | 87.8 |
| 內水面漁業 | 30,256 | 30,906 | 29,293 | 30,278 | 103.4 |
| 遠洋漁業 | 741,017 | 887,198 | 897,227 | 715,378 | 79.7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량통계

2. 沿近海漁業

'96년도 沿近海漁業(一般海面漁業) 생산량은 1,623,822톤으로서 우리나라 水産物總生産量(3,244,288톤)의 50.1%를 차지하였다. 해역별 生産動向을 살펴보면, 東海岸의 경우 냉수성 魚種인 명태는 1~4월에 걸쳐서 강원도 沿岸側 海域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었으나,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부진하였다. 꽁치는 봄철 北上期와 가을철 南下期에 경북, 강원 沿岸側 海域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생산실적은 전년에 비해 순조로웠고, 暖流性인 오징어는 6월 이후 12월까지 울릉도를 중심으로 東海岸 전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는데, 여름철인 6~8월에는 동해남부 연안해역에 冷水域이 발달하므로써 생산량이 不振하였으나 9월 중순 이후 남하기에 冷水域의 消滅과 함께 오징어군의 來遊量이 증가되므로써 울릉도 이남의 동해남부해역에 密集漁場이 형성되어 평년비대폭 증가된 생산실적을 나타내었다. 南海岸에서는 고등어, 멸치의 경우 水溫前線의 발달 및 來遊量 증가로 생산이 순조로웠으나, 정어리, 말쥐치 등은 자원감소 및 어군 來遊量 감소로 생산이 저조하였다. 西海岸에서는 暖流域의 확산 및 水溫前線 미발달로 魚群이 분산되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생산실적을 나타내었다.

업종별로는 大型機底, 延繩, 流刺網, 船引網 등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大型旋網 등 그 외 어업은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가. 大型旋網漁業

大型旋網漁業은 50~130톤급 어선에 의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제주도, 소hook산도 및 대마도 동북방 海域에서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년중 조업이 이루어지는 沿近海漁業중 가장 규모가

큰 업종이다.

‘96년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겨울철과 봄철에 東中國海로부터 고등어 어군의 來遊量이 대폭 증가되므로서 濟州道 주변해역으로부터 대마도 근해역에 걸쳐 호어장이 형성되었다.

전체적인 생산량은 전년(227,995톤)보다 99%가 증가한 453,337톤의 실적을 보였다.

나. 大型機船底引網漁業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은 60~140톤급 어선으로 1척이 조업하는 외끌이와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가 있으며, 西·南海와 東中國海域에서 주로 갈치, 조기, 가자미, 말쥐치를 어획하는 어업이다.

東中國海域으로부터 濟州道 서방측 및 서해안일대에 걸쳐 갈치, 조기, 강달이, 병어 등을 주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내유자원량 감소로 전반적으로 다소부진한 어황이었다. ‘96년 총생산량은 123,847톤으로서 전년(128,026톤)보다 3%가 감소된 생산실적을 나타내었다.

다. 中型機船底引網漁業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은 20~60톤급 어선으로 東海 일원에서 명태, 대구, 새우류 등을 어획하는 東海區機船底引網漁業과 西·南海에서 쥐치, 가자미, 갈치, 꽃게, 갑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西·南海區機船底引網漁業으로 구분되고 있다.

생산량은 ‘77년 이후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왔으며, ‘96년도에도 어획실적은 저조한 편이었으나, ‘95년에 비해서는 다소 회복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96년 총생산량은 38,438톤으로 전년도(31,366톤)보다 23%가 증가되었다.

라. 近海채낚기漁業

近海채낚기漁業은 8~70톤급 어선으로 주로 오징어를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어장은 魚群의 北上時期에 따라 東·西·南 全 海域에서 형성되며, 해역별로는 南海는 제주도~대마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12월부터 익년 5월까지, 西海는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7~11월까지, 東海는 울릉도 근해 및 대화퇴 근해에서 6~12월에 어장이 형성된다. 오징어는 單年生으로 海況與件에 따라 불규칙적인 생산을 보이고 있다.

'96년도에는 盛魚期인 9~11월에 대화퇴주변으로부터 남하하는 오징어 魚群이 울릉도 南方海域의 東海南部海域에 밀집되므로써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다. '96년 총생산량은 107,133톤으로서 전년(93,856톤)보다 14%가 증가되었다.

마. 鮫鰾網漁業

鮫鰾網漁業은 8~70톤급 어선으로 西海 및 東中國海域에서 갈치, 조기, 병어, 갑오징어, 꽃게 등을 어획하고 있다.

'96년도 생산량은 주대상 어종인 조기류, 꽃게, 갈치 등의 來遊量 감소로 전년도(174,386톤)보다 13%가 감소한 150,872톤 이었다.

바. 機船船引網(權現網)漁業

機船船引網漁業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중 규모가 가장 큰 업종으로 40톤급미만의 어선으로 南海岸에서 멸치를 어획하고 있다.

멸치는 沿岸 回遊性 魚種으로서 海況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량은 海況與件에 따라 변동을 크게 나타낸다.

'96년도에는 멸치의 中心漁場인 남해안 일대에서 어군의 分布域이 擴散되었고, 暖流를 따라 어군의 北上移動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부진한 어

황이었다. '96년 총생산량은 122,309톤으로서 전년(140,170톤)보다 13%가 감소되었다.

사. 流刺網漁業

流刺網漁業은 동·서·남해 전해역에서 조기, 멸치, 콩치, 명태, 꽃게 등을 어획하고 있다.

'96년의 경우 東海岸의 콩치는 來遊量 증가로 순조로운 어황이었으나 멸치, 삼치등 他魚種의 漁獲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며, 전체적인 생산량은 88,157톤으로 지난해(119,011톤)보다 26%가 감소되었다.

〈表 27〉 沿近海漁業 業種別 生産推移

(單位 : 톤)

| 區 分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1,526,139 | 1,486,357 | 1,425,213 | 1,623,822 | 114% |
| 大型 旋網 | 283,577 | 310,967 | 227,995 | 453,337 | 199 |
| 大型 機底 | 122,917 | 121,126 | 128,026 | 123,847 | 97 |
| 中 型 機底 | 39,599 | 40,874 | 31,366 | 38,438 | 123 |
| 近海채낚기 | 93,841 | 87,788 | 93,856 | 107,133 | 114 |
| 鮫 鱈 網 | 194,766 | 221,239 | 174,386 | 150,872 | 87 |
| 船 引 網 | 162,754 | 117,955 | 140,170 | 122,309 | 87 |
| 流 刺 網 | 95,311 | 98,182 | 119,146 | 88,157 | 74 |
| 共 同 漁 業 | 151,237 | 146,199 | 119,011 | 83,941 | 71 |
| 其 他 | 382,137 | 342,027 | 391,257 | 455,788 | 116 |

資料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3. 양식 어업

淺海養殖漁業 생산은 埋立·干拓으로 인한 沿岸漁場 축소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공장폐수, 생활하수 및 유류오염의 확산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95년에도 지속적인 漁場整備·整理事業을 추진한 결과 단위당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96년도에는 異常潮流 등 어장환경 변화로 홍합, 우렁쉥이류 등의 폐사량 증가 및 일부 해조류 漁業權 감소로 전년비 12% 감소한 875천톤을 생산하여 6,433억원의 생산고를 나타냈다.

가. 魚類 養殖

'83년 이후 政府의 적극적인 開發育成 및 養殖品種 多樣化로 생산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96년도 생산량은 전년비 36% 증가한 11,402톤으로 생산품종은 넙치, 방어, 돔, 농어, 조피볼락, 능성어, 숭어 등이며, 앞으로도 어류는 國民所得의 향상과 함께 고급 활어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계속 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貝類養殖

'96년도 패류양식은 異常潮流, 赤潮 등에 의한 漁業災害로 굴, 피조개 등 일부품종은 採苗가 부진하였고, 홍합 등의 廢死도 있었으나, 기타 품종의 생산은 순조로와 전년과 비슷한 307천톤의 생산실적을 보였는데, 이 중 굴이 185천톤으로 貝類生産量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홍합, 바지락, 피조개, 고막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다. 海藻類 養殖

해조류양식은 김과 미역이 주종으로서 매년 海況與件에 따라 생산이 크게 변하는데 '96년도에는 主成育期와 수확기인 겨울철에 自然災害없이 적정해황이 유지되어 作況은 平年作을 유지하였으나, 養殖業의 對外競爭力 確保와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해 어류, 패류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데 따른 어장의 감소로 생산량은 부진하였으며, 생산은 95년도 보다 110천톤이 감소된 539천톤을 생산하였다.

라. 其他 水産動物 養殖

其他 水産動物養殖은 우렁챙이, 새우가 주종이나 우렁챙이는 赤潮 등 異常潮流의 영향으로 '95년 대비 10천톤이 감소한 17천톤을 생산하였다.

4. 內水面 漁業

'96년 內水面漁業 生産은 전년 29,293톤에 비해 3.4% 증가한 30,278톤으로 나타났다. 이중 어로어업은 內水面 棲息環境 與件變化로 매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96년에도 전년대비 12%가 감소한 7,884톤에 그쳤고,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22,394톤의 생산실적을 나타냈다

이중 北洋트롤漁業은 명태를 주 捕獲對象으로하고 있으며, '89년 미국수역에서 철수한 이래 '93년 1월 베링公海 漁場에서의 暫定的인 操業中斷과 '93. 4. 25 오호츠크 公海에서의 操業中斷으로 公海上의 漁場을 完全히 喪失하였으나 '91. 9. 16 한·러 漁業協定 締結以後 러시아 經濟水域內 操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전반적인 不況으로 前年對比 35%가 減少한 219천톤을 生産하였다. 한편 '89년부터 추진한 한·러 공동어업사업은 '96년도에 전년대비 22% 감소한 45천톤을 생산하였다

海外트롤漁業은 라스팔마스를 中心으로한 中西, 南西大西洋등 大西洋 트롤漁場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등 太平洋트롤漁場 및 오만, 파키스탄 등의 印度洋漁場에서 前年對比 11% 減少한 127천톤을 漁獲하였다.

새우트롤어업은 중남미의 수리남 어장의 조업이 계속 저조함에 따라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1,099톤을 어획하여 전량 수출하였다.

〈表 29〉

遠洋漁業 業種別 生産推移

(單位 : 톤)

| | '93 | '94 | '95 | '96 | '96/'95 |
|--------|---------|---------|---------|---------|---------|
| 계 | 741,017 | 887,198 | 897,227 | 715,378 | 80% |
| 참치延繩 | 52,198 | 57,049 | 52,586 | 58,645 | 112 |
| 참치旋網 | 126,648 | 195,014 | 175,464 | 148,816 | 85 |
| 오징어채낚기 | 156,601 | 145,855 | 152,935 | 134,970 | 88 |
| 오징어流刺網 | - | - | - | - | - |
| 北洋트롤 | 217,395 | 304,446 | 337,632 | 219,626 | 65 |
| 海外트롤 | 140,339 | 145,913 | 141,154 | 127,229 | 90 |
| 새우트롤 | 1,031 | 1,131 | 983 | 1,099 | 111 |
| 其他 | 46,805 | 37,808 | 36,473 | 24,993 | 69 |

資料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과

第 4 節 水産物 輸出入

1. 輸 出

'96년 水産物 輸出은 국제적으로는 O-157대장균의 확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의 수산물 消費需要의 減少, 패류위생관리의 강화, 뱀장어 옥소린산 衛生檢査 강화와 국내적으로는 主要 輸出品目인 키조개, 성게, 붕장어 등의 生産 減少로 수출여건이 악화되어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1,635 백만불을 수출하였다.

<表 30>

水産物 輸出推移

(單位 : 百萬\$)

| | '93 | '94 | '95 | '96 | '96/'95 |
|--------|--------|--------|---------|---------|---------|
| 總 輸 出 | 82,236 | 96,013 | 125,058 | 129,715 | 103.7 % |
| 水 産 物 | 1,497 | 1,647 | 1,722 | 1,635 | 94.9 |
| 構成比(%) | (1.8) | (1.8) | (1.4) | (2.0) | |

資料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6

가. 品目別 輸出實績

活鮮魚의 경우 일본 수출 주종 품목인 소라, 피조개 등의 패류와 성게 등의 生産減少로 전년대비 17%감소한 328백만불을 수출하였으며, 冷凍品은 피조개와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고등어 輸出增加로 전년대비 6.6%가 증가한 253백만불을 기록하였다.

海藻鹽辛品은 中國産의 일본 시장의 잠식과 輸出單價 下落으로 미역,

투스 등의 수출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18.3% 감소한 128백만불을 수출하였으며, 통조림은 美國에 대한 굴 통조림의 輸出減少로 전년대비 16.2% 감소한 107백만불을 수출하였다.

其他 水産物の 경우는 EU와 브라질, 러시아에 대한 생선목 수출호조로 351백만불을 수출, 전년대비 10.9%가 증가하였다.

遠洋魚類는 참치류의 경우 수출단가 상승으로 증가하였으나 中國에 대한 오징어 수출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한 468백만불을 수출하였다.

<表 31>

品目別 輸出實績

(單位：千\$)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1,486,933 | 1,646,884 | 1,721,748 | 1,635,113 | 95.0% |
| 活鮮魚 | 342,884 | 375,947 | 394,902 | 328,092 | 83.1 |
| 冷凍品 | 144,142 | 213,939 | 237,374 | 253,078 | 106.6 |
| 海藻鹽辛品 | 153,774 | 170,840 | 157,252 | 128,478 | 81.7 |
| 통조림 | 122,904 | 117,457 | 127,153 | 106,504 | 83.8 |
| 其他水産物 | 279,623 | 291,794 | 316,226 | 350,539 | 110.9 |
| 遠洋魚類 | 453,606 | 476,907 | 488,840 | 468,421 | 95.8 |

資料：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6

나. 國家別 輸出實績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日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96년도에는 '95년보다 5.0% 감소한 1,217백만불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美國에 대한 수출은 굴통조림, 오징어 등의 수출부진으로 '95년대비 13%가 감소한 82백만불을 수출하였고, EU에 대한 수출의 경우 주종 품목인 생선목 수출은 호조를 띄었으나 연어통조림, 게, 참치 등의 輸出減少로 전년대비 2% 감소한 105백만불을 수출하였다. 中國의 경우

수출 주종 상품인 오징어 수출은 小幅增加에 그쳤으나 피조개 등의 수출증가로 '95년도 대비 6%가 증가한 68백만불을 수출하여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생선목 수출의 증가로 전년대비 567%가 증가한 9백만불을 그리고 필리핀에 대한 수출은 고등어 수출 증가로 215%가 증가한 21백만불을 수출하였다.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80개국이며, 국별 비중은 일본이 74.5%, 미국 5%, 중국 4.9%, 스페인 2.7%, 태국 2.4%, 대만 1.0%, 기타국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表 32>

國家別 輸出實績

(單位 : 千\$)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1,486,993 | 1,646,884 | 1,721,748 | 1,635,113 | 95.0 % |
| 日 本 | 1,168,241 | 1,278,552 | 1,280,984 | 1,217,476 | 95.0 |
| 美 國 | 107,199 | 94,090 | 93,305 | 81,625 | 87.5 |
| 中 國 | 9,552 | 18,524 | 64,229 | 68,060 | 106.0 |
| 스 페 인 | 29,498 | 56,184 | 56,142 | 44,384 | 79.1 |
| 泰 國 | 57,334 | 66,366 | 53,424 | 38,831 | 72.7 |
| 프 랑 스 | 11,322 | 10,947 | 10,333 | 9,906 | 95.9 |
| 이탈리아 | 14,501 | 11,909 | 11,953 | 13,094 | 109.5 |
| 필 리 핀 | 2,199 | 2,614 | 6,640 | 20,888 | 314.6 |
| 臺 灣 | 10,942 | 19,908 | 25,140 | 16,927 | 67.3 |
| 호 주 | 10,362 | 6,246 | 7,629 | 5,720 | 75.0 |
| 카 나 다 | 11,664 | 6,109 | 7,069 | 6,941 | 98.2 |
| 其 他 | 54,119 | 75,435 | 104,900 | 111,261 | 106.1 |

資料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6

〈表 33〉

主要 魚種別 輸出實績

(單位：千\$, %)

| | '93 | '94 | '95 | '96 | '96/'95 |
|-----------|---------|---------|---------|---------|---------|
| 참 치 | 295,203 | 319,445 | 281,854 | 311,554 | 110.5% |
| 피 조 개 | 86,016 | 99,782 | 86,199 | 113,884 | 132.1 |
| 붕 장 어 | 69,543 | 105,571 | 110,178 | 68,277 | 62.0 |
| 계 류 | 62,836 | 69,221 | 89,314 | 62,791 | 70.3 |
| 생 선 목 | 62,511 | 78,478 | 94,820 | 119,842 | 126.4 |
| 굴류(통조림외) | 59,696 | 59,419 | 76,901 | 64,872 | 84.4 |
| 굴 통 조 립 | 56,355 | 33,454 | 38,243 | 33,553 | 87.7 |
| 툰 | 54,007 | 54,991 | 49,553 | 35,372 | 71.4 |
| 성 계 | 42,346 | 39,256 | 40,104 | 32,528 | 81.1 |
| 간 미 역 | 33,223 | 30,200 | 24,464 | 20,862 | 85.3 |
| 명 란 | 24,472 | 71,909 | 87,889 | 53,697 | 61.1 |
| 바 지 락 | 22,469 | 25,776 | 33,248 | 22,652 | 68.1 |
| 가 자 미 | 23,590 | 19,800 | 20,037 | 8,954 | 44.7 |
| 새 우 | 18,340 | 10,962 | 12,208 | 8,022 | 65.7 |
| 삼 치 | 17,462 | 22,209 | 23,814 | 10,996 | 46.2 |
| 패 주 | 16,677 | 11,615 | 20,489 | 12,608 | 61.5 |
| 조미오징어 | 14,233 | 5,212 | 9,481 | 3,105 | 32.7 |
| 갯 장 어 | 13,736 | 14,222 | 17,212 | 11,919 | 69.2 |
| 전 갱 이 | 13,446 | 25,995 | 13,043 | 20,514 | 157.3 |
| 오징어(조미외) | 12,938 | 17,873 | 65,120 | 57,750 | 88.7 |
| 고 등 어 | 10,566 | 13,118 | 14,723 | 29,299 | 199.0 |
| 갑 오 징 어 | 8,092 | 5,079 | 3,049 | 3,555 | 116.6 |
| 한 천 | 7,900 | 9,522 | 12,970 | 10,813 | 83.4 |
| 새 조 개 | 6,629 | 3,454 | 2,248 | 1,397 | 62.1 |
| 명 태 피 레 트 | 4,144 | 149 | 237 | 230 | 97.0 |

資料：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6

2. 輸 入

’96년도 水産物 輸入은 1,080백만\$로서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 輸入自由化 품목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95년도의 843백만\$에 비해 28%가 증가하였다.

이중 輸出用原資材와 漁業協力用(합작, 공동)을 제외한 內需用輸入이 냉동새우, 낙지, 임연수어, 활농어, 조미오징어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가 증가한 780백만\$로서 72%를 점유하였다.

國別 輸入比重은 중국 20.1%, 러시아 19.8%, 미국 16.3%, 태국 5.9%, 일본 5.4%로 상위 5개국 이 전체 수입의 67.5%를 차지하였고 멕시코 등 기타 80여개국 이 32.5%를 점유하였다.

<表 34>

水産物 輸入動向

(單位 : 千톤, 百萬\$)

| |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物 量 | | 356 | 381 | 416 | 527 | 127% |
| | 金 額 | | 542 | 726 | 843 | 1,080 | 128 |
| 輸 出 用 原 資 材 | 物 量 | | 44 | 59 | 46 | 52 | 113 |
| | 金 額 | | 129 | 193 | 219 | 207 | 95 |
| 漁 業 協 力 用 | 小 計 | 物 量 | 107 | 101 | 96 | 80 | 83 |
| | | 金 額 | 146 | 115 | 108 | 93 | 86 |
| | 共 同 事 業 | 物 量 | 29 | 29 | 33 | 24 | 73 |
| | | 金 額 | 51 | 42 | 43 | 14 | 33 |
| | 合 作 事 業 | 物 量 | 78 | 72 | 63 | 56 | 89 |
| | | 金 額 | 95 | 73 | 65 | 79 | 122 |
| 其 他 內 需 用 | 物 量 | | 205 | 221 | 274 | 395 | 144 |
| | 金 額 | | 267 | 418 | 516 | 780 | 151 |

資料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註 : 물량은 제품 기준임

〈表 35〉

國家別 輸入實績

(單位 : 톤, 千\$)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542,489 | 726,267 | 842,808 | 1,080,457 | 128.0 % |
| 러 시 아 | 143,638 | 176,257 | 209,928 | 213,727 | 101.8 |
| 미 국 | 138,396 | 135,489 | 143,814 | 175,902 | 122.3 |
| 중 국 | 44,467 | 111,831 | 128,874 | 217,354 | 168.6 |
| 일 본 | 40,397 | 42,323 | 46,053 | 58,875 | 127.8 |
| 아르헨티나 | 42,822 | 49,792 | 43,001 | 35,890 | 83.4 |
| 뉴질랜드 | 14,676 | 14,470 | 19,734 | 23,882 | 121.0 |
| 기 타 | 118,093 | 196,105 | 251,404 | 354,827 | 141.1 |

資料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96

第 5 節 水産物 需給 및 價格

1. 需 給

'96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需要는 '95년도에 비하여 1.4%가 증가한 4,820천톤으로 이중 우리나라민들이 3,202천톤을 소비하고 1,191천톤은 수출하였으며 나머지 427천톤은 '97년도에 소비할 在庫로 이월된다.

供給은 沿近海에서 2,529천톤이 생산되었고 遠洋漁業에서 715천톤이 생산되었으며 전년재고 371천톤과 수입 1,205천톤으로 충당하였다.

〈表 36〉

水産物 需給動向

(單位 : 千噸)

| | | '93 | '94 | '95 | '96 | '96/'95 |
|--------|------|-------|-------|-------|-------|---------|
| 供 給 | 生 産 | 3,336 | 3,477 | 3,348 | 3,244 | 96.9 % |
| | 輸 入 | 488 | 792 | 948 | 1,205 | 127.1 |
| | 前年在庫 | 380 | 360 | 460 | 371 | 80.7 |
| 計 | | 4,204 | 4,629 | 4,756 | 4,820 | 101.4 |
| 需 要 | 國內消費 | 2,842 | 3,104 | 3,215 | 3,202 | 99.6 |
| | 輸 出 | 1,002 | 1,065 | 1,170 | 1,191 | 101.8 |
| | 次年移越 | 360 | 460 | 371 | 427 | 115.1 |

資料 : 해양수산부 유통기획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식품수급표』

註 :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95년은 추정치임)

2. 消費

가. 水産物 소비패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4%가 증가한 소비형태를 보였으며, 국민 動物性 蛋白質 공급비율에 있어서는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94년의 45.8%에 비하여 '95년에는 45.9%로 증가추세에 있다.

〈表 37〉

1인당 水産物 消費量 推移

(單位 : kg/년간)

| | '93 | '94 | '95 | '95/'94 |
|-------|------|------|------|---------|
| 計 | 43.3 | 44.9 | 46.0 | 102.4 % |
| 魚 貝 類 | 31.6 | 32.5 | 34.4 | 105.8 |
| 해 조 類 | 11.7 | 12.4 | 11.6 | 93.5 |

資料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95년은 추정치임)

註 :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

〈表 38〉 動物性 蛋白質 供給推移 (單位 : g/1人當 1日)

| | '93 | '94 | '95 | '95/'94 |
|---------|--------|--------|--------|---------|
| 計 | 35.49 | 36.39 | 38.68 | 106.5% |
| 畜 産 物 | 19.45 | 19.73 | 20.94 | 106.1 |
| 魚 貝 類 | 16.04 | 16.66 | 17.74 | 106.5 |
| (占 有 率) | (45.2) | (45.8) | (45.9) | |

資料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95년은 추정치임)

나. 水産物 利用動向

'96년도에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중 加工用으로 이용된 원료량은 2,045천톤으로 연근해 어획량 2,529천톤의 80%에 달하고 그 중 냉동품, 통조림, 乾製品 및 魚肉煉製品 가공에 대부분 이용되었다.

〈表 39〉 水産物 利用動向 (單位 : 千噸)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漁 獲 量) | 2,545 | 2,590 | 2,451 | 2,529 | 103 % |
| 鮮 魚 用 | 614(24%) | 629(24%) | 607(25%) | 484(20%) | |
| 加 工 用 | 1,981 (76%) | 1,961 (76%) | 1,844 (75%) | 2,045 (80%) | |
| · 乾 製 品 | 167 | 135 | 139 | 188 | 135 |
| · 冷 凍 品 | 535 | 617 | 626 | 701 | 112 |
| · 통 조 림 | 81 | 71 | 60 | 103 | 172 |
| · 煉 製 品 | 290 | 320 | 316 | 367 | 116 |
| · 鹽 辛 藏 品 | 12 | 10 | 17 | 20 | 117 |
| · 海 藻 製 品 | 634 | 701 | 583 | 536 | 92 |
| · 其 他 | 262 | 107 | 103 | 130 | 126 |

資料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과

- 註 : 1) 遠洋漁獲은 제외
2) 原料魚 基準임.

3. 價格

‘96년도 水産食品의 生産者物價(都賣物價)는 전년말에 비해 9.5% 상승하여 전체 생산자물가 상승률 3.5%보다 비교적 높게 상승하였으며 부류별로는 鮮魚介類가 사상최대의 고등어 풍어에도 불구하고 조기, 명태, 꽃게 등의 어획이 부진하여 15.3% 상승하였고 鹽乾魚類는 마른중멸치의 생산호조로 31.9%가 하락하였다.

〈表 40〉 水産物 生産者 物價動向

(單位 : %)

| | ‘93 | ‘94 | ‘95 | ‘96 |
|--------|------|------|------|-------|
| 總生産者物價 | 2.0 | 3.9 | 3.4 | 3.5 |
| 水産食品 | 9.5 | 2.6 | 5.7 | 9.5 |
| - 鮮魚介類 | 9.3 | 0.9 | 1.0 | 15.3 |
| - 鹽乾魚類 | 17.5 | 24.5 | 70.2 | △31.9 |
| - 海藻類 | 6.1 | 6.3 | 0.4 | 7.3 |

資料 : 한국은행

註 : 전년말 대비 등락율임

〈表 41〉 水産物 消費者 物價動向

(單位 : %)

| | ‘93 | ‘94 | ‘95 | ‘96 |
|--------|------|------|------|-------|
| 總消費者物價 | 5.8 | 5.6 | 4.7 | 4.5 |
| 水産食品 | 12.5 | 1.8 | 10.0 | △1.3 |
| - 鮮魚介類 | 12.8 | △0.7 | 4.2 | 3.7 |
| - 鹽乾魚類 | 12.7 | 11.1 | 33.1 | △14.3 |
| - 海藻類 | 10.0 | 0.2 | 0.5 | △0.3 |

資料 : 통계청

註 : 전년말 대비 등락율임

그러나 수산식품의 消費者物價는 전년말에 비해 1.3%가 하락하여 전체 소비자물가 4.5% 상승에 비해 안정세를 보였다.

주요 魚種別로는 갈치 24.1%, 새우젓 12.9%, 꽁치 10.9%가 상승한 반면, 마른멸치 32.7%, 고등어 30.1%, 마른오징어 7.5%, 조개 6.6%, 물오징어 6.3%가 하락하였다.

第 6 節 漁場環境

1. 海 況

가. 近海水溫 變動

'96년 전반적인 해황특성을 보면, 표층의 경우 2월에는 포항~울릉도 이북해역의 2℃ 내외 저수온을 제외하고는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4월에는 전해역이 2~4℃의 저수온 현상을 나타내었고 그 이후부터 11월까지의 평년과 비슷하거나 고수온을 나타내었다. 국부적인 현상으로는 6월말부터 8월초까지 우리나라 동해 남부연안에서 주변보다 10~12℃나 낮은 강한 냉수대가 지속되었다. 50m이하 수심에서의 수온분포는 연초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1~3℃ 저온현상을 나타내다가 6월에는 전해역이 2~5℃ 저온현상을, 8월에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 2~7℃의 저온현상을 보였다. 10월에는 무려 2~9℃의 저온현상을 나타내어 해양생태 및 어장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이변을 연출하였다. 그러나, 12월로 접어들면서 포항~울릉도 이북해역을 제외한 대부분 근해역 수온이 2℃ 내외의 고수온 현상을 나타내었다. 월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2월의 해역별 수온은 동해 4~13℃, 남해 8~15℃, 서해 3~10℃의 분포로서 1월에 비하여 동해 2℃, 남해 1℃, 서해 1℃ 정도 낮은 분포를 보였다.

표면과 50m층 수심의 평년편차를 보면, 포항 이북에서는 평년보다 최대 3℃ 낮았으며 울릉도 동편 및 남동방향으로는 평년치와 비슷하게 나타났었다. 남해 및 서해의 표층은 연안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1℃ 정도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50m 수층은 평년치를 유지하였다.

4월에는 동해 5~13℃, 남해 9~15℃, 서해 5~10℃의 분포로서, 3월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1℃ 정도 높은 수온분포를 나타내었다. 해역별 특징은 동해에서는 거진 이북 위도 39도를 중심으로 수온 5℃의 수온전선대가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형성되었으며, 북위 38도 부근에서는 수온 10℃를 중심으로 북상하는 동한난류의 선두세력이 보였다. 남해 연안은 10~11℃로 지난 달보다 약 2℃ 상승되었으며, 먼바다 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점차 높아져 대한해협과 제주해협은 14℃의 수온을 나타내었다. 서해 역시 2℃ 정도 상승하여 인천 및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수가 6℃ 이하로 나타났었다.

표면과 50m 수심의 평년편차를 보면, 표면수에서는 동해와 남해는 1~4℃의 저수온, 서해는 1~2℃의 저수온을 나타냄으로써 전 해역이 평년보다 낮은 수온분포를 보였다. 50m층에서 동해는 전 해역이 1~4℃의 저수온을 나타내었으며 남해는 1~3℃, 서해는 연안에서는 평년보다 조금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평년치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6월의 수온은 동해 15~20℃, 남해 18~21℃, 서해 16~22℃의 분포로서 5월에 비하여 동해 및 남해는 4~5℃, 서해는 약 8℃ 상승하였다. 해역별 특징은 동해에서는 거진 이북 위도 39도를 중심으로 10℃의 수온전선대가 대만난류에 의하여 더욱 밀려났으며, 북위 40도 부근에서

는 극전선대가 수온 14℃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말경에는 동해 남부 연안에서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냉수대가 발생되었다. 서해 연안에서는, 수심 20m 이내 표층수의 급격한 수온상승과 저층 냉수의 조석에 의한 교란으로 조석전선이 태안 반도와 진도연안을 중심으로 서해 대부분 연안에 걸쳐서 강하게 형성되었다. 서해 조석전선의 중심수온은 15~16℃였다. 표면과 50m 수심에서 수온 평년편차를 보면, 표면에서 동해는 울진 근해역의 이상 고수온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7℃의 저수온, 서해는 연안은 1~3℃의 저수온을 먼바다는 오히려 1~2℃의 고수온을 나타내었다. 남해는 전반적으로 1~2℃의 고수온을 나타내어 해역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50m층에서 동·서·남해 전 해역이 1~5℃의 저수온을 나타냄으로써 전반적으로 저수온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8월의 수온은, 동해 22~27℃, 남해 24~28℃, 서해 22~29℃의 분포로서 7월에 비하여 동해 및 남해는 3~6℃, 서해는 약 3℃ 상승하였다.

해역별 표층 수온분포의 특징은 동해에서는 묵호 이북의 연안해역에서는 20℃ 내외의 찬 해수가 출현하였으며 울산 앞바다에도 약 19~20℃의 약한 냉수가 나타났었다. 남해에서는 제주도과 여수간 해역에 수온 27℃를 중심으로 비교적 조밀한 수온분포를 보였으며, 서해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으나 연안해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해역이 28℃의 균질의 수온분포를 나타내었다.

표면과 50m 수심에서 수온 평년편차를 보면, 표면에서 동해는 대부분의 해역이 1~3℃의 저수온을 나타낸 반면, 남해와 서해에서는 일부 연안역을 제외하고는 2~3℃의 고수온을 나타내었다. 50m층에서는 동해 전 해역이 3~7℃의 저수온을 나타내어 북한한류의 세력이 평년보다 아주 강하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남해와 서해 역시 전 해역에서 평

년보다 2~3℃ 낮게 나타났으며, 동해는 표층을 제외하면 고수온을 보였고 50m의 수심에서는 3~7℃의 저온현상이 전해역에서 나타났었다.

10월의 수온은 동해 14~24℃, 남해 18~24℃, 서해 14~22℃의 분포로서 수온이 높았던 8월에 비하여 동해 및 남해는 6~7℃, 서해는 9~11℃ 정도 낮았다. 이 사실로 보면 추계로 들어서면서 해수의 냉각되는 속도가 각 해역별로 볼 때 서해가 가장 빠르며 이어서 동해, 남해 순이었다.

각 해역별 특징은 동해에서는 울산 앞바다에서 울릉도 남부예까지 이르는 20℃의 수온전선대가 형성되었으며, 남해에서는 연안 10km이내의 해수가 급격히 냉각되었고 근해수와의 수온차이가 4~6℃ 나 되었다. 서해는 해수의 빠른 냉각에 의하여 위도에 따른 등온선이 10월 한 달 동안에 위도 약 3도 정도 남하하였다.

0 m와 50 m 수심에서 수온 평년편차를 보면, 표층수에서는 전해역이 1~2℃ 높게 나타난 반면, 50m 수심에서는 동해가 2~9℃, 남해 2~5℃, 서해 1~3℃ 범위로 전해역이 평년치 보다 아주 낮게 나타났었다. 특히 동해는 6월, 8월에 이어 10월에도 평년차가 크게 낮아져 50m이하 수심에서의 저온현상은 해양 생태 및 어장분포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해양이변이었다.

12월의 수온은 동해 10~18℃, 남해 10~18℃, 서해 5~13℃의 분포로서, 11월에 비하여 동해 3~8℃, 남해 5~6℃, 서해 5~7℃ 정도로 낮았다.

각 해역별 특징은 동해에서는 동해남부 연안에서 울릉도까지 이르는 15℃의 수온전선대가 형성되었으며, 남해에서는 연안 10km 이내의 해수가 육지와 기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급격히 냉각되어 연안을 따라 수온전선대가 형성되었고 근해역과의 수온차이가 9℃ 내외였다. 서해는

위도에 따른 수온분포가 뚜렷하였으며 인천 및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한 연안수가 5~6℃ 이하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다.

50m 수심에서 수온은 표면수온분포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동해에서는 포항~울릉도 북부해역을 잇는 14℃의 전선대가 표층과 동일하게 형성되었으며, 남해에서는 제주도 동편에서 대마도 서편으로 18℃를 중심으로 한 수온전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황해에서는 위도 1도당 약 2℃의 수온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2월의 수온 평년편차는, 동해의 표면 및 50m 수심층에서 동해남부해역~울릉도를 잇는 수온전선대를 경계로 하여 전선대의 북쪽 표면에서는 1~2℃의 저수온이, 50m수심에서는 2~8℃의 저수온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선대의 남쪽에서는 표면과 50m 수심층 모두 2~3℃의 고온현상이 나타났다. 남해와 서해에서는 표저층 모두 1~2℃의 고수온을 나타내었다.

나. 沿岸水溫 變動

한반도 연안 75개의 연안 항로표지관리소에서 매일 수온을 관측하므로써 인공위성 자료의 공간 해상도 문제로 파악이 어려운 인접 연안측 수온에 대한 변동경향을 파악하여 주간 및 월간 연안수온 변동 조사와 해황예보 자료로 64회 활용하였다.

한반도 주변의 연안해역 수온변동 파악을 위하여 연안 40개지점(항로표지관리소 및 어촌지도소)에서 매일 관측된 수온자료의 변화폭과 평균값을 조사한 결과, '96년 동해, 서해, 남해 연안의 수온이 최저가 된 시기는 2월이며, 동해 8℃, 서해 5.1℃, 남해 10.6℃로 나타났다. 최고 수온에 도달하는 시기는 모두 8월로 동해는 22.8℃, 서해 23.8℃, 남해 24.5℃로 남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 수온 변화폭은 서해가 가장 크며 이어 동해, 남해로 나타났다.

<表 42>

沿岸정지 水溫 月別 平年偏差度

1996년

| 해역 | 지역 | 월별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동 | 속초 | ■ | ■ | | | | | | | | ■ | ■ | ■ |
| | 주문 | ■ | | | | | | | | | ■ | ■ | ■ |
| | 울릉 | ■ | | ■ | | | ■ | | ■ | ■ | ■ | ■ | ■ |
| 해 | 죽변 | | | | ■ | ■ | | | | | | | |
| | 포항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 | ■ | | ■ | | ■ | ■ | | ■ | ■ | ■ | ■ | ■ |
| 안 | 감포 | | | | | | ■ | | ■ | ■ | ■ | ■ | ■ |
| | 울기 | ■ | ■ | ■ | | | | | | | ■ | ■ | ■ |
| | 기장 | | ■ | | | | | | ■ | ■ | ■ | ■ | ■ |
| 남 | 부산 | | ■ | ■ | | | | | | | | | |
| | 가덕 | | ■ | ■ | | | | | | | | | |
| | 서이 | | ■ | ■ | | | ■ | ■ | | | | | |
| 해 | 통영 | | ■ | ■ | | | | | | | | ■ | ■ |
| | 산양 | ■ | ■ | ■ | | | | | | | | | |
| | 여수 | ■ | ■ | ■ | | | ■ | ■ | ■ | ■ | ■ | ■ | ■ |
| 안 | 소리 | | ■ | | ■ | | ■ | ■ | ■ | ■ | ■ | ■ | ■ |
| | 거문 | ■ | ■ | | | | ■ | ■ | ■ | ■ | ■ | ■ | ■ |
| | 우도 | | ■ | | ■ | | ■ | ■ | ■ | ■ | ■ | ■ | ■ |
| 서 | 당사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 마라 | ■ | ■ | ■ | ■ | | | | | ■ | ■ | ■ | ■ |
| 해 | 죽도 | ■ | ■ | | | | | ■ | ■ | ■ | ■ | ■ | ■ |
| | 소흑산 | | | | | | | | ■ | ■ | ■ | ■ | ■ |
| | 홍도 | | | ■ | | ■ | ■ | ■ | ■ | ■ | ■ | ■ | ■ |
| 안 | 칠발 | ■ | ■ | | | | ■ | ■ | ■ | ■ | ■ | ■ | ■ |
| | 목포 | ■ | ■ | | | | | | ■ | ■ | ■ | ■ | ■ |
| | 말도 | ■ | ■ | | | | | ■ | ■ | ■ | ■ | ■ | ■ |
| 해 | 군산 | ■ | ■ | | | | | | ■ | ■ | ■ | ■ | ■ |
| | 어청 | | | ■ | | | | | ■ | ■ | ■ | ■ | ■ |
| | 대천 | | | | | | | | ■ | ■ | ■ | ■ | ■ |
| 안 | 부도 | ■ | ■ | | | | ■ | ■ | ■ | ■ | ■ | ■ | ■ |
| | 선미 | ■ | ■ | | | | | | ■ | ■ | ■ | ■ | ■ |
| | 월미 | | ■ | ■ | ■ | | | | ■ | ■ | ■ | ■ | ■ |
| 안 | 소청 | ■ | ■ | ■ | ■ | | | | | ■ | ■ | ■ | ■ |
| | 도 | ■ | ■ | ■ | ■ | | | | | ■ | ■ | ■ | ■ |

범례 : 고수온 ■ 평년상 ■ 저수온: □

각 지점별 연안수온의 편차도를 보면, 연초 1~2월에는 동해의 울기 연안, 남해의 부산~통영 연안, 서해의 대천, 어청도를 제외한 대부분 연안 수온이 평년에 비해 고온현상을 보였으나, 3~7월까지 동해의 죽변~장기갑, 남해의 여수~거문도, 서해의 부도~월미도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 한반도 연안수온이 저온현상을 나타내었다. 그 후 8월부터 12월 까지의 한반도 대부분 연안수온은 다시 고온현상을 지속하였다.

2. 漁況

가. 海域別 漁況

1) 東海岸

동해안 주요 어업인 명태어업(자망, 연승), 콩치유자망, 오징어채낚기, 동해구기선저인망의 '96년 漁況動向을 보면, 명태어업은 1~4월과 12월에 강원도 고성~거진~속초~주문진 연안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전체적인 漁況은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하였으나, 평년('91~'9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漁況을 나타내었다. 콩치유자망어업은 봄철 北上期인 4~5월과 南下期인 11~12월에 경북, 강원 연안측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동해안 來游資源量 증가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順調로운 漁況이었다.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여름철 漁期인 6~8월에는 동해남부해역에 형성된 冷水帶의 영향으로 부진한 어황이었으나, 南下期인 9월 중순 이후 12월까지 울릉도 주변해역에서 경북 감포연안 해역에 걸쳐 어군의 밀도가 높은 어장이 형성됨으로써 전년 및 평년에 비해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다.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은 강원, 경북 연안측 해역에서 年中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주 어획 대상 어종인 명태, 도루묵 등의 연안측 來游資源量 감소로 평년비 부진한 어황을 나타내었다.

2) 南海岸

남해안 주요어업의 漁況動向을 보면, 멸치자망은 4~6월과 10~12월에, 기선권현망은 7~12월에 남해안 연안 일대와 동해남부 연안측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었다. 대형멸치를 주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멸치자망어업은 부진하였으나, 중·소형멸치를 주대상으로 조업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은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다. 대형선망어업은 고등어, 전

갱이, 정어리 등을 주 대상으로 대마도 주변으로부터 제주도 및 소코트라 주변해역에 걸쳐 年中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중·소형 고등어의 대량 어획으로 전년이나 평년에 비하여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다. 말쥐치를 주로 어획하는 대형트롤어업은 가을철에 오징어의 대량 어획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다.

3) 西海 및 東中國海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조기류, 갈치, 꽃게, 갯장어, 갑오징어 등을 주로 어획하는 근해안강망어업과 기선저인망어업은 서해 중·남부 해역과 동중국해 全海域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계절에 따라 남북방향으로 다소의 어장변동은 있었으나 소흑산도 및 제주도 서쪽해역과 소코트라 주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었다. 근해안강망어업은 갈치의 어획부진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다소 부진한 漁況이었고, 기선저인망어업은 전년 및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나. 魚種別 漁況

'96년 연근해 주요 어종의 漁況動向 분석결과를 보면, 고등어, 멸치, 오징어, 꽁치등은 來游資源量의 증가로 순조로운 漁況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고등어는 중·소형 개체의 내유자원량 증가로 동중국해 북부 및 남해안 일대에서 대량 어획됨으로써 '95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된 어획실적을 나타내었다. 저인망과 안강망어업에서 주로 어획된 참조기와 갈치는 전년이나 평년에 비해 다소 낮은 어획수준을 나타내었다. 명태, 말쥐치, 정어리, 갑오징어 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평년에 비해 부진한 漁況이었다.

3. 資源動向

가. 沿近海

연근해 어업의 總漁獲量은 '60년대 이후 '74년까지 순조로운 증가를 거듭하여 왔으나 그 후 增加率이 鈍化되어 '81년 이후 최근까지 130~160만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단위노력당어획량은 '74년 이후 최근까지 계속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70년대 중반에 비하여 1/3~1/5 수준까지 낮아짐으로써 어업자원 감소에 의한 漁場의 生産性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주요 어종별 漁獲動向을 보면 '70, '80년대에는 말쥐치, 멸치, 갈치, 고등어 등의 순이었으나, '90년대에 들면서 멸치,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의 順으로 어획량 順位가 변하였다. 특히, 말쥐치는 '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오징어는 '93년 이후 자원량이 대폭 증가됨으로써 최근까지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81년 이후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자원량 변동추이 및 생물학적 요인 등에 의하여 분석된 연근해 주요 어종의 資源動向을 요약하면, 멸치와 오징어는 近年 資源密度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나, 정어리, 말쥐치 등은 加入量 수준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등어는 近年 資源量의 증감에 따라 不安定된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등어는 '96년에 연간 40만톤이상 대량 어획되었으나 1세 이하의 若齡魚가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불안정한 자원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나. 遠 洋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생산량의 경우 원양어업 초기인 '70년대 초반에는 어획량이 15~40만톤을 유지하였고 그 후 점차 증가하여 80~90만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92년 100만톤을 최고로 최근에는 80~9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원양어업 대상 종으로는 참치류, 명태, 저어류, 오징어류, 꽁치 등을 들 수가 있다. 원양어업 초기에는 참치류가 주대상종이었으나 그 후 연근해 어업자원의 감소 및 어선세력의 증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에는 모든 주요 상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어종별 자원 동향은 참치류는 원양어업 초기에는 우리나라 및 일본을 중심으로 延繩漁業에 의한 어획을 주로 하였으나 그 후 大型旋網漁業의 등장 및 원양어업국의 증가로 남획에 의해 자원상태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참치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연안국 및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거 高度回游性 魚種으로 분리, 특별관리 대상종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어 어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태류는 '80년대에 어획량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최근에는 자원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있어 북태평양 명태 트롤어업에 대해 오호츠크 및 베링공해에서의 조업을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오징어류는 단년생으로서 자원 상태는 안정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오징어 어획은 해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해황변동에 의한 풍흉이 거듭되고 있다.

꽁치류는 자원상태는 안정 증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조업어장이 일본의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추후 조업상

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해외기지트러어업은 라스팔마스 기지를 중심으로 중서, 남서대서양 어장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중동어장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대부분 입어료를 지불하고 주변 연안국 어장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 어종들은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원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沿岸漁場 環境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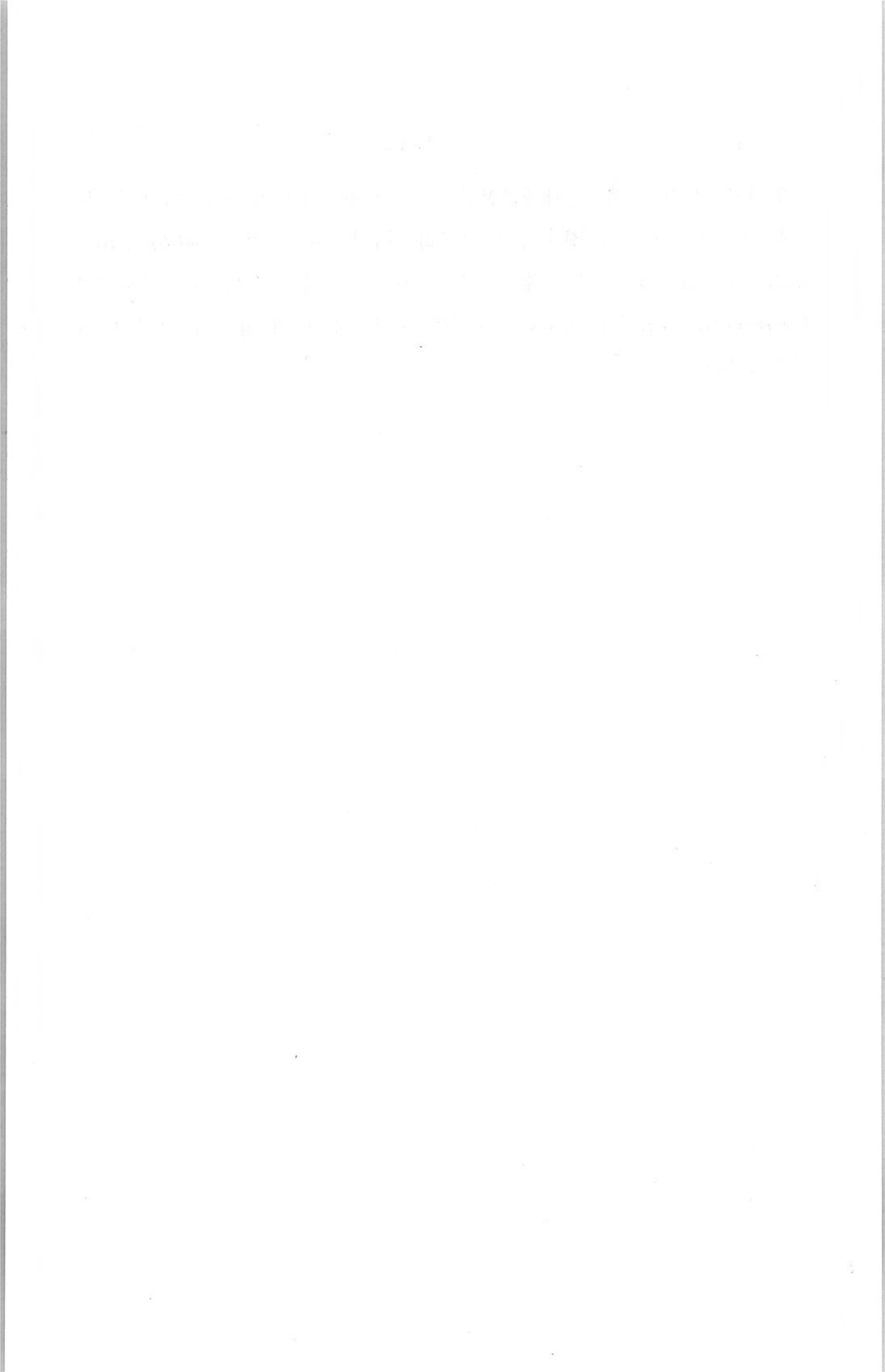
가. 沿岸漁場 汚染

연안 주변 지역에 대한 臨海工團 조성 및 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오염물질의 바다 유입량이 증가되고, 매립, 간척의 확대로 연안어장이 축소됨과 동시에 매립, 간척지의 이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연안해역의 오염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마산만, 진동만, 행암만, 광양만 및 인천연안의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해수교환이 원활치 못한 남해안 동부 해역이 우리나라 전국 연안 중 가장 높은 오염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름철이 되면 진해만에서 발생되어 서식생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빈산소 수괴는 5월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9월말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점차 회복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저층에서 營養鹽類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해만 일원과 통영주변의 가두리 양식장 퇴적물은 유기물 농도 및 총황화합물 농도가 汚染泥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산소 소모량이 많았다.

나. 赤潮發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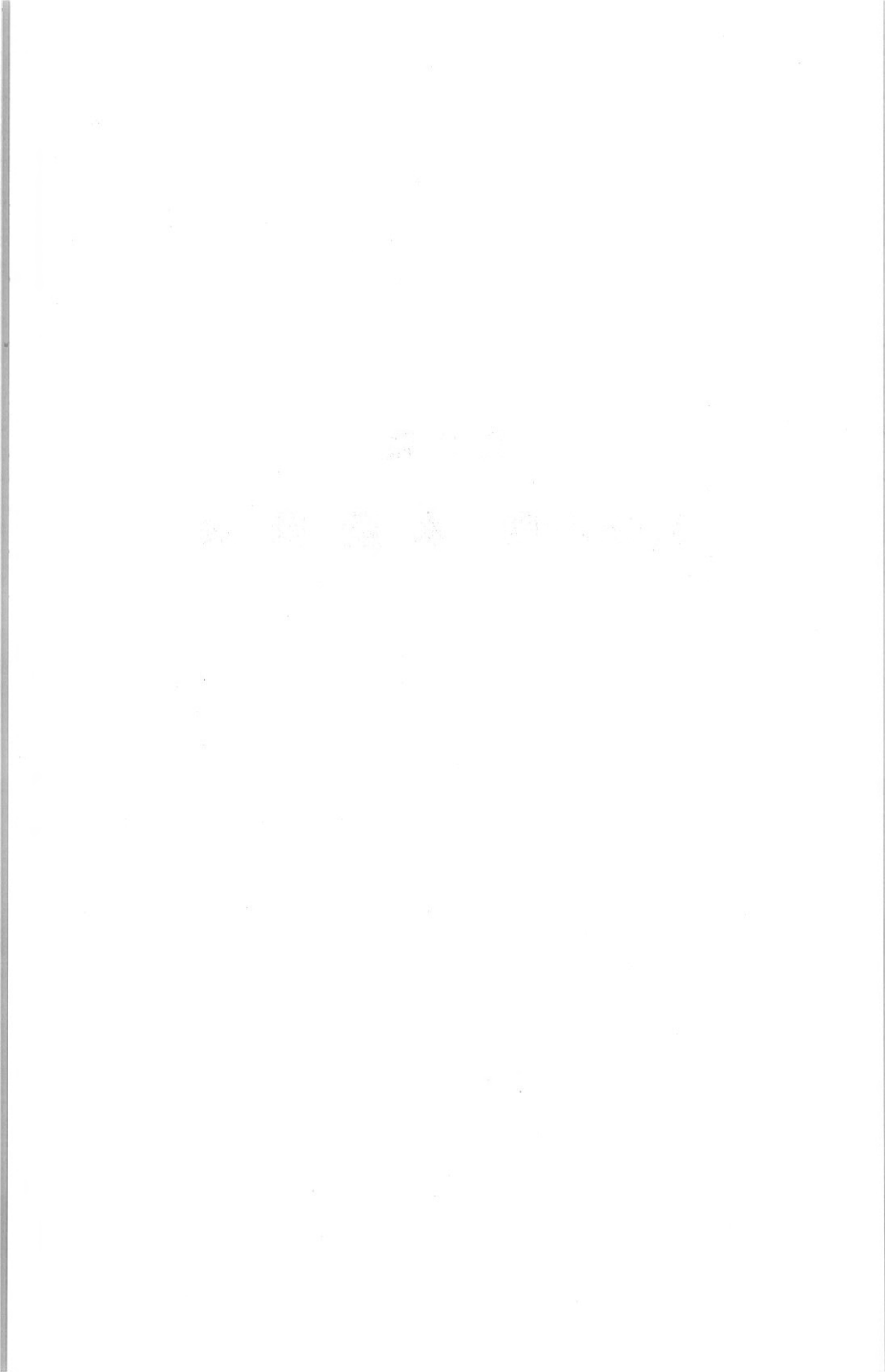
'96년에는 총 61건의 赤潮가 발생하였다. 이 중 편모류에 의한 赤潮가 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규조류에 의한 赤潮는 4건, 混合 赤潮는 2건 발생하였다. 2월 15일 통영 한산면 장좌리 지선에서 *Gymnodinium sanguineum*에 의한 赤潮를 시초로 하여 8월까지는 無害性 赤潮가 지속되었으며, 9월 5일에서 10월 2일까지 약 한달간 有害性인 *Cochlodinium polykrikoides*에 의한 赤潮가 발생하였다. 월별 赤潮發生 해역과 赤潮原因生物은 4월에 마산만, 거제, 여수연안과 5월에 남해안의 진해만과 여수연안, 동해안의 포항연안에서 赤潮가 발생하였다. 이때는 *Eutreptiella gymnastica*, *Skeletonema costatum*, *Heterosigma akashiwo*가 單獨赤潮를 일으켰으며, 이 중 *Heterosigma akashiwo*에 의한 赤潮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6월은 진해만과 거제, 남해, 여수, 여천연안에서 *Heterosigma akashiwo*와 *Prorocentrum* sp.에 의한 赤潮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7월에는 6월말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 육지로부터 영양염류가 대량 유입되고, 수온이 상승하여 赤潮發生海역은 남해안의 부산, 진해만, 거제, 고성, 남해, 여수연안과 서해안의 천수만으로 확산되었고, 赤潮原因種은 *Heterosigma akashiwo*, *Prorocentrum* spp., *Gymnodinium sanguineum*, *Ceratium furca*, *Chaetoceros* spp.이었다. 8월에는 수온이 赤潮발생에 적합한 수온을 초과하고, 일사량이 매우 강하여 赤潮는 소강상태를 보였다. 赤潮발생해역은 남해안의 진해만과 통영, 여수연안과 동해안의 포항, 영덕연안으로, 赤潮 원인종은 *Prorocentrum*이었다. *Cochlodinium polykrikoides*에 의한 赤潮는 '95년과 유사한 시기인 9월 5일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 9월 초에는 고흥군연안과 여수연안, 남해도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9월 중순에는 거제연안,

통영연안, 부산 다대포, 기장군연안과 가덕도연안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9월 말경에는 울산과 경주까지 북상하였다가 10월 2일 *Cochlodinium polykrikoides*에 의한 赤潮는 전 해역에서 완전 소멸되었다. '96년의 *Cochlodinium polykrikoides* 赤潮는 전년도에 비해 규모가 약화된 양상을 보였다.



第 2 篇

1996年度 水産施策



第 1 章 바다 淨化와 기르는 漁業 育成

第 1 節 바다 淨化

1. 淸淨海域 및 保全地區 管理

'72.11.24 체결된 「韓.美貝類衛生協定」과 「輸出用貝類의 생산관리 및 동가공품검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정된 청정해역(수출용 패류 生産海域)은, 거제-한산만, 자란-사랑해역, 산양해역, 가막만해역 등 4개소에 20천ha가 지정되어 있으며, 國土利用管理法에 의거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水産資源保全地區는 현재 전국에 29개소가 있고, 이 중 海面에는 천수만, 영광, 완도,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남해, 통영 I, II, 한산만, 진동만 등 10개소에 413천ha가 지정되어 있다.

이들 해역은 수산자원의 안정적 보호·육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해역으로서 청정해역에 대하여는 156개 조사지점을 선정, 海水 및 貝類에 대한 細菌含量 등 衛生調查를 실시하는 한편, 水産資源保全地區에 대하여는 132개 조사지점을 선정, 일반 수질 및 중금속 汚染度調查를 실시

하여 수질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이들 해역 및 그 주변에 대하여는 가축방목, 공장설치 등을 금지토록 하고公有水面 埋立·干拓과 浚渫行爲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해양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공단폐수 및 생활하수, 분뇨, 폐기물 등 각종汚染物質의 海洋流入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의 沿岸汚染防止 종합대책을 수립, 각종 오염물질 정화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투기행위를 강력히 규제·단속해 나가는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정해역 및 수산자원보전지구의 수질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다.

〈表 43〉 清淨海域 指定現況

| 指 定 番 號 | 海 域 名 | 面 積 | 最初指定日 |
|---------|---------|----------|----------|
| 計 | 4個所 | 20,438ha | |
| 제 1 호 | 거제-한산만 | 2,121 | 74. 7. 5 |
| 제 2 호 | 자란-사랑해역 | 9,492 | 84. 5.23 |
| 제 3 호 | 산양해역 | 4,249 | 87.11.25 |
| 제 4 호 | 가막만 | 4,576 | 87.11.25 |

資料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과

2. 漁場環境淨化

漁場環境淨化事業은 공동어장, 양식어장 등 沿岸을 중심으로 老朽化된 어장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어장의 바닥갈이 등으로 底質을 개선하고 어장내에 퇴적된 각종 오폐물 등을 수거하여 沿岸漁場을 본래의 옥토로 가꾸어 오염으로 인한 어장피해를 최소화하고 단위 생산성을

높이고자 '86년부터 '96년까지 국비 21,963백만원을 지원, 223천ha를 정화하여 共同漁場 및 양식어장의 생산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하였고, '97년도에는 국비 3,447백만원을 지원, 23천ha를 정화할 계획으로 있어 "연안어장은 어민 스스로가 깨끗이 가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함과 아울러 漁民, 團體, 政府가 다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오염이 심화된 沿岸漁場을 효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8,992백만원을 투입, 漁場淨化船 4조 13척을 건조하여 어장이 밀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오염이 심각한 전남도(2조7척), 경남도(1조4척) 및 전북도(1조2척)에 배치·운영토록 하므로써 기존 소형어선으로 정화가 어려운 海域에 대한 정화에도 기여하였다.

3. 赤潮 被害 豫防

'96. 9월 초순부터 10월초순까지 전남 완도에서 경남, 부산, 경북 경주연안까지 有害性인 코클로디니움에 의한 赤潮가 廣域的으로 發生하였으나, 赤潮 早期發見 및 豫報體制確立과 여과기, 산소공급기 등 赤潮防止施設 具備 등 철저한 대비 그리고 漁業人, 水協, 市·道(市·郡), 國立水産振興院, 海警 등 民·官이 황토 集中撒布 등 總體的으로 대응한 결과 漁業被害를 21억원으로 最小化 하였다.

그리고 赤潮被害防止를 위해 '96. 3월 海洋汚染防止5個年計劃을 樹立, 赤潮 常習發生海域에 대해서는 特別管理海域으로 指定하여 환경기초시설과 어장환경개선사업을 優先 실시토록 하였다.

4. 油類汚染被害 豫防

'96년도에는 大型 海難事故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95년의 씨프린스호, 제1유일호, 호남사파이어호등 大型 油類汚染事故를 계기로 政府에서는 '96.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海洋汚染防止 5個年(1996~2000) 計劃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먼저, 船舶安全運航體制의 확립을 위하여 '96. 8월 油槽船專用航路 設定·運營에 관한 告示를 제정·시행함과 더불어 海上交通管制시스템을 여수, 광양, 울산해역에 설치하였으며, 노후선박의 安全檢査基準 및 油槽船業免許基準을 강화하였고, 油槽船·危險物運搬大型船舶의 專擔導船士 制度를 도입하였다.

한편, 사고발생시의 防除力量을 제고하기 위하여 防除對策本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機動防除團을 설치하였으며, 방제인력 10명, 방제정 4척, 방제바지선 2척, 유희수기 10대를 추가 확보하는 등 海洋警察廳의 방제능력을 보강하였고, 油艙清掃業의 營業범위확대와 유조선·기름저장시설의 防除船配置基準을 설정하였다.

또한, 油類汚染事故시 객관성 있는 被害證據資料의 확보와 신속한 被害調查를 위해 油類汚染 被害調查指針을 마련하였고, 사고발생시 초동방제를 위하여 海洋警察廳에 緊急防除資金으로 100억원을 확보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 2 節 水産資源 造成

1. 人工魚礁 施設

人工魚礁는 水産資源의 産卵, 棲息에 적합한 環境을 造成, 水産資源을 增強시키는 것은 물론 小型機船底引網 등의 불법어업을 방지하여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71년부터 沿岸海域 10~50m 수심의 개발적지에 시설하고 있으며 '96년에는 54,494백만원을 투자, 11,120헥타를 시설하였다.

〈表 44〉

市·道別 人工魚礁 施設實績

(單位 : ha, 百萬원)

| | 計 | | '71~'95 | | '96 | |
|-------|---------|---------|---------|---------|--------|--------|
| | 面 積 | 金 額 | 面 積 | 金 額 | 面 積 | 金 額 |
| 計 | 111,219 | 263,698 | 100,099 | 209,204 | 11,120 | 54,494 |
| 釜 山 | 955 | 2,108 | 859 | 1,718 | 96 | 390 |
| 仁川·京畿 | 4,400 | 13,779 | 3,566 | 9,478 | 834 | 4,301 |
| 江 原 | 15,863 | 32,624 | 14,509 | 26,787 | 1,354 | 5,746 |
| 忠 南 | 7,449 | 20,158 | 6,147 | 14,823 | 1,302 | 5,335 |
| 全 北 | 5,310 | 14,213 | 4,528 | 10,748 | 782 | 3,465 |
| 全 南 | 22,880 | 51,565 | 20,716 | 41,216 | 2,164 | 10,349 |
| 慶 北 | 15,977 | 34,531 | 14,741 | 28,858 | 1,236 | 5,673 |
| 慶 南 | 23,481 | 54,818 | 21,714 | 44,785 | 1,767 | 10,033 |
| 濟 州 | 14,904 | 39,902 | 13,319 | 30,700 | 1,585 | 9,202 |

資料 :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

2. 種苗培養場 施設 및 生産放流

沿岸 水産資源의 增強을 위한 種苗放流 및 養殖用 種苗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73년부터 '96년까지 국립수산종묘배양장 12개소를 완공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地域與件과 特性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대량생산 방류할 수 있도록 '94년부터 대규모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을 시설토록 지원하여 '96년 전남도(신안군)에 1개소를 완공한것을 비롯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에 1개소씩 총 5개소를 시설중에 있다.

<表 45>

國立水産種苗培養場 現況

(單位：百萬원, 千마리)

| | 施設年 度 | 施設費 | 主要生産種 苗 | 生産實績 | |
|-----|-------|--------|--------------|---------|---------|
| | | | | '76~'95 | '96 |
| 計 | | 32,668 | | 591,814 | 377,318 |
| 北濟州 | '73 | 1,188 | 소라, 전복, 참돔 | 18,807 | 928 |
| 江 陵 | '78 | 1,524 | 전복, 성게, 넙치 | 13,373 | 440 |
| 麗 川 | '79 | 2,122 | 전복, 꽃게, 돔 | 31,747 | 1,650 |
| 浦 項 | '80 | 1,212 | 전복, 성게, 넙치 | 10,760 | 602 |
| 巨 濟 | '82 | 1,593 | 넙치, 전복, 보리새우 | 140,541 | 6,770 |
| 莞 島 | '84 | 1,761 | 전복, 참돔, 조피볼락 | 20,944 | 650 |
| 保 寧 | '85 | 1,906 | 대하, 전복, 조피볼락 | 64,029 | 12,875 |
| 扶 安 | '86 | 1,779 | 꽃게, 조피볼락, 대하 | 47,945 | 15,044 |
| 南濟州 | '87 | 2,212 | 조피볼락, 돌돔, 참돔 | 65,770 | 608 |
| 南 海 | '89 | 5,326 | 보리새우, 진주조개 | 174,738 | 336,300 |
| 蔚 珍 | '92 | 5,378 | 참게, 은어, 전복 | 3,160 | 1,350 |
| 泰 安 | '96 | 6,667 | 조피볼락, 전복, 대하 | - | 101 |

資料：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

<表 46>

民間 種苗買入 放流實績

(單位 : 千마리, 百萬元)

| | 計 | | '86~'95 | | '96 | |
|------|---------|-------|---------|-------|--------|-----|
|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 計 | 224,206 | 1,526 | 197,844 | 1,324 | 26,362 | 202 |
| 조피불락 | 4,721 | 410 | 4,257 | 339 | 464 | 71 |
| 대 하 | 216,882 | 1,032 | 190,984 | 901 | 25,898 | 131 |
| 꽃 게 | 2,603 | 84 | 2,603 | 84 | - | - |

資料 :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

국립수산종묘배양장에서는 '96년에 넙치·참돔·조피불락, 은어 등 魚類 3,343千마리, 굴유생 324,000천패를 비롯하여 전복, 진주조개·피조개 등 貝類 338,525千패, 보리새우·대하·꽃게 등 甲殼類가 34,850千마리, 성게·해삼 등 其他品種이 600千마리 등 總 377,318千마리의 종묘를 生産, 漁村契와 民間養殖場 등에 分讓하거나 沿岸에 放流하였다.

또한 연안어장 資源造成的 가속화와 자원조성에 대한 民間의 參與를 誘導하기 위하여 民間 種묘배양장에서 生産한 수산종묘를 '86년부터 買入, 沿岸에 放流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202백만원을 투자하여 조피불락·대하 등 26,362천마리를 매입, 방류하였다.

第 3 節 養殖漁業 開發 및 整備

1. 養殖漁場 開發

水産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漁場利用開發基本指針을 수립, 각

시·도와 國立水産振興院, 水協中央會에 시달하여 연안 양식어장 개발을 지선 다수어업인의 소득원 확보 위주로 개발하고, 기존 어장의 어장여건 변화로 계속 양식이 곤란할 때에는 외연어장으로 代替開發하거나 적정품종으로 변경개발하는 등 어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양식수산물의 수율을 감안한 적정생산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적정 需給調整이 필요한 김, 미역, 굴, 피조개, 톳 등은 안정생산 시책을 추진하여 전국단위로 어장개발 및 생산을 조정하였다.

이와함께 海域別 양식어업의 주요 품종으로서 남해안은 어류, 굴, 피조개, 김, 미역, 우렁챙이, 진주조개 등, 서해안은 김, 바지락, 굴(투석식), 새우 등, 동해안은 어류, 우렁챙이, 가리비 등의 어장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水産物 輸入 自由化에 대비하여 가리비, 진주조개, 어류양식 등 國際競爭 優位品種을 중점 개발하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양식품종은 타품종으로 품종 변경을 유도함은 물론, 양식여건이 좋은 필리핀 등과 해외합작에 의한 海外漁場 개발을 병행 추진하였다.

2. 養殖漁場 管理·整備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不實管理漁場의 방지를 위하여 '95養殖漁場管理改善指針을 각 시·도 및 유관기관에 시달하고, 양식어업권을 품종별·양식시기별로 구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관리 漁業權은 關係法規에 따라 시정조치하는 등 漁業秩序確立方案을 강구하였으며,

어장의 生産性を 감안한 어장별 적정시설 지도와 함께 시·도, 시·군, 수산진흥원, 수협 합동으로 지역별·주요 양식품종별 生産團地에

대한 漁場豫察評價制를 강화하여 피해예방지도와 피해발생시 신속 대처로 효율적인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3. 養殖基盤施設 擴充

양식어장의 안정적 생산과 經營合理化를 위하여 種苗培養場, 飼料貯藏庫 등 양식생산기반시설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6,367백만원을 투자하여 魚類種苗培養場 3개소, 패류 종묘배양장 3개소, 사료저장고 8개소, 사료제조기 5대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였다.

第 4 節 內水面 漁業 開發

1. 淡水魚 集約養殖

〈表 47〉 淡水魚 集約養殖 支援實績

(單位: 個所, 百萬元)

| 事業名 | 계 | | '95까지 | | '96 | |
|--------------------|----|--------|-------|-------|-----|-------|
| | 物量 | 金額 | 物量 | 金額 | 物量 | 金額 |
| 計 | 94 | 14,500 | 57 | 9,600 | 35 | 4,900 |
| 淡水魚養魚場 施設 | 45 | 9,000 | 33 | 6,600 | 12 | 2,400 |
| 가두리養殖場의 陸上 養殖轉換 | 7 | 3,500 | 4 | 2,000 | 3 | 1,500 |
| 養魚場 水質淨化施設 | 40 | 2,000 | 20 | 1,000 | 20 | 1,000 |
| 大單位 養魚 團地造成 | 2 | 2,600 | - | - | 2 | 2,600 |

資料 :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

국내 養殖業은 그간 정부 및 양식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댐·호, 저수지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경제 성장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이 약화되고 기술 보호주의 대두와 水質環境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외부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담수어 집약생산시설 확충으로 양식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 취지에 부응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는 한편 品質 우위에 바탕을 둔 제품 차별화 전략 및 독특한 지식, 기술 축적을 통한 비교우위 전략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담수어 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94년 21개소, '95년 36개소, '96년 37개소에 '94~'96기간 동안 총 14,500백만원을 支援하였다.

2. 淡水魚 養殖用 機資材 供給

淡水魚 생산기반 조성여건이 열악하고 기계화 추진미흡에 따른 경영비 과다소요로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영의 합리화 및 자동화시설을 완비한 선진양식 기술의 기틀을 조성하고자 양식용 수차, 양수기, 사료자동 급이기, 사료분쇄기, 산소공급기 등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 內容年數가 평균 3~5년인 소모성인 기자재 구입으로 양식어

〈表 48〉

淡水魚 養殖用 機資材 供給 實績

(單位: 대, 百萬元)

| 事業名 | 계 | | '95 | | '96 | |
|---------------|-------|-------|-------|-------|-----|-----|
| | 物量 | 金額 | 物量 | 金額 | 物量 | 金額 |
| 淡水魚 養殖用機資材 供給 | 2,394 | 2,853 | 1,933 | 2,300 | 461 | 553 |

資料 :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

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養殖施設의 기계화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다.

3. 연어 人工孵化放流

정부에서는 동해안의 연어資源 增強을 위하여 '67年度부터 '96년까지 연어치어 148백만마리를 생산 방류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도 강원, 경북 관내 2개 내수면연구소에서 16백만마리를 인공부화하여 동해안 12개 河川에 방류 하였다.

'90년도부터는 방류 연어의 回歸率이 1.4%로 높아짐에 따라 소극적인 어법인 定置網等漁撈漁業에 대하여는 採捕禁止期間(10.11~11.30)을 解除하여 禁止期間中 回歸 연어를 漁獲도록 하여 어업인 所得增大를 기하고 있다.

〈表 49〉

연어 放流 및 採捕 實績

(單位: 천마리)

| 년 도 | 계 | '67~'91 | '92 | '93 | '94 | '95 | '96 | '96/'95 |
|-----|---------|---------|--------|--------|--------|--------|--------|---------|
| 방류량 | 148,153 | 75,583 | 10,000 | 14,660 | 16,110 | 15,800 | 16,000 | 101 % |
| 채포량 | 828 | 103 | 111 | 120 | 136 | 143 | 215 | 150 |

資料 :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

第 2 章 漁業構造調整과 漁業秩序 確立

第 1 節 漁業構造 調整

1. 沿近海 漁業構造調整

沿近海漁業은 '80년이래 漁業生産이 130~150만톤 수준에서 停滯되고,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漁業資源에 비하여 漁船勢力이 과다하여 單位生産性도 저하하는등 연근해 어업자원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주변연안국의 EEZ 宣布에 따른 漁場縮小에 대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이 시급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업 자원의 감소, 수입개방등 國內外漁業與件의 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漁業生産性 向上과 漁業經營의 安定 및 漁業競爭力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어선세력과 漁獲强度가 높은 업종을 연근해 어업자원 수준에 적합하게 감척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92년도에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 어업자원, 어업경영실태, 어업별 적정 어선세력의 평가 및 어선감척규모 어선어구의 補償基準 등을 調査, 研究토록하여 '93년도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沿近海漁業構造調整計劃을 수립,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400여억원을 투자하여 137

천톤(7천여척)의 연근해어선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94~'96년도까지 390여억원의 자금으로 연안수역에서 어린고기를 많이 混獲하여 어업자원보호에 지장이 큰 해선망, 낭장망, 연안안강망어업 등 연안어업 275척, 2,801톤과 대형선망어선 18척 2,223톤 등 근해어업 32척 2,384톤을 감척하였다.

2. 沿岸漁業 基本調査

세계 沿岸國들의 水産資源의 自國化 추세에 따라 遠洋漁業에 대한 제한 강화와 沿岸漁場의 매립·간척으로 인한 漁場縮小, 도시화·산업화 영향으로 각종 오페수의 漁場流入에 따른 어장환경 악화 등 국내외의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沿岸漁業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93년도에 沿岸漁場基本調査計劃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진흥원 주관으로 수산연구소, 어촌지도소 및 시·도의 협조를 받아 '94~'95까지 沿岸漁業, 마을漁業(前 共同漁業) 및 定置網漁業의 어장이용실태, 어장별 생산상황, 어업경영실태 등 어촌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6년도에는 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전국총괄편, 강원·경북편, 인천·경기·충남·전북편, 부산·경남편, 전남·제주편 등 총 5편으로된 沿岸漁業基本調査書를 발간하여 정부기관, 각 시·도, 수협, 학계, 연구기관 등에 배부('97.4) 하였다.

연안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가 발간·배부됨에 따라 합리적인 어업자원관리, 어업생산성 향상방안 강구 및 연안어업의 이용관리, 경영실태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연안어업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및 생산성 증대로 어업이윤을 극대화 하고 漁具漁法 개

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으로 널리 활용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第 2 節 漁業秩序 確立

1. 不法漁業 追放

沿近海 漁業은 '80年代 以後 伸長率이 鈍化되어 漁獲量이 120 ~ 150만톤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沿近海 漁業資源의 減少 現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沿近海 漁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접국과의 漁業競爭이 심화되고 대단위 간척, 매립사업에 의한 沿岸漁場의 縮小, 産卵場, 棲息場의 파괴와 産業의 發達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산업폐수 및 생활 오수 등으로 인하여 漁場環境이 악화되고 일부 漁業人에 의한 不法漁業과 치어 남획등이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따라서 不法漁業에 의한 漁業資源의 濫獲을 防止하고 水産關係法令을 誠實히 遵守하는 다수의 漁業人을 保護하기 위해 “漁業秩序確立對策”을 樹立 內務部, 法務部, 國防部, 檢察廳, 警察廳 등 關係機關과 積極協助推進 하였으며, “不法漁業根絶中央對策會議” 및 “指導團束評價會議”를 開催하여 漁業秩序確立對策 推進狀況을 分析 평가하고 地域別, 類型別 不法漁業 동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團束方案을 마련하는등 有關기관간 긴밀한 協助체제로 漁業秩序確立에 주력하였다.

政府組織 改編으로 海洋水産部가 새로이 발족됨에 따라 어느해보다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한 결과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 등 3,128건을 단속하였다.

이는 '95년도에 비해 467건(13.0%)이 감소한 것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근절 의지와 指導啓蒙 등으로 漁業人들이 不法漁業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擴散되어진 것으로 分析된다.

위반어선중 상습적 기업형 不法漁業者에 대해서는 檢察에 拘束 품신하는 등 處罰을 強化하는 한편 操業區域을 違反한 대형트롤, 기선권현

<表 50>

不法漁業 團束實績

(單位 : 件)

| | 93 | 94 | 95 | '96 | 증감율(B/A) |
|------|-------|-------|-------|-------|----------|
| 計 | 3,797 | 4,004 | 3,595 | 3,128 | △ 13.0 % |
| 大型機底 | 116 | 83 | 78 | 92 | 17.9 |
| 中型機底 | 197 | 148 | 162 | 105 | △ 35.2 |
| 小型機底 | 1,568 | 1,608 | 1,595 | 1,466 | △ 8.1 |
| 機船형망 | 132 | 168 | 172 | 154 | △ 10.5 |
| 流刺網 | 149 | 172 | 175 | 170 | △ 2.9 |
| 其他 | 1,635 | 1,825 | 1,413 | 1,141 | △ 19.3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망의 漁船도 檢舉하여 사범, 행정처벌 등 사항별로 조치하였으며,

水協에서도 不法漁業者에 대해서는 組合員除名, 免稅油類 및 水産機資材 供給中止, 營漁資金回收 및 貸出中止등 신분상으로는나 經濟的으로 不利益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하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하는 불법어업자에게 해당 1~3천만원을 전업지원하여 생계형 불법어선 962척을 합법어업으로 전업조치 하였다. 그리고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무허가 또는 금지어업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200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불법어업자 양산 방지를 위해 경미한 위반의 경우는 벌

금형에서 과태료,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같이 漁業秩序確立을 위한 범정부적 次元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漁業人의 自律的인 不法漁業根絶 캠페인, 制度改善을 통한 行政規制 緩和措置 등 다각적인 政策을 수립 推進한 결과 不法漁業이 전국적으로 減少한 것으로 보여진다.

2. 安全操業指導

沿近海에 出漁하는 漁船의 安全操業指導를 위하여 東海 大和堆 海域의 오징어 盛漁期 (6.15~12.31)와 황해, 東中國海에서의 병어 盛漁期 (3.1~7.31), 西海特定海域의 홍어 盛漁期 (10.1~ 다음해 4.30)에 매년 500톤급이상 大型指導船을 배치하여 漁撈 保護 및 操業紛爭 豫防指導를 기하였고, 대화퇴, 동중국해 등 遠海漁場에는 1,500톤급의 福祉母船을 出動시켜 조업중인 漁船에 유류, 식수, 기관부품 등의 선수품을 공급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와 구급약을 제공 하였다

또한 沿近海 出漁船의 安全操業을 위하여 全國 主要 港. 浦口 39個所에 소재하고 있는 선박 出入港 申告機關인 統制所 및 合同申告所에 水協의 漁船安全點檢要員 96명을 배치 출항어선 61,383隻에 대한 航海 및 通信裝備의 安全點檢 실시와 出漁登錄, 선단편성 등의 지도를 하는 한편 일선 水協에서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선원 72,898명에 대한 安全操業教育을 實施하는 등 安全操業指導對策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漁船이 航海 또는 操業中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海難事故 및 越線, 被拉事故를 미연에 방지, 漁業人의 生命과 財産保護에 크게 寄與하였다

3. 漁業無線局 運營

漁業無線局은 우리나라 沿近海 漁場에 出漁하는 漁船의 操業狀況을 把握하여 선주에게 알려주고 매일 漁業氣象 豫報放送 및 颱風, 暴風 등 악천후시에는 조업어선을 안전한 항포구로 대피 지도하고, 해·어황예보와 어가유통정보 방송을 실시 하므로써 어업인의 안전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海難事故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구조기관과 부근에 있는 操業漁船에 신속히 傳播하여 조난漁船 救助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96년도 漁業無線局의 주요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전보취급 2,229천통, 越線, 被拉事故 예방을 위한 위치측정 52,527건, 기상악화시 출어선 안전대피지도 179회, 遭難通信 356건을 구조기관과 漁船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漁業人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통신교육 22,219명, 통신장비 무료수리 1,705대, 落島·僻地에 소재한 어선 1,551척의 船舶無線局 검사를 현지에 출장 집행하므로써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 하였다.

政府에서는 '96年度에 漁船安全操業指導 업무를 수행하는 漁業無線局에 대하여 인건비 4,653백만원을 지원하고, 시설비 649백만원을 투자, 慶南 南海郡 錦山의 3개소에 무인중계소를 설치하여 多島海 등 通信不感지대를 해소시키고 老朽通信裝備 25대를 交替補強 하므로써 어선과 어업무선국간의 통신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第 3 章 漁村綜合開發과 漁業基盤施設 擴充

第 1 節 漁村綜合開發

1. 漁村綜合開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반면에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도시 집중, 지역간 불균형, 環境汚染과 自然環境 훼손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어촌에서도 '80년대 중반까지는 수산정책이 증산지향의 산업위주 정책이었던 관계로 沿岸漁業 및 어촌은 投資順位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어가수의 감소와 漁家所得의 상대적 저위를 가져와 어가수는 '80년 157천호에서 '95년에는 105천호로 줄어들고 농가소득에 대비한 어가소득은 '80년에 97%수준에서 '95년 85%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88년부터 漁村綜合開發事業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漁村契가 3억원의 한도내에

서 어·패류양식 등 소득증대사업과 소득원 도로 등 生産基盤施設 및 상·하수도, 어업인 회관 등 복지시설을 스스로 선택,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上向式 開發方式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政府事業方式과는 매우 다른 내용의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전국에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65개임을 고려하여 1시군에 1어촌계씩 65개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88년부터 '92년까지 5년간 18,742백만원을 투입하였다.

시범사업의 실시결과, 65개 사업 실시 어촌계중에서 28개가 연평균 15%이상의 높은 所得增加率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어촌의 노인, 부녀, 장년,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협의하게 됨으로써 이 사업은 어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전국의 모든 어촌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漁村綜合開發事業을 본격 추진하였다.

'94년부터는 여러개의 어촌을 묶은 圈域을 선정하고, 이 권역을 중심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94년 7월 農特稅의 신설로 投資財源이 확보됨으로써 '95년부터는 이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21개권역에 52,5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17개권역에 56,0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表 51〉

漁村綜合開發事業 支援實績

(單位 : 個所, 百萬圓)

| | 計 | '88~'92 | '94 | '95 | '96 |
|-----|---------|---------|--------|--------|--------|
| 事業量 | 103 | 65 | 10 | 21 | 17 |
| 事業費 | 139,912 | 18,742 | 13,170 | 52,500 | 56,000 |

資料: 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註: 1. 지원율: '88~'92년: 국고 70%, 지방비 30%

'94~'95년: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2. 사업량중 '88~'92기간은 어촌계수이며, '94이후는 권역수임.

〈表 52〉

'96 市・道別 支援実績

(單位: 圏域, 百萬圓)

| | 計 | 仁川 | 京畿 | 江原 | 忠南 | 全南 | 慶北 | 慶南 | 濟州 |
|-----|--------|-------|-------|-----------|-------|-------------------------|----------|-------------------------|-----------|
| 圏域數 | 17 | 1 | 1 | 2 | 1 | 4 | 2 | 4 | 2 |
| 事業費 | 56,000 | 3,500 | 3,500 | 5,250 | 3,500 | 14,000 | 5,250 | 14,000 | 7,000 |
| 圏域名 | | 백령 | 우정 | 옥계, 속초 | 관당 | 초사, 만호, 득량, 벌교 | 축산 울릉 | 강동, 사천, 거류, 산양 | 한경, 추자 |

資料: 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사업은 선착장·물양장 등 어선계류시설, 해안도로·호안 등 海岸施設, 수산물특산물가공·간이냉동냉장시설·공동작업장 등 수산업관련 육상시설, 취사숙박시설, 활어시설, 낚시터·직판장·유람선 등 어촌부업시설, 종묘생산·종묘매입방류·양식시설 등 수산자원 조성시설이며, 또한 이 사업에서는 어촌의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환경개선을 연계시킴으로써 漁村定住體系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2. 漁業人福祉會館 建立

다른 산업에 비하여 어촌은 지리적 여건과 작업환경이 열악하며 또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어업인들에게 편익 및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89년부터 숙박시설, 목욕탕, 구판장, 예식장 등 종합적 시설을 갖춘 漁業人福祉會館을 건설하기 위하여 地區別 水協과 法人漁村契에게 지원하고 있다.

〈表 53〉 漁業人福祉會館 建立實績 (單位：個所, 百萬원)

| | 計 | '89~'92 | '93 | '94 | '95 | '96 |
|-----|-------|---------|-------|-------|-------|-------|
| 事業量 | 37 | 17 | 4 | 4 | 4 | 8 |
| 事業費 | 9,629 | 4,229 | 1,080 | 1,080 | 1,080 | 2,160 |

資料: 해양수산부 어업인육성과

'96년도에는 동해시·거문도·모슬포 수협 등 8개소에 개소당 2억 7천만원씩 총 2,160백만원을 全額 國庫로 支援하였다.

3. 漁村 觀光開發

국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생활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觀光地, 文化空間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바다·어촌으로 찾는 傾向이 많다.

이러한 도시민의 관광·레저 수요를 관광자원이 풍부한 어촌지역으로 誘致하여 국민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 노동력의 雇傭機會 創出과 所得增大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의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90년부터 漁村觀光開發事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고 사업경영 能力과 자담능력이 있는 漁村契를 대상으로 활어횃집, 숙박시설, 휴게소, 유어선 등

〈表 54〉 漁村觀光開發 推進實績 (單位：個所, 百萬원)

| | 計 | '90~'93 | '94 | '95 | '96 |
|-----|-------|---------|-------|-------|-------|
| 事業量 | 68 | 31 | 14 | 13 | 10 |
| 事業費 | 6,273 | 2,695 | 1,278 | 1,300 | 1,000 |

資料: 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單位事業別로 1억원씩 지원하였으며, 지원율은 국고융자 60%, 지방비 보조 30%, 자담 10%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상환에 금리는 연 5%이다.

第 2 節 漁業人力 育成

1. 漁業人後繼者 育成

우리나라 漁村은 산업화에 따른 어업인구의 減少, 청·장년층의 漁業 從事忌避와 都市進出등 어촌사회의 急激한 변화로 漁村 離脫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할 意慾과 事業推進 能力이 있는 漁村 靑壯年들에게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고 교육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자립기반능력을 확보토록 하므로써 어촌에 정착시켜 어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이다. 어업인후계자는 '81부터 '95까지 총120,575백만원을 지원하여 8,527명을 육성 하였으며, '96년도에는 一般後繼者 783명, 專業漁業人 243명, 先導漁業人 10명 등 총 1,036명을 選定하여 31,67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후계자로 선발되기 전에 漁村指導所로부터 지도와 자문을 받아 사업성이 있고 地域 實定에 맞는 水産品種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事業計劃을 樹立하고 있으며, 후계자로 선정된 후에도 사업 분야별로 漁村指導所와 海洋水産公務員教育院에서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초창기에 비하여 支援資金, 選拔人員, 支援條件 등이 현저히 개선되어 '96년도에는 선정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事業資金 支援額도 營漁規模에 따라 최고 30백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있고 시설 현대화를 위한 事業資金增額이 필요한 어업인후계자에게는 專業漁業人으로 격상하여 50백만원까지 추가 支援하고 있다. 특히 '96년에는 生産技術, 施設規模, 所得面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범어업인을 先導漁業人으로 지정하여 그들의 사업장을 현장 교육장으로 活用하는 등 다른 漁業人後繼者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는 教育場 施設, 事業擴張 등을 위한 事業資金으로 80백만원씩 支援하였다.

사업에 착수한 漁業人後繼者에 대하여는 전국의 27개 漁村指導所에서 전담 어촌지도사를 배치하여 漁業別 技術指導와 營漁指導는 물론 각종 水産關係 情報를 보급하는 등 年中 指導體制를 갖추어 지도하고 있다.

〈表 55〉 漁業人後繼者 育成實績 (單位：名, 百萬元)

| 區 分 | 計 | | '95까지 育成實績 | | '96 | |
|------------------|-------|---------|------------|---------|-------|--------|
| | 人 員 | 金 額 | 人 員 | 金 額 | 人 員 | 金 額 |
| 計 | 9,562 | 152,250 | 8,527 | 120,575 | 1,036 | 31,675 |
| ○ 漁業人後繼者 ('81부터) | 8,762 | 111,925 | 7,979 | 93,200 | 783 | 18,725 |
| ○ 專業漁業人 ('92부터) | 785 | 39,300 | 543 | 27,150 | 243 | 12,150 |
| ○ 先導漁業人 ('95부터) | 15 | 1,025 | 5 | 225 | 10 | 800 |

資料：해양수산부 어업인육성과

2. 水産系高校 支援

漁村人力難 解消 대책의 일환으로 '86년 문교부 주관하에 水産高等學校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업을 합리적으로 自營할 수 있는 어업인후계자 육성과 어촌에 정착하여 지역발전을 先導할 젊은 人力養成을 목적으로 수산계 고등학교 중 4개교(주문진, 대천, 완도, 거제 수산고등

학교)에 自營水産科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自營水産科 학생에게는 入學金과 授業料를 면제해 주고 寄宿舍 食費 일부를 보조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機關別 지원내용은 入學金과 授業料 免除는 교육부에서, 寄宿舍 食費는 해양수산부 50%, 교육부 30%를 각각 補助하고 나머지 20%는 학생이 負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寄宿舍 食費는 '87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96년에는 11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表 56〉 年度別 寄宿舍 食費 補助現況 (單位 : 百萬元)

| 區 分 | '92 | '93 | '94 | '95 | '96 | '96/'95 |
|-----|-----|-----|-----|-----|-----|---------|
| 金 額 | 113 | 113 | 114 | 107 | 113 | 106 %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촌지도과

3. 海技士 養成 및 漁業技術 訓練

韓國漁業技術訓練所에서는 '66년부터 '96년까지 4,159명의 우수한 海技士를 養成 輩出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對外技術 協力事業의 일환으로 開發途上國의 어업분야 연수생을 '68년부터 매년 招請하여 '96년까지 총 89개국 488명을 교육 연수시켜 원양어업의 해외진출과 국위선양은 물론 國際協力 增進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乘務經歷이 없는 일반선원에 대한 新規教育 과정과 선원 海技士 안전교육과정, 기타研修 및 補修教育 과정을 통해 69,680명을 輩出, 선박의 안전운항, 어업 생산성 향상, 선상폭력 및 안전사고 방지에 크

게 寄與하였다.

특히 海技士 안전교육을 전국 沿岸의 현지 巡廻教育으로 실시, 敎育生의 시간 및 경비를 節減케 하여 원거리 어민들의 便益을 도모하였고, 어선이 적기에 출어가 가능하도록 배려함으로써 대어민 봉사자세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表 57〉 韓國漁業技術訓練所 敎育實績

(單位 : 名)

| 過 程 \ 年 度 | '66~'92 | '93 | '94 | '95 | '96 | 계 |
|-----------|---------|-------|-------|-------|-------|--------|
| 計 | 48,380 | 7,376 | 6,158 | 6,213 | 6,084 | 74,227 |
| 海技士養成敎育 | 3,766 | 92 | 44 | 83 | 174 | 4,159 |
| 一般船員養成敎育 | 10,813 | 3,311 | 2,743 | 2,542 | 2,595 | 22,004 |
| 安全및海難防止敎育 | 23,240 | 3,332 | 2,645 | 2,012 | 2,296 | 33,531 |
| 沿岸船職務敎育 | 434 | 623 | 395 | 457 | 140 | 2,049 |
| 遠洋船職務敎育 | - | - | 162 | 640 | 409 | 1,211 |
| 其 他 敎 育 | 9,309 | 6 | 163 | 470 | 445 | 10,785 |
| 外國人研修敎育 | 418 | 12 | 6 | 27 | 25 | 488 |

資料 : 한국어업기술훈련소

第 3 節 漁港施設 擴充

우리나라 全國 연안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관리하는 89개의 1·3種 漁港과 市·道知事가 管理하는 326個의 2種漁港이 漁港法에 따라 指定, 開發되고 있다.

〈表 58〉

全國 漁港 指定 現況

(單位：個港)

| 市·道別 | 指定港數 | 管 理 廳 | | |
|------|------|---------|-----|-------|
| | | 海洋水産部管理 | | 市·道管理 |
| | | 第1種 | 第3種 | 第2種 |
| 計 | 415 | 58 | 31 | 326 |
| 釜 山 | 16 | 2 | - | 14 |
| 仁 川 | 37 | - | 4 | 33 |
| 蔚 山 | 6 | 2 | - | 4 |
| 京 畿 | 7 | - | - | 7 |
| 江 原 | 28 | 12 | - | 16 |
| 忠 南 | 36 | 4 | 1 | 31 |
| 全 北 | 18 | 1 | 4 | 13 |
| 全 南 | 129 | 11 | 14 | 104 |
| 慶 北 | 38 | 12 | 2 | 24 |
| 慶 南 | 80 | 10 | 4 | 66 |
| 濟 州 | 20 | 4 | 2 | 14 |

資料：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1. 1·3種 漁港

’96년까지 總 7,714億원을 投資하여 1·3種漁港 89個港중 56個港의 基本施設을 完成하였으며, ’96년도에는 漁船의 安全碇泊 및 漁獲物 양 육, 선수품 보급을 위한 防波堤, 物揚場 등 漁業基盤施設의 확충에 重點을 두고, 부산 대변항등 36個港의 계속사업과 20個港의 維持·補强등 정비사업에 1,239億원을 투자하여 경북 사동항 등 4個港을 完工하였다.

2. 2種 漁港

市·道知事が 指定하여 개발·관리하는 2種漁港(326個港)은 漁船의 안전수용 및 계류를 위한 防波堤, 物揚場 등의 漁業基盤施設을 확충코자 '96년도에 53個港, 465億원(국비 192億원, 지방교부금 191億원, 지방비 82億원)을 투자하여 5個港을 完工하였다.

〈表 59〉

漁港開發現況

(單位 : 個港, 億원)

| | 總 計 劃 | | '95까지 | | '96 | | 殘 量 | |
|--------|-------|--------|-------|-------|-----|-------|-----|--------|
| | 港數 | 金 額 | 港數 | 金 額 | 港數 | 金 額 | 港數 | 金 額 |
| 計 | 415 | 26,942 | 96 | 8,725 | 9 | 1,704 | 310 | 16,513 |
| 1·3種漁港 | 89 | 13,397 | 52 | 6,475 | 4 | 1,239 | 33 | 5,683 |
| 2種 漁港 | 326 | 13,545 | 44 | 2,250 | 5 | 465 | 277 | 10,830 |

資料 : 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3. 漁港基本計劃 및 整備計劃調査

全國 沿岸에 분포되어 있는 指定漁港을 포함한 港·浦口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漁港開發을 國內外 여건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交通, 觀光, 交通基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漁港을 開發함과 아울러 국가시책, 국토이용계획, 지역개발계획 등과도 연계되도록 漁港綜合開發計劃 수립을 위한 漁港指定·開發에 관한 研究用役을 '96.6부터 '97.12 完了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漁港基本計劃 및 整備計劃調査는 漁港의 기능제고에 중점을 두고, 전남 여수시 도심권에 위치한 沿近海漁業의 종합기지인 國동항을 주변도시의 水産物集配地 역할은 물론 都市민의 생활필수품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부두와 小型漁船

이용을 위한 物揚場 확충, 海岸線 정비등 港勢와 지역특성에 부합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강원도 고성군 소재 아야진항등 2個港에 대하여는 漁港整備 調査를 실시하여 부족시설의 확충, 노후시설의 보강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파랑등으로 인한 연안표사의 이동에 따른 港內埋沒 및 해안침식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강원도 양양군 소재 수산항등 2個港에 대하여 數値模型 實驗을 실시 방지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漁港施設事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평가하고 이에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안목항을 비롯한 2個港에 環境影響評價를 실시, 저감대책을 마련하였다.

第 4 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1. 漁船建造支援

가. 沿岸漁船建造

'77년 연근해어업진흥계획에 따라 '78년부터 老朽漁船代替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88년이후에는 合成樹脂(FRP)漁船 보급시책에 의거 木, 鋼船의 건조지원은 중단하고 8톤미만의 合成樹脂(FRP)어선을 건조지원하고 있으며, 財源은 農漁村構造改善 特別會計에 의한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이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10년상환에 급리는 연 5%이다. '96년도에는 16,390백만원을 투자하여 320척(1,807톤)의 노후어선을 대체건조하여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업경영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近海漁船 建造

'87년부터 老朽漁船을 耐久性이 강하고 維持費가 저렴한 어선으로 대체건조지원하고자 40톤미만은 FRP로 40톤이상은 FRP 또는 강선으로 건조지원하고 있으며,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의한 융자 80%, 자담 20%이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10년상환에 금리는 연 5%이다. '96년도에는 21,766백만원을 투자하여 69척(2,947톤)의 노후어선을 대체건조하여 어선현대화와 어업경영개선을 통한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

2. 漁船機關代替 및 裝備·設備改良支援

가. 漁船機關代替

'77년부터 沿近海漁業振興計劃에 의거 무동력어선의 동력화 및 저효율기관 대체를 위한 "動力改良事業"을 추진하여 補助 및 融資支援을 하여 왔으나, '88년이후 보조지원을 중단하고 融資 財源으로 轉換하여 지원하고 사업명칭도 어선기관대체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의한 융자 80%, 자담 20%이며, 융자조건은 1년거치 4년상환에 金利는 연 5%이다. '96년도에는 5,183백만원을 투자하여 165대(45,875마력)의 저효율 노후기관을 대체하여 海上에서의 漁船員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어업경영개선에 기여하였다.

나. 漁船裝備 및 設備改良

'77년부터 遭難漁船의 원활한 救助를 위하여 無電機 등의 通信, 航海裝備 보급을 추진하여 보조 및 융자지원을하여 왔으나, '83년이후 보조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재원은 農漁村構造改善 特別會計에 의한 융자

80%, 자담 20%이며, 融資條件은 1년거치 4년상환에 금리는 연 5%이다. '96년도에는 5,698백만원을 投資하여 83척(4,305대)을 지원하여 선상 근로환경개선과 선원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등 漁業競爭力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다. 漁船用機資材 生産業體 支援

'89년부터 규모가 영세한 어선용기자재생산업체에 대하여 短期性 運營資金을 용자 지원하여 國産用 機資材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의한 용자 80%, 자담 20%이며, 融資條件은 상환기간 1년에 금리는 연 8%이다. '96년도에는 1,500백만원을 투자하여 6개사를 지원하였다.

라. 漁船用機械 供給

'94년부터 無電機, 레이더등 12개 품목의 漁船用機械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100만원을 보조지원하여 零細漁業人の 조업능률향상과 안전조업을 도모토록 지원하였으며,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의한 보조 30%, 지방비 20%, 용자 30%, 자담 20%이고, 용자조건은 1년거치 4년상환에 금리는 연 5%이다. '96년도에는 5,668백만원을 투자하여 2,098대의 漁船用機械를 지원하였다.

第 4 章 水産物 流通改善과 加工産業 育成

第 1 節 水産物 價格安定

1. 政府 備蓄事業

수산물은 計劃生産이 어려울뿐 아니라 一時多獲性, 季節性등 특수성으로 가격이 불안정하고 需給調節의 어려움도 크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을 이용하여 생산이 많이될 때 產地水協을 통하여 積貯량을 收買하고 盛需期에 소비자에게 放出함으로써 생산어업인에게는 受取價格을 높여주고 소비자에게는 價格안정을 도모해오고 있다.

'96년에는 農安基金 701억원으로 냉동오징어, 김, 냉동조기등 28,700톤 수매를 계획하였으나 갈치, 오징어, 조기등은 생산시기에 價格상승과 규격품생산의 감소로 수매가 부진하였고, 김, 마른미역등은 계획대로 수매하여 총 10개품목 24,413톤을 463억원에 收買備蓄하였다.

〈表 60〉

政府備蓄事業 実績

(單位 : 톤, 百萬圓)

| | 計 劃(A) | | 實 績(B) | | 對 比(B/A) | |
|-----------|--------|--------|--------|--------|----------|-----|
|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 計 | 28,700 | 70,096 | 24,413 | 46,258 | 85 | 66 |
| 김 | 600 | 13,279 | 600 | 12,776 | 100 | 96 |
| 마 른 미 역 | 100 | 917 | 100 | 877 | 100 | 96 |
| 간 미 역 | 3,000 | 4,275 | 3,000 | 3,734 | 100 | 88 |
| 마 른 멸 치 | 300 | 2,649 | - | - | - | - |
| 마 른 오 징 어 | 200 | 2,393 | 122 | 1,368 | 61 | 57 |
| 冷 凍 오 징 어 | 12,000 | 26,910 | 4,042 | 5,953 | 34 | 22 |
| 冷 凍 고 등 어 | 5,000 | 4,938 | 7,422 | 4,944 | 96 | 58 |
| 冷 凍 갈 치 | 1,000 | 3,740 | 171 | 1,263 | 17 | 34 |
| 冷 凍 조 기 | 1,500 | 7,557 | 956 | 9,410 | 64 | 78 |
| 冷 凍 명 태 | 5,000 | 3,438 | 8,000 | 5,933 | 100 | 87 |

資料 : 해양수산부 유통기획과

2. 民間 價格安定 事業

'96년도 民間價格安定事業에는 총1,507억원의 농안기금을 지원하여 오징어, 명태, 조기, 갈치, 김 등 409천톤을 수매함으로써 생산어업인의 수취가격 지지와 소비자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였다.

사업 부문별로는 收買支援事業에 1,426억원을 지원하여 261천톤을 수매토록 하였고 生産者團體 出荷調節 事業에 81억원을 지원하여 8천톤의 수산물을 出荷調節 하였다.

또한 流通構造改善을 위해 산지수협 委販場과 소비지 共販場에 출하촉진을 위한 기금 874억원을 지원하여 776천톤의 물량을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였고 水産物規格出荷促進事業에 167억원을 지원하여 49천톤의 물량을 출하촉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였다.

3. 需給 및 價格管理 強化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조절등 관리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조기,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김, 마른멸치등 주요 대중어종에 대하여는 生産·搬入과 수출입 및 재고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설날등 성수기 盛需品目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1.29~2.17(20일간)의 설날 대책기간에는 조기, 명태, 고등어, 오징어, 김등 5개 품목을, 9.9~9.26(18일간)의 추석대책기간에는 조기, 명태, 오징어, 김등 4개 품목을 11.15~12.20(36일간)의 김장철 대책기간에는 새우젓, 멸치젓, 생굴등 3개 품목을 선정, 공급확대와 출하관리를 하였으며, 연중 物價對策狀況室을 상설 운영하고 재고조사등 출하촉진 및 지도독려를 강화하는 한편 품목별 담당관 지정과 수급상황 일일 점검제 실시 등 물가관리 비상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물가오름세 심리를 억제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였다.

第 2 節 流通構造 改善

1. 流通施設 擴充

수산물의 신속한 揚陸과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水産物流通施設 확충 사업으로 '96년도에 총 사업비 17,270백만원을 투입, 위판장 1,416평, 폐수처리시설 4개소, 水産物直販場 5개소, 活魚 및 冷凍·冷藏車輛 10대, 內陸地共販場('93~'98)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

〈表 61〉

'96 水産物 流通補給施設 支援現況

(單位 : 百萬元)

| | 物 量 | 事 業 費 | | | |
|------------------|--------|--------|-------|-------|-------|
| | | 計 | 國 庫 | 融 資 | 自 擔 |
| 計 | | 17,270 | 4,270 | 7,639 | 5,361 |
| 선어위판장 | 1,160평 | 1,003 | 301 | 401 | 301 |
| 활어위판장 | 265평 | 672 | 201 | 270 | 201 |
| 폐수처리시설 | 4개소 | 800 | 240 | 320 | 240 |
| 활어 및 냉동· 냉장차량 | 10대 | 150 | - | 120 | 30 |
| 수산물직판장 | 5개소 | 14,942 | 388 | 777 | 777 |
| 내륙지공판장 | (1)개소 | 6,703 | 1,340 | 3,351 | 2,012 |
| 종합공판장 | 2개소 | 6,000 | 1,800 | 2,400 | 1,800 |

資料 : 해양수산부 유통기획과

註 : ()내는 계속사업

합 등에 각각 지원하였다.

한편 수산물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直去來와 直販場의 물량공급기
지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외발산동에 '93년부터 '98년까지 6년동안
에 30,826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9,179평, 건평 12,900평 규모의 내
륙지공판장을 시설하고자 '96년도에는 6,703백만원을 투자하여 건설중
에 있으며,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지
로 직출하하여 유통마진을 축소시킬수 있도록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도에 수산물직판장 시설자금 1,942백만원을, 제주, 충남에 종합판
매장 시설자금 6,00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활어 및 냉동·냉장차량 10
대, 150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低溫流通체계가 가능
되도록 하였다.

2. 流通機能 強化

沿近海 水産物 생산량 2,499천톤의 68.5%인 1,712천톤(24,041억원)을 산지수협에 上場賣買하여 어업인 受取價格 제고와 어획물의 신속 분산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산물都賣市場 취급물량은 464천톤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공급량의 10%를 취급하였으며 이중 都賣市場法人이 341천톤으로 74%를 차지하고 수협공판장에서 123천톤을 상장매매하여 26%를 취급하였다.

그리고 산지 및 내륙지공판장의 환경정화와 수산물의 위생관리 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을 공급하도록 하였고 중도매인등 유통중사자와 생산어업인에 대한 계몽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수산물 거래단위의 標準化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산물 30개 품목에 대하여 무게중심의 標準去來單位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소비자가 당해상품의 품질을 알 수 없어 표준거래단위가 정착되지 못하여 수산물 10개품목에 대하여 등급기준과 포장규격 등을 규정한 標準出荷規格을 '94.7.31일 제정하여 유통현실과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수산물 규격출하에 농안기금 167억원을 연간 5%의 저리로 생산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사업자 등에 지원하여 마른멸치등의 22개 품목 29,195톤을 출하하였다.

또한 水産物 輸入自由化 조치로 수산물의 교역이 활발해지자 값싼 수입수산물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수입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94.1.1일부터 활어 및 산호·해면·장어원피 등 비식용 수산물을 제외한 346개 수입수산물, '95.1.1

부터는 활어, 젓갈류등을 제외한 100개 국산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原産地表示制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내산과 수입수산물 식별요령 홍보책자 2,200부를 발간배포 하였으며, 유통종사자 및 판매상인 등을 대상으로 11,784회 지도·단속하여, 4건은 고발, 515건은 과태료, 처분·조치 하였다.

〈表 62〉 水産物 流通施設 (單位：個所)

| 計 | 都賣市場法人 | 水協共販場 | 水協委販場 | 共同魚市場 | 直販場 | 集配센터 |
|-----|--------|-------|-------|-------|-----|------|
| 343 | 18 | 6 | 227 | 1 | 90 | 1 |

資料：해양수산부 유통기획과

〈表 63〉 水産物 標準出荷 規格

| 品目別 | 等級規格 | 包裝規格 | |
|-------|--------|---------------------------------|----------------|
| | | 單位量 | 包裝材 |
| 복어 | 특상, 보통 | 10마리 | 골판지, 비닐 |
| 굴비 | " | 10마리 | 골판지 |
| 마른문어 | " | 10마리 | 골판지, 비닐 |
| 생굴 | " | 200g, 1kg, 3kg, 10kg | 비닐, PE용기, PS상자 |
| 바지락 | " | 3kg, 5kg, 10kg, 20kg | PE그물망 |
| 고막 | " | 3kg, 5kg, 10kg | PP포대 |
| 새우젓 | " | 1kg, 3kg, 5kg, 10kg | 유리용기, PE용기 |
| 멸치젓 | " | 1kg, 3kg, 5kg, 10kg, 20kg | PE용기, 골판지 |
| 냉동오징어 | " | 2kg, 4kg, 8kg | 골판지 |
| 간미역 | " | 200g, 500g, 1kg, 3kg, 5kg, 10kg | PE필름, 골판지 |

資料：해양수산부 유통기획과

〈表 64〉

水産部類 都賣市場 및 水協 共販場 去來實績

(單位 : 톤, 百萬圓)

| | '94 | | '95 | | '96 | |
|---------------------------|-------------------|-------------------|-------------------|-------------------|-------------------|-------------------|
|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 計 (22個所) | 512,555 (100%) | 888,794 (100%) | 471,616 (100%) | 890,715 (100%) | 464,182 (100%) | 873,497 (100%) |
| ○都 賣 市 場 (1 6 個 法 人) | 345,862 (67) | 695,886 (78) | 335,243 (71) | 722,311 (81) | 341,128 (74) | 726,853 (83) |
| 강 동 수 산 | 113,376 | 182,208 | 113,263 | 198,640 | 112,265 | 190,981 |
| 노 량 진 수 산 | 142,353 | 277,578 | 132,491 | 286,644 | 142,397 | 300,140 |
| 광 주 수 산 | 8,719 | 9,030 | 6,437 | 9,447 | 5,988 | 9,622 |
| 대 진 수 산 | 14,270 | 17,500 | 13,144 | 28,014 | 13,212 | 18,068 |
| 청 주 수 산 | 3,873 | 5,308 | 5,308 | 6,886 | 6,455 | 8,459 |
| 충 주 수 산 | 867 | 904 | 1,119 | 1,294 | 1,338 | 2,328 |
| 수 원 수 산 | 7,903 | 9,714 | 5,596 | 10,174 | 6,339 | 11,830 |
| 경 주 수 산 | 2,283 | 4,786 | 2,083 | 5,528 | 2,309 | 5,471 |
| 포 향 수 산 | 4,530 | 9,080 | 4,556 | 9,079 | 4,509 | 9,047 |
| 이 리 수 산 | 729 | 903 | 645 | 831 | 558 | 668 |
| 전 울 주 수 산 | 2,320 | 6,791 | 1,964 | 6,747 | 2,295 | 8,355 |
| 대 산 구 수 산 | 8,859 | 9,315 | 8,083 | 9,945 | 8,037 | 10,000 |
| 서 울 구 수 산 | 1,109 | 5,126 | 913 | 4,212 | 3,329 | 6,650 |
| 울 산 건 해 | 33,547 | 151,042 | 38,604 | 137,979 | 30,881 | 136,810 |
| 한 발 건 해 | 652 | 4,162 | 483 | 3,866 | 596 | 4,823 |
| | 467 | 2,439 | 554 | 3,025 | 620 | 3,601 |
| ○水 協 共 販 場 (6 個 所) | 166,690 (33) | 192,908 (22) | 136,373 (29) | 168,404 (19) | 123,054 (26) | 146,644 (17) |
| 서 가 울 | 54,937 | 41,366 | 50,752 | 41,088 | 32,225 | 38,150 |
| 진 락 | 37,422 | 59,391 | 40,706 | 62,496 | 43,288 | 64,890 |
| 광 주 | 7,813 | 15,178 | 2,704 | 10,236 | 3,237 | 6,727 |
| 대 주 | 15,367 | 23,416 | 1,640 | 8,503 | - | - |
| 수 구 | 28,488 | 16,930 | 26,937 | 14,783 | 33,228 | 16,980 |
| 울 원 | 7,335 | 12,352 | 8,244 | 13,172 | 7,993 | 13,880 |
| 춘 산 | 2,637 | 5,279 | 2,875 | 5,898 | 3,086 | 6,017 |
| 대 천 | 6,673 | 8,562 | 813 | 7,640 | - | - |
| 청 진 | 4,773 | 8,599 | 1,702 | 4,588 | - | - |
| | 1,245 | 1,835 | - | - | - | - |

資料 : 해양수산부 유통기획과

3. 制度改善

연근해 수산물의 산지 거래제도를 '97년까지 自由販賣制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미역, 넙치등 10개품목에 대해 시범실시('94.12.1~'95.2.28)와 '95.3.6 제1단계 자유판매제 대상 31개품목 실시에 이어 제2단계 자유판매 대상으로 31개 품목을 선정하여 '96.8.1일부터 자유 판매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그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海藻類 : 말, 가사리, 기타 해조류

貝類 : 소라고동, 골뱅이, 바지락, 백합, 개량조개, 기타패류

魚類 : 서대, 농어, 망둥어, 양태, 송어, 뱀어, 전어, 청어, 밴댕이, 삼치, 임연수어

甲殼類등 其他 : 대하, 중하, 보리새우, 젓새우, 닭새우, 꽃새우, 기타새우, 꿀뚜기, 기타 연체동물, 미더덕, 기타 수산 동물

이에따라 생산어업인은 수협 위판장과 일반 판매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어획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매가격 제고와 함께 수협의 대어업인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4. 水産物 規格化

수산물의 規格化와 포장을 개선하여 수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위생적인 상품을 공급하고 생산어업인에게는 수취가격을 높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 167억원을 지원하여 29,195톤을 규격출하 하였다.

<表 65>

'96 規格出荷 事業實績

(單位 : 톤, 百萬元)

| | 出 荷 組 合 | 出 荷 目 標 | | 出 荷 實 績 | | 比 率 (%) | |
|-------------|---|---------|--------|---------|--------|---------|------------|
| |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 計 | 30개 조합 | 9,684 | 22,113 | 29,195 | 92,291 | 301 | 417 |
| 새 우 젓 | 강화, 인천, 보령, 신안 | 244 | 552 | 715 | 1,915 | 293 | 347 |
| 멸 치 젓 | 보령, 경주 | 27329 | 296 | 275 | 298 | 101 | 101 |
| 굴 | 웅진, 고흥, 굴수하, 고성 | 2 | 1,518 | 7,716 | 39,506 | 2,642 | 2,60 |
| 바 지 락 | 진도, 고흥, 보성 | 222 | 375 | 626 | 1,009 | 141 | 3 |
| 꽃 게 | 강화, 진도, 군산, 근해통발 | 352 | 1,278 | 430 | 8,279 | 122 | 269 |
| 마 른 미 역 | 진도, 장흥 | 18 | 113 | 16 | 139 | 88 | 648 |
| 마 른 문 어 | 고흥 | 28 | 249 | 54 | 386 | 193 | 123 |
| 마 른 오징 어 | 강릉, 흑산도, 울릉 | 44 | 447 | 41 | 482 | 92 | 155 |
| 마 른 멸 치 | 강화, 완도, 약산, 소안, 진도, 고흥, 여수, 군산, 거제, 삼천포, 권현망, 고성, 경남정치 | 1,211 | 8,869 | 2,754 | 22,201 | 227 | 108 250 |
| 마 른 새 우 | 보령, 군사 | 9 | 143 | 10 | 148 | 111 | 103 |
| 간 미 역 | 완도, 약산, 금일, 소안, 장흥 | 2,858 | 1,861 | 3,080 | 2,146 | 108 | 115 |
| 마 른 실 미 역 | 강진, 완도, 약산, 금일 | 450 | 1,287 | 497 | 1,606 | 110 | 125 |
| 마 른 썰 은 미 역 | 완도, 금일 | 451 | 677 | 469 | 821 | 104 | 121 |
| 고 막 | 고흥, 보성 | 60 | 222 | 426 | 546 | 710 | 246 |
| 조 기 | 강화, 보령, 군산, 안강망 | 49 | 420 | 81 | 593 | 165 | 141 |
| 갈 치 | 강화, 군산 | 22 | 136 | 34 | 179 | 137 | 124 |
| 냉 동 오징 어 | 강릉, 군산 | 70 | 124 | 36 | 65 | 51 | 52 |
| 우 령 썬 이 | 우령썬이 | 2,656 | 3,187 | 11,622 | 11,393 | 438 | 357 |
| 김 | 강화, 강진, 금일 | 7 | 97 | 8 | 96 | 114 | 99 |
| 피 조 개 | 보성 | 21 | 137 | 138 | 330 | 657 | 241 |
| 고 등 어 | 대형선망 | 125 | 125 | 167 | 153 | 134 | 122 |

資料 : 해양수산부 유통기획과

第 3 節 水産物 加工産業 育成

1. 加工製品 生産

'96年度 水産物 加工製品生産은 1,727千톤으로 前年度の 1,691千톤 대비 102%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이 중 沿近海 製品은 '95년대비 19.4%(176천톤) 증가된 1,086千톤이 生産되었고, 遠洋製品은 전년대비 18%(140천톤) 감소된 641천톤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處理形態別로는 高次加工品이 8% 감소하였고 單純加工品은 5% 증가하였다. 單純加工品은 原料魚의 生産동향에 의해 제품에 따라 變動을 보이는 반면, 食生活 패턴의 變化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燃製品의 高次加工品은 소비자의 기호 부응, 맛과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新製品의 개발로 최근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水産製品 生産의 75%를 차지하는 冷凍品은 1,265千톤으로 전년보다 1% 감소하였으며, 그중 原形凍結은 1% 증가된 1,177千톤으로 고등어, 명태, 정어리, 참치, 오징어 등이 주종이고 處理凍結은 22% 감소된 88천톤으로 연육, 명태, 붕장어 등이 주종을 차지하였다.

통조림품은 참치, 꽁치제품 生産 호조로 전년수준 (98%)을 유지하였고 魚肉燃製品은 생선묵, 어육소세지 등의 호조로 전년 수준을 능가한 116천톤이 生産되었다.

한편, 乾製品은 멸치, 굴 제품이 호조로 煮乾品이 전년대비 315.1%가 증가한 40,008톤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오징어, 명태, 조기류 生産이 늘어난 蒸乾品은 전년대비 22.3%가 증가한 42,426톤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鹽乾品도 전년대비 32.7%가 증가한 2,742톤의 실적을 나타내므로써 乾製品은 전년대비 72.3%가 증가한 85,177톤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調味加工品은 조미오징어는 증가하였으나 기타 어종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12천톤의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海

〈表 66〉

水産加工品 生産推移

(單位 : 톤)

|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1,486,181 | 1,714,511 | 1,691,810 | 1,727,497 | 102 % |
| ○ 高次加工品 | 298,697 | 330,316 | 356,966 | 329,166 | 92 |
| - 處理 凍結 | 88,931 | 97,300 | 112,290 | 87,912 | 78 |
| - 통 조 립 | 48,561 | 63,899 | 63,177 | 61,902 | 98 |
| - 寒 天 | 272 | 393 | 403 | 563 | 140 |
| - 煉 製 品 | 99,090 | 108,717 | 107,677 | 115,808 | 108 |
| - 調味加工品 | 10,275 | 12,278 | 14,161 | 12,265 | 87 |
| - 魚 油 粉 | 51,568 | 47,729 | 59,318 | 50,716 | 85 |
| ○ 單純加工品 | 1,187,484 | 1,384,195 | 1,334,844 | 1,398,331 | 105 |
| - 原形凍結 | 1,007,981 | 1,204,182 | 1,163,574 | 1,177,278 | 101 |
| - 乾 製 品 | 50,976 | 40,358 | 49,448 | 85,177 | 172 |
| - 鹽辛藏品 | 12,568 | 10,689 | 16,827 | 21,124 | 126 |
| - 海藻製品 | 108,701 | 117,376 | 94,435 | 88,657 | 94 |
| - 其 他 | 7,258 | 11,590 | 10,560 | 26,095 | 247 |

資料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과

藻製品은 미역, 톳, 가사리류의 생산 감소로 전년대비 94%인 89천톤이 생산되었고, 鹽辛藏品은 멸치, 새우의 생산 증가로 '95년보다 26% 늘어난 21천톤의 실적을 나타냈다.

2. 加工産業 支援

水産物 加工製品의 생산증대와 加工業體의 育成 發展 및 水産物 輸入 開放에 따른 加工業界의 競争力 強化를 위하여 水産物 處理貯藏 加工施設, 漁村所得源 開發을 위한 産地加工施設과 加工業體 運營資金 支援 事業을 推進하였다.

'96년도에는 수산물의 신속한 處理加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해 冷凍 冷蔵공장 신설사업에 12개소 180억원을 지원하였고, 노후가공시설의 改補修를 위한 冷凍 冷蔵 改補修 사업에 2개소 5억원을 지원하였다.

産地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地域特産品으로 加工하여 附加價値를 높이는 산지가공시설에 6개소 46억원, 뱀장어 조미가공, 소포장, 담수어 건강보조식품, 훈제가공 등의 가공사업인 特殊加工施設 1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하였다.

冷凍 冷蔵業, 통조림제조업, 調味加工, 海藻加工, 燃製品加工業 등 수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에 92개소 152억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다가오는 開放化時代에 대비하기 위하여 遠洋 어획물의 加功輸出 등 물류센타 체제를 구축토록 부산 감천항에 水産物綜合加工團地 조성 사업으로 220억원을 지원 하였다.

〈表 67〉

加工業體 支援實績

(單位：百萬圓)

| | '93 | | '94 | | '95 | | '96 | | '96/'95 |
|-----------|-----|--------|-----|--------|-----|--------|-----|--------|---------|
| | 個所 | 金額 | 個所 | 金額 | 個所 | 金額 | 個所 | 金額 | |
| 計 | 103 | 26,128 | 114 | 28,460 | 92 | 35,095 | 163 | 40,344 | 155 % |
| 施設資金 | 19 | 13,480 | 29 | 15,480 | 19 | 21,120 | 21 | 25,120 | 119 |
| -冷凍・冷蔵施設 | 8 | 9,600 | 10 | 11,830 | 9 | 13,500 | 12 | 18,000 | 133 |
| -冷凍・冷蔵改補修 | 5 | 1,000 | 5 | 1,000 | 4 | 1,000 | 2 | 500 | 50 |
| -産地加工施設 | 4 | 2,560 | 4 | 2,560 | 5 | 4,620 | 6 | 4,620 | 100 |
| -其他加工 | 2 | 320 | 10 | 90 | 1 | 2,000 | 1 | 2,000 | 100 |
| 運営資金 | 84 | 12,648 | 85 | 12,980 | 73 | 13,975 | 74 | 15,124 | 109 |
| -冷凍・冷蔵業 | 28 | 4,000 | 36 | 4,221 | 28 | 4,512 | 33 | 5,7010 | 126 |
| -통조림製造業 | 220 | 3,548 | 18 | 3,530 | 12 | 3,625 | 13 | 3,687 | 102 |
| -調味加工業 | 12 | 500 | 2 | 425 | 5 | 525 | 4 | 837 | 159 |
| -海藻加工業 | 8 | 800 | 8 | 754 | 8 | 938 | 8 | 1,000 | 107 |
| -煉製品加工業 | 16 | 3,800 | 16 | 3,850 | 18 | 4,125 | 15 | 3,750 | 91 |
| -其他加工 | - | - | 2 | 200 | 2 | 250 | 1 | 250 | 100 |

資料：해양수산부 수산가공과

3. 水産物 品質認證制度 推進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가 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증표를 표시토록하여 시장에 출하하게 함으로써 수산물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93.4부터 실시하여 온 제도로서 水産傳統食品 품질인증과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로 구분된다.

수산전통식품은 예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우리 고유식품의 계승, 육성을 위해 품목을 지정하고 공장심사 및 품질시험후 그 품질을 인증, 상품에 「물레방아」마크를 부착토록하여 출하하게 하는 제도로서 '96년말 현재 젓갈류, 건포류, 건해조류 등 11개 품목<표 68>이 지정되어 이 중 7개 업체에서 인증 받아 생산·출하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총 776톤이 출하되었다.

<表 68>

水産傳統食品 品質認證 對象品目

| 유 별 | 지 정 품 목 |
|-------------|--------------------|
| 죽 류 (1) | 죽류 |
| 어 육 제 품 (4) | 건포류, 건조갯살, 탕류, 농축액 |
| 해 조 류 (2) | 건해조류, 조미김 |
| 절 임 식 품 (2) | 젓갈류, 조림류 |
| 두 부 류 (1) | 묵류 |
| 기 타 품 류 (1) | 부각류 |

資料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과

수산특산물은 產地特産物을 대상으로 품질심사후 그 품질을 인증, 상품에 「품」자 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서 인증대상품목은 '96년 말 현재 마른오징어, 마른멸치, 굴비, 마른옥돔, 마른한치, 마른꽃새우, 덜마른오징어, 간미역, 간다시마, 김, 등 18개 품목<표 69>으로서 5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생산·출하하고 있으며 '96년도 380톤을 포함하여 '96년말까지 총 1,291톤이 출하되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고 외국산 수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증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로 생산 출하가 증대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表 69> 水産特産物 品質認證 對象品目

| 제 품 별 | 대 상 품 목 |
|----------|--|
| 건 제 품(7) |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멸치, 굴비, 마른옥돔, 마른한치, 마른꽃새우 |
| 염 장 품(2) | 간미역, 간다시마 |
| 조미가공품(2) | 조미취포, 조미개량조개 |
| 해 조 류(7) | 김, 돌김, 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실미역, 마른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

資料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과

第 4 節 水産物 検査

1. 検査制度 改善

輸出 水産物을 검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수산업법, 식품위생법 및 사료관리법에 의한 水産製造業 또는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제도 개선차원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輸出水産物 검사품의 再検査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품별로 최초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토록 개선하여 냉동품이나 통조림품의 재검사 경우는 4개월 또는 6개월씩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므로서 빈번히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輸出用 水産物에 대한 검사표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물검사 표준 변경신청서에 표준변경에 대한 증빙서류(L/C, 요청서등)를 첨부 관할지소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검사표준변경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장(L/C) 및 수요자 요청서를 별도 표준변경신청 없이 검사신청서에 첨부토록 하면, 수요자 규격에 의거 검사하도록 하였고, 남해안 청정해역에서 굴을 양식하고자 하는 자는 양식시설 부설시 지정해역 굴 양식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신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이므로 수산물검사에규에서 지정해역 굴양식 신고제를 삭제하였고, 遠洋 冷凍水産物의 방사능 검사기준중 방사능 측정방법을 식품공전의 기준·규격에 맞도록 방사능 핵종 및 합격기준을 재조정하였다.

輸入水産物을 의화획득용과 자사제품가공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서류

검사로 전환하고 食品回收制(Recall)를 도입하여 검사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기준·규격에 미달하는 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문제가 된 수산물과 국가별, 수출회사별, 제품별 최초로 輸入하는 수산물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 제품에 대하여는 精密檢査를 強化하여 국민보건 向上에 기여하였다.

2. 檢査機能 強化

WTO체제 출범과 SPS협정(衛生 및 植物衛生措置의 適用에 관한 協定)이 발효되어 국가간 교역증가로 인한 수입식품의 安全性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고품질 건강식품에 대한 욕구증대로 水産物에 대한 검사기능강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輸入 水産物 검사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정밀검사 능력향상을 위해 질량 분석기등 25종 85점의 첨단정밀분석장비를 擴充하였고 전문 검사인력 양성을 위하여 잔류농약, 수질 등 8개분야 25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 시켰다.

그리고,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수입검사 및 통관 절차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簡素化, 電算化하여 수산물 검사행정 대민서비스 체제를 구축, 본소 및 지소간의 검사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신속·정확한 수출입 수산물 검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대국민 건강 위생보호에 기여하였다.

第 5 節 水産物 輸出入 對策

1. 輸入開放 對策

우리나라 水産物은 '89년 10월 GATT/BOP 합의에 따라 '96년 현재 총 390개 품목중 359개 품목(92%)이 수입자유화 되었으며, '97.7.1부터는 나머지 31개 품목이 개방되어 전품목의 수입이 자유화 된다.

자유화 품목의 확대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돔, 활농어, 활미꾸라지, 낙지(냉동) 등 20개 품목에 대하여 調整關稅를 부과하였다.

또한, 연근해 생산어민에게 영향이 큰 방어 등 5개 어종과 대게 등 3개 갑각류를 一定體長 이하의 것과 一定期間 수입을 금지하는 輸入要件 確認品目으로 정하고 이를 統合公告에 반영하여 '96. 1. 1부터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水産資源保護令에서 禁止期間과 禁止體長을 정하여 어획을 금지하는 어종에 대하여 수입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게와 꽃게 및 닭새우류는 일정기간 수입을 금지하고 돔, 볼락, 농어, 방어와 붕장어는 어종에 따라 일정체장 이하까지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주요 품목의 수입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關稅·統計統合品目分類를 細分化하여 냉동민어(HSK 0303-79·9095)를 기타어류(0303-79.9099)에서 신규로 재분류하였다.

<表 70>

'96년도 수입자유화 품목의 수입현황

(단위 : 톤, 천\$)

| 품 목 번 호 | '95 | | '96 | | '96/'95(%) | | 수입국 |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계 (19개 품목) | 25,256 | 16,022 | 67,623 | 41,870 | 268 | 261 | |
| 0302 21 0000 넙치(신냉) | | | 1 | 21 | | | 미국 |
| 0302 29 0000 기타넙치류(신냉) | | | | | | | |
| 0302 69 8000 꽂치(신냉) | | | | | | | |
| 0302 69 9030 병어(신냉) | 1 | 3 | 9 | 59 | | | 방글라 데쉬 |
| 0303 32 0000 가자미(냉동) | | | 440 | 276 | | | 러시아 |
| 0303 43 0000 가다랭이(냉동) | | | | | | | |
| 0303 74 0000 고등어(냉동) | 2,510 | 2,650 | 2,689 | 3,547 | 107 | 134 | 노르웨이 |
| 0303 79 1000 명태(냉동) | 22,516 | 12,419 | 60,553 | 31,701 | 269 | 255 | 러시아 |
| 0303 79 5000 붕장어(냉동) | 60 | 103 | 177 | 376 | 295 | 365 | 대만 |
| 0303 79 8000 꽂치(냉동) | 41 | 33 | 2,901 | 4,079 | 7,076 | 12,361 | 일본 |
| 0305 69 3000 갈치(염장염수장) | | | | | | | |
| 0307 49 1010 갑오징어(냉동) | 113 | 503 | 653 | 1,227 | 578 | 244 | 아르헨티나 |
| 0307 91 9030 우렁쟁이(산것, 신냉) | | | 176 | 317 | | | 일본 |
| 1212 20 1020 김(냉장) | | | | | | | |
| 1212 20 1030 김(냉동) | | | 22 | 252 | | | 일본 |
| 1212 20 1090 김(기타) | 8 | 248 | | | | | |
| 1604 15 1000 고등어(통조림) | | | | | | | |
| 1604 19 1010 꽂치(통조림) | | | | | | | |
| 1604 19 9010 취치(취치포) | 7 | 63 | 2 | 15 | 29 | 24 | 중국 |

資料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2. 輸出支援 對策

水産物 輸出은 '88년 1,911백만불까지 증가한 이후 國內 需要增加 및 生産 增加率의 둔화로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94년부터 輸出 促進 노력 강화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96년도에는 생산부진과 O-157대장균 발생으로 인한 일본의 수산물 消費需要 減少로 전년대비 5% 감소한 1,635백만불을 수출하였다.

水産物 輸出增大를 위하여 수출용 活鮮魚貝類, 冷凍水産物, 수산통조림, 海藻類에 대한 輸出收買資金 269억원을 지원하였고, 넙치, 명란, 굴, 등 10개품목의 輸出戰略品目を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輸出推薦 品目を '95년도 30개품목에서 '96연도에는 26개품목으로 축소하는 등의 輸出制度를 개선하였다. 수입국 衛生檢査 강화에 대비하여 對日 輸出 貝類의 衛生管理 強化 등 수출수산물의 食品衛生 基準 국제화 및 잔류 물질 검사 강화 등 수출 수산물의 위생기준을 강화하여 위생과 관련한 교역장애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일 수산물교역실무자회의, 한·일신경제협력기구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통상외교로 지속적인 IQ增額協商과 김수출량 증대를 추진한 결과 '95년 김수출이 재개된 이래 '96년도에는 104천속을 수출하였다.

한편 중국, 일본, 홍콩 등에서 개최되는 주요 國際博覽會에 국내업체를 참가시키는 등 輸出市場 多變化와 輸出市場 開拓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第 5 章 遠洋漁業의 育成

第 1 節 國際漁業 協力 強化

1. 沿岸國과의 漁業協力

우리나라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 러시아 등 13개국으로서, 양국간 어업협정에서 정한 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7개국과 정례 회의를 개최하여 조업수역, 척수, 入漁料 등 입어 조건을 정해 원만한 협정운영과 어장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어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남미의 주요 어장으로 우리나라 어선이 진출해 있는 페루와 '96. 9월, 어업협정을 신규체결키로 합의, 협정안에 假署名하였고 아프리카의 앙골라, 세이셸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한국('96.2), 일본('96.2), 중국('96.5)이 배타적경제수역 (EEZ)선포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및 중국과 각각 3회의 어업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2. 國際 水産機構와의 協力

가. 國際水産機構會議 參與

참치관련회의(ICCAT, IOTC 등), FAO 수산위원회(COFI), 북대서양수산위원회(NAFO) 등 수산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는 물론 자료제출 및 교환 등을 통하여 원양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주요 수산국과의 어업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96.3.27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에 설립과 동시에 가입하였으며, '96.12.12 OECD에 가입함으로써 OECD 수산위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수산기구는 12개로 늘어났으며 '96년도에 우리나라는 상기관련 회의에 20여회 참석하였다.

특히 제1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총회('96.10월 호주, 호바트)에서 우리나라는 영국과 공동시험조업으로 오징어 2,500톤을 확보하였다 또한 남빙양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일명:메로) 總許容漁獲量이 전년보다 1,000톤 증가한 5,000톤으로 결정됨으로써 우리나라 어선은 보다 많은 어획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타어류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1,980톤의 총허용 어획량이 결정됨으로써 신규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18차 NAFO 총회('96.9월,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는 NAFO 수역의 3M 수역에서 적어(redfish) 총허용어획량 26,000톤중 90톤을 확보하였으며 3+4 수역에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150,000톤중 2,000톤을 확보하였다.

나. 公海水產資源管理會議 參與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공해수산자원의 확보와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역수산기구와의 협력을 위하여 高度回游性 어종인 참치관련 회의(ICCAT, IOTC, CCSBT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96.6월 동경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북태평양 수역에서의 참치자원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북태평양 참치과학위원회(잠정)를 설립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2차 남태평양 고위급 어족자원보존관리 회의('97.6월, 마샬공화국)에서 남태평양수역에서의 참치자원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3년내에 연안국과 조업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키로 합의하였다.

'95.8월 UN에서 채택된 "UN 公海魚族保存協定"에 우리나라는 '96.11월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의 비준을 위하여 국내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第 2 節 海外漁場의 持續的 確保 및 競爭力 提高

1. 既存漁場의 確保

가. 참치漁業

우리나라 참치漁業은 '57년 指南 (230톤급)가 인도양에서 試驗操業으로 出漁한 이래 괄목할 만한 發展과 成長을 거듭하여 오늘에는 세계의 참치 主操業國으로 성장하였다.

참치漁業의 主漁場은 延繩漁業의 경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中緯度를 중심으로 키리바시, 佛領島嶼등에서 주로 操業하고 있으며, 旋網漁業은 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아, 마이크로네시아水域 등에서 주로

操業하고 있으나 최근 國際 水産機構의 규제강화등으로 참치漁業의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96년도에는 延繩漁業은 218척이 出漁하여 59천톤을 漁獲하였으며, 旋網漁業은 28척이 出漁하여 149천톤을 漁獲하였다.

나. 오징어 漁業

무한경쟁시대하에서 遠洋漁業의 세계화 및 '97년 오징어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遠洋오징어 어업의 경영안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조업경쟁으로 자생력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허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南西대서양, 페루, 뉴질랜드, 北태평양으로 각각 제한하여 허가하던 것을 대서양, 태평양으로 허가수역을 광역화하므로서 업체가 실정에 맞는 수역을 자율적으로 선택 조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업구역의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그간 허가수역 제한으로 年中操業이 불가하였으나 완화조치로 어장을 이동, 年中操業이 가능케되어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兼業船社와 전업선사간의 과당 경쟁 해소는 물론, '97년 수입자유화를 대비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획량 증가로 국내수산물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 하였다.

다. 트롤漁業

1) 北洋트롤

北洋트롤漁業은 명태, 가자미를 主 對象으로 미국수역, 베링公海, 러시아수역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 操業을 하여왔으나, 미국수역의 쿼타

사업은 '89년에, 공동어로사업은 '91년에 終熄되었고 베링公海道 '92년 8월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제5차 베링公해 관련 국제회의의 결과 '93년부터 2개년간 暫定的으로 操業中斷을 결의하였으며 '94년 6월 署名한 「中部 베링해 명태 資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協約」에 의거 명태資源量이 167만톤이 될때까지 操業을 中斷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오호츠크公海에 대하여도 '93. 11. 15 한·러 어업위원회시 兩國間 합의사항이 圓滿히 履行되는 것을 전제로 오호츠크公海 操業을 自 制기로 함에 따라 '93. 4. 25以後 實施된 操業中斷이 持續되고 있다.

따라서 명태를 主捕獲對象으로 하는 北洋트롤漁業의 操業이 가능한 수역은 러시아경제수역과 일본 북해도주변수역이며, 이중 러시아경제수역은 '91년 「한·러漁業協定」 締結이후 兩國政府間 및 民間間의 긴밀한 협조로 漁業協力事業이 확대발전되어 오고 있으며, 일본 북해도주변수역은 「韓·日兩國 정부간 操業自律規制에 관한 合意」('95.5.17)에 의거 지속적인 操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와 관련하여 향후 조업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2) 태평양트롤

'77년 美·러의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에 따라 동 水域 操業船 一部가 뉴질랜드 水域으로 漁場을 移動, 操業中 '78년 兩國間의 漁業協定 締結로 淸타操業을 하여왔으나 資源의 自國化政策에 따라 外國에 대한 淸타량을 繼續 削減하다가 '92년부터는 政府淸타가 終熄되어 현재는 民間間 個別協力에 의한 入漁를 추진하여 조업중에 있다.

또한 '86년부터 진출한 인도네시아水域등은 최근 연안국들의 資源自國化 政策에 따라 어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既存漁場의 지속적 확보와 병행하여 새로운 어장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3) 大西洋 트롤

'66년 以來 進出하여온 大西洋 트롤漁業은 꾸준히 發展하여 '70년대에는 100여척으로 출어척수가 증가하였으나 中西大西洋의 자원감소에 따라 출어척수가 감소되었다가 '80년대 중에는 南西大西洋을 비롯하여 NAFO水域, 인도네시아등 新漁場으로 進出하여 多少 活氣를 찾았다. 그러나 캐나다 政府가 가자미등 境界往來魚族資源의 보호를 理由로 우리 漁船의 撤收등을 要求하여 '93. 4. 29 동 수역에서 操業하던 3척이 完全 撤收하였다.

'96년에는 우리나라 大西洋 트롤漁船이 기니수역을 중심으로한 西部 아프리카水域과 앙골라水域 및 南西大西洋 公海水域등 어장에 60여척이 出漁하여 조기, 민어, 오징어 등을 主捕獲 대상으로 操業하고 있다.

4) 印度洋트롤

'70년대 中반에 새로운 어장확보 차원에서 進出한 印度洋漁場은 그 동안 關聯國의 規制에도 不拘하고 民間交渉에 의해 지속적으로 操業을 維持하여 왔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內戰등으로 말미암아 安全操業이 保障되지않고 操業 채산성도 낮아 '80년대 以後 우리 遠洋漁船 勢力은 繼續 停滯하고 있으며, 現在는 오만, 파키스탄등에 진출하여 操業中에 있다.

5) 中南美새우트롤

'69년에 수리남 파라마리보를 中心으로 하여 進出한 새우트롤 漁業은 가이아나, 불령가이아나, 브라질등에 進出, 새로운 소득원으로 脚光을 받아 왔으나 '77년 가이아나의 200海里 水域 宣布, '81년 以後 佛領 가이아나의 淸타 削減 및 漁獲量 揚陸 條件附 許可와 '88년 9월 以後

브라질의 外國漁船 入漁規制등으로 同 漁場에서 撤收後, 현재는 수리남 水域에서만 操業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最近 수리남의 資源 減少와 魚價下落등으로 中南美 새우트를 業界는 漁業經營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新漁場 開發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존 입어 沿岸國 및 國際水産機構와의 어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어구어법의 시험과 국제관리 수역에서의 아국 어획쿼타 확보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96년도에는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 협약 수역내의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자원의 지속적인 漁獲쿼타 확보가 가능하였고, 남빙양 협약수역내 오징어어장 개발을 위해 '96.6 오징어 채낚기어선 1척을 투입하여 시험조업을 실시한 결과 오징어자원 서식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1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96.10.21~11.1, 호바트)시 영국과 공동으로 오징어 신규조업을 신청하여 2,500톤의 쿼타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인도양 남위 40°이남 남부참다랑어 어장에 6척의 延繩漁船을 투입하여 톤당 3만\$의 회소가치를 지닌 고급 참치자원을 적극 개발하였다.

'96년도에도 서부아프리카 연안수역에서의 트롤어업에 대한 대체어법으로서 모선식 외출낚시 시험조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신해양질서에 따른 대체어장개발을 위하여 파키스탄국 수역에 대한 원양 중층트롤어법에 의한 試驗操業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신해양질서의 구축에 따른 원양어업의 환경변화 및 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장래에 걸쳐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양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제성 있는 새로운 대체어장의 지속적인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어장 지원 및 어구어법의 상업적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성 자금인 "신어장 개발자금" 10억 원을 마련, 소요자금의 80% 범위내에서 저리융자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海外合作事業

UN海洋法 協約의 발효에 따른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外國漁船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입어대상국의 입어정책에 부응하면서 우리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원양어선의 현지화 전략으로서 해외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1년에 수산부문으로는 최초로 한국수산개발공사가 싱가포르 냉동창고 건설에 최초로 투자한 이래 '96년말 현재 50개업체가 15개국(69건)에 진출해 있으며 주요 合作進出國을 보면 건수로는 알젠틴, 미국, 중국, 칠레의 순이며, 투자금액으로는 미국, 알젠틴, 칠레, 중국의 순이다. 이들 업체가 '96년도에 국내에 수입한 합작수산물은 55,997톤으로 주요 어종별로는 오징어 20,668톤(37%), 홍어 6,012톤(11%), 명태 4,247톤(8%), 조기 2,534톤(5%)의 순이었다.

정부는 해외합작사업을 원양어업의 일환으로서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95.12.6. 관세법을 개정, '96년부터는 관세법시행규칙이 정한 요건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기준에 적합한 합작어획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관세를 면제하는 특성물품삼면세를 적용

하르로서 관세를 전액 감면 받도록하여 원양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4. 海外漁場 研究調査

과학적 근거에 의한 資源管理를 통해 아국어선단의 조업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기득권 선점을 위하여 해외어장의 자원동태 등에 관한 海外漁場 研究調査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95년도에는 국립수산진흥원 소속 부산 851호가 북태평양 및 베링해에서 어업생물 군집조사 및 명태자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서도 교습선 제1,2갈매기호가 海技士課程 훈련생 선상학습 목적으로 북태평양에서 꽂치 및 오징어 자원을 대상으로 봉수망어법 및 채낚기어법으로 실습을 겸한 試驗操業을 한 바 있다.

5. 遠洋業體 經營支援

沿岸國의 어업자원 자국화정책의 深化 및 국제수산기구의 자원관리 강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遠洋漁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어장 및 新漁法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존어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을 강화 하였다.

또한 원양어업의 경영압박 해소와 불황극복을 위하여 遠洋漁船 출어 경비를 지원하는 營漁資金과 海外資源生産支援資金을 '96년에 2,550억원을 공급하였으며, '97년도에도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水産加工品の 개발과 품질향상으로 내수기반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내실있는 기업경영으로 국내·외

적 여건변화에 적응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수산물기구와 연안국의 입어조건 및 조업규제상황을 분석 홍보하므로써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국제어업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해외어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6. 勞使協助와 安全 操業

노사협조를 통한 생산증대를 위해 한국원양어업협회와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간의 船員處遇 改善을 지도하여 고정급과 보장급 및 주부식비 등이 인상되도록 하였으며, 이 중 하급선원의 경우 월평균 최저 고정급을 '95년도 690천원에서 '96년도 730천원으로 6%, 주·부식비는 '95년도 1인 1일 기준 7,000원에서 7,300원으로 4% 인상되었고, 漁撈契約 만기 종료후의 최저 보장급도 847천원에서 900천원으로 6% 상승하므로써 船員에 대한 處遇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지도하였다.

원양어선 海難事故豫防 및 勤勞環境 등 개선을 위해서 부산항 및 해외기지에 정박중인 25개사 175척, 940회의 원양업체 및 원양어선을 방문하여 선박안전관리 실태, 선내거주 위생시설 및 임금지급 실태 등을 점검하여 도출된 問題點 및 改善事項을 해당업체에 통보, 보완 시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船員家族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고, 대학생 1,563명에게 3억1천4백만원의 학자금 보조와 수산청장 및 업계 대표의 격려서 한문을 전달하였고 총 1,868회에 걸쳐 船員과의 對話 機會를 마련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조치 하는 등 노사간 화합을 이루도록하였다.

그리고 빈발하고 있는 선원간 폭행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선원의 채용금지 및 선장과의 대화기회 확대 등으로 선내 화합분위기 조성에 만진

을 기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沿岸國의 피납방지와 각종 사고방지 등 安全 操業을 위하여 國立水産振興院에서의 선장교육, 韓國漁業技術訓練所에서의 안전조업, 해외기지 및 업체 자체교육 등 총 14,689명의 遠洋漁船員에 대하여 연안국 규제동향과 조업중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第 6 章 水産技術의 開發 및 普及

'96년도 수산기술개발은 WTO 체제 출범 및 UN해양法 協約의 발효에 따른 排他的經濟水域(EEZ) 宣布 등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국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산업과 직결되는 실용기술 및 어업인이 어업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현장애로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수산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생명공학,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해양원격탐사 등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수산기술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연구내용은 해역별 특성에 알맞는 양식기술의 개발 및 어업자원 조사연구, 어병 신속진단법과 자원관리형 어업기술의 개발, 적조피해 대책 연구 등 161개의 연구과제를 당초 계획대로 수행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 창설을 계기로 하여 국립수산진흥원에 적조연구부가 신설됨에 따라 매년 발생해역 및 그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적조에 대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부의 해양환경조사연구 업무를 이관받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기능을 일원화하였다.

한편 동·서·남해수산연구소 이전 신축공사 및 태안수산종묘배양장의 신설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해양수산업의 발전과정 및 미래상을

제시한 수산과학관 건립을 완공하고, UN해양법 협약 발효 후의 신해양 질서에 대처하여 해의 신어장 개척 조사활동을 담당할 원양조사선(2,000톤급) 건조사업을 '96~'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착수하였다.

第 1 節 養殖技術開發 研究

1. 尖端技術을 이용한 養殖品種 改良試驗

유전자조작, 염색체공학, 경제형질분석에 따른 雜種強勢 그리고 유전자원 해석과 같은 尖端技術을 이용한 새로운 養殖品種 개발은 미래의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生物工學에 의한 고부가 품질의 개량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유전공학에 의한 형질전환 어류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 성장이 빠른 養殖品種의 개량을 위해 성장에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넙치에 있어서는 高水溫에 강한 高溫耐性 유전자인 Hsp(Heat shock protein) 70을 탐색 분리하였고 또한 성장호르몬 遺傳子도 함께 분리함으로써 速成長 및 高水溫期에 대응하는 강한 品種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내 養殖대상굴의 品種開發을 위한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하는 참굴 5系統과 바윗굴 그리고 강굴을 대상으로 同位酵素 분석을 이용한 유전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통영지역의 후기산 참굴은 近親交配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굴 5系統은 지역 變異種으로 추정되었다. 강굴, 바윗굴 그리고 참굴은 명확한 異種임이 검증되었고, 種間 交雜試驗에서 강굴 암컷과 바윗굴 수컷은 同種의 암·수를 제

외한 다른 種과는 交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이 확인됨으로써 양식굴의 品種改良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人工種苗 생산기술개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라 외국의 養殖生物의 국내 반입과 관련하여 우수한 국내 品種과 토속적인 固有種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 분석을 통한 種保存을 실시하여 '96년 말 현재 魚類 8종(참돔, 감성돔, 돌돔, 넙치, 범가자미, 농어, 능성어, 연어)과 貝類 3종(굴, 전복, 피조개)의 유전학적 자료를 확보하여 遺傳子銀行을 운영관리 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우리나라 전 연안 및 內水面 水産生物을 대상으로 유전자은행을 확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넙치의 성장은 암컷이 수컷에 비하여 월등히 빠르므로 염색체공학을 이용하여 쏘암컷 넙치를 생산하는 양질의 受精卵을 10개소에 562만개를 무상분양하였고, 어미를 만드는 全長 10cm 전후의 전암컷 넙치와, 性이 轉換된 가짜수컷 넙치種苗를 2회에 걸쳐 11개소에 1,500마리를 무상분양하였다.

또한 品種간에 우수한 形質만을 發現시킬 수 있는 품질이 개선된 雜種魚類의 개발노력의 일환으로 넙치의 알과 범가자미의 精子를 인공수정시켜 우수한 形質이 發現된 改良 범가자미를 개발하였으며, 이 種은 成長이나 환경에 강한 形質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養殖種으로 기대된다.

2. 種苗生産試驗

연안 수산자원 조성과 양식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하여 전국 12개 수산종묘배양장에서 有用種苗를 생산, 분양 및 방류하고 있으며, '96년

도의 경우는 魚類가 넙치외 10종에 3,343천마리, 貝類가 전복외 5종에 338,525천마리, 甲殼類가 보리새우외 3종에 34,850천마리, 기타 보라성게 등 3종에 600천마리로 총 377,318천마리를 생산하여 344,527천마리를 전국의 어민에게 분양하였고, 32,771마리를 방류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의 종묘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코끼리조개 등 6종에 대한 기초기술 개발시험이 이루어졌고 쥐노래미 등 8종에 대하여는 신품종 개발시험이 수행되었다. 또한 국내의 고유 유전자 보전을 위하여 어류 8종에 대한 유전적 동정과 계통 보전을 실시하였다.

3. 海産魚類 養殖技術 開發試驗

해역별 특성에 알맞은 해산어류 양식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쥐노래미 배합사료 개발 및 시설방법별 사육시험을 실시하여 쥐노래미 사료의 魚粉代替 단백질원으로 대두박 및 우모분의 이용성을 검토한 결과, 대두박은 20%, 우모분은 10%까지 첨가하여도 대조군과 비교하여 성장에 지장이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신어종으로 송어를 대상으로 해상가두리에서 사육밀도별 성장시험과 사료종류별 성장시험을 실시한 결과 6.6kg/m³ 이하의 수용밀도가 적합하고 배합사료 공급구가 다소 성장이 우수함을 밝혔다. 또한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넙치를 대상으로 해산양식어의 체질개선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천연물질 투여에 의한 성장효과, 근육조직 변화 및 혈액의 화학적 성분변화를 조사한 결과 키토산 첨가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성장이 우수함을 밝혀냈다.

海水循環 濾過시스템을 이용한 양식생물의 사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피볼락과 전복을 대상으로 탈질장치를 갖추지 않은 침지식 순환여과

사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기간 사육시키기 위한 적정 해수 환수량을 조사 시험한 결과, 조피볼락은 1일 25%, 전복은 1일 250% 정도의 환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산양식어류의 배합사료 개발시험은 필수 미량영양소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조피볼락의 인(P)요구량은 0.3~0.4% 이고, 기타 미네랄 첨가는 어분이 40% 함유된 사료에는 P, Mg, Fe, Mn은 별도로 첨가하지 않아도 되나, Ca, Zn, K, Se는 첨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內水面 魚類養殖 技術開發

어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잉어류, 붕어등 담수어종의 치어 425천마리를 생산하여 375천마리는 양식어가에 분양 보급하였으며, 잉어와 붕어 5만마리를 자원 조성용으로 임진강과 북한강에 방류하였다. 내수면양식의 품종개량을 위해 잉어, 이스라엘잉어 選拔育種試驗을 수행하였으며, 비단잉어를 대상으로 염색체 조작에 의한 자성발생 2배체어 생산시험을 실시하였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회유성 어종인 연어의 치어 15,850천마리와 무지개송어 치어 40천마리 산천어 치어 10천마리를 강원도 남대천 등에 방류하였으며, 전라남도 장흥군 탐진강에 은어 수정란 2백만립을 방류하였다.

內水面 養殖品種의 다양화를 위하여 國內産 土着魚種인 동자개를 대상으로 인공종묘생산 및 자 치어기에 적정 사육밀도 및 사료별 순치사육시험을 실시하였고, 자라 사육기술개발을 위하여 새끼자라의 시판 배합 사료별 성장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쏘가리 인공종묘 생산시험과 참깨 양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養成池 밀도별 성장 및 생존을 향상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산 觀賞對象

魚種 飼育技術開發試驗의 일환으로 피라미의 인공종묘생산 자·치어사육시험을 실시하였다. 시마연어의 資源增強을 위해 회귀시마연어의 생태 및 자연산 시마연어의 서식 조사를 실시하여 시마연어의 자원파악과 방류치어의 생활사를 구명하였고, 어병대책을 위하여 개인양식장의 魚病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發生魚病의 신속한 진단에 의한 조기 치료대책을 강구, 지도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그리고 무지개송어에 대하여 바이러스질병 연구 시험도 실시하였다.

한편 연구개발된 기술의 대어업인 보급을 위해 양식어업인,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專門 研究員에 의한 자라, 동자개, 메기, 은어 등의 養殖技術教育을 실시하였으며, 「관상어 양식」, 「동자개양식」에 대한 기술지도지를 발간·배포하였고 관내양식장에 대하여 현지 순회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산계학교의 현장실습으로 잉어류, 연어, 무지개송어 등의 채란 및 부화관리와 어병실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각종 단체의 견학과 외국인 연수 그리고 수시로 양어 문의 상담 및 서신 지도와 아울러 移植동식물에 대한 魚病檢査도 실시하였다.

5. 海産漁 魚病 研究

넙치 치어기에 대량 폐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신속 진단법 및 방역대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원인 바이러스는 birnavirus로 밝혀졌는데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감염 시기별 진단효과 실험결과, 세포배양법, FA, ELISA의 진단방법 중에서 감염초기 단계에서는 FA법이 효과적이었고 중증단계에서는 이 세가지 방법이 모두 유효하였다.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birnavirus를 넙치 치어에 인위적으로 감염시켜 실험한 결

과, 20℃에서는 30일까지 90% 폐사하였으나, 25℃로 상승시켰을 때는 40% 폐사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본 실험에 따라서 빠른 시간내 바이러스 질병을 진단하여 넙치 종묘생산장에 수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주면 넙치의 斃死率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해산양식어의 세균성 질병 원인균인 비브리오균을 체계적으로 동정하고 동 세균에 의한 질병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항혈청을 이용한 신속진단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비브리오균으로 분류한 총 29개 균주는 *V. anguillarum* 외 11종 이었으며, 그 중에서 *V. anguillarum* 6균주, *V. hollisae* 5균주, *V. alginolyticus* 3균주로 이 3개 균종이 약 50%를 차지하였다. 분리된 비브리오의 혈청형 조사에서 *V. anguillarum* YT85805 항혈청에 대한 *V. anguillarum* 6균주는 동일한 혈청형으로 나타났고, 공통 항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간편하고 신속한 진단을 위해 개발한 효소항체염색법은 원인 비브리오균으로부터 3시간만에 발색물질에 의한 병원체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어 현지 양식어업인에 감염병명과 그에 따른 처치법을 신속히 전달 가능하여 양식어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해산 어류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기생충 구제제인 포르말린의 안전 사용 농도를 설정하기 위한 급성독성(LC50) 농도를 조사하고 포르말린의 독성이 어체에 미치는 病態生理學摘的 要因을 조사하여 그 독성효과를 구명하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산약품의 안전 사용농도를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48시간 반수치사농도 182ppm의 0.1배인 18.2ppm이 넙치 치어에 대한 안전 사용농도로 해석되었다. 포르말린은 넙치 혈액에 대해 적혈구막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용혈작용은 없었고 그대신 혈액의 메토헤모글로빈을 증가시키는 고색소성 빈혈 작용을 나타내어 혈액의 산소운반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포

르말린 처리시 적혈구수, 백혈구수, 헤모글로빈량, 헤마토크릿치가 증가하고 총단백의 13항목의 혈청화학 성상 검사에서 알부민의 8 항목의 수치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서 포르말린 처리시 어체생리 기능이 저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는 아가미 조직에 가장 심한 병변을 보였으며 회복도 제일 늦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포르말린으로 넘치가 사망하는 병리학적인 원인은 어체의 혈액생리기능이 장애를 받고 아가미의 산소운반능력이 떨어져서 底酸素 상태에 의한 사망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6. 貝類養殖技術開發 試驗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패류 양식의 안정적 생산과 양식어업인의 소득원을 확보하는 한편 어장 환경 변화 등의 원인으로 계속적인 양식이 어려운 곳에서 생산성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품종으로 변경 또는 移植하여 현재의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패류의 양식 기술 개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굴 양식의 지속적 생산에 관한 연구는 변화된 양식장 환경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와 우량 품종 선발을 위하여 전기산 굴의 鍛鍊試驗과 산지별, 양성 해역별 양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한편 피조개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량 폐사의 요인 분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中間育成成長과 撒布場의 실태 조사, 수하식 및 살포식 양식 시험, 저질 개선 시험 및 저산소 내성 시험 등의 양식 방법 개선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 지역 특산 품종의 개발을 위하여 제주도산 해가리비의 서식 분포 조사, 중간 육성 및 산란, 유생 사육 시험 등을 실시하여 치폐를 2mm 정도까지 성장시켜 인공 종묘 생산기술을 확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

입 자유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양식품종으로의 시험 양식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해만가리비 성패와 치패를 국내 양식장에 이식한 결과 해양 환경에 높은 적응력을 나타냈으며, 생리 생태 조사, 성숙 유도 및 산란 유발, 해역별 양성 시험 및 인공종묘 생산시험 등을 실시하였다.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서해안 바지락에 대한 폐사원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기생충성 질병의 조사 결과 바지락의 결합조직, 아가미, 생식소 등에 *Perkinsus like sp.* 로 분류되는 기생충의 감염율과 감염시기에 대하여 구명하였다.

有用 養殖種의 번식 기능 연구는 피조개의 양식 환경에 따른 생식 기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해만내 칠천도와 잠도에서 chlorophyll a 및 phaeophytin 함량, COD, 영양염류, 수온, 비중, 용존산소를 조사하고 母貝의 건강도 분석, 생식소 주기 조사 및 난과 유생의 지질 함량을 분석하였다. 패류 먹이 개발에 관한 연구는 패류 인공종묘생산을 위한 良質의 먹이생물 생산을 위하여 먹이생물의 장기 보관 방법을 개발하고자 농축먹이 생산기술 확립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세부 항목으로 농축먹이 제조시 원심분리 방법에 따른 수확량과 원심분리 방법별 먹이생물의 生存率, 보관기간에 따른 농축먹이의 생화학적 조성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굴 유생 사육 시험을 실시하여 유생의 생존율과 지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 생먹이보다 농축먹이에서 보다 우수한 먹이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복 수온 내성에 관한 연구는 지역간 참전복의 유전적 특성을 isozyme 분석에 의하여 변이도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固有種과 移植種 간의 유전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별 참전복의 조직별 isozyme 발현 조사, 유전자별 대립유전자 빈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간의 고수온에 대한 내성 정도를 조사하

고 그 내성인자를 밝힘으로써 고수온에 의한 대량폐사 예방 및 고수온에 대한 방어기작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지역별 참전복의 고수온에 대한 耐性 實驗을 실시하였다.

7. 海藻類 및 其他 養殖技術 開發試驗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강원도 동해 중부 이북의 저조선 아래에 서식하는 寒害性 해조류로 群落을 형성하는 특성이 약하여 생산량이 소량에 불과한 지역 특산물인 쇠미역의 양식기술 개발 시험을 실시하였다. 쇠미역의 생태조사에 따른 생활사 구명 및 실내 인공종묘배양에 성공하여 생산 양성 시험을 하였으며, 해상 양성 시험 결과 자연산보다 양식산이 성장, 색채 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경북 석병 지역에 이식하여 시험한 결과 성장이 양호하여 동해안 전역에서 양식 가능성을 확인하여 어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 품종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어촌지도소 및 어민에게 인공 채묘된 종묘를 분양하여 기술을 移轉하였다. 또한 동해안의 주요 양식품종인 우렁쟁이의 폐사 원인을 구명하였다. 폐사 지역은 수온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수층별 수온의 차이도 큰 특징이 있었다. 먹이생물의 양도 폐사지역이 정상지역에 비하여 51~67% 수준이었다. 고수온에서 우렁쟁이가 받는 생리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구명하였다.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유용한 해조류 품종의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고가의 상품성이 높은 해조류인 풀가사리의 생태 조사, 채묘 시험, 종묘배양 시험 및 假移植 試驗을 실시하여 실내 인공 채묘시 포자 방출과 발생 상황, 채묘 자재별 부착상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종묘배양시 수온, 조도 등 배양관리 조건을 파악하였다. 현재 양식되고 있는 김의 안

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국내의 양식장 환경에 적합한 품종의 개량과 종 보존 및 보급을 위하여 자생종 돌김 6품종에 대한 계대 선발 육종 시험을 실시하였고, 국내외산 김 종자 36품종을 보존 배양하여 51명의 양식 어업인에게 유리사상체 429g을 무상분양 공급하였다. 미역의 우량종 선발 육종을 위하여 일본의 삼륙산 및 국내산 돌미역에 대한 계대 양성 시험으로 품종별 어장 적응성, 생산성 및 생리생태학적 제반 기초자료를 축적하였다.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자연산 보리새우의 越冬 및 成熟誘導를 통한 조기 종묘 생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안병절제, HCG (태반성 성선 자극 호르몬) 및 TGE(바닷가재의 흉부 신경절 추출액) 주사를 서로 조합하여 시험구를 설정, 시험한 결과 안병절제 + HCG + TGE에 의한 생식소 발달지수 증가(처리 22일 후 GSI 증가율이 187%)가 가장 높았으며, TGE에 의한 조기 성성숙 유도효과를 확인하였다.

第 2 節 水産工學 및 加工技術開發

1. 水産工學技術開發

우리나라 어업은 매년 가속화되고 있는 인력난과 세계 연안국들의 잇따른 200해리 排他的經濟水域 설정에 따른 新海洋 秩序 구축 등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技術開發도 이러한 문제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업 노동력과 어업경비 최소화를 위한 操業 省力化 연구, 연근해 어업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管理型 漁具漁法 기술개발, 沿岸汚染으로 부터 피해

를 방지할 수 있는 耐波性 양식시설 개발, 沿岸漁場 조성을 위한 인공 어초 연구, 단위 생산량에 대한 어업경비를 최소화시켜 어업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어구의 구조개선과 어법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등을 水産工學 연구의 기본방향으로 '96년도에 실시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操業 省力化 技術開發

1) 浮力 多段階 調節式 浮子 開發

양식생물의 성장에 따른 시설물의 단계적 부력 증가 작업에 과도한 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생력화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으로 된 나사 조립식 시험 부자를 제작하여 시험한 결과, 시험부자의 착탈 부위 유격 및 부착 상태는 양호하였는데, 이 때의 부자의 평균 부력은 8.3 kg, 평균 내압 수심은 12.5 m였다.

2) 定置網 魚群監視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定置網에 어군의 入網 여부와 入網量 등을 미리 알아 입망된 어군을 脫出하기 전에 어획하고, 불필요한 出漁에 따른 경비절감을 위하여 무선원격 어군감시 장치를 개발하여 시험한 결과 어군탐지거나 소나의 화면과 거의 같은 화면을 육상에서 TV 모니터를 통하여 볼 수 있어 定置網에 어군의 入網與否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화면에 나타난 내용과 실제 어획 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입망량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管理型 漁具漁法 技術開發

1) 트롤網의 小型魚類 脫出裝置 開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트롤망은 다이아몬드형 망지로서 예망시 網地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형어류의 탈출이 극히 어려워 자원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트롤망에서 미성어의 탈출률을 높여 資源濫獲을 방지하고, 再加入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소형어류 탈출장치를 제작하여 시험한 결과 탈출장치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파이프가 다소 우수하였으며, 탈출장치의 Bar 간격을 20 mm에서 25 mm로 증가 시킴에 따라 참조기, 전갱이, 눈볼대 등 연근해 유용어류의 탈출률 및 탈출체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鮫鰈網 漁具의 網目 選擇性 研究

연근해 鮫鰈網 漁具의 網目은 마름모형이어서 潮流에 의해 저항을 받을 경우 그물코가 제대로 벌어지지 않아 未成熟魚의 濫獲과 廢棄에 의한 자원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끝자루의 망목 형태를 마름모형과 사각형으로 하여 시험한 결과 사각형 網目이 小型魚 탈출에 효과적이었다.

다. 人工魚礁에 관한 연구

1) 입체적 어초어장 조성을 위한 多目的用 어초 개발 및 基質 다양화 연구

표·중층 어류에 적합한 浮魚礁를 개발하여 현장 적응시험 결과, 시설된 浮魚礁의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부어초 몸체 망지에는 석회조류, 산호류, 해면류 등 다양한 생물이 부착 서식하고 있었으며, 소형 어류 군집도 확인되었다.

인공어초 기질은 요철형 콘크리트판이 우수하였으며, 출현 종수는 바이오세라믹이 피복된 콘크리트 기판과 철판이 9종으로 가장 다양한 부착 생물상을 보였다.

라. 耐波性 養殖施設 開發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風波와 急潮 등 자연재해로부터 양식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천혜적인 내만형 양식 어장이 부족하고, 매년 증대되고 있는 연안 오염으로 인한 적조 발생 증가로 다량의 양식 어류가 폐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재해 예방으로 양식 어업인의 피해 경감과 양식 어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강한 풍파에 의한 시설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高强度 構造의 내파성 어류 가두리시설과 적조 발생 또는 해양오염시 어류 가두리를 수중으로 침하시켜 어류를 보호할 수 있는 내만용 침하식 어류 가두리 시설을 개발하여 현재 내파성 및 침하식 가두리 시설의 實用化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용화시 내만 밀집 양식 어장이 외해로 확대 개발되어 양식장 유효 이용 면적과 생산성이 증대되고, 고품질 양식 어류의 생산이 가능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Sea anchor 改良 및 投揚錨 방법 기계화 연구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채낚기 어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Sea anchor는 投揚錨過程에서 過大 人力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省力化 하기 위하여 Sea anchor와 투양묘기 시작품을 설계 제작하여 시험한 결과 Sea anchor는 본체길이에 따른 전개시 직경 비율이 낮을수록 전개효율이 높았으며, 갈랫줄의 가닥수가 많을수록 안정성은 높아지나 갈랫줄이 영키는 경우가 많았고, 投揚錨機를 사용하므로써 기존의 7명 내외의 인원으로 투양묘작업 하던 것이 50%정도 인력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定置網 망갈이 시스템 개발

순수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定置網 망갈이 작업을 현장에서 揚網과 그물세척을 일련의 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망갈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압식 양망기(Side roller)를 설계 제작하여 시험한 결과 현행 망갈이 작업보다 간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착물 제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후 정치망 어장의 특성에 맞도록 세척기의 형태와 시설물의 배치 방법 등 부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實用性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2. 利用加工技術開發

가. 水産物 加工技術開發試驗

1) 천연조미료 소재개발시험

수산가공 공장의 폐기물과 부산물을 이용한 천연조미료 소재로서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동해안에서 어획되는 붉은대게의 처리가공시 발생하는 2차자숙액 및 內臟자숙액을 중간소재로 게맛살 제조시 첨가하는 게맛 및 향기물질 등 각종 부재료를 첨가하여 농축제품, 소스류 및 분말조미료 등 아미노산 함량 및 향미가 풍부한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2) 貝類加工製品 開發試驗

서해안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는 바지락, 동죽 등의 패류에는 土砂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이들 패류는 대부분 활패로 유통되고 있어 土砂排出試驗과 제품개발 시험을 並行 실시하였다. 패류의 土砂排出을 위한 적정 海水量과 환수량은 바지락과 동죽 1m³에 대하여 해수 6,000~8,000 l의 비율로 처리시 100 l/mim이상의 해수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였고, 이때 패류에 함유되어 있는 土砂는 36시간이후 모두 음성으

로 나타났다. 바지락과 동죽을 토사배출하여 세척후 포장 및 살균처리한 殼附패류와 剝身조미가공품 및 燻煙조미가공 제품을 개발하였다.

3) 김 加工製品 開發試驗

새로운 김가공제품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를 도모하고 김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김팽화스넵과 김캔디제품 개발시험을 실시하였다. 김팽화스넵은 김함량 3~7% 첨가로 팽화방법은 fry한 제품보다 parching한 제품이 선택, 향기, 식감이 우수하였다. 김캔디는 기존의 제조방법을 응용하여 구운김 분말 3% 첨가하여 향미소재로 고유의 김맛을 느낄수 있었으며 김의 구취제거 효능도 기대되는 제품이다. 확립된 제조기술은 민간기업(수덕식품)에서 산업화가 완료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4) 海藻類 利用에 관한 研究

해조류의 기능특성을 이용한 健康機能性 및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개발로 일시 다확성 해조류를 연중 유통 가능한 가공방법을 제시하고, 과잉생산되고 있는 해조류의 가격안정은 물론 高次加工品의 개발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자반과 툇의 유효성분 및 가공적성시험을 실시하였다. 모자반과 툇의 유효성분 및 가공적성시험 결과 藻體의 성분은 대부분이 다당류였으며 무기질, crude fucoidan, 식이섬유 등의 함량이 풍부하였고, 모자반은 연중 유통 가능한 염장모자반 가공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툇은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 잼, 국수 등의 가공제품을 개발하였다. 그 중 툇 요구르트 제조방법에 대하여는 특허를 출원하였다. (출원번호 제 15323호)

나. 魚貝類 衛生에 관한 研究

수산물의 공중보건상의 안전성 확보와 한·미 貝類衛生協定 운영에

다른 수출용 패류생산 指定海域 4개소(20,000ha)와 추가 지정예정 해역 2개소(15,000ha)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연안의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 대한 패류독소(마비성, 기억상실성, 설사성패독) 조사를 실시하여 패류 毒化시 貝類採取禁止 등의 생산관리 자료와 패류수출품에 대한 위생안전보장 근거 자료 등으로 활용하였다.

다. 微生物을 이용한 水産製品의 Shelf-life 延長에 관한 研究

미생물을 이용한 수산제품의 品質壽命 延長을 위하여 수산물로부터 유용 乳酸菌을 분리하여 선발균주를 확보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천연항균성 물질을 이용하여 식품의 저장성 향상 시험을 실시하였다. 해조류 11종에서 총 2,780개 균주를 분리하여 이 중에서 유산균으로 추정되는 41개 균주를 분리하고 대장균 및 *Bacillus.sp*에 대하여 抗菌活性이 있는 9종의 균주에 대한 생화학적 특성시험 및 수산제품의 적용시험을 실시하였다.

第 3 節 漁場環境 및 資源調査

1. 海洋 및 漁場環境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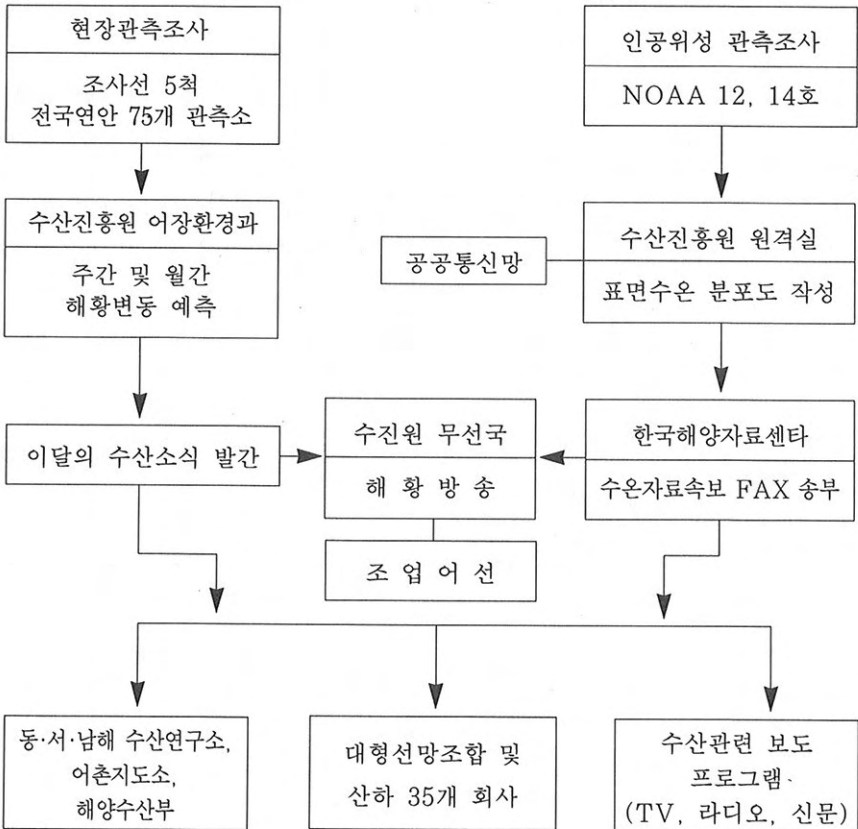
가. 海況變動調査

해양환경조사의 추진배경은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의 일간, 주간, 월간 해황변동을 파악 및 예측하고 어장탐색 및 기르는 어업을 위한 해황정보의 제공으로 어장 탐색 경비의 절감과 급격한 해양환경 변동으로 인한 사전 피해를 예방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어장형성의 해양

학적 요인분석으로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하기 위함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미국의 해양관측 위성인 NOAA 위성으로부터 매일 4~6회 위성 영상자료를 수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즉시 "수온자료속보(243회 발간)"로 현장의 어민들에서 FAX 전송(8,505회)하여 활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동·서·남해의 3개 연구소에서는 3개 해역 175개 정점에서 격월로 실시한 정선해양관측 자료와 연안 75개 관측점에서

〈表 71〉 우리나라 近海 海況變動 調査 및 海況情報 提供 體系圖



측정한 수온 및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주간 및 월간 해황변동을 예측하여 '주간 해황예보' 및 '이달의 수산소식'에 게재·배포하였다. 전반적인 해황정보 제공 체계도는 다음의 표<71>에서 나타내었다. 한편, 한국해양자료센터(KODC)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해양 및 수산정보를 수집, 해외 어장확보에 기여하는 등 어민소득증대와 수산업계의 합리적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環境

연안어장 환경오염 조사를 위하여 전국 주요 연안어장에 설정된 193개 조사점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 용존산소 및 영양염류 등 10개 水質指標成分에 대한 조사를 4회 실시하였고, 마산만 및 진해만해역에서 해수 및 底質 중금속조사 2회, 전국연안의 굴과 홍합에 대한 중금속 오염조사 2회, 주요 어패류 10종에 대한 수산물중 인공방사능조사 1회 그리고 유기주석화합물 조사를 4회 실시하여 연안의 어장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양식생물의 유기대사로 인한 어장의 老化현상과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어장환경의 自家汚染 현상을 구명하고 적정양식을 위한 환경관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동만, 당동만 및 한산거제만에 대한 수질 환경요인조사 8회, 저질환경 요인 조사 4회, 부유생물조사 8회, 沈降物量 및 물질조성조사 4회, 퇴적물 산소소비속도 조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수산자원 보전지역(해면 10개소, 내수면 19개소)에 대하여 일반 수질지표 성분 조사 및 어·패·조류의 생산동향 및 출현종 조사를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다. 赤潮研究

연안해역의 환경악화와 더불어 매년 赤潮의 발생빈도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대규모 有害性 赤潮가 광역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어업피해와 생태계 파괴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적조발생의 事前豫察과 유해성 적조의 생리, 생태 및 독성연구를 실시하여, 유해성 적조발생에 따른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적조발생 현장과 실험실내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9회에 걸쳐 2종의 유해성 적조원인생물에 대한 致死力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油類 및 油處理製와 적조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油類 1종, 油處理製 1종을 이용하여 적조생물 增殖要因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연안 70개정점에 대하여 2~11월까지 매월 1~2회에 걸쳐 적조생물 종조성과 수온, 염분, COD, DO, PH, 영양염류 등 環境要因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해성 적조가 발생되어 확산 및 수산피해의 우려가 있을시는 船舶豫察과 航空監視를 실시하여 赤潮豫報를 發令하고, 적조발생 상황은 자동응답서비스(ARS) 또는 무선전송(FAX)를 이용하여 관련기관 및 수산단체, 어업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였으며, 적조주의보, 적조경보 발령시 어업피해 예방지도를 실시하여 적조에 의한 수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적조관련 연구결과는 赤潮發生 防止 및 防除對策 수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제공되었다.

2. 漁業資源調査

가. 沿近海 漁業資源調査

沿近海 漁業資源의 持續的 生産과 科學的 管理를 위하여 주요 어업자원에 대한 어획량변동 및 생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資源特性値의 변동과 주 어획대상자원의 자원상태를 분석하였다. 어획량 변동조사는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의 근해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資源密度指數와 資源分布域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생물학적조사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부세, 멸치, 오징어 등 6개 어종의 부어류와 갈치, 참조기, 말쥐치 등 3개 주요 어종의 저어류에 대하여 어체측정과 체장조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再生産力의 변동과 年級群 분석을 통하여 資源水準을 評價하였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자원 조사의 일환으로 동중국해 주요 漁業資源의 신속한 資源量 推定 및 어군 分布狀態를 연구하기 위하여 漁場群集 生態調査를 실시하였으며, 음향적분에 의한 어군 分布密度, 分布形態, 크기, 공간분포 등 어군의 분포 특성과 주요 어종에 대한 資源量推定을 실시하였다.

沿近海漁業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漁業能率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형선망어업 등 연근해 주요 12개 어업에 대한 시기별 어장형성과 漁況 概況 및 展望을 분석하여 월간 漁況豫測을 실시하였으며, 동·서·남해안에서는 지역별로 주요어업에 대하여 주간 漁況概況 및 전망을 매주 분석하여 對漁業人 漁況情報資料로 활용하였다. 특히, 동해에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오징어 성어기인 8월에 울릉도~대화퇴~독도간 해역에 걸쳐 오징어 漁況調査를 실시하였으며, 오징어의 漁場形成

特徵과 성어기 漁況展望을 분석하여 현지조업선과 유관기관, 수산단체 등에 漁況情報자료로 제공하였고, 저층트롤 어획시험을 통한 동해안 저어자원의 분포와 출현종 조사, 서식환경 조사 및 주요종의 分布特性 調査도 실시하였다.

沿岸資源에 대하여는 동해에서는 기름가자미, 명태, 도루묵, 오징어 등 4개 어종의 생물학적 특성조사와 정치망 어획물에 의한 연안자원의 출현종 조사를 실시하였고, 서해에서는 낭장망 어획물과 꽃게, 멸치, 가무락에 대하여 남해에서는 낭장망 어획물과 전어, 멸치, 학꽂치, 자리돔 및 소라에 대하여 生物學的 特性調査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어업자원에 대한 資源特性值 구명을 위하여 서해안의 새우류, 남해안의 아귀, 옥돔 등에 대하여 어획량 변동조사, 生物學的 特性 및 分布 密度 調査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안어업의 자원조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해에서는 은어, 보라성게, 북쪽말뚝성게, 서해에서는 대하, 조피볼락, 남해에서는 넙치, 감성돔에 대해서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遠洋 漁業資源調査

원양어업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국제적 관리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6개 주요어업(다랭이연승 및 선망, 트롤, 새우트롤, 오징어채낚기, 꽂치붕수망)의 대상자원에 대한 어업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자원 풍도 및 분포상태 등 資源 動態를 파악하였고, 11개 주요어종(황다랑어, 눈다랑어,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명태, 꽂치, 빨강오징어, 웰링턴오징어, 아르헨트나 짧은지느러미오징어, 골드오징어, 아메리카대왕오징어)의 어획물 크기조성, 성숙상태, 연령조사 등 生態學的 調査를 실시하였다. 원양 출어선으로부터 수집한 조업동태보고서와 실험실내에서의 어체 정

밀측정 자료, 기타 해외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遠洋漁業 資源의 動態 및 生態 파악과 자원평가를 실시하였고 분석된 결과는 원양어업의 수산정책자료 및 어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공되었으며 국제수산기구 및 雙務會談, 베링공해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회의,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 '96년 한·러 수산과학기술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권익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1996년에는 16회에 걸친 국제회의 및 국제공동자원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에 참석, 남극수역 오징어 쿼타를 할당받아 '97년부터 상업선에 의한 어획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베링공해의 명태 조업 재개를 위한 명태자원 조사에 적극 동참하여 조업 재개시 우리나라에 유리한 입장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주요 원양어업 자원의 유전적 기법에 의한 單位系統群 및 種 確認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種別 資源管理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오징어 일륜사정에 의한 자원평가 방법을 연구중에 있다.

第 4 節 水産經濟 研究

1. 海洋汚染이 漁家經濟에 미치는 影響

陸上基因 水質汚染으로 인한 漁業被害를 조사하기 위하여 경남 고성군의 진해만과 고성·자란만의 굴양식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첫째 최근 3년간의 COD가 고성진해만은 2.5인 반면 고성·자란만은 1.7로서 고성진해만의 水質汚染이 심화되어 있었고, 둘째 단위면적·시설대수·垂下연수·패각수당 굴생산성은 고성진해만이 고성·자란만에

비하여 21~36%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셋째 고성진해만의 굴양식어가의 손실액을 추정 한 결과 연간 18억여원이었다. 이러한 양식어업 손실원인은 自家汚染, 密植, 漁場管理 不實 및 海域特性 등에 의한 것도 있으나 陸上基因 水質汚染으로 인한 것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海上活動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대표적 사례는 船舶海上事故로 인한 油類流出이 가장 큰 원인인데 '80년대와 '90년대를 비교해 보면, 발생 건수별로는 1.78배의 증가에 그쳤으나, 기름 유출량은 7.65배로 증가하여 대형화 추세를 나타내었고, 유류유출로 인한 漁業被害 補償要求額은 17.64배로 크게 증가한 반면 被害補償額은 2.46배에 그쳐 아직도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해양오염의 심화로 인한 漁業被害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海上油類事故의 경우는 被害補償 및 海洋生態系調査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海域別 및 灣別로 이에 대한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해양오염사고시 海洋還境保全基金을 부과할 수 있는 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는 陸上活動基因 海洋汚染의 경우 ① 海洋汚染源 防止施設의 신설 및 확대시설을 정책 最優先順位로 정하여야 하고, ② 水質汚染者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③ 陸上和 海洋水質을 연계한 조사연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고, ④ 漁業被害補償 및 海洋還境保全基金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自家汚染의 경우는 자가오염이 심화된 養殖漁場 水域을 가칭 特別養殖漁場管理水域으로 지정하여 海軍의 장비 등을 동원하여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어장정소를 실시하고, 養殖漁業의 免許制度를 灣別 또는 海域別로 環境扶養能力을 기초로 總量規制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埋立干拓이 水産業에 미치는 影響 研究

自然環境의 보전없이 인간의 삶의 質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自然環境의 파괴는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매립간척이 漁業環境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社會經濟的 影響도 매립간척의 영향평가시에 조사·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社會經濟的 影響을 평가할 때의 評價要因으로 매립간척이 公共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社會的·政治的 價値觀 및 態度에 미치는 영향, 考古學과 文化遺産에 미치는 영향, 審美에 미치는 영향, 人間環境과 人間生態에 미치는 영향, 大氣環境에 미치는 영향과 地形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적하였다.

沿岸國의 排他的經濟水域의 선포가 확대됨에 따라 沿岸漁場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95년 출범한 WTO 산하에 貿易環境委員會를 설치함으로써 環境과 貿易을 연계시키는 多者間 協商 일명 環境라운드의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國土政策分野에서도 환경라운드에 대응하는 政策方案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매립간척에 대한 國際的·經濟的 環境變化가 발생함에 따라 매립간척 계획수립시 綜合的 環境評價가 더욱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3. 우리 나라 水産物 流通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現代社會에 있어서 경제활동은 生産, 流通 및 消費의 3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은 이러한 과정의 조화와 균형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水産部門의 균형된 발전도 生産 및 消費뿐만 아니라 水産物 流通의 近代化속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水産物 流通의 近代化를 위해서는 정확한 水産物 流通實態 진단과 수산업 환경변화

에 대응한 水産物流通시스템의 環境適應戰略 제시를 통해 수산물유통의 效率性 提高와 균형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水産物 流通環境 變化要因 分析 및 綜合的 對應戰略 제시 등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수산물 소비패턴을 調査·檢討하였는데 食品消費패턴 변화추세, 단백질소비패턴 변화추세, 水産物 이용동향, 水産加工品 生産量 변화추이, 주요 魚種別 가격탄력성 분석, 주요 어종별 소득탄력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따른 수산물 유통체계의 변화요인을 검토하였는데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業態의 출현으로 인한 수산물 유통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輸入水産物의 급증으로 인한 수산물유통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산물 輸入增加率 및 輸入價格增加率을 분석하였다.

한편 魚族資源保護 등 生態, 環境, 衛生에 대한 소비자 관심고조 및 무역장벽화에 따른 그린마케팅 전개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과 수산물 판매제도의 전환에 따른 수산물유통의 변화분석을 위해 지역별 需給量資料와 流通費用資料를 검토하였다.

4. 水産經濟情報시스템의 運營

水産經濟情報의 전산화를 통하여 水産政策 및 水産研究開發에 유용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금년도에는 漁業從事者 및 漁船勢力 등 水産經濟一般 통계자료와 漁業別·魚種別·地方別 및 月別 수산물 生産量 등 水産生産 통계자료 13년분을 전산입력하였다.

한편 漁船勢力 및 수산생산 통계의 漁業名稱이 과거와 현재가 달라 이를 1992년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의 이용을 위한 검색프로그램을 각 항목별로 검증하고 수정하였다. 따라서 1974년부터 1994년까지의 漁家經濟一般 및 水産生産 통계자료는 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색 및 분석이 일부 가능하게 되었다.

第 5 節 水産技術 指導·普及

1. 技術指導 및 弘報

가. 水産技術指導 普及

전국 1,68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7개 지도소에 배치된 269명의 어촌지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관리에 대한 양식 어업인들의 새로운 의식계도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高所得 戰略品種과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의 안정생산을 목적으로 어촌지도소에 作況豫報와 어병진료센타를 설치하여 어장관리요령과 병충해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생산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가리비·굴·가무락·돌미역·김 냉동망등 5개 품종을 대상으로 試驗·敎習漁場 5개소를 운영하여 새로운 採苗漁場開發과 地域 特化品種 發掘 및 과학적인 양식기술보급 확산에 주력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주요 양식단지를 중심으로 技術指導船 또는 試驗調查船을 이용하여 어촌지도공무원이 직접 水溫, 比重 등의 어장환경 및 품종별 작황 조사를 비롯하여 어장시설 및 관리실태를 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과학적인 어장관리와 幼生調査를 통한 採苗適期豫報등 기술지도

로 우량종묘 생산과 원활한 종묘 수급에 기여하였으며, 각종 재해로부터 반복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赤潮 主發生時期인 5~10월사이 赤潮가 常習의으로 일어나는 곳과 우려되는 89개 지역에 대하여 定期豫察, 隋時豫察, 漁業人 委託豫察을 실시하여 적조발견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태풍·폭풍·유류피해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40개 災害豫防督勵班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증양식 시설물 안전관리 및 출어선 안전대피지도 등으로 수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새로운 수산기술에 관한 시험·연구결과 및 營漁活動에 필요한 각종 수산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연1,230회 실시하는 한편, 어업인 양식기술 보편화를 위하여 보리새우 종묘생산 2,500부와 비단가리비양식 2,500부등『水産技術誌』2종을 발간배부하였다. 그리고 어업활동과 어장관리를 위하여 『이달의 水産소식』 24,000부와 『週間 海況情報』 57,000부를 발간 배부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어업활동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어촌소식지 46,000부와 수시로 변하는 어장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어장관리 지도속보 31,000부를 배부하는 등 정기간행물 약 163,000부를 발간 배부하였다.

나. 漁業人 教育 및 漁業人後繼者 指導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어업환경은 대내적으로 연근해 어업자원이 감소하고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장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수입개방으로 외국인 수산물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우리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화품종을 개발하고 수산물생산, 유통가공 등 어업인과 어업인후계자에게 새로운 어업기술과 소득원을 개발 보급하여 어촌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전문지도반을 편성, 1,685개소 전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을 대상으로 품종별 채묘 및 양성관리와 어병대책에 대한 어촌순회교육을 연 28,0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1,000명에 달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 단위로 주요 양식 품종의 당면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漁業人, 業界, 學界, 有關機關 등 518명이 참석하는 養殖漁業研鑽會를 개최하였으며, 어촌 청소년에게 미래의 수산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漁村 地域 學生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산교실을 44회 (5,000여명) 운영하였다.

한편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청소년을 정예인력으로 길러내고자 '81~'96년까지 선발된 8,762명의 어업인후계자에게 專擔 指導士 233명을 지정 배치하여 사업장 순회 연 49천회를 실시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전담케 하였으며, 또한 후계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수산기술지 등 각종 간행물 72천부를 배부하여 科學營漁 活動에 전력하도록 하였다.

2. 漁村指導 機能強化

어촌지도 업무의 활성화를 꾀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업인 기술지도 수요에 대처하고자 연차적으로 지도소 청사 신·증축 계획에 의거 금년에도 완도어촌지도소 신축과 영광지도소를 증축하였고, 지도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노후화된 지도차량 6대와 漁村技術指導船 2척 (FRP10톤급)을 확보하여 전국의 주요 어촌지도소에 배치함으로써 어촌지도활동의 기동력을 향상시켰으며, 지도장비 52종(328점)을 구입하

여 지도활동에 필요한 기기 확보 등 기반조성에 노력하였다.

어촌지도공무원의 지도능력 향상을 위하여 새롭게 연구개발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한층 심도있는 기술을 어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산진흥원 본원 및 수산연구소, 종묘배양장 등에서 총 60명의 지도사가 專門技術教育을 履修하였고, 직무교육(31명), 전산교육(2명), 외국어교육(2명), 어촌지도 사례발표(20명), 선진지 견학(171명), 해외연수(2명)를 실시하여 어촌지도공무원의 정예화와 수산 기술 정보수집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영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지도력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급 인사 212명을 自願 漁村指導者로 委囑, 어촌지도 사업에 자진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도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適正品種 開發 普及, 어업인교육시 營漁事例發表, 水産施策 對漁業人 弘報, 資源造成 事業 등에 협력토록하여 정부시책에 대한 대 어업인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대어업인 지도활동과 관련 指導士別 擔當區域 현황과 增·養殖場 管理 및 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어촌지도 업무편람(500부)을 발간하여 금 후 지도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양식기술의 적기지원을 도모하고자 전국 어촌계 현황카드를 작성 비치하는 한편 어촌지도사례집(250부), 양식어장관리(500부), 어가경영일지(300부), 적조피해경감 사례 및 지도요령(700부)을 발간 배부하였다. 어촌지도 사업의 성과 극 대화를 도모하고자 지도소 단위는 주간업무평가를, 수산연구소 단위는 월간업무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연 2회에 걸쳐 본원 단위의 중간 및 최종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6개 지도사업과제 전반에 대한 추진결과를 평가분석 정리하고 이를 사업보고서로 발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어촌지도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第 6 節 水産特定研究開發事業

水産特定研究開發事業은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거 農漁村開發 綜合對策의 일환으로 '90년부터 國·公立 研究機關, 學界, 産業界 등이 공동참여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96년도에는 "동해안 가리비산업의 지속적 발전방향" 등 총 13개 과제 (新規사업 5건, 繼續사업 8건)를 選定 85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90년부터 '96년도까지 7개년동안 水産特定研究開發事業 課題로 총 55건을 선정 3,974백만원의 研究費를 지원하였다.

그동안 特定研究開發事業으로 연구개발된 기술에 대하여는 水産施策事業 반영, 漁業現場 및 産業體 普及, 2단계 技術開發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研究 結果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하고 있다.

研究課題 選定은 研究機關, 學界 등으로 부터 公募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水産特定研究開發事業 審議專門委員會 및 中央水産産·學協同審議會에서 研究課題에 대한 실용화 가능성, 기술의 첨단화, 기대되는 技

〈表 72〉

水産特定研究開發事業 推進實績

(單位 : 件, 百萬圓)

| 區分 | '92 | '93 | '94 | '95 | '96 | '96/'95 |
|-----|-----|-----|-----|-----|-----|---------|
| 課題數 | 7 | 7 | 8 | 13 | 13 | 100% |
| 事業費 | 500 | 600 | 720 | 800 | 854 | 107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촌지도과

術的·經濟的·社會的 效果 등을 검토하여 엄정한 審議를 거쳐 선정되고 있다.

第 7 節 水産技術訓練

1. 公務員 教育

21세기 신해양경쟁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수산인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민주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봉사적 공직자 양성을 위한 정신·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및 전산교육과정의 내실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海洋水産專門人을 養成하고자 직급별 기본교육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교육은 교육과정을 승진단계별로 편성하여 管理者班 1회 23명, 實務者班 3회 113명 등 4회 136명에 대하여 해당 직급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96년 처음으로 기본교육과정에 『사회봉사활동』 교과목을 채택하였고, 정신교과목을 30% 이상 배정하므로써 공직윤리관 확립과 도덕성 회복에 힘썼다.

전문교육은 급변하는 해양수산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성격에 따라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총 16회 544명을 교육하였는데,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직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재무회계반 1회 39명, HACCP반 1회 33명, 수산연구실무반 1회 47명, 어병지도실무반 1회 25명, 어업지도·시험선승무원반 2회 100명, 해면양식반 1회 33명, 해양환경관리실무반 1회 39명, 보상행정실무반 1회 44명, 어

항건설실무반 1회 38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일선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위해 해면양식반은 남해수산종묘배양장 현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상행정실무반, 어항건설실무반, 어업지도·시험선승무원반, HACCP반은 문제해결능력 배양이 가능토록 현지학습시간을 1일씩 배정·운영하였으며 漁病指導實務班은 實驗·實習爲主의 교육을 함으로서 실무에 바로 적용가능한 산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업의 세계화·정보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시된 외국어 및 전산교육은 5개반 122명을 교육하였는데 수산일본어중급반 1회 16명, 관리자전산교육반 1회 17명, 아래아한글반 2회 60명, 한글엑셀반 1회 2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바다환경보전을 위한 수산인의 역할』이라는 주제하에 4·5급 공무원과 유관단체 임원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개발반은 해양수산정책 개발과 대외홍보 및 이미지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교육생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의 장을 마련하였다.

2. 漁業人 敎育

새로운 어업환경 변화에 걸맞는 어업인력 양성과 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안 해결 위주의 교육을 어업인교육과정과 어업인후계자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총37회 1,472명을 교육하였다.

어업인교육은 赤潮對策班 3회 86명, 서해안수하식굴양식반 1회 50명, 굴양식경영반 1회 38명, 가리비양식반 2회 68명, 관상어양식반 1회 47명에 대해 일선어촌의 현안과 고소득 유망품종의 기술교육을 중점 실시하여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업인의 현안 대처능력을 제고하였고 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청정한 해양환경 보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업경영지도자반 2회 64명, 해양오염방지관리반 5회 334명을 교육하였으

며, 특히 인근 어업인 28명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조성에 기여하였다.

어업인후계자 교육은 '96년도에 선정된 전업어업인을 대상으로 전업어가반 총 5회 240명과 어업인후계자 대상의 營漁專門技術教育班 총 15회 493명의 교육을 실시하여 어촌정착의욕을 고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어촌후계인력 육성에 주력하였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출범과 국내외 해양수산업의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수산시책반 5회 311명, 수산계고교교사시책반 1회 31명, 수산발전토론회 1회 99명, 연찬회 4회 30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산제조·양식기사 2회 145명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자補修教育을 실시하여 자격취득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表 73〉 海洋水産公務員教育院 教育訓練 實績

(單位 : 名)

| | '92 | '93 | '94 | '95 | '96 | '96/'95 |
|-------|-------|-------|-------|-------|-------|---------|
| 計 | 2,812 | 2,717 | 2,715 | 2,926 | 3,147 | 107% |
| 公務員教育 | 949 | 746 | 1,092 | 882 | 680 | 77 |
| 漁業人教育 | 1,502 | 1,452 | 1,167 | 1,427 | 1,427 | 103 |
| 特別教育 | 361 | 519 | 456 | 617 | 995 | 161 |

資料 :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第 7 章 支援體制 整備와 制度 改善

第 1 節 行政規制 改革

정부에서는 WTO출범과 OECD 가입 등 국제환경변화에 대비하고 부정비리의 근원적 차단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 등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동안 水産行政制度·施策·慣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어업활동질서를 유지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수산관련 행정규제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96. 12월말 현재 총 139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133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經濟行政規制緩和 및 行政刷新課題의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수산동식물 보호·채취금지기간 및 보호금지체장 완화

'93. 6. 19. 자로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붕장어, 소라, 보라성

〈表 74〉

規制改革 課題發掘 및 推進狀況
('93~'96. 12월말 현재)

(單位 : 件)

| | 計 | 完 了 | 推 進 中 |
|-----------|-----|-----|-------|
| 計 | 139 | 133 | 6 |
| 行 政 刷 新 | 71 | 68 | 3 |
| 經濟行政規制 緩和 | 39 | 37 | 2 |
| 行政 制度 改善 | 24 | 23 | 1 |
| 漁業人 不便 解消 | 5 | 5 | - |

資料 : 해양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실

계, 오분자기에 대한 보호·채취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93. 10. 20일부터 시행

○ 內水面 種苗採捕漁業許可 對象者 擴大

내수면 종묘채포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종전에는 양식 어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정되었으나 '93. 12. 31 내수면어업개발촉진 법시행령을 개정, 양식어업 신고자 또는 양식어업자에게 종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포하는 자도 그 대상으로하여 허가범위 확대

○ 漁港區域內 活魚保管用 가두리 設置 許容

'93. 4. 29.자로 어선의 출입항 및 정박에 이용되는 "어항구역"내에서도 수협이나 어촌계의 활어위탁관리사업에 한하여 가두리 설치를 허용토록 개선

○ 水産物運搬船에 대한 運送貨物 制限 緩和

'93. 7. 1자로 수산물운반선외항운송사업면허처분요령을 개정하여 수산물 운반선 운송대상화물에 농축산물도 추가

○ 漁獲物 轉積許可制度 改善

’93. 6. 19자로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원양어획물 전적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여 ’93. 10. 20일부터 시행

○ 漁船建造・改造發注許可事項 “變更許可” 免除

’93. 6. 11자로 어선법을 개정하여 기관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허가 생략토록 개선

○ 漁船登錄時 身元調査 廢止

’93. 11. 9자로 어선등록사무취급요령을 개정 종전 어선신규등록시와 소유자 변경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던 것을 폐지

○ 漁船의 新・舊톤수 一元化

’93. 6. 11자로 어선법을 개정, 종전에는 톤수변경을 가져오는 개조수리 등에 한하여 구톤수를 신통수로 변경 측정할 수 있으나 어선 소유자의 신청만 있으면 신통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漁港基本調査時 住民意見 收斂

’93. 6. 11자로 어항법을 개정하여 어항기본조사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 ’93. 12. 11부터 시행

○ 漁船法 違反行爲者에 대한 罰則制度 改善

’93. 6. 11자로 어선법을 개정, 종전에는 경미한 어선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사법처리하던 것을 행정벌(과태료)로 개선하여 어민의 권익보호 도모

○ 沿近海漁船 機關馬力 規制 緩和

’94. 5. 14자로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기선권현항어업 등에 대하여 마력제한하고 있던 것을 이들 어선에 대한 기관마력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어민 편익 도모

○ 漁獲物運搬許可 對象漁船 範圍 擴大

’94. 5. 14자로 어획물운반입허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근해안장망 등 7개 업종에서 중형기선저인망, 해선망, 활어상태의 장어 운반선을 포함하여 9개 업종으로 확대

○ 漁獲物 販賣場所 指定制度 改善

연근해 어획물과 그 제품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에서만 판매토록 하는 강제상장제를 임의상장제로 전환하되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97년까지 추진토록 개선

※ 1단계('95년도) 대상품목 : 김, 미역, 대구 등 31개 품목

○ 兼業許可漁業의 漁業時期制限 撤廢

'94. 5. 14.자로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2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시기제한을 폐지하여 해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개선

○ 遠洋漁業의 許可有效期間을 一元化

가국적증서에 의한 원양어업허가시 종전에는 가국적증서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허가하던 것을 타선박 허가기간과 같이 5년으로 허가를 일원화 함으로써 어민 불편사항 해소

○ 漁船檢査 免除範圍 擴大 및 漁船檢査期間 延長

'94. 6. 16 어선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선검사 면제범위를 확대(5톤미만 무동력어선 → 2톤미만 동력어선, 내수면어선, 5톤미만 무동력어선)하고, 선장 24m미만 어선의 검사기간을 연장(2년 → 3년)

○ 東·西海 漁場 擴張 및 操業規制 緩和

'94. 7. 11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 고시)을 개정하여 특정해역내 어선의 조업에 대하여는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 등을 완화하여 특정해역내 조업규제로 인한 민원 해소

○ 漁船 單獨出港 許容

'94. 10. 15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하여 12해리이상의 일반해역의

경우 통신시설이 있는 조업선은 단독 출항을 허용하고 통신시설이 없는 어선은 통신시설이 있는 어선과 함께 어선단을 편성하여 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어업인 불편 해소

○ 二角網漁業 操業許容

'95. 7. 15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을 개정 이각망 어업을 양성화하여 정치성 구획어업의 일종으로 제도화하므로서 영세어민들의 민원 해소

○ 遠洋漁業許可時 揚陸港 指定

'95. 7. 15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을 개정, 원양어선의 양륙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양육항은 물류비용·판매여건 등을 감안 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므로서 원양어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 遊漁漁船 制度 마련

'95. 11. 30 낚시어선업법을 제정 유어어업과 유어어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어어선 질서확립 및 유어업·유어어선업자의 불편을 해소

○ 漁業權의 移轉·分割 또는 變更許容

'95. 12. 30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海上가두리 및 陸上養殖場 漁獲物 運搬 規制 緩和

'96. 1. 26 어획물운반업허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해상가두리 및 육상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자도 어획물운반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므로서 동 업종의 물류비용 절감

○ 水産物檢査申請者의 資格要件 廢止

'96. 5. 10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을 개정 수산물검사 신청자격 제한

(수산물제조업허가 받은 자 또는 등록·신고한 자) 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 수산물검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므로써 수산물검사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 養殖漁場의 養殖品種 自律化

'96. 12. 30 어장이용개발기본지침을 개정, 양식업체 품목을 최소화(피조개·굴·미역·툰·김→굴)하여 양식업자가 자율적으로 양식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양식업자의 경쟁력 강화

○ 새우조망漁業區域 調整

'96. 12. 31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이동성 구획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조망의 조업구역을 남해안 일원 대부분해역(경남 통영시·거제시·사천시·남해군 해역, 전남 고흥군·여천군·완도군·해남군 해역)으로 확대하므로써 민원해소 및 어가소득증대에 기여

○ 부산시 및 전남도 해역의 마을어업 관리제도 개선'96. 12. 31 수산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동성 구획 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도 부산시 및 전남도의 마을어장 관리선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므로써 민원해소 및 어가소득 증대

第 2 節 水産業法 하위법령 改正

1. 水産業法施行令 改正

수산업법이 개정('95. 12. 30, 법률 제5131호)됨에 따라 마을어업 등의 漁場水深의 한계와 市·郡·區水産調整委員會의 구성 등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어업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므로써 어업인의 편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면의 효율적 이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일어장 내 수면의 여건에 따라 시설방법이나 품종에 관계없이 2종 이상의 품종을 양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최간조시 어촌계의 공동조업이 가능한 평균수심을 마을어장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미터(강원도·경상북도·제주도는 7미터)까지로 정하고, 마을어장의 外側으로부터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제주도는 15미터)까지를 협동양식어장의 수심으로 정하여 양식이 가능한 공동어장을 양식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1년으로 되어 있는 면허어업의 개시기간을 시설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축제식양식어업을 하거나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種苗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공동어장에서 유료낚시터만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마을어장 및 協同養殖漁場에서 유료낚시터 및 體驗漁場(自然實習場·觀光漁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수역의 관리, 낚시료 등의 기준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면허어업의 적격성 및 優先順位 심의등을 위하여 신설되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일시적인 어업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한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해양수산부 및 시·도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水産資源保護領 改正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보호를 위하여 일부 어종에 대한 捕獲禁止體長을 신설하고, 總許容漁獲量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발어업에 사용하는 漁具의 어망목 크기를 장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5밀리미터이상으로 정하여 치·자어의 남획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명태 10cm, 도루묵 10cm, 꽃게 5cm의 捕獲禁止體長을 신설하고, 일부 品種의 捕獲·採取의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을 조정하였고,

셋째, 양식어업자가 양식중에 있는 수산동식물에 대하여는 수산자원 보호령상의 捕獲·採取의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에 불구하고 그 적용을 排除하였으며,

넷째, 양식어장 또는 연안어장이 오염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일정한 衛生基準을 초과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그 양식어장 및 연안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하여 국민에게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근해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 이내로 하고,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증톤은 그 증톤에 해당하는 동일한 어선을 폐선하도록하여 어획강도가 큰 어선의 무분별한 증톤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요 수산동물의 種別 總許容漁獲量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정하였다.

第 8 章 漁業人 支援 強化

第 1 節 水産資金 供給 擴大

1. 營漁資金

'96년도 營漁資金 供給規模는 전년도 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8,500억원으로 沿近海漁業 분야에 7,500억원, 遠洋漁業 분야에 1,0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어업 소요자금의 調達 能力이 微弱한 영세 소규모 어업 및 공동 신고어업 어업인 등 자금소요가 작을수록 소요액에 대한 融資比率를 優待하고, '96. 10. 1부터 어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영어자금의 융자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인들이 필요로 할 경우 1년씩 2회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자금운용요령을 개선하였다.

2.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 融資事業 運用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制定된 농어촌구조개선

<表 75>

營漁資金 供給実績

(單位 : 億圓)

| | | '95 | '96 | 增 △ 減 |
|---------|-------------|--------|--------|-------|
| 所 要 額 | | 18,805 | 20,817 | 2,012 |
| 供 給 額 | | 7,500 | 8,500 | 1,000 |
| (供 給 率) | | (40%) | (41%) | (1%) |
| 調 達 | 財 政 資 金 | 2,393 | 3,473 | 1,080 |
| | 韓 銀 借 入 金 | 1,723 | 1,143 | △580 |
| | 水 協 自 體 資 金 | 3,084 | 3,384 | 300 |
| | 相 互 金 融 | 300 | 500 | 200 |
| 運 用 | 沿 近 海 漁 業 | 6,500 | 7,500 | 1,000 |
| | 遠 洋 漁 業 | 1,000 | 1,000 | - |

資料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특별회계법에 따라 지원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96년도에 1,528억원의 융자금 투입으로 沿近海漁業構造調整, 養殖漁場開發, 水産物流通 및 漁撈施設사업 등에 중점 지원하므로서 수산업의 경쟁력 提高에 기여하였다.

3. 水協 自體資金

水協 自體資金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與受信 店鋪 15개소 ('96말 180개소)와 相互金融 店鋪 22개소 ('96말 452개소)를 증설하였고, 예수금 증대를 위해 비과세가계저축 등 7종의 신상품을 개발 보급하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의 국고거래 유치 등 유일한 해양수산분야의 금융기관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로 영어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협 자체자금을 '95년보다 5,442억원이 증가한 39,936억원을 조달 운용하였다.

〈表 76〉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 融資事業 規模

(單位：百萬圓)

| | '95 | '96 | 融資條件 (年利, 据置/償還) |
|------------------|---------|---------|---------------------|
| 計 | 141,774 | 152,848 | |
|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 138,274 | 149,354 | |
| ○ 양식어장개발지원 | 4,080 | 4,703 | 5%, 3/7 |
| ○ 굴貝殼처리공장 | 3,120 | - | - |
| ○ 가두리양식장 陸上養殖 轉換 | 1,000 | 1,000 | 5%, 5/10 |
| ○ 양어장 水質淨化 시설 | 400 | 400 | 3%, 5/10 |
| ○ 淡水魚 養魚場시설 | 1,680 | 1,680 | 5%, 3/5 |
| ○ 대단위 담수어양식단지 조성 | - | 1,820 | 3%, 5/10 |
| ○ 양식용기자재공급 | 470 | 300 | 5%, 1/4 |
|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 1,250 | 3,454 | 3%, 5/10 |
| ○ 漁船建造 및 設備 현대화 | 37,032 | 34,232 | 5%, 1~3/4~10 |
| ○ 어선용 기계공급 | 2,290 | 1,350 | 5%, 1/4 |
| ○ 어선용 기자재 생산 | 1,200 | 1,200 | 8%, 0/1 |
| ○ 어망생산 | 5,300 | 6,300 | 5~8%, 0/1 |
| ○ 수산물 유통시설 | 6,059 | 7,371 | 5%, 3/5~7 |
| ○ 流通補給시설 | 1,252 | 1,303 | 3~5%, 3/7 |
| ○ 어촌관광개발 | 1,200 | 600 | 5%, 3/7 |
| ○ 어촌소득원개발 | 1,386 | 1,386 | 5%, 3/7 |
| ○ 수산물 가공운영 | 9,780 | 12,180 | 8%, 0/1 |
| ○ 수산물 처리·저장·가공 | 33,400 | 38,400 | 5~8%, 3~5/7~10 |
| ○ 어업인후계자 | 15,000 | 18,725 | 5%, 5/5 |
| ○ 專業漁家 육성 | 12,150 | 12,150 | 5%, 5/5 |
| ○ 先導漁業經營體 육성 | 225 | 800 | 3%, 5/10 |
|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 | 3,500 | 3,494 | |
| ○ 양식어장개발 | 3,500 | 3,494 | 5%, 3/7 |

<表 77>

水協 自體資金 造成 및 運用

(單位：億圓)

| | | '95 | | '96 | | 增減率 (%) |
|------------------------|------------|--------|-------|--------|------|------------|
| | | 金額 | 構成比 | 金額 | 構成比 | |
| 調 達 | ○ 自體資金 | 21,291 | 61.7 | 23,240 | 58.2 | 9.2 |
| | - 預受金 | 15,262 | 44.2 | 18,777 | 47.0 | 23.0 |
| | - 特別會計預託金 | 3,860 | 11.2 | 2,389 | 6.0 | △38.1 |
| | - 會員換決濟資金 | 2,169 | 6.3 | 2,074 | 5.2 | △4.4 |
| | ○ 借入金 | 10,722 | 31.1 | 12,483 | 31.3 | 16.4 |
| | - 韓銀 | 1,762 | 5.1 | 1,117 | 2.8 | △36.6 |
| | - 財政資金 | 4,164 | 12.1 | 5,695 | 14.3 | 36.8 |
| | - 諸基金 | 4,795 | 13.9 | 5,671 | 14.2 | 18.3 |
| | - 借款 | 1 | 0.0 | - | - | △100 |
| ○ 其他 | 2,481 | 7.2 | 4,213 | 10.5 | 69.8 | |
| 計 | | 34,494 | 100 | 39,936 | 100 | 15.8 |
| 運 用 | ○ 貸出金 | 22,014 | 63.8 | 25,287 | 63.3 | 14.9 |
| | - 金融 | 11,502 | 33.3 | 12,863 | 32.2 | 11.8 |
| | - 財政 | 10,512 | 30.5 | 12,424 | 31.1 | 18.2 |
| | ○ 他事業支援 | 1,729 | 5.0 | 1,083 | 2.7 | △37.4 |
| | ○ 現金 및 預置金 | 3,461 | 10.1 | 4,912 | 12.3 | 41.9 |
| | ○ 其他 | 7,290 | 21.1 | 8,654 | 21.7 | 18.7 |

資料：수협중앙회 금융기획부

第 2 節 漁業人 負擔 輕減

1. 營漁資金 利差補填

'86. 3. 5 "農漁村綜合對策"의 일환으로 영어자금 대출금리를 年 10%에서 年8%로 引下하였고, 沿近海部門에 대하여 '89. 4. 28 "農漁村發展綜合對策"에 따라 추가로 年8%에서 年5%로 추가 인하하고 遠洋部門은 '95. 1. 1부터 年6%로 인하함에 따라 '96년에 總 29,232백만원의 漁業人 부담을 輕減하였다.

2. 漁家負債輕減 利差補填

'87. 3. 16 "農漁家負債輕減對策"에 따라 計劃造船(연근해부문) 및 水産開發資金(피해복구용자금 등) 금리인하와 경지면적 0.5ha미만에 준하는 零細漁家の 中장기자금을 年 3%의 低利資金으로 代替하므로써 '96년에 總 991백만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었다.

3. 漁家負債對策 利差補填

農漁家の 金融부담을 緩和하므로써 농어업의 經營費를 줄이고 농어가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 주고자 '89. 12. 30 "農漁家負債輕減에關한 特別措置法"이 制定·공포됨에 따라 負債輕減 特別措置 대상이 되는 漁家は 경지면적 2ha 미만에 준하는 어가로서 영세어가와 中소규모 어가로 구분하여 당초 대출기간이 2년이상인 中長期 水産資金은 가구당 400

만원 이내에서 이자를 감면(연1.0~12.45% → 연0~3.0%)하고 상환 기간도 5년据置 5년均分 상환토록 연장하였다.

相互金融資金에 대하여는 가구당 200만원 이내에서 이자를 감면(연 13.35~13.39% → 0~5.0%)하고 상환기간을 3년据置 7년均分 償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96년도에 3,814백만원의 이자경감을 가져 왔다.

4. 水産被害漁業人 約定利子 利差補填

'94.2~10월 사이에 발생한 暴風雪·暴風雨·豪雨·颱風 (브렌던, 더그, 세스) 및 가뭄으로 수산시설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漁家가 피해일 현재 대출받아 사용중인 영어 자금을 2년 동안 상환을 延長하고 이자도 免除하여 1,542백만원의 부담경감을 가져 왔다.

5. 計劃造船 利差補填

'78~'91년까지 지원된 수산부문 計劃造船資金중 상환기일이 미도래된 대출잔액에 대하여 貸出金利를 '96. 1. 1부터 年8% (遠洋 9%)에서 年5%로 引下 적용함으로써 '96년에 2,077백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었다.

第 3 節 漁船員共濟料 支援

어선원이 재해시 적정한 요양과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어선주에게는 재해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78년도부터 연근해 어선원의 공제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95년도까지 총14,86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도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35,236명에게 1,843백만원을 어선원 공제료로 지원하였다.

〈表 78〉 漁船員共濟料 國庫補助金 支援實績 (單位 : 名, 百萬원)

| | '93 | '94 | '95 | '96 | '96/'95 |
|-------|--------|--------|--------|--------|---------|
| 人 員 | 31,409 | 29,636 | 34,277 | 35,236 | 103% |
| 補 助 額 | 1,269 | 1,443 | 2,188 | 1,843 | 84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업인육성과

第 4 節 水産關聯 稅制改善

1. 水産關聯 稅制改善

가. 免稅油類 供給對象 擴大

'96.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종전에는

어선, 나잠어업인 탈의실 난방시설과 수산물생산기초시설(김, 오징어, 미역, 멸치)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하던 것을 '97.4.14부로 육상해면양식시설과 수산종묘생산시설까지 공급대상이 확대되어 양식어업인의 연간 92억원 경영비 부담 경감 효과로 양식산업 활성화를 도모케 되었다.

나. 漁業用機資材 附加價值稅 零稅率 適用 擴大(양어용배합사료)

'96.12.30.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어망, 부자, 집어등, 통발, 연승, 로프등 15개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았던 것을 '97.7.부터 양어용 배합사료까지 추가 적용되어 양식어업인의 연간 50억원 경영부담을 덜게 되었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시 올해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영어조합법인도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양어용배합사료와 기존 어업용기자재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다. 其他改善事項

'96하반기에 친족간 어선·어업권 증여시 증여세 면제, 영어상속시 기초공제 4억원까지 확대, 조합·어촌계의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경감, 수협외 예탁금이자·출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수협 저당권 실행 취득토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유예 등으로 어업인, 수협관련 조세부담 경감을 도모케 하였다.

第 5 節 水産災害 및 被害復舊 支援

'96.9~10월에 전남 여천군·완도군·고흥군 연안에 적조현상(코크로디눔) 및 이상조류 현상이 발생하여 어류, 굴의 양식물이 피해를 입었다. 被害金額은 어류1,339백만원, 굴 4,813백만원으로 총 6,152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전남 여천군·완도군 연안에 발생한 적조현상으로 廢死한 어류와 고흥군연안에서 이상조류(高水溫)로 폐사한 굴 양식물 피해에 대하여 郡別로 漁村指導所와 水協 合同으로 피해어장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道에서 有關기관 協議會를 개최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96.12.20 農漁業災害對策法에 의한 漁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를 개최하여 총 2,119백만원의 어업재해복구비를 지원토록 의결하였다.

어업재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한 지원은 種苗代와 죽은 양식물 철거비, 營漁資金의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중·고등학생의 학자금·2기분 면제, 생계지원(무상양곡)조치를 위하여 국고 1,182백만원, 지방비 176백만원, 융자금 554백만원, 자담 203백만원 등 총 2,119백만원을 지원하여 災害漁家の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업재해복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96漁業災害復舊實施指針을 즉시 시달하여 '96. 1월부터 피해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함과 아울러 豫算會計法 등 有關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概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어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장여건과 種苗需給 상황을 감안, 시·군에서 양식어류의 품종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어민편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s a story of growth and change. It begins with the first settlers who came to the eastern coast of North America. These settlers were mostly from Europe and they brought with them the culture and customs of their home countries. Over time, these settlers and their descendants became known as the American people. They worked hard to build a new life in a new land. They cleared the land, planted crops, and built homes. They also fought wars to defend their freedom and their way of life. The American Revolution w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t was a war for independence from Great Britain. The American people won the war and they became a free and independent nation. After the war, the United States grew in size and power. It expanded westward across the continent. It became a world power and it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world. The American people have always been a people of freedom and opportunity. They have always believed in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is belief has been the foundation of the American dream. The American dream is the dream of a better life for every person. It is the dream of a life of freedom and opportunity. It is the dream of a life of hope and achievement. The American people have always believed in the American dream. They have always worked hard to make it a reality. They have always believed that a better life is possible for every person. They have always believed that the American dream is within their reach. The American dream is the heart of the American people. It is the heart of the United States. It is the heart of the world.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第 3 篇

1997年度 水 産 施 策

第 1 章 基本方向

第 1 節 水産業의 與件 變化

우리나라 수산업은 '60년대에는 어로수단, 장비·기술의 낙후등으로 연안 채포어업이 주된 어업형태이었으나, '70년대에 들어와 양식기술 및 어구·어법의 발전과 원양어업의 신장세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80년대에는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수산국으로 발전하였으며, 수산업은 국민들이 섭취하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의 절반가량을 공급하는 식량 및 건강식품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국내외 어업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매립·간척과 산업화에 의한 연안어장 축소 및 연안오염의 심화,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남획등으로 수산자원은 날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세계 연안국의 操業規制 및 入漁條件 강화로 원양어업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한편 어업인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의 73.79%, 농가소득에 비하여는 81.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어촌의 定住環境 취약과 3D업

중 기피현상으로 어촌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95년도 WTO체제의 출범과 '97.7부터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으로 교역여건이 악화되고, 또한 '94.11월의 UN海洋法協約 발효에 따라 주요 연안국의 수산자원 관할권 확대와 공해어업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한·중·일 EEZ어업법 시행시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新海洋秩序 형성등 국내의 어업질서 환경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여건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 소득·고용기회 제공, 해양환경보전, 어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국가 해양력 증대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어업 현실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第 2 節 重點 推進施策

수산업을 21세기 국민 식량산업으로의 육성과 漁村定住 환경개선을 통한 선진복지어촌 건설을 목표로 바다에 대해서는 어장을 깨끗이 정화하고 풍요로운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곳으로 적극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으로 가꾸고, 어업인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질서유지 및 어업경영의 주체로 육성하며, 어촌에 대해서는 정주환경을 완비하여 선진복지어촌으로 조기건설 해나가는 한편 주변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어장 확보와 수입개방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산업을 경쟁력있는 先進水産業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책방향하에 수산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水産政策 基本方向

- 21세기 국민 食糧産業으로 육성
- 어장을 깨끗이 淨化하고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조성
- 어업인을 專門經營의 주체로 육성
- 定住環境 완비된 선진복지 어촌건설



'97重點施策

- 바다淨化와 기르는 漁業育成
- 漁業構造調整과 漁業秩序 定着
- 漁村綜合開發과 漁業基盤施設 擴充
- 水産物 流通改善과 加工産業 育成
- 國際協力強化와 遠洋漁業 活性化
- 實用的인 水産技術의 開發·普及

第 3 節 豫算 및 資金支援

1. 海洋水産部 豫算

'97년 해양수산부의 총 예산액은 순계 규모로 2조 93억원으로 '96년의 1조 5,613억원에 비하여 28.7% 증가된 규모이며, 정부 총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表 79〉 '97 海洋水産部 豫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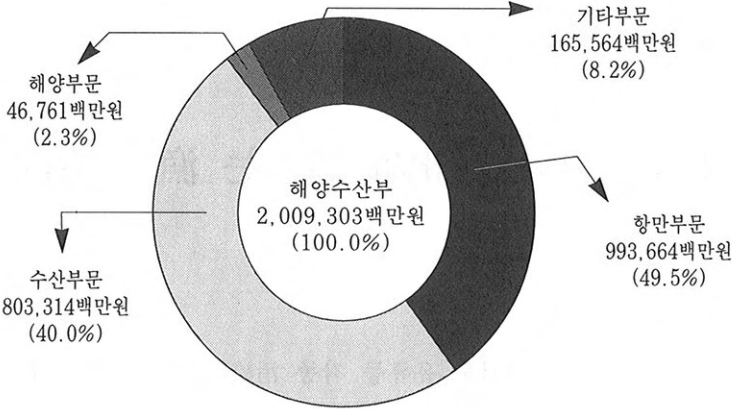
○ 會計別

(單位 : 億원)

| | '96 豫算 | '97 豫算 | 增 減 | |
|---------|--------|--------|-------|------|
| | | | | % |
| 合 計 | 15,613 | 20,093 | 4,480 | 28.7 |
| 一 般 會 計 | 4,555 | 5,027 | 472 | 10.4 |
| 財 特 會 計 | 1,892 | 2,180 | 288 | 15.2 |
| 國 特 會 計 | 11 | 16 | 5 | 45.5 |
| 農 特 會 計 | 2,903 | 3,563 | 660 | 22.7 |
| 教 特 會 計 | 6,252 | 9,307 | 3,055 | 48.9 |

資料 : 해양수산부 투자심사담당관

○ 分野別



○ 事業別

(單位：百萬圓)

| | '96 豫算 | '97 豫算 | 增 減 | |
|---------------------|-----------|-----------|---------|-------|
| | | | 增 減 | % |
| 計 | 1,561,316 | 2,009,303 | 447,987 | 28.7 |
| 1. 해양과학 기술개발 및 환경보전 | 43,587 | 38,805 | △4,782 | △11.0 |
| 2. 항만시설 확충 | 547,633 | 824,732 | 277,099 | 50.6 |
| 3. 항만운영효율성제고 | 40,003 | 58,853 | 18,850 | 47.1 |
| 4. 수산진흥육성 | 437,101 | 492,469 | 55,368 | 12.7 |
| 5. 수산자원관리 | 128,286 | 155,175 | 26,889 | 21.0 |
| 6. 수산물유통제도개선 | 67,064 | 95,557 | 28,493 | 42.5 |
| 7. 첨단수산기술개발 | 28,509 | 35,922 | 7,413 | 26.0 |
| 8. 해양안전관리 | 103,490 | 124,354 | 20,864 | 20.0 |
| 9. 해양수산행정 등 | 165,643 | 183,436 | 17,793 | 10.7 |

資料：해양수산부 투자심사담당관

第 2 章 바다 淨化와 기르는 漁業 育成

생활하수 및 공단폐수, 폐기물, 유류등 각종 汚染物質에 의한 水質汚染과 공유 수면 매립·간척으로 부터 沿岸漁場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요 연안어장 및 공단 주변수역의 環境汚染 調査를 강화하고, 淸淨海域 및 水産資源保全地區 관리에 淸徹를 기하는 한편, 연안어장의 底質改善 및 각종 汚物收去등 적극적인 環境淨化事業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汚染行爲 규제·단속 오·폐수 처리장 확충, 제도개선 등 沿岸漁場 오염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第 1 節 漁場淨化

1. 沿岸漁場 淨化

공동어장, 양식어장을 중심으로 어장 底質改善, 각종 오폐물 등을 수거하여 오염으로 인한 어장피해를 줄이고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7년도에는 3,447백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23천ha의 연안어장을 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밑갈이, 오폐물수거등 획일적인 어

장청소사업을 지양하고 漁場生産性 회복에 효과가 큰 객토, 침체어망인 양 등 지역 및 어장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特別管理 漁場淨化 整備事業

沿岸汚染은 광역화된 반면, 漁場淨化事業을 공동어장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어 '96년부터 적조 상습발생 등 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빈발하여 特別管理海域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하여 만단위로 전면적인 어장환경개선과 어장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해역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또는 계획된 수면 9개만(전남 4, 경남5)인 가막만, 여자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진해만, 고성만, 자란만, 거제·한산만, 강진만(진주만)을 대상으로 '97년도에 4개소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제시된 汚染底質 浚渫 등 어장환경개선과 어장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養殖漁場 淨化·整備

어장이 밀집개발되어 노화되고 潮流疏通이 차단되는 등 어장환경 변화로 생산성 저하 및 病害가 빈발하는 양식어장을 300~600ha 단위로 재배치 정리정돈하여 어장생산성 향상과 漁場利用秩序를 확립하고, 권역별, 품종별로 어장을 정화정비하여 건전한 漁場管理 模型을 開發·普及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양식어장이 밀집되어 있는 2개소(전남, 경남 각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총 30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第 2 節 赤潮對策

'89년이후 우리나라 南海岸 등에 每年 有害性 赤潮가 발생하여 많은 水産被害를 내고 있고 특히 '95년도에는 764억원이라는 막대한 被害가 발생하였으나, '96년도에는 적조대비책의 철저한 施行과 총체적 대응으로 적조피해를 21억원으로 最小化 하였다.

금년도에는 적조피해를 豫防하기 위해 '97적조대책을 수립함과 아울러 동대책 추진기획단 운영등 세부행동요령을 각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등에 시달하여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赤潮對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중앙적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적조대책을 總括 指揮하고, 일선 유관기관, 단체 간의 긴밀한 協助體制構築을 위해 시·도 赤潮對策委員會와 각 기관별 적조대책반을 각각 운용하여 적조예찰 및 예보, 적조방지교육·홍보, 적조방제, 피해조사 및 復舊對策 支援 등 일관성 있게 적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적조 조기발견과 신속한 豫報體制를 위해 전국연안 70개지점에 상설측정망의 지정·운영과 어촌지도직 공무원 104명으로 構成된 상주예찰반을 編成하여 運營하고 있고, 적조발생으로 어업피해가 憂慮될 경우 적조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적조정보자동응답전화기(051-720-2100~7) 및 新聞, 放送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漁業人들에게 신속히 赤潮情報를 제공하여 사전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 여수·여천·고흥, 경남 통영·진해·거제·남해 등 赤潮常習發生海域에 적조방제용 황토 60천톤을 확보하여 적조발생시 適期에 살포

하는 등 效果的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양식장에는 여과기, 산소공급기 등 赤潮防止施設을 비치토록 하고, 적조발생시 漁場管理要領에 대한 교육·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하여 어촌 지도소를 통해 指導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수산진흥원에 대학, 연구소 등 적조전문가로 赤潮審議會를 構成하여 協동연구 協力體制를 構築하여 황토 효능의 과학적인 규명, 적조발생과 유류 및 유처리제와의 관계, 천적 및 미생물을 이용한 적조방제 技術 등을 적극 開發해 나갈 것이다.

第 3 節 油類汚染被害 對策

油類汚染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선박이 安全運航을 할 수 있도록 體制를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후에는 신속히 전문적인 방제를 할 수 있도록 防除力量을 강화시키는 것이 요체이다.

먼저, 船舶安全運航을 위하여 海上交通管制시스템(VTS)장비를 '97년도중에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에는 설치완료하므로서 船舶運航을 감시·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老朽油槽船의 代替를 위하여 內港油槽船社에 代替資金을 지원하며, 기존의 종이해도에 있는 정보와 항해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선박의 航海管制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 電子海圖를 개발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항행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고발생시의 防除力量을 강화하기 위하여 海洋警察廳의 방제인력·장비를 보강하고, '97. 10월까지의 韓國海洋汚染防除組合의 설립을 추진하며, 緊急防除資金을 계속 확보하여 油類汚染事故時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國際基金協約이 改正되어 油類汚染損害發生時 被害補償限度額이 715억원에서 1,610억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조속히 改正된 國際基金協約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발생한 씨프린스호, 제1유일호, 호남사파이어호등 油類汚染事故에 대한 被害補償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第 4 節 水産資源 造成

1. 人工魚礁 施設

沿近海 水産生物의 産卵, 棲息場을 造成하기 위하여 '97年度에는

〈表 80〉

人工魚礁 施設實績 및 計劃

(單位 : ha)

| | 既施設('71~'96) | '97 計 劃 | 總施設('71~'97) |
|-------|--------------|---------|--------------|
| 計 | 111,219 | 16,000 | 127,219 |
| 釜 山 | 955 | 150 | 1,105 |
| 仁川·京畿 | 4,400 | 1,250 | 5,650 |
| 江 原 | 15,863 | 1,500 | 17,363 |
| 忠 南 | 7,449 | 1,450 | 8,899 |
| 全 北 | 5,310 | 1,000 | 6,310 |
| 全 南 | 22,880 | 3,100 | 25,980 |
| 慶 北 | 15,977 | 1,500 | 17,477 |
| 慶 南 | 23,481 | 3,100 | 26,581 |
| 濟 州 | 14,904 | 2,950 | 17,854 |

資料 :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과

63,232백만원을 투자, 10個 市.道의 施設適地 16千헥타에 人工魚礁를 施設하고 기 시설한 海역중 6個所에 대하여 漁獲效果和 魚礁의 保存狀態를 조사하며, 각 수역 및 어중에 대한 적합한 어초를 開發하고자 試驗研究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種苗培養場 施設 및 生産放流

地域與件과 特性에 適合한 品種을 大量生産 공급할 수 있도록 '94년 全南道에 처음으로 연간 2,000만마리의 종묘 生産능력을 갖춘 대규모 道立種苗培養場 施設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95년에 江原道, 全羅北道, 慶尙北道, 慶尙南道에 각각 1개소와 '96년에 제주도등 총6개소를 지원한데 이어 '97년에 신규로 인천광역시에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國立種苗培養場의 노후 및 협소한 연구시설 등을 보강하여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어류 및 갑각류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비 2,560백만원을 투자하여 굴유생 300백만패를 포함 유용종묘 351백만마리를 생산, 漁村契 및 養殖漁業人 등에게 分讓하거나 沿岸에 放流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어장 자원조성의 가속화와 자원조성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民間 種苗培養場에서 生産한 水産種苗 33백만마리를 買入, 沿岸漁場에 放流할 計劃이다.

第 5 節 養殖漁業 開發 및 整備

1. 漁場開發

'97년도의 양식개발은 수면의 종합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新規漁場의 개발 보다는 기존어장의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과 漁業秩序 確立에 주력하고 있다.

'97년도부터는 양식어장 개발은 지선 多數漁民의 소득원 확보 위주로 개발하고, 기존어장의 어장여건 변화로 계속 양식이 곤란할 때에는 外延漁場으로 대체개발하거나, 양식 적정품종으로 변경·개발하는 등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양식 수산물의 적정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며, 水産物 輸入自由化에 대비하여 수출 가능성과 國際競爭力이 있는 품종을 중점 개발하고 김·미역·툰·굴·피조개 등과 같이 수급, 가격 등의 요인으로 생산조절이 필요한 품종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漁場開發 및 生産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漁民後繼者 육성 측면에서 어민후계자가 개발코자 하는 경우와 埋立·干拓으로 축소된 어장 또는 다른 품종으로 변경된 어장면적에 한하여는 축소·변경된 면적 만큼 신규로 對替漁場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水産養殖事業 推進

'97년도에는 養殖漁場開發을 위해 총사업비 210억원을 투자하여 도

서, 벽지 등 저소득 어촌계의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전복, 가리비 등 1,248ha 어장을 개발하고, 고급어류의 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류양식장 15개소를 지원하는 한편 養殖漁場의 基盤構築사업으로 어패류종묘 배양장 10개소와 사료저장고 10개소를 지원하고 또한 漁村契 앞바다 牧場化 示範事業의 일환으로 가두리양식 15개소를 시범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이다.

3. 養殖漁場 管理·整備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실관리어장 방지를 위하여 全 漁業權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1회이상 실시, 不實管理 漁業權은 關係法規에 의거 정비 조치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漁業技術普及 및 養殖漁場의 단위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어촌에 상주하고 있는 어촌지도원(255명)을 활용, 적정시설 지도와 漁場豫察強化 및 有關기관 합동 양식어장평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바닥갈이, 오·폐물수거 등 어장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養殖漁場의 災害豫防 및 復舊를 위하여 災害豫防對策을 수립, 시행하는 등 철저한 어장관리 지도 및 對 漁民 弘報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表 81〉

品目別・年度別 漁場面積

(單位 : ha)

| | '92 | '93 | '94 | '95 | '96 |
|-------------|-------------------|-------------------|------------------|-------------------|-------------------|
| 計 | 108,241 (100%) | 109,035 (100%) | 108,637 100%) | 106,912 (100%) | 106,838 (100%) |
| 魚 類 | 1,281 (1.2) | 1,348 (1.2) | 1,512 (1.4) | 2,222 (2.1) | 2,445 (2.3) |
| 貝 類 | 38,520 (35.6) | 38,654 35.5) | 39,390 (36.3) | 39,494 36.9) | 39,305 (36.8) |
| 海 藻 類 | 65,503 (60.5) | 66,091 (60.6) | 64,856 (59.7) | 61,858 (57.9) | 61,974 (58.0) |
| 其 他 水産動物 | 2,937 (2.7) | 2,942 (2.7) | 2,879 (2.6) | 3,338 (3.1) | 3,114 (2.9) |

資料 : 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

〈表 82〉

所有者別・年度別 漁場面積

(單位 : ha)

| | '92 | '93 | '94 | '95 | '96 |
|----------|---------|---------|---------|---------|---------|
| 計 | 108,241 | 109,035 | 108,637 | 106,912 | 106,838 |
| 漁村契 및 水協 | 74,249 | 76,480 | 76,772 | 76,034 | 77,184 |
| 個人 및 協業 | 33,992 | 32,555 | 31,865 | 30,878 | 29,654 |

資料 : 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

〈表 83〉

’96 品目別·所有者別 漁場面積

(單位 : ha)

| | 計 | 魚 類 | 貝 類 | 海 藻 類 | 其 他 |
|----------|-------------------|-----------------|------------------|------------------|-----------------|
| 計 | 106,838 (100%) | 2,445 (100%) | 39,305 (100%) | 61,974 (100%) | 3,114 (100%) |
| 漁村契 및 水協 | 77,184 (72%) | 907 (37%) | 18,178 (46%) | 57,601 (93%) | 498 (16%) |
| 個人 및 協業 | 29,654 (28%) | 1,538 (63%) | 21,127 (54%) | 4,373 (7%) | 2,616 (84%) |

資料 : 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

〈表 84〉

養殖漁業 品種別 生産推移

(單位 : M/T)

| | | ’92 | ’93 | ’94 | ’95 | ’96 |
|---------|-------|---------|-----------|-----------|---------|---------|
| 計 | | 935,478 | 1,038,119 | 1,072,126 | 996,451 | 874,810 |
| 魚 類 | | 4,595 | 5,471 | 6,643 | 8,360 | 11,402 |
| 貝 類 | 小 計 | 338,602 | 345,696 | 264,124 | 312,252 | 306,738 |
| | 굴 | 235,326 | 258,212 | 172,313 | 191,156 | 185,339 |
| | 홍 합 | 9,689 | 55,183 | 39,764 | 75,353 | 70,058 |
| | 피 조 개 | 20,547 | 11,613 | 13,646 | 9,357 | 20,166 |
| | 주요패류 | 70,978 | 13,970 | 29,536 | 28,353 | 22,978 |
| | 기 타 | 2,062 | 6,718 | 8,865 | 8,033 | 8,197 |
| 海 藻 類 | 小 計 | 579,963 | 664,318 | 750,197 | 649,099 | 538,990 |
| | 미 역 | 371,432 | 372,182 | 411,602 | 386,819 | 305,813 |
| | 김 | 163,555 | 235,272 | 269,581 | 192,960 | 166,199 |
| | 다 시 마 | 9,560 | 17,180 | 30,421 | 27,295 | 35,640 |
| | 기 타 | 35,416 | 39,684 | 38,593 | 42,025 | 31,338 |
| 其他 水産動物 | | 12,318 | 22,634 | 51,162 | 26,740 | 17,298 |

資料 : 해양수산 통계연보

註 : (1) 주요패류는 고막, 바지락, 가무락

(2) 기타 수산동물은 우렁챙이, 새우, 미더덕 등

〈表 85〉 '96 養殖漁場 生産基盤施設 支援現況 (單位：百萬圓)

| 事業名 | 事業量 | 計 | 融資 | 自擔 |
|---------|------|-------|-------|-----|
| 計 | 14개소 | 2,000 | 1,600 | 400 |
| 魚類種苗培養場 | 3 | 600 | 480 | 120 |
| 飼料貯藏庫 | 8 | 800 | 640 | 160 |
| 貝類種苗培養場 | 3 | 600 | 480 | 120 |

資料：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

註：지원을 용자 80%, 자담 20%

〈表 86〉 '97 養殖事業費 支援 內譯

□ 총사업비 (單位：百萬圓)

| | 物量 | 事業費 | | | | | 備考 |
|----------|----|--------|-------|--------|-----|-------|----|
| | | 計 | 補助 | 融資 | 地方費 | 自擔 | |
| 총계 | | 20,968 | 5,259 | 10,283 | 924 | 4,502 | |
| 일반, 농특용자 | | 12,233 | 1,765 | 6,789 | 924 | 2,755 | |
| 농특세 | | 8,735 | 3,494 | 3,494 | - | 1,747 | |

□ 일반회계, 농특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單位 : 百萬元)

| | 物 量 | 事 業 費 | | | | | 備 考 |
|-------------|---------------------------------|------------------|----------------|----------------|--------------|----------------|---------|
| | | 計 | 補 助 | 融 資 | 地方費 | 自 擔 | |
| 計 | 43개소 60ha 444천개 2,370톤 | 12,233 (100%) | 1,765 (14%) | 6,789 (51%) | 924 (12%) | 2,755 (23%) | |
| ○ 漁 場 開 發 | | 4,700 | - | 3,760 | - | 940 | |
| - 魚 類 養 殖 | 15개소 | 1,500 | - | 1,200 | - | 300 | 100 |
| - 전 복 | 20ha | 400 | - | 320 | - | 80 | 20 |
| - 가 리 비 | 40ha | 2,00 | - | 1,600 | - | 400 | 50 |
| - 폐 업 전 양 식 | 8개소 | 800 | - | 640 | - | 160 | 100 |
| ○ 基 盤 施 設 | | 7,533 | 1,765 | 3,029 | 924 | 1,815 | |
| - 어패류종묘배양장 | 10개소 | 2,000 | - | 1,600 | - | 400 | 200 |
| - 사 료 저 장 고 | 10개소 | 1,000 | - | 800 | - | 200 | 100 |
| - 사 료 제 조 기 | 8대 | 120 | - | 96 | - | 24 | 15 |
| - 개 량 부 자 | 444천개 | 1,332 | 533 | 533 | - | 266 | 3천원 |
| - 김유기산처리제 | 2,370톤 | 3,081 | 1,232 | - | 924 | 925 | 1,300천원 |

□ 농특회계(농특세 계정)

(單位 : 百萬元)

| | 物 量 | 事 業 費 | | | | | 備 考 |
|-----------------|-----------------|-----------------|----------------|-------|------------|-------|-----|
| | | 計 | 補 助 | 融 資 | 地方費 | 自 擔 | |
| 共同 漁 場 養 殖 場 | 23개소 1,134ha | 8,735 (100%) | 3,494 (10%) | 3,494 | - (20%) | 1,747 | |
| ○ 魚 類 養 殖 | 15개소 | 1,500 | 600 | 600 | - | 300 | 100 |
| ○ 貝 類 養 殖 | 1,134ha | 5,735 | 2,294 | 2,294 | - | 1,147 | |
| - 전 복 | 99ha | 1,485 | 594 | 594 | - | 297 | 15 |
| - 가 리 비 | 800ha | 2,400 | 960 | 960 | - | 480 | 3 |
| - 바 지 락 | 125ha | 375 | 150 | 150 | - | 75 | 3 |
| - 피 조 개 | 80ha | 400 | 160 | 160 | - | 80 | 5 |
| - 고 막 | 30ha | 75 | 30 | 30 | - | 15 | 2.5 |
| ○ 전복陸上養殖場 | 5개소 | 1,000 | 400 | 400 | - | 200 | 200 |
| ○ 種 苗 中 間 培 養 場 | 3개소 | 1,500 | 600 | 600 | - | 300 | 500 |

資料 : 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

〈表 87〉 '96 赤潮 등으로 인한 漁業災害 復舊費 (單位 : 千圓)

| | | 재 원 별 소 요 액 | | | | | |
|--------|-------------|-------------|-----------|---------|---------|---------|--------|
| | | 계 | 국 고 | 지 방 비 | 용 자 | 자 담 | |
| 합 계 | 계 | 2,118,918 | 1,181,942 | 175,505 | 554,213 | 207,258 | |
| | 복 구 비 | 1,780,668 | 843,692 | 175,505 | 554,213 | 207,258 | |
| | 간 접 지원 | 338,250 | 338,250 | - | - | - | |
| 여 천 | 계 | 195,305 | 97,521 | 19,395 | 58,185 | 20,204 | |
| | 복 구 비 | 195,105 | 97,321 | 19,395 | 58,185 | 20,204 | |
| | 간 접 지원 | 200 | 200 | - | - | - | |
| 완 도 | 계 | 474,261 | 199,109 | 46,543 | 167,326 | 61,283 | |
| | 복 구 비 | 소계 | 466,743 | 191,591 | 46,543 | 167,326 | 61,283 |
| | | 대규모 | 138,717 | 27,771 | 13,840 | 69,210 | 27,896 |
| | | 소규모 | 328,026 | 163,820 | 32,703 | 98,116 | 33,387 |
| | 간 접 지원 | 7,518 | 7,518 | - | - | - | |
| 고 흥 | 계 | 1,449,352 | 885,312 | 109,567 | 328,702 | 125,771 | |
| | 복 구 비 | 1,118,820 | 554,780 | 109,567 | 328,702 | 125,771 | |
| | 간 접 지원 | 330,532 | 330,532 | - | - | - | |

資料 : 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

- ※ 1. 영어자금 상환기한 연기액 : 1,113,831천원(91가구)
- 2. 여천, 고흥지역의 피해어가는 소규모 어가임

第 6 節 內水面漁業 開發

1. 淡水魚 集約 養殖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고 上水源 保護區域내 가두리양식장을 陸上으로 移設코자 가두리양식장 陸上移轉 및 담수어양어장 시설자금을 '96년도에 3,900백만원(15개소)을 지원하였으며, '97년도 6,400백만원(20개소)을 확보하여 土產品種 및 高所得 品種 集約生産 施設을 支援함으로써 漁民所得 增大 및 國民 食水源 水質保全에 기여할 계획이다.

2. 養殖用 機資材 供給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추세에 따른 양식 농어가 負擔輕減, 養殖施設 機械化 促進을 위하여 漁業用機械 반값 공급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까지 3,464대(4,131백만원)를 지원하였고 '97년도에는 583대(788백만원)를 지원하여 양식시설의 기계화 촉진으로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第 3 章 漁業構造調整과 漁業秩序 定着

第 1 節 漁業構造調整

1. 沿近海 漁業構造調整

연근해어업은 漁業資源減少, 漁業人力の 減少, 漁船老朽化 등 漁業內的인 문제와 水産物輸入 全面開放, 국민 수산식품 需要增大, 海洋汚染 深化, 주변국 EEZ 선포에 따른 漁場縮小 등 어업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대상으로는 稚魚혼획율이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과, 輸入自由化로 漁業競爭力이 낮은 업종, EEZ 선포시 어장축소등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업종, 漁業經營 狀態가 불량한 업종을 우선적으로 감척하여 어업의 漁業競爭力을 높이고 연근해 漁業資源을 保全하며,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97년도에는 漁業資源保全에 영향이 큰 해선망, 낭장망, 연안안강망등 沿岸漁業 56척 270톤과 EEZ 선포와 TAC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우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대형선망(21척 2,520

톤),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28척 2,856톤), 근해안강망(29척 1,885톤) 등 近海漁業 102척(8,670톤)을 30,863백만원 투자하여 減隻을 推進할 計劃이다.

第 2 節 漁業秩序確立

海洋水産部에서는 신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새로운 國際秩序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스스로가 漁業秩序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 새로운 「漁業秩序確立對策」을 마련, 관계기관의 協助를 받아 범政府的 次元에서 積極推進하기로 하였다.

국내 不法漁業의 조기근절을 위해 海洋水産部, 國防部, 檢察廳, 警察廳, 海警廳 등 7개 부처와 市.道, 水協 등 關係部處間에 公조체제를 구축 육상과 해상.공중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團束을 펴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不法漁業이 盛行하고 있는 釜山 多大捕, 全北 群山, 全南 麗水, 慶北 九龍捕, 慶南 統營 등 5개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가 지역 실정에 알맞는 특별단속대책을 마련 관내 檢察廳, 警察廳, 海警署 등 關係機關 合同團束班을 편성, 強力한 團束을 實施할 計劃이다.

또한 常習, 痼疾的인 不法漁業者에 대해서는 罰金 상향조정, 구속수사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不法漁船 1,000척을 척당 1~3천만원을 용자지원, 合法漁業으로 轉業 조치할 計劃이다. 또한 해경청에 不法漁業對策本部 및 고발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내에 關係部處가 참여하는 中央不法 漁業根絶對策 協議會를 구성 운영하고 關係機關 合同團束班을 편성 10회에 걸쳐 진국일제단속을 강력히 實施할 계획

이다.

水協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犯則漁獲物 위관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도 組會員除名, 免稅油類 供給中止, 營漁資金 回收 및 貸出中止 등 각종 支援事業에서 排除하므로서 신분상으로도 경제적 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計劃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我國漁船의 서일본수역 위반 操業防止를 위해 대형지도선 4척을 서일본수역에 상시 배치하고 서일본수역에 출어하는 업계에 대한 指導啓蒙을 강화하므로서 違反操業을 줄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서일본수역에서 不法操業하는 소형기선저인망 漁船에 대해서도 特別團束을 실시하는 등 한·일간 원만한 漁業秩序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신해양질서에 따른 배타적 經濟水域(EEZ) 설정 및 총어획허용량(TAC)제도 시행에 대비,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해경청 경비정, 시·도지도선 30척을 동서남해의 主要海域에 고정배치하고 中國漁船 등 我國水域을 침범 不法操業하는 外國漁船에 대해 강력 對處할 計劃이다.

第 3 節 出入港 申告制度 改善

沿近海 出漁船 가운데 養殖場 管理船과 定置網漁場 및 共同漁場 管理船에 대한 出入港 申告의 생략과 東海 水域 出漁船의 위치보고시 指定 漁業無線局 一元化 등을 위하여 船舶安全操業規則 (3부 共同部令)을 關聯部處와 협의를 거쳐 改正할 계획이다

養殖場管理船 등의 경우 근거리 漁場에서 操業하거나 漁場管理 등을

위해 수시 港·浦口를 出·入港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申告를 생략토록 하되 東·西海 特定海域과 國防, 治安維持上 필요하다고 지정한 海域은 현행대로 출입항신고를 維持토록 할 計劃이다

東海地域 漁業無線局의 一元化에 관한 制度改善 사항은 현행 東海의 지정어업무선국이 속초, 주문진, 동해 및 울릉 漁業無線局의 4個所로 指定되어 있으나 出漁船의 迅速한 위치보고 체제를 유지코자 指定漁業無線局을 속초漁業無線局으로 一元化하여 漁民의 不便을 解消해 나갈 計劃이다

또한 현행 通信機가 설치되어 있는 漁船은 入出港時 지체없이 漁業無線局에 위치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海難事故 등 만일의 사태를 사전예방 계도코자 入港前과 出港後 각각 3時間以上 通信機를 開放토록 하여 安全操業強化에 만전을 기할 計劃이다

第 4 節 安全操業 指導

海上에서 各種事故를 사전 豫防하여 安定的인 漁業活動을 圖謀하는 한편 漁業人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코자 沿近海漁船에 대한 安全操業指導對策을 수립 추진할 計劃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漁民의 安全操業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해 船主, 船長 등 幹部船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海難事故와 越線被拉 豫防을 위해 綜合狀況室을 改編하여 運營의 效率을 기하는 한편, 盛漁期 大和堆 오징어漁場에 조업하는 어선들의 安全操業指導을 위해 복지모션을 과전하여, 어업무선국을 통한 기상예보 迅速 傳播 및 待避 유도를 強化

하고, 군·경 등 有關機關과의 긴밀한 協助體制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中國漁船의 우리측 漁業資源保護水域내 不法操業 防止를 위해
'92.1.16 국무총리 지시인 "中國漁船 우리수역 侵犯 團束 基本方針"에
의거 漁業資源 保護水域을 침범하는 中國漁船 발견시는 漁業無線局 및
漁業指導船 등에 즉시 신고토록 계도하고, 신고된 中國漁船에 대하여는
海洋水産部 指導船 및 海警艇 등의 지원을 받아 추방 조치하는 한편 領
海侵犯 漁船에 대하여는 拿捕 및 罰金額 부과 등으로 우리해역의 漁業
資源保護와 漁民의 安全操業에 努力을 기울일 計劃이다.

第 4 章 漁村綜合開發과 漁業基盤施設 擴充

第 1 節 漁村綜合開發

1. 漁村綜合開發

낙후된 어촌지역의 生産基盤 施設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 潛在力과 協業能力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개발하며, 대상사업은 漁船繫留施設, 海안시설 등 생산 기반시설과 어촌 환경시설 및 어촌 부업시설, 水産資源造成 등 소득원개발사업중에서 권역내 어업인이 선택하게 된다. 지원율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담 5%로 5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5개권역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권역당 35억원의 대규모 금액으로 지원되고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권역내 어촌계간의 협의에 의해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市·郡, 市·道水産調整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실시
설계를 하여 착공토록 함으로써 어촌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어업인의 참

<表 88> '97 市·道別 漁村綜合開發事業 現況

| 시·도 | 권역명 | 대상지역 | 어촌 계수 | 사 업 비(백만원) | | | |
|-----|------|------------------|----------|------------|--------|--------|-------|
| | | | | 계 | 국고 | 지방비 | 자담 |
| 8 | 25 | 37개읍면 | 107 | 55,500 | 27,750 | 24,975 | 2,775 |
| 인천 | 연 평 | 옹진군 송림면 | 2 | 3,500 | 1,750 | 1,575 | 175 |
| 강원 | 속 초 | 속초시 | 2 | 1,750 | 875 | 787.5 | 87.5 |
| | 죽 왕 | 고성군 죽왕면 | 1 | 3,000 | 1,500 | 1,350 | 150 |
| | 동 해 | 동해시 | 4 | 1,750 | 875 | 787.5 | 87.5 |
| 충남 | 근 소 | 태안군 근흥, 소원면 | 8 | 3,500 | 1,750 | 1,575 | 175 |
| | 당 진 | 당진군 석문,송산,송악,신평면 | 7 | 1,750 | 875 | 787.5 | 87.5 |
| 전북 | 위 도 | 부안군 위도면 | 6 | 3,500 | 1,750 | 1,575 | 175 |
| | 고창 2 | 고창군 부안,심원,홍덕면 | 3 | 1,750 | 875 | 787.5 | 87.5 |
| 전남 | 대 구 | 강진군 대구, 칠량면 | 5 | 1,750 | 875 | 787.5 | 87.5 |
| | 낙 월 | 영광군 낙월면 | 1 | 1,750 | 875 | 787.5 | 87.5 |
| | 보 길 | 완도군 보길면 | 2 | 1,750 | 875 | 787.5 | 87.5 |
| | 임 자 | 신안군 임자면 | 1 | 1,750 | 875 | 787.5 | 87.5 |
| | 순 천 | 순천시 별량, 해룡면 | 5 | 1,750 | 875 | 787.5 | 87.5 |
| | 득 량 | 고흥군 도덕, 도양면 | 5 | 1,750 | 875 | 787.5 | 87.5 |
| | 충 무 | 목포시 | 2 | 1,750 | 875 | 787.5 | 87.5 |
| | 경북 | 울릉서 | 울릉군 서면 | 3 | 1,750 | 875 | 787.5 |
| 감 포 | | 경주시 감포읍 | 9 | 3,500 | 1,750 | 1,575 | 175 |
| 모 포 | | 포항시 장기면 | 6 | 1,750 | 875 | 787.5 | 87.5 |
| 경남 | 구 산 | 마산시 구산면 | 5 | 1,750 | 875 | 787.5 | 87.5 |
| | 남미조 | 남해군 상주, 미조면 | 7 | 1,750 | 875 | 787.5 | 87.5 |
| | 자 란 | 고성군 하일,하이,삼산면 | 7 | 1,750 | 875 | 787.5 | 87.5 |
| | 장 목 | 거제시 장목면 | 7 | 3,500 | 1,750 | 1,575 | 175 |
| | 사천 3 | 사천시 | 3 | 1,750 | 875 | 787.5 | 87.5 |
| 제주 | 성산동 | 남제주군 성산읍 | 3 | 3,500 | 1,750 | 1,575 | 175 |
| | 남원서 | 남제주군 남원읍 | 3 | 1,750 | 875 | 787.5 | 87.5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여의식과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어촌계간 합의 도출, 기본계획 수립, 水産調整委員會 審議, 實施設計 및 세부사업 선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전문성과 계획성 및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는 등 문제점도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96년부터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7년에는 900백만원을 확보하여 21개권역에 대하여 어촌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 경험과 기술이 있는 해양수산개발원과 농어촌진흥공사를 漁村綜合開發事業 基本計劃樹立에 참여시켜 현지 주민, 시·군 담당공무원 등과 함께 현지 정밀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므로써 매년 하반기에 착공되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연초에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문성과 計劃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表 89〉 '97 漁村綜合開發 基本計劃樹立 用役推進 現況

| 시·도 | 시·군 | 대상권역 | 용역기관 | 시·도 | 시·군 | 대상권역 | 용역기관 | |
|-----|-----|------|---------|-----|------|------|---------|--|
| 강 원 | 양양군 | 강현 | 해양수산개발원 | 경 북 | 울진군 | 오산 | 농어촌진흥공사 | |
| | 강릉시 | 연곡 | | | 경주시 | 양남 | | |
| 충 남 | 보령시 | 외연 | 농어촌진흥공사 | | 울릉군 | 울릉북부 | | |
| 전 북 | 군산시 | 옥도 | 경 남 | 통영시 | 사량 | | | |
| 전 남 | 무안군 | 홀통 | | 남해군 | 설천 | | | |
| | 여천군 | 돌산 | | 고성군 | 당항 | | | |
| | 진도군 | 금갑죽림 | | 통영시 | 용남 | | | |
| | 해남군 | 북평 | | 거제시 | 사등 | | | |
| | 장흥군 | 득량남부 | | 제 주 | 북제주군 | | 애월 | |
| | 보성군 | 득량동부 | | | 남제주군 | | 성산서부 | |
| | 강진군 | 신전도암 | | 계 | | | 21권역 | |

資料: 해양수산부 이촌계획과

2. 漁業人福地會館 建立

'89년이후 추진한 漁業人福祉會館 建立은 어업인들의 호응속에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개소당 지원액을 종전 270백만원에서 400백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3,200백만원(국고2,560백만원, 지방비640백만원)을 지원하여 용진군수협, 강진군 수협 등 8개소에 건립중에 있다.

특히 '97년도에도 '96년도와 같이 지구별수협외에 법인어촌계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충남도 서면법인어촌계 및 경남도 마산시 진동법인어촌계에도 漁業人福祉會館을 建立중에 있다.

〈表 90〉

'97 漁業人福祉會館 建立計劃

(단위: 개소)

| 계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부산 | 제주 |
|---|---------|----|---------|-----------|----|---------|---------------|-----------|---------|----|
| 8 | 1 용진 | - | 1 속초 | 1 (서면) | - | 1 강진 | 2 울릉 후포 | 1 (진동) | 1 기장 | -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업인육성과

註 : ()는 법인어촌계

3. 漁村觀光休養團地造成

도시민의 관광·레저 수요를 어촌지역으로 誘致, 어업인의 어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6년까지 어촌계를 대상으로 활어횃집, 숙박시설, 관광유어선 등 단위사업당 1억원씩 지원하였으나 투자효과가 未洽하였다. 이를 개선하여 '97년부터는 지원대상을 市·郡, 水協 및 漁村契, 營漁法人, 個人으로 범위를 擴大하고 지원규모도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大幅 增額,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表 91〉 '97 漁村觀光 休養團地造成 計劃

| 事業地區 | 數地面積 | 事業費 | 事業期間 | 備考 |
|------------------|---------------------|------|---------|----|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 26,940㎡ (8,150평) | 30억원 | '97~'98 |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촌계획과

註 : 지원을 국고용자 50%, 지방비보조 30%, 자담 20%

第 2 節 漁業人力 育成

1. 漁業人後繼者 育成

정부는 '97년도에 漁業人後繼者 848名(229억원), 專業漁業人 254名(146억원), 先導漁業人 15名(12억원)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40세미만의 어업인 848명을 漁業人後繼者로 선정, 사업규모에 따라 1인당 20~50백만원씩의 長期低利 資金 229억원을 지원하여 漁船 購入,

〈表 92〉 漁業人後繼者 支援計劃

(單位: 名, 百萬元)

| 區 分 | 計 | | '81~'96 | | '97(p) | |
|----------|--------|---------|---------|---------|--------|--------|
| | 人 員 | 金 額 | 人 員 | 金 額 | 人 員 | 金 額 |
| 計 | 10,680 | 191,203 | 9,563 | 152,250 | 1,117 | 38,723 |
| ○ 漁業人後繼者 | 9,610 | 134,853 | 8,762 | 111,925 | 848 | 22,928 |
| ○ 專業漁業人 | 1,040 | 53,900 | 786 | 39,300 | 254 | 14,600 |
| ○ 先導漁業人 | 30 | 2,450 | 15 | 1,025 | 15 | 1,200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업인육성과

漁船 建造, 漁船 개보수, 養殖施設物 設置, 稚貝, 稚魚 求入資金으로 사용토록 한다.

또한 어선어업, 증양식업, 수산종묘생산업, 내수면양식, 수산물가공에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업종)을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어가로서 경영규모, 재배기술, 사업계획이 우수한 어가 254명에 대하여 이를 專業漁業人으로 선정하여 1인당 50~100백만원씩 146억원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한편, 생산기술, 경영기법, 기계 및 시설, 생산규모, 소득 등의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어업인을 선도어업인으로 지정하여 이들을 경쟁력 있는 어가로 발전해 나가는 어업인 모델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97년도에는 15명(12억원)을 선정 육성하게 된다.

2. 水産界高校 支援

어촌 인력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漁村에 定着하여 地域發展을 선도할 젊은 인력을 양성키 위해 1986년 문교부 주관하에 水産高等學校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계 고등학교 중 自營水産科를 설치한 학교의 自營水産科 학생에게는 入學金과 授業料를 免除하고, 寄宿舍 食費 80%(해양수산부 50%, 교육부 30%, 자담 20%)를 支援하고 있다

自營水産科를 開設한 수산계 고등학교는 전국 13개교 중에서 주문진·대천·완도·거제·포항 수산고등학교 등 5개교이며, '97년에 우리 부에서 지원하는 寄宿舍 食費補助는 158백만원으로서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정원 520명 중 현원 455명이다.

〈表 93〉

自營水産科 學生現況

(單位：百萬원, 名)

| 區 分 | 寄 宿 舍 食 費 | 支 援 學 生 | | |
|--------|--------------|---------|--------|----------|
| | | 定 員(A) | 現 員(B) | 對 比(B-A) |
| 計 | 158 | 520 | 455 | 88 % |
| 注文津水工高 | 6 | 40 | 16 | 40 |
| 大川水高 | 40 | 120 | 116 | 97 |
| 莞島水高 | 60 | 200 | 174 | 87 |
| 巨濟水高 | 38 | 120 | 109 | 91 |
| 浦項水高 | 14 | 40 | 40 | 100 |

資料：해양수산부 어촌지도과

3. 海技士 養成 및 漁業技術 訓練

韓國漁業技術訓練所에서는 1997년에 236회에 걸쳐서 總 9,550名の 漁船員을 教育訓練시킬 計劃이다.

특히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海技士를 2회에 걸쳐서 200名을 養成할 계획이며, 乘船經歷이 없는자에 대한 新規 教育課程을 60회에 2,400名을, 원양회사소속 경력선원(2년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해기사 단기위탁교육과정을 3회에 걸쳐 120명을, 선원과 漁船의 안전 및 海難防止를 위한 교육과정을 60회에 2,800名을 실시할 計劃이며, 외국인 연수교육의 확대 실시로 국제어업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교육을 40회에 걸쳐 2,000名을 교육 시킬 計劃이다.

또한 Fishing simulator, Engine simulator, 냉동 Plant 등 高 價 尖端 訓練裝備를 購入 活用하여 교육훈련 효과를 극대화 시킬 計劃 이다.

<表 94>

'97 海技士 및 漁船員 教育訓練 計劃

(單位:回,名)

| | 계 | 海技士 教育 | | 해기사 단기과정 | 안전 및 해난 방지 교육 | 新 規 教育 | 승무원 직무 교육 | 응시 자격 취득 교육 | 沿岸 船 職務 教育 | 遠洋 船 職務 教育 | 자 동 충 돌 예 방 교 육 | G M D S S 교 육 | 해 양 오 염 방 지 교 육 | 免 許 取 得 教 育 | 레 이 더 教 育 | 외 국 인 教 育 | 외 국 인 선 원 교 육 |
|----|-------|--------|------|----------|---------------|--------|-----------|-------------|------------|------------|-----------------|---------------|-----------------|-------------|-----------|-----------|---------------|
| | | 24 期 | 25 期 | | | | | | | | | | | | | | |
| 回數 | 236 | 1 | 1 | 3 | 60 | 60 | 2 | 2 | 11 | 15 | 4 | 8 | 12 | 8 | 8 | 1 | 40 |
| 人員 | 9,550 | 100 | 100 | 120 | 2,800 | 2,400 | 80 | 20 | 330 | 600 | 80 | 120 | 360 | 320 | 80 | 40 | 2,000 |

資料 : 한국어업기술훈련소

第 3 節 漁港施設 擴充

1. 1·3種 漁港

'97年度에는 전남 수품항등 20個港에 農漁村特別稅 예산 802億원을 집중 투자하여 完工을 촉진하고, 一般會計 예산 531億원으로 전남 풍남항등 13個港을 개발함과 아울러 경남 방어진항등 23個港에 대한 補修·補强事業을 추진할 계획이다.

2. 2種 漁港

市·道の 재정형편으로 개발이 저조한 2種漁港에 대하여도 農漁村特別稅를 재원으로 '94년부터 향후 2004년까지 4,500億원의 투자계획에 따라 '97년도에 55個港에 385億원(국비 193억원, 지방비 19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 漁港施設計劃 및 整備計劃調查

全國 港·浦口의 利用實態를 調查 分析하여 漁港을 交通, 觀光, 流通機能等 지역특성을 감안한 綜合機能港으로 開發함과 아울러 21세기를 대비한 漁港開發의 方向을 설정하고 漁村指定의 수요를 예측하고자 漁港指定·開發에 관한 研究用役을 實施('97. 12 完了)하여 漁港綜合開發計劃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설완성후 장기간의 경과로 港勢와 與件이 변화되어 整備가 必要한 강원 大포항에 대하여 整備計劃調查를 실시하고, 연안 표사이동에 따른 港內埋沒 및 海안침식현상 방지대책이 요구되는 거진항과 임원항 대하여는 數值模型實驗을 실시한다. 그리고, 漁港施設事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豫測·分析·評價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옥항의 環境影響評價 실시와 파랑 내습시 너울 및 반사파의 영향으로 항내 정온유지가 미흡한 경북 감포항에 대하여 정온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 배치와 구조물의 안전단면 결정을 위하여 數理模型實驗을 실시할 계획이다.

4. 制度改善

漁港을 漁船의 安全碇泊·어획물의 양륙등 단순기능 위주의 개발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漁村觀光, 交通, 水産物 流通등 기능이 다양화 되도록 개발하여 漁業人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漁港이 漁村地域 社會 발전의 中心核이 될 수 있도록 漁港開發에 民資를 유치하여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漁港施設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現行 漁港法을 改正코자하며 그 主要內容으로는

첫째, 流通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漁港施設에 水産物市場, 委販場, 直賣場 등 水産物 流通施設을 추가하고, 漁村生活環境의 개선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文化·福祉施設 및 觀光施設의 범위를 확대하여 漁港內에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漁港施設計劃을 基本·機能·福祉施設 구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漁港의 여건에 따라 基本施設인 物場場과 機能施設인 委販場, 福祉施設인 休息施設 등을 동일구역에 종합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구역 구분없이 시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 이외의 者(非管理廳)가 漁港施設事業을 시행한 경우 조성된 토지중 所有權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基本施設등을 제외한 일부 機能施設, 文化·福祉施設, 觀光·休憩施設用 부지에 대하여 所有權 취득이 가능토록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한 基本施設과 機能施設은 水産業協同組合, 어촌계만 使用·수익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削除하여 일반개인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民資誘致를 촉진하고,

넷째, 海洋水産部 소관 漁港의 管理를 地方自治團體에 위임하고 사용료는 國家에 귀속토록 하였으나 漁港施設의 효율적인 維持·管理를 위하여 同 使用料를 위임받은 者의 收益으로 하고 그 收益金은 管理費用에 充當하도록 하며,

다섯째, 기타 非管理廳이 漁港施設事業을 대행하고자 할 때는 承認을 받도록한 것을 대부분 申告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보고위반이나 검사기피등 경미한 사항은 罰則條項에서 削除하여 과태료로 전환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第 4 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1. 老朽漁船代替 支援

'97년도 漁船建造支援事業은 老朽漁船代替事業으로 사업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이를 연안어선건조(중전, 노후어선대체사업), 근해어선건조(중전, 經濟性漁船建造事業), 標準漁船型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40톤미만은 合成樹脂(FRP)漁船으로 40톤이상은 合成樹脂(FRP)어선 또는 鋼船으로 건조지원하고 있으며 연안어선건조사업은 90억원을 투자하여 1,000톤, 근해어선건조사업은 217억원을 투자하여 2,408톤, 標準漁船型建造事業은 25억원을 투입하여 121톤의 노후어선을 건조 지원할 계획이다. 동사업의 지원대상은 木船은 16년이상, 鋼船 및 合成樹脂(FRP)漁船은 21년이상의 노후어선을 대체건조 하고자 하는 어민이며, 지원조건은 연안어선건조 및 표준어선형 건조사업은 총사업비의 20%보조, 60%융자, 20%자담이며, 근해어선건조사업은 총사업비의 80%융자, 20%자담으로 하고 있으며 3년거치 10년상환에 금리는 연 5%이다.

2. 漁船機關 代替, 漁船裝備 및 設備改良 등 支援

가. 漁船機關代替 支援

안전조업과 조업능률 향상으로 생산증대는 물론 燃料節約을 위하여 연료 과다소모형 저효율기관과 노후기관을 성능이 우수한 연료절약형 船舶用機關으로 대체하도록 지원하는 漁船機關代替事業은 '97년도에 64 억원을 투자하여 40천마력을 대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500마력이하 船舶用機關을 代替하고자 하는 어민이며, 영세어민과 다수어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小型漁船의 저마력기관 대체에 우선 지원하고, 총사업비의 80%융자, 20%자담으로 하며 융자조건은 1년거치 4년상환에 금리는 연 5%이다.

나. 漁船裝備 및 設備改良 支援

어선장비 및 설비의 현대화로 操業能率向上과 漁業經營 改善을 기하고자 '97년도에는 100억원을 투자하여 재래식 장비·설비의 개량과 漁撈施設의 機械化, 自動化 및 船員 居住衛生施設 改善을 하고자 하는 어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어선기관대체 지원 조건과 마찬가지로 총사업비의 80%융자, 20%자담으로 하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4년상환에 금리는 연 5%이다.

다. 漁船用機資材 生産 支援

어선용기자재 생산업체에 대한 運營資金 支援으로 品質좋은 어선용품의 생산과 원활한 수급을 도모코자 1개업체에 3억원의 한도내에서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融資條件은 1년상환에 금리는 연 8%이다.

라. 漁船用 機械 供給 支援

어선용기계공급사업은 漁民負擔을 輕減하기 위하여 政府의 어선용기계공급 지원시책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自動釣上機, 魚群探知機등 12 종류의 장비 1,824대에 대하여 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총사업비의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으로 하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4년상환에 금리는 년 5%이다.

<表 95>

'97 漁撈施設事業計劃

(單位 : 百萬元)

| | 物 量 | 事 業 費 | | | |
|--------------------------|----------|--------|----------------|--------|--------|
| | | 計 | 補 助 | 融 資 | 自 擔 |
| 計 | | 54,761 | 3,402 (730) | 39,677 | 10,952 |
| ○ 老朽 漁 船 代 替 | 3,529톤 | 33,213 | 2,308 | 24,263 | 6,642 |
| - 연안어선건조 | 1,000 | 9,000 | 1,800 | 5,400 | 1,800 |
| - 근해어선건조 | 2,408 | 21,672 | - | 17,338 | 4,334 |
| - 표준어선형건조 | 121 | 2,541 | 508 | 1,525 | 508 |
| ○ 漁 船 機 關 代 替 | 40,000마력 | 6,400 | - | 5,120 | 1,280 |
| ○ 漁 船 裝 備 及 設 備 改 良 | 200척 | 10,000 | - | 8,000 | 2,000 |
| ○ 漁 船 用 機 資 材 生 產 支 援 | 5개사 | 1,500 | - | 1,200 | 300 |
| ○ 漁 船 用 機 械 供 給 | 1,824대 | 3,648 | 1,094 (730) | 1,094 | 730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선정책과

註 : ()는 지방비임

第 5 章 水産物の 流通改善과 加工産業 育成

第 1 節 價格安定 對策

'97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의한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사업은 총 운용액 17,900억원중 19%인 3,479억원이며 이중 2,423억원을 가격안정사업에 운용할계획이다

1. 價格安定事業

수급의 원활한 조절로 생산자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도 보호해 나가기 위해 農安基金 827억원을 이용하여 김, 냉동오징어등 10개품목 31,200톤을 정부에서 직접 備蓄·放出할 계획이며, 또한 1,574억원을 민간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비축수매, 방출 및 出荷調節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2. 需給 및 價格管理 強化

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연근해 및 해외어장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주요품목에 대하여는 어황 및 가격동향에 따라 政府備蓄 물량방출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며, 국내생산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 품목은 외국과의 공동, 合作事業으로 어획물 國內搬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김, 마른미역 등 7개 주요품목에 대하여는 수급상황을 특별히 관리하고 연중 물가관리 비상체제를 운영하여 수

<表 96>

政府備蓄事業計劃

(單位 : 톤, 百萬元)

| | 收買物量 | 基金支援 | 事業時期 | |
|-------|--------|--------|--------------|-------------|
| | | | 收買 | 販賣 |
| 計 | 31,200 | 82,691 | | |
| 김 | 600 | 13,279 | 1~3월 | 6~11월 |
| 간미역 | 3,000 | 4,279 | 2~4월 | 7~12월 |
| 마른미역 | 100 | 894 | 2~4월 | 7~12월 |
| 冷凍오징어 | 12,000 | 28,080 | 10~12월 | 2~6월 |
| 冷凍조기 | 1,000 | 7,755 | 3~4월, 10~12월 | 1~2월, 9~10월 |
| 冷凍고등어 | 5,000 | 10,205 | 8~12월 | 2~6월 |
| 冷凍명태 | 8,000 | 5,500 | 8~11월 | 12~3월 |
| 冷凍갈치 | 1,000 | 7,634 | 9~11월 | 3~7월 |
| 마른멸치 | 300 | 2,649 | 8~11월 | 3~7월 |
| 마른오징어 | 200 | 2,416 | 10~12월 | 3~8월 |

資料 : 해양수산부 유통기획과

註 : 사업시기는 생산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급 및 가격관리를 점검해 나가며, 또한 설날, 추석 및 월동기, 성수기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성수품의 수급 원활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第 2 節 流通構造 改善

1. 流通施設 擴充

'97년도에 수산물위판장, 수산물종합판매장, 감천항유통가공단지시설 등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80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신속한 揚陸과 販賣를 위한 위판장시설에 21억원을 투자하여 1,724평을 새로이 건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위판 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어업인단체의 직출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 종합판매장 5개소 150억원, 수산물직판장 5개소 20억원, 활어 및 냉동·냉장 수송차량 20대, 3억원을 산지조합 등에 투자하고, 위판장 폐수처리시설 2개소에 4억원을,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3개소에 27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汚廢水를 처리함으로써 연안의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감천항에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을 위해 '95년부터 2000년까지 총 3,01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서울 서남권 수산물공판장 1개소 건설을 위해 '93년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308억원을 투자하는데 '97년에는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 産地 委販制度 改善

연근해 수산물의 産地去來制度 개선을 위하여 '96.8.1부터 실시한 제2단계 自由販賣制에 이어 제3단계 자유판매제를 당초 계획대로 '97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실시결과를 정밀분석 하고 생산어업인, 산지수협, 仲都賣人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본 제도개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등 보완대책도 강구토록 할 것이다.

3. 消費地 流通機能 強化

수산물의 流通段階를 단축하고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자단체의 직출하를 활성화하기 위한 水産物直販場을 산지조합에 5개소 20억원을 지원하고, '93년부터 건설중인 서울 외발산동의 水産物共販場 시설에 93억원을 투자하여 건설중에 있다. 그리고 저렴하고 값싼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내륙지공판장 기능을 활성화해나가며, 水産部類 도매시장 내에서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上場賣買를 실시하고, 국산 수산물중 굴비, 아귀, 복어, 냉동홍어, 등 101개품목을 지정하여 原産地表示制를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유통정보의 확대보급 및 자동응답기 설치 확대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表 97〉

’97 規格出荷 事業計劃

(單位 : 톤, 百萬元)

| | 出 荷 組 合 | 物 量 | 財 源 別 | | |
|-----------|--|--------|--------|-------|--------|
| | | | 計 | 農安基金 | 自 擔 |
| 計 | 31개 조합 | 24,640 | 17,210 | 4,303 | 21,513 |
| 간 미 역 | 강진, 완도, 약산, 금일, 소안, 장흥 | 1,732 | 1,357 | 339 | 1,696 |
| 갈 치 | 강화, 군산, 거문도 | 52 | 210 | 52 | 262 |
| 마 른 멸 치 | 강화, 군산, 완도, 약산, 소 안, 진도, 고흥, 여수, 거제, 고성, 삼천포, 통영, 권현망, 경남정치 | 8,254 | 7,744 | 1,936 | 9,680 |
| 마 른 문 어 | 고흥 | 36 | 150 | 38 | 188 |
| 건 썰 은 미 역 | 완도, 금일 | 62 | 396 | 99 | 195 |
| 고 등 어 | 대형선망 | 150 | 100 | 25 | 125 |
| 굴 | 웅진, 고흥, 굴수하식 | 2,686 | 1,100 | 275 | 1,375 |
| 김 | 강화, 강진 | 9 | 43 | 11 | 54 |
| 꽃 게 | 강화, 인천, 군산, 진도, 근해통발 | 1,637 | 1,447 | 363 | 1,810 |
| 오 징 어 | 군산 | 33 | 54 | 13 | 67 |
| 마 른 미 역 | 진도, 장흥 | 18 | 88 | 22 | 110 |
| 마 른 실 미 역 | 완도, 약산, 금일 | 105 | 592 | 148 | 740 |
| 마 른 새 우 | 보령, 군산, 거문도 | 12 | 120 | 30 | 150 |
| 마 른 오 징 어 | 흑산도, 울릉 | 63 | 300 | 75 | 375 |
| 멸 치 젓 | 보령, 경주 | 450 | 277 | 69 | 346 |
| 바 지 락 | 웅진, 고흥 | 388 | 350 | 88 | 438 |
| 새 우 젓 | 강화, 보령, 신안 | 218 | 434 | 108 | 542 |
| 고 막 | 고흥, 보성 | 1,094 | 280 | 70 | 350 |
| 우 령 쉐 이 | 우령쉐이 | 7,500 | 1,500 | 375 | 1,875 |
| 조 기 | 안강망, 강화, 인천, 보령, 군산 | 68 | 548 | 137 | 685 |
| 피 조 개 | 보성 | 25 | 120 | 30 | 150 |

資料 : 해양수산부 유통기획과

4. 水産物 規格化

수산물의 규격화와 포장을 개선하여 수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위생적인 상품을 공급하고 생산 어업인에게는 受取價格을 높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안기금 43억원을 지원하여 24,640톤을 규격출하할 계획이다.

第 3 節 加工産業 育成

1. 加工製品 生産

水産物 加工品の 生産은 國民所得의 증가에 비례하여 매년 증가되어 왔으며, 加工消費패턴도 점차 多樣化 高級化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히 國民 생활수준의 향상, WTO체제 출범이후 飲食文化의 國際化 추세와 加工品 소비 사이클이 짧아짐에 따라 國民 保健衛生에 安全하고 便利化 多樣化 高級化된 加工品 生産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97년도 加工製品 生産계획은 총 1,873천톤으로서 산지별로는 沿岸海製品 1,054천톤, 遠洋製品 819천톤을 生産 供給할 계획이며, 處理加工 方法別로는 어육연제품, 통조림품 등 高次加工品 400천톤, 건제품, 해조류제품 등 單純加工品 1,473천톤을 生産할 계획이다.

또한 水産食品의 安全性 확보를 위하여 國際적으로 시행이 확산 추세에 있는 危害要素重點管理制度(HACCP)가 國內 水産物 輸出 加工業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냉동품, 건제품, 어육연제품 등 6개제품 44개품목에 대한 加工工程別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마련, EU 및 미국지역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2. 加工産業 支援

水産物 加工은 원료조달의 불균형과 沿近海 水産資源 감소로 인한 優良原料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原料價 및 賃金上昇 등에 의한 채산성 악화, 상품의 계획 생산의 어려움 등이 있다.

따라서 水産物 輸入開放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水産物の 消費増大 및 처리가공 시설 확대로 新製品 개발 촉진을 위해 水産物 加工産業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97년도에는 附加價値가 높은 水産加工品の 위생적 처리 및 품질향상 등 冷凍冷蔵施設의 擴充을 위하여 冷凍冷蔵新設 新設사업에 13개소 195억원을 지원하며, 地域 傳來의 水産特産物을 보전 육성하여 漁村所得源 개발을 위한 産地加工 시설에 6개소 46억원, 國內産 水産物을 이용한 건조 냉동 발효 등의 수산물 特殊加工 시설 3개소에 60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수산가공품의 衛生的 處理로 品質向上을 기하기 위하여 加工業體의 시설 現代化 事業으로 10개소 25억원의 지원과 가공식품 개발촉진 및 가공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加工業體 운영자금으로 120개소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水産物の 양육, 처리가공, 유통의 계열화로 物流費用을 절감하며, 수산물의 위생적인 加工處理 및 계열화와 需給조절로 物價安定에 기여하고 附加價値를 제고하므로써 漁業人 소득증대와 고용증대는 물론 地域經濟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산 감천항의 水産物綜合加工團地 조성 사업을 '95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97년도에는 업무복지시설, 공해방지시설, 하역시설 등 共同利用 施設에 3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品質認證制度 推進

水産物 品質認證制度란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 品質管理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그 제품의 가치를 認證하고 증표를 표시하여 시장에 出荷토록 하므로서 商品性向上과 공정거래를 도모하여 生産者와 消費者를 동시에 保護하는 한편, 水産物 輸入 완전개방에 따른 外國産 수산물의 國內産으로의 둔갑판매 防止를 목적으로 지난 '93년부터 實施하여 왔다.

동제도에 의한 認證은 水産傳統食品 品質인증과 特産物 品質인증으로 구분되며 水産傳統食品은 예로부터 傳來되어 오는 우리 固有食品의 계승, 지원, 육성을 위해 품목을 指定하고 공장심사 및 品質試驗후 그 품질을 인증하여 물레방아마크를 商品에 부착 출하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건포류, 건해조류, 젓갈류등 11個品目이 指定되어 11개사에서 生産, 出荷하고 있으며 特産物品質認證은 產地特産物을 대상으로 品質審査後 인증하고, 그 인증한 商品에 "品"자마크를 표시하여 出荷하는 制度로서 현재 마른오징어, 멸치, 굴비, 옥돔, 한치, 꽃새우, 덜마른오징어, 간미역, 간다시마, 김, 찢돔등 19個品目이 인증되어 市場에 출하되고 있다

앞으로 國民所得 향상에 따라 품질 좋고 안전한 食品을 선호하는 消費者의 소비패턴변화에 부응하고 外國産 수산물과의 差別化를 위해 認證品目を 계속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弘報로 生産, 출하가 增大되도록 해 나갈 計劃이다.

第 4 節 水産物 検査

1. 検査制度 改善

水産物 수출에 대한 需要者 요구등 수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과정검사를 輸出品에서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경우와 외국과의 수산물 수출에 관한 협정, 양해각서 또는 특정수입조건 체결로 무역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현실화하였고, 업계의 경비절감등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水産物의 검사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였으며, 검사표준변경승인시 수요자의 요구 표준이 명시된 信用狀 또는 需要者 要請書를 첨부하도록 하여 透明性을 제고하였다.

또한, 希望検査의 경우 검사를 받고자하는 항목에 한하여 검사를 하게 하고, 수요자가 요청한 표준에 따라 검사하여 기준이내일 경우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 간소화를 위해 검사를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량변경승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수입수산물은 國家相互主義 원칙에 의한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및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제품은 서류검사로 전환하는 반면 중금속, 항생물질등 위해물질 함유로 문제가 제기된 수산물과 국가별, 수출회사별, 제품별로 최초로 수입하는 수산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제품은 정밀검사를 강화하였다.

특히 정밀검사 비율 축소와 수입자유화에 따른 저질수산물 방지를 위하여 서류 및 관능검사 대상 수산물에 대하여는 무작위표본검사(Random sampling)를 強化하여 수산물 安全性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第 5 節 水産物 輸出入 對策

1. 輸入對策

'97.7.1부터는 나머지 수입제한중인 31개품목이 개방됨으로써 390개 수산물 전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개방무역체제의 새로운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輸入開放 확대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水産物 輸入管理 對策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수입 자유화 품목 중 국내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하여는 調整關稅 부과 및 세율인상을 추진해 나가고

둘째,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한시적인 수입제한 조치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구별 수협 등 16개 단체를 모니터링 전담부서로 지정, 개방피해에 신속히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셋째, 수입수산물의 不法僞裝 수입을 방지하고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넷째, 저질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를 위하여 검사장비를 보강하고 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表 98〉 '97. 7. 1 輸入自由化 品目現況

| 번호 | 품 명 | HS 번호 | 관 세 율(%) | | |
|----|--------------------|--------------|----------|-------|-------------|
| | | | 기본 | '97양허 | '97적용 세율 |
| 1 | 뱀장어(실장어 제외, 활어) | 0301.92.9000 | 10 | 미양허 | 10 |
| 2 | 방 어(활어) | 0301.99.2000 | 10 | 미양허 | 10 |
| 3 | 넙 치 류(활어) | 0301.99.8000 | 10 | 미양허 | 10 |
| 4 | 고등어(신선·냉장) | 0302.64.0000 | 20 | 미양허 | 20 |
| 5 | 명 태(신선·냉장) | 0302.69.1000 | 20 | 미양허 | 20 |
| 6 | 갈 치(신선·냉장) | 0302.69.3000 | 20 | 미양허 | 20 |
| 7 | 기타어류(신선·냉장) | 0302.69.9090 | 20 | 미양허 | 20 |
| 8 | 갈 치(냉동) | 0303.79.3000 | 10 | 미양허 | 10 |
| 9 | 조 기(냉동) | 0303.79.6000 | 10 | 14 | 10 |
| 10 | 떡 장 어(냉동) | 0303.79.9092 | 10 | 미양허 | 10 |
| 11 | 홍 어(냉동) | 0303.79.9093 | 10 | 미양허 | 조정50 |
| 12 | 밀크피쉬(냉동) | 0303.79.9094 | 10 | 미양허 | 10 |
| 13 | 민 어(냉동) | 0303.79.9095 | 10 | 미양허 | 조정100 |
| 14 | 기타어류(냉동) | 0303.79.9090 | 10 | 미양허 | 10 |
| 15 | 멸 치(건조) | 0305.59.2000 | 20 | 미양허 | 20 |
| 16 | 새 우 살(냉동) | 0306.13.1000 | 20 | 미양허 | 20 |
| 17 | 새 우(건조) | 0306.23.2000 | 20 | 미양허 | 20 |
| 18 | 오 징 어(냉동) | 0307.49.1020 | 10 | 미양허 | 조정30 |
| 19 | 오징어와 갑오징어(건조) | 0307.49.3000 | 10 | 미양허 | 10 |
| 20 | 전복(산것, 신선·냉장) | 0307.91.1200 | 20 | 미양허 | 20 |
| 21 | 기타 연체동물(산것, 신선·냉장) | 0307.91.1990 | 20 | 미양허 | 20 |
| 22 | 바 지 락(냉동) | 0307.99.1130 | 20 | 미양허 | 20 |
| 23 | 기타 연체동물(냉동) | 0307.99.1190 | 20 | 미양허 | 20 |
| 24 | 김(마른 것) | 1212.20.1010 | 20 | 미양허 | 20 |
| 25 | 기름담근 다랭이 통조림 | 1604.14.1011 | 20 | 44 | 조정40 |
| 26 | 보일드한 다랭이 통조림 | 1604.14.1012 | 20 | 44 | 20 |
| 27 | 기타 다랭이 통조림 | 1604.14.1019 | 20 | 44 | 조정40 |
| 28 | 기름담근 가다랭이 통조림 | 1604.14.1021 | 20 | 44 | 조정40 |
| 29 | 보일드한 가다랭이 통조림 | 1604.14.1022 | 20 | 44 | 20 |
| 30 | 기타 가다랭이 통조림 | 1604.14.1029 | 20 | 44 | 조정40 |
| 31 | 김(조제한 것) | 2106.90.4010 | 8 | 미양허 | 8 |

資料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

2. 輸出對策

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수출증대를 통한 漁業人 所得增大에 기여하고, WTO출범등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水産物 輸出隘路 打開 및 輸出促進 對策』을 수립,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의존 및 일본위주의 수출탈피와 고차가공품 수출을 통한 輸出競爭力의 제고를 基本方向으로 삼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수출증가 가능품목의 지속적 개발 및 넓치, 피조개, 명란, 김 등을 輸出戰略品目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출전략품목을 개발 및 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중국, 유럽, 러시아 등에 海外市場 調查團을 파견하는 한편 일본 및 중국에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별 교역장애의 제거를 위한 通商外交 活動을 강화하여 일본의 김수입량 확대 및 IQ할당액 증액 등 수입규제 완화와 대일 수출패류 위생관리 강화 등 식품위생강화를 통한 교역장애 요소를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활어의 규격화를 통한 부가가치제고를 위하여 '97년부터 수출활어축양시설사업에 5개년에 걸쳐 35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가공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등의 지원을 통해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新製品開發을 추진하여 해외시장 확대 및 수출 수산물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수산물 가공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는 산업연수생의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輸出收買資金을 '96년의 269억원에서 '97년에는 323억으로 확대지원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각종 輸出規制의 緩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수출애로 상담실 운영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第 6 章 遠洋漁業의 活性化

第 1 節 國際漁業 協力 強化

1. 兩國間 漁業協力 推進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排他的經濟水域 (EEZ) 선포동향에 따라 한반도 주변수역내의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을 위해 일본과는 기존 어업협정의 개정, 중국과는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어업협정 체결국과의 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쌍무간 회의를 개최하고 상대국의 수산행정 책임자의 초청, 어업교섭단파견 등을 통해 어업 협력을 확대, 증진해 나갈 계획이며, 앙골라 및 세이셸 등 국가와의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제협력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 어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表 99>

漁業協定 締結現況(13個國)

| 締結國 | 締結日 | 發效日 | 備 考 |
|---------|-------------|-------------|---|
| 計 | | | 13個國 |
| 日本 | '65. 6. 22 | '65. 12. 18 | 12個月前 通告時 終了 |
| 뉴질랜드 | '78. 3. 16 | '78. 3. 16 | 6次 延長('96. 10. 1~'97. 9. 30) |
| 이란 | '77. 5. 11 | '78. 4. 1 | 6個月前 通告時 終了 |
| 투발루 | '80. 6. 18 | '80. 6. 18 | 6個月前 通告時 終了 |
| 북아일랜드 | '80. 8. 25 | '80. 8. 25 | 3個月前 通告時 終了 |
| 솔로몬 | '80. 12. 12 | '80. 12. 12 | 12個月前 通告時 終了 |
| 키리바시 | '80. 12. 18 | '80. 12. 18 | 6個月前 通告時 終了 |
| 불란서 | '80. 9. 19 | '80. 12. 19 | 3個月前 通告時 終了 |
| 호주 | '83. 11. 23 | '83. 11. 24 | 12個月前 通告時 終了 |
| 모리타니아 | '84. 1. 7 | '84. 1. 8 | 6個月前 通告時 終了 |
| 에코아도르 | '84. 5. 22 | '84. 9. 19 | 6個月前 通告時 終了 |
| 러시아 | '91. 9. 16 | '91. 10. 22 | 5年間('96. 10. 21) 유효후 6개월전 폐기없을시 海 1年씩 延長 |
| 파푸아뉴기니아 | '92. 1. 25 | '92. 4. 15 | 5年間('97. 4. 14) 유효후 12個月前 通告時 終了 |

資料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담당

2. 國際 水產機構와의 協力

지속적 원양어장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국제수산기구는 물론 우리와 관련된 지역수산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UN 公海魚族保存協約('95. 8월 채택),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95. 10월 채택), 편의국적선 금지협정('93. 11월 채택) 등 국제어업질서의 근간이 되는 국제협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 북태평양소하성어족보존협약

(NPAFC) 등 우리나라 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가입 수산기구에도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어장확보를 꾀하고, 우리나라의 연어방류사업과 관련하여 모천국(母川國)의 지위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설립키로 합의한 북태평양참치과학위원회 및 남태평양수역 수산기구에는 설립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조업국으로서 유리한 입지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第 2 節 海外漁場의 持續的 確保와 競爭力 提高

1. 海外漁場의 持續的 確保

가. 참치漁業

우리나라 참치漁業은 旋網漁業의 경우 주로 南太平洋에서 操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延繩漁業은 남태평양 외에 西部印度洋, 中部大西洋(地中海포함)에서도 조업하고 있으며 최근 신어장개발 차원에서 印度洋南部(남위 40°~45°)에서 남부참다랑어를 어획대상으로 소수의 연승어선이 시험적인 조업을 하고 있다.

최근 FFA(南太平洋水産委員會), ICCAT(大西洋참치保存委員會)등 國際水産機構의 漁業規制 강화등으로 참치漁業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나 沿岸國과의 漁業協力 강화 및 CCSBT(남부참다랑어보존위원회)등 國際水産機構會議에 적극 참여로 우리 참치漁場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나. 오징어漁業

우리나라 오징어 主漁場은 沿近海와 南西大西洋, 뉴질랜드, 페루 水域이며, '85년 南西大西洋 漁場이 開發되면서 오징어채낚기 漁船이 크게 늘어나 '97년에는 南西大西洋 漁場(포크랜드, 아르헨티나, 우르과이)을 위주로 124척이 作業중에 있으며, 오징어를 漁獲하는 트롤漁船도 南西大西洋, 뉴질랜드 水域에서 30여척이 操業하고 있다.

한편 빨강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北太平洋 流刺網漁船이 UN決議에 따라 '93.1.1부터 操業이 中止됨에 따라 北太平洋에서의 오징어채낚기 漁場을 적극 開發중에 있으며, 알젠틴 管轄水域內에 '95년 처음으로 備船入漁 方式으로 8척이 操業한데 이어 금년에도 우루과이에 처음으로 9척이 입어허가를 득하여 操業중에 있다.

오징어어업은 1997년 오징어가 輸入自由化되므로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고 自由로운 競爭操業으로 自生力を 키워나가기 위하여 '96.1.1부터 許可制度를 改善, 業體가 實情에 맞는 水域을 自律적으로 選擇操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오징어 市場의 國際化, 未開拓 漁場 開發등 漁業 經營 安定化를 繼續 推進해 나갈 計劃이다.

1) 南西大西洋

南西大西洋 오징어채낚기어업은 '85년도에 처음으로 채낚기선 20척이 出漁하여 10천톤을 어획한 이래 漁船隻數 및 生産量이 急激한 伸張勢를 보이고 있다.

'96년도에는 채낚기선 105척, 트롤漁船 20척과 아르헨티나수역 채낚기 11척이 操業하여 118천톤을 어획하였으며 '97년에는 前년도 수준의 어선이 作業중에 있으나 유래 없는 好況으로 漁獲量이 대폭 增加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페루, 뉴질랜드 水域

'96년도 페루수역 오징어채낚기漁業의 쿼타는 48척분의 54,368톤을 확보하였으나, 전반적인 어획저조로 '97.2월 期間終了時까지 13,786톤의 漁獲쿼타를 消盡하여 전체 漁獲쿼타의 25%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97년에는 페루와 협의하여 '96년도의 어획부진에 따른 미소진 쿼타중 9,520톤을 이월조업 중에 있다.

뉴질랜드水域은 채낚기의 경우 '96년에 1척이 操業한바 있으나, 漁場의 불확실성으로 동 漁場의 操業을 기피하고 있는 實情이며, 기존 트롤선들은 계속해서 오징어와 기타 雜漁 操業이 예상된다.

다. 트롤漁業

1) 北洋 트롤漁業

北洋 트롤漁業은 명태를 主捕獲대상으로 러시아經濟水域과 일본 北海道周邊水域을 중심으로 操業하고 있는 업종으로 '97년에도 계속적으로 韓·러 및 韓·日間 어업협력을 강화하여 漁場의 지속적 확보 유지와 관련사업의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北海道周邊水域은 '94년 UN海洋法協約의 發效와 더불어 '96년 兩國政府의 200해리 經濟水域 宣布등과 관련하여 政府間 교섭이 進行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나 우리 업계의 입장과 어업여건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교섭해 나갈 계획이다.

2) 海外트롤漁業

뉴질랜드水域과 인도네시아水域을 중심으로 操業중인 太平洋트롤漁業은 최근 沿岸國의 資源自國化 정책에 따라 어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既存漁場의 지속적 유지확보와 병행하여 새로운 漁場의 개발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西部아프리카 및 앙골라水域, 南西大西洋公海 및 포클랜드水域에 出漁 操業중인 大西洋 트롤漁業은 아프리카 沿岸國의 새로운 漁場開發을 통한 入漁 확대와 既存 南西大西洋水域등 操業漁場의 기득권 확보에 진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등 沿岸國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안전조업이 보장되지 않던 印度洋 트롤漁業이 최근 오만국을 중심으로 조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遠洋漁業 競爭力 強化 方案

우리나라 遠洋漁業은 1957년도에 처음으로 인도양에 진출한 이후 成長과 發展을 거듭하여 현재 우리나라 총수산물 생산량의 22%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97%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나 '90년대 들어 주요 沿岸國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기구의 公海操業 規制措置로 북태평양 오징어流刺網漁業과 베링公海, 북대서양 수산기구(NAFO)水域 등의 주요어장이 상실되고 入漁料 및 漁撈經費 상승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91년도이후 131個社가 不渡, 倒産 및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한편, 국내 水産物의 需要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沿近海漁業은 沿岸漁場의 汚染과 濫獲등으로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는 한계상태에 있는 실정으므로 부족한 국내 水産物 공급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원양어업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량의 증대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遠洋漁業의 國際競爭力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對策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은 대내외적인 漁業與件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提高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遠洋出漁資金을 '96년도 2,550억원에서 '97년도에는 3,400억원으로 늘려 支援하므로써 자금압박을 解消하도록 할 계획이며, 원양자원의 보유국인 주요沿岸國과는 어업협정의 체결등 어업교섭 강화와 合作 共同漁撈事業을 확대해 나가고, 저개발 국가와는 자본 기술협력의 강화 등 다각적인 漁業進出方案을 모색하여 해외어장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부족한 船員人力難을 解消할 수 있도록 外國人 船員의 雇傭範圍와 兵役特例 범위의 확대와 아울러 국제어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양어업의 操業水域을 大洋別로 확대하고, 기존 허가척수 범위내에서 操業水域 및 업종간 전업을 허용하는등 원양어업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원양어선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원양어선의 대체용 어선에 대하여 船齡, 톤급에 제한없이 기간용선이 가능하게 하고 또한 타인에 대한 승계자격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遠洋漁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양어업 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96년도부터 매년 10억원씩 지원되는 신어장개발자금을 '97년도에는 융자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성있는 해외어장 및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97년도에는 인도양 고위도어장의 남부참다랑어를 확대개발하고 남빙양어장의 오징어자원개발등 다양한 魚種開發을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합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합작투입어선에 대하여는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하고 관세감면 품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第 7 章 水産技術의 開發 및 普及

1997년도 수산기술개발 연구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한층 강화하여 실용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WTO 체제 등에 대처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산업의 고비용, 연안어장 환경악화, 어병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새로운 해양질서 출범에 따른 排他的經濟水域內 TAC 제도 도입 등 수산자원의 적정 이용 관리, 해양환경 보전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아울러 수산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尖端水産技術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립수산진흥원은 이를 위하여 모두 15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97.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설립을 계기로 수산경제 연구기능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이관하여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동해수산연구소를 포항에서 강원도 강릉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남·서해수산연구소의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를 추진하며, 포항분소와 태안수산종묘배양장을 신설하고, 국립수산진흥원내에 수산과학관을 개관하여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97. 5. 24일자 조직개편을 계기로 어촌지도소가 국립수산진

홍원 소속에서 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담당해 온 수산기술보급 및 어촌지도사업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되어 수행되고 있다.

第 1 節 養殖技術 開發 研究

1. 尖端技術을 이용한 養殖品種 改良試驗

養殖의 多變化와 品種의 多樣化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고부가 품질의 새로운 養殖品種 개발을 위하여 성장호르몬 發現 遺傳子의 鹽基序列을 결정하고, 相同性を 확인하여 大量生産을 위한 성장호르몬 발현백터를 제조하며, 양식굴 또한 優良形質 生産을 위한 경제적 형질 규명과 種間 및 種內 交雜과 遺傳的 特性을 파악하여 품종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養殖生物의 遺傳資源에 관한 조사도 1996년에 이어서 12개 品種에 대한 Isozyme 이나 mtDNA 분석을 통한 품종의 遺傳學的 特性을 파악하여 전산처리된 자료를 보관하는 遺傳子銀行(Gene bank)을 계속 운영할 것이다.

그 외에도 成長이 빠른 쏘암컷 넙치 受精卵을 554만개를 무상분양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암컷 생산기술에 대한 대어업인 이전을 위한 어미 생산용 種苗(전암컷 넙치, 性轉換된 넙치)를 생산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產卵誘導遺傳子, GnRH(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로 고나도트로핀(gonadotropin hormone, GTH)을 유도하여

成熟과 産卵을 촉진시킴으로서 種苗생산이 어려운 魚種의 養殖化 연구와 기존 養殖魚種의 産卵時期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遺傳工學的으로 産卵誘導遺傳子(GnRH)를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다. 遺傳工學的인 생산방법의 장점은 일단 효능이 인정된 유전자가 합성이 되면 기존의 화학적 합성방법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成熟과 産卵의 人爲的 調節 연구로 養殖産業 기술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種苗 生産 試驗

경제성이 높고 해역 특성에 적합한 優良 品種의 量産과 資源造成 확대를 위하여 전국 12개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총 24종 350,750천마리의 수산종묘를 생산하여 그 중 324,185천마리는 일반에 분양하고 26,565천마리는 연안어장에 방류할 계획이다. 품종별로는 어류가 넙치 등 11종에 2,650천마리(분양 825천마리, 방류 1,825천마리), 패류는 전복 등 6종에 307,200천마리(전량 분양), 갑각류는 보리새우등 4종에 40,300천마리(분양 15,560천마리, 방류 24,740천마리), 기타 북쪽말뚝성게와 보라성게, 해삼 등 3종 600천마리(전량 분양)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외에 신품종의 종묘생산기술 개발을 위하여 어류는 붉감팽, 삼세기, 독가시치, 솜뱅이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패류는 큰이랑피조개, 비단가리비 등의 종묘생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3. 海産魚類 養殖技術 開發試驗

해역별 특성에 알맞는 해산어류 양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송어를 대상으로 해상 가두리 사육시험과 월동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고,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해산양식어의 체질개선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천연 유용물질 투여 효과조사와 투여구와 대조구의 체성분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 순환여과 시스템을 이용한 양식생물의 사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침지식 해수순환여과사육 시스템에서 사료의 단백질 함량별 조피블락 및 전복 치패의 사육 실험과 회전원판 여과 사육시스템의 여과생물상 조사 및 조피블락의 적정 사육밀도를 조사할 예정이며, 유용 양식종의 번식기능연구에서는 농어를 대상으로 생식내분비 호르몬 분석 및 조절에 대하여 연구하고 해산어류의 필수 미량 영양소에 관하여는 미네랄 요구량 및 이용성과 비타민 요구량에 대한 실험을 계속할 예정이다.

4. 內水面 魚類養殖 技術開發

優良品種改良 및 生産普及의 일환으로 잉어류, 자라, 동자개, 산천어, 무지개송어등의 優良種苗 260천마리를 생산하여 양식어가에 분양 및 자원조성용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잉어, 이스라엘잉어 品種改良을 위해 선발육종 시험과 호르몬처리에 의한 생리학적 성전환으로 은어 쏘암컷 생산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回遊性 魚種인 연어의 자원조성을 위해 江原道 南大川 등에 연어치어 1,300만마리를 방류 할 계획이다.

재래어종을 관상어로 개발하기 위하여 갈겨니의 인공부화 및 자치어 사육시험으로 種苗生産技術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새로운 養殖대

상종 발육을 위해 국내산 고유어종인 쏘가리 종묘생산시험과 미꾸라지 완전양식 기술개발을 위한 자·치어기의 초기먹이생물배양 기술개발 및 종묘생산 시험과 함께 방양밀도별 양성시험으로 양식산업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시마연어의 종묘생산, 분양방류에 의한 자원조성과 양식산업화를 위해 자연산 시마연어 서식지 조사와 어미화 사육시험 및 러시아에서 移植한 칠갑상어의 양식기술개발 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친화적인 육상순환여과식 고밀도 사육기술개발을 위하여 시설자재 및 어류 성장을 극대화 하기 위한 관리운영기법을 구명할 계획이다. 淡水魚類 養殖場에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細菌性 疾病의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구명하기 위하여 魚病실태조사를 통한 질병 원인 細菌을 분리, 동정하여 주요 어병 細菌에 대한 항혈청의 제조 및 항혈청을 이용한 어병의 신속진단기술을 개발하고 담수어 백점충에 대한 예방과 치료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생부위의 병리조직학적 연구와 약제 및 환경조절에 의한 구제기술을 확립할 예정이다. 한편 냉수성 어류인 송어류의 바이러스 疾病에 관한 방역대책 기술개발을 위하여 송어류 疾病에 대한 자외선 살균효과, 가온飼育효과 및 비타민 첨가효과 시험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개발된 담수어양식기술 보급을 위하여 양어자료집을 발간하여 보급하고 양식어업인, 수산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한 기술교육 및 지도 상담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 海産漁 漁病 研究

우리나라 수산양식생물의 사육환경 악화에 따라 세균성 질병이 빈발하여 이의 치료를 위한 항생제 과다투여로 내성균 출현이 많아 약제로서는 치료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약제 비용 또한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체내 어병 원인세균의 과다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균물질을 사용함으로써 魚體의 건강도를 회복시키고 藥製投與에 의한 공중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약제 비용절감 및 양질의 수산양식생물 생산에 기여코져 정균물질과 어병세균과의 상호작용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산 양식어류의 抗病力 저하와 수질환경 악화로 새로운 바이러스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산 양식어류에 림포시스티스 바이러스 질병이 발생되어 성어의 피부와 지느러미에 흉칙한 종양을 형성하여 폐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상품가치를 저하시켜 양식어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히고 있다. 따라서 본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법과 적절한 방역대책 기술을 개발하여 해산 양식어류의 안정적 생산은 물론 상품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림포시스티스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정확한 감염원인과 방역 대책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어류의 상품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밀도 어류양식 시설에서 대량폐사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포르말린 (Formaldehyde)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유효농도나 체내 동태파악에 대한 정확한 구명없이 관습적인 사용으로 기생충구제제의 사용이 양식산업의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치료효과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상품가치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기생충 구제제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기생충 구제

제의 안전농도내에서 치료효과 시험을 실시하고 해수 및 어체 내에서의 흡수, 배설에 따른 잔류패턴을 모델링화하여 약물의 안전 사용 지침 설정으로 양식어류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6. 貝類 養殖技術 開發試驗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동해안의 새로운 양식 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해안 자연산굴의 인공종묘생산 및 양식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동해안 패류 양식 기술 개발 시험을 실시 중이다. 1~11월에 6회에 걸쳐 자연산 母貝를 수집하여 형태적인 특징 및 지역간 차이를 조사하고 1~11월에 7회에 걸쳐 자연산 모패에 대하여 생식소 절편 조직 조사에 의한 성숙도를 조사함과 아울러 자연산 모패의 성숙 시기에 産卵 誘發 方法別 산란 유발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고 수익성도 높은 수산양식 패류의 적정 양식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양식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패류의 경우, 현재 고수온기 대량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양식굴의 폐사 원인 조사를 위하여 수온 및 염분별 내성시험, 여수율 및 호흡률 조사, 체조성의 성분 변화 조사 또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녹색굴의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피조개의 폐사요인 분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貧酸素 水塊에서의 폐사, 황토에 의한 저질 개선 효과 시험, 적정 살포 밀도와 시기, 부착생물로 폐사를 일으키는 관뿔개꽃지렁이의 생태 조사, 먹이생물과 피조개의 지방산 조성 등을 연구 중에 있다. 새로운 지역 특산 양식품종 개발을 위하여는 제주도산 해가리비의 형망작업에 의한 이획량 조사, 인공 채란 및 유생사

육시험을 실시하여 유생의 성장과 생존율을 조사하고 채묘자재별로 부착한 稚貝의 분류 및 부착밀도 조사 그리고 중간육성시험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1996년 이식한 해만가리비를 국내에서 1997년 인공종묘생산 실패와 미국산 해만가리비를 이식하여 해역별 중간양성 및 본 양성 시험을 계속 실시하여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서해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양식대상 패류인 바지락 양식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지락의 서식밀도 등의 생태조사와 서식저질의 입도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여 棲息環境條件과 棲息密度간의 상관관계를 구명할 예정이다. 또한 바지락의 지속적인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사를 초래하는 기생충 (Perkinsus like sp.)에 대한 감염 조사, 병리조직학적 역학 조사 및 미세구조 등의 연구를 실시중에 있다.

유용 양식종의 번식기능에 관한 연구는 피조개 양식 환경 변화에 따른 산란기능 변화 및 모패의 건강도와 생식기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종묘의 안정적 수급 도모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母貝 棲息場 및 채묘장의 수질, 저질 및 해수중 TBT 함량 조사, 모패의 condition index, 생식주기 및 모패의 생리활성 인자를 분석할 계획이다. 패류 먹이 개발에 관한 연구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먹이의 개발을 위하여 건조먹이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굴 유생을 대상으로 생먹이, 농축먹이 및 건조먹이의 먹이효율을 비교함과 아울러 건조먹이의 먹이효율 증대방안에 관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전복의 수온 내성에 관한 연구는 지역별 참전복의 적응 온도별, 기간별에 따른 고수온에 대한 耐性 實驗과 온도 내성과 관련이 있는 열충격 단백질에 대한 발현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온도 내성 유도 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7. 海藻類 및 其他 養殖技術 開發試驗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동해안 기소現象 심화에 따라 해조류 자원이 격감하여 연안 정착성 생물의 서식지가 상실되어 수산자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회복하고 기소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海藻場 조성이 필요시되므로 동해안 해조장 조성 기술 개발 시험을 실시 중에 있다. 해조장 조성을 위한 사전 기본 조사로 적지 조사 및 기소 발생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고 해조장 조성 전후의 해조상, 생산량을 비교함과 아울러 시험 해조초 개발 및 시험 해조초 시설, 해조 移植으로 시험 해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동해안의 주요 양식 품종인 우렁쟁이의 지속적 양식 생산을 하기 위한 대량 폐사의 원인 구명, 우렁쟁이 종묘의 품종 개량과 시설 방법의 개선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우렁쟁이 폐사 지역과 비폐사지역에서 수층별 어장 환경 비교 조사, 수온과 염분 변화, 먹이생물, 우렁쟁이 크기 등에 따른 산소소비율, 스트레스를 조사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연구하고 일본산과 국내산 종묘의 부착 밀도에 따른 成長度 및 生存率 비교 조사, 양식장에서의 생균수 비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해수산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유용 해조류의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풀가사리 양성장의 환경 조사, 해중 양성시험, 종묘양산시험과 조직배양 시험으로써 업체의 부위별 재분화 조사와 원형질체의 분리시험을 실시 중에 있다. 김 품종 개량 및 우량종의 보존과 보급을 위하여 김 우수종자 36품종을 絲狀體로 보존 배양하여, 잇바디 돌김외 4품종 694g을 보급하고 긴잎 돌김외 5종을 양성하여 우수모조를 선발 중에 있다. 한편 미역은 독거도산 F2 및 일본의 삼륙산 종을 완도에 이식한 후 계

대 선발하기 위하여 종묘배양 2,000m와 양성시험용으로 2대 (200m)를 시설하고 상기 2품종의 성분 조성을 비교 분석 중에 있다.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서해안에서의 다시마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인공채묘 및 이식에 의한 양식시험과 아울러 配偶體에 미치는 성장물질의 효과와 착생환경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외국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보리새우 종묘생산용 어미를 국내산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내 보리새우 양식산업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하여 자연산 보리새우의 越冬 및 成熟誘導를 통한 조기 종묘생산기술의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모하 및 치하의 월동 사육시험과 안병절제, HCG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 TGE(바닷가재의 흥부신경절 추출액), 뇌추출물 주사 등에 의한 내분비 조절로써 보리새우의 성숙 유도 효과를 조사하여 양식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第 2 節 水産工學 및 加工技術開發

1. 水産工學技術開發

세계 연안국들의 新海洋 秩序 구축에 대응한 대비책으로 漁具漁法の 省力化和 연근해 어업의 지속적 생산을 극대화 할 수 있는 管理型 漁具漁法 기술 개발, 沿岸漁場 造成을 위한 人工魚礁 개발, 단위 생산량에 대한 어업 경비 최소화를 위한 각종 漁具의 구조 개선과 漁法の 과학화에 관한 연구 등을 水産工學 技術 開發의 중점 목표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가. 操業 省力化 技術開發

1) 浮力 多段階 調節式 浮子 開發

장기간 해상에 설치된 증양식 시설물은 해중 생물의 다량 부착과 양식 생물의 성장으로 인한 침강력 증대로 적정 부력이 감소되어 부력의 증대가 요구되나, 기존 부자의 부력 증대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증양식장 생력화를 위해 부력을 다단계로 任意 調節하는 조립식 부자를 개발하여 부자 보강과 교체 작업에 따른 인력절감 및 부자의 耐久性 증대로 어업경비 절감에 따른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2) 抄網漁業의 操業 自動化 시스템 開發

초망어업은 投·揚網과정이 순수 인력으로 행해지고 있어 노동 집약적인 어업 형태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어촌 인력난 해소 및 生産性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업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3) 沿岸 刺網 漁業用 돛 改良 研究

서해안은 潮流가 강하여 어업용 돛의 규모가 비교적 커서 취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돛의 크기에 비해 고정력이 약하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안 어업용 돛을 보다 소형, 경량화하여 취급이 편리하고 고정력이 우수한 돛을 개발할 예정이다.

나. 管理型 漁具漁法 技術 開發

1) 트롤망의 小型魚類 脫出裝置 開發

매년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資源濫獲의 우려가 가장 높은 트롤망에서 소형어류의 脫出率을 높여 자원손실을 방지하고, 同 어류의 자원 再加入率을 높여 대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뿐 아니라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국제 행동

지침』의 시행에 따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어업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실용화 가능한 소형어류 탈출장치를 개발할 예정이다.

2) 桁網 漁具의 漁獲 選擇性에 관한 연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형망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가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형망 어구의 패류별 어획 선택성을 究明하여 선택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적정 어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다. 人工魚礁 관한 연구

1) 立體的 魚礁漁場 造成을 위한 多目的用 魚礁開發 및 기질 다양화 연구

표·중층 어류의 서식에 적합한 부어초를 개발 보급하여 연안 어장을 立體的으로 활용하고 연안 목장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어초 기질 다양화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재질의 인공어초를 개발하여 어류 및 패조류의 서식에 적합한 인공어초 漁場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라. 漁具漁法 情報 시스템 전산화 연구

현재 우리나라 각종 어구어법 기술 정보는 과학적인 체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업인들이 漁具漁法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적지않은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발생하여 어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들 어구어법 정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전산화시켜 어업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마.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Sea anchor 개량 및 投揚錨 方法 機械化 연구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Sea anchor의 재질 및 구조개량을
 통해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양
 묘 과정의 기계화로 조업 인력을 감축케 함으로써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바. 定置網 망갈이 시스템 개발

지금까지 연구된 정치망 망갈이 시스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착 생
 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여 망갈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절감시키고 어업경영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2. 利用加工技術 開發

수산물 가공기술 개발 시험은 水産加工 副産物의 有效利用技術開發을
 위하여 참치, 굴 자숙액을 이용한 식품첨가물 소재와 발효조미료 개발
 시험 및 타우린(taurine) 등 健康機能性 有效成分의 분리, 정제 시험
 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까나리 액젓의 品質改善을 위하여 저염 액젓 제
 조 시험과 속성 발효 조건 구명 시험 및 고식염에 의하여 기호성이 떨
 어지고 있는 까나리 액젓의 품질 개선과 제조기간 단축을 위하여 까나
 리 액젓 適定 製造條件 구명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해조류 이용에 관한 연구는 해조류의 機能性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하여 염장 모자반 저장 조건 구명 및 해조요구르트 제품
 개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미생물을 이용한 수산제품의 저장 壽命延長技術 개발을 위하여 수산물에서 식품부패균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가지는 균주를 분리하여 식품 적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어패류 위생에 관한 연구는 국민 보건위생 안전성 확보와 한·미 패류위생 협정운영 및 EU 수산물 수입 특정조건 의무사항 이행 등 수출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4개소 및 지정 예정지역 2개소에 대한 위생조사와 남해안 주요패류 양식장 및 주변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미 FDA 등록 패류가공공장 3개소 및 패류위생관련 업무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한·미 합동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第 3 節 漁場環境 및 資源調查

1. 海洋 및 漁場環境調查

가. 海洋調查

해양환경조사는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의 海況變動 狀況을 신속히 파악, 예측하여 어업활동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급격한 해양환경 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어장탐색 경비 절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아울러 어장형성의 해양학적 요인분석으로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수산진흥원은 미국의 海洋觀測 위성인 NOAA 위성으로부터 매일 4~6회 위성 영상자료를 수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즉시 '수온 자료 속보'로 현장의 어업인들에서 FAX로 전송하여 활용하게

하고 있으며, 동·서·남해의 3개 해역 175개 정점에서 격월로 실시한 정선 해양관측자료와 연안 75개 관측점에서 측정 한 수온 및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주간 및 월간 해황변동을 예측하여 ‘週刊 海況豫報’ 및 ‘이달의 水産消息’에 게재·배포하고 있다. 또한, GMS-5 위성자료를 수신·분석하여 서부태평양 주요어장의 수온정보를 매일 획득하고 있으며, 1997년 후반기에 발사 운행될 Seastar 위성 (한국 연근해 먹이생물량 분포 조사위성) 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자료센터(KODC)에서는 국내외 해양조사자료 및 수산정보를 수집 대국민 해양정보 제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지금까지 흑백자료로 제공하던 수온자료속보 역시 인터넷의 web 서비스를 통한 color 영상 제공으로 첨단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해양과학조사 자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양조사기관에서 얻어진 해양과학조사자료의 공동 이용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나. 漁場環境 調査

육지로부터의 산업폐수 및 도시하수 등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수질 및 저질오염과 埋没干拓에 따른 연안어장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연안어장의 환경개선 및 효율적 관리 기술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에 대한 해양오염조사, 수산자원 보전지역 수질조사, 赤潮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조예찰 및 예보에 관한 연구, 有害 적조생물과 오염물질과의 관계 연구, 적조해역 퇴적물 정화기술개발연구 및 연안양식장 自家汚染에 관한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 海洋汚染測定網 調査 및 水産資源 保全地域 水質汚染 調査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환경과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이용효율의 극대화

를 위해 전국 60개 연안해역에 240점, 동·서·남해의 6개 근해해역에 40점의 해양오염측정망을 구성하여 연안해역은 4회, 근해해역은 1회 조사하며, 오염심화 해역에 대한 底質의 중금속조사, 유기물조사, PCB조사 및 유기주석화합물 오염조사 등 연안오염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연근해의 어장 환경관리 및 보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수산자원 보전지역(해면 10개소, 내수면 19개소)의 환경변화를 파악하여 수산자원 보전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 赤潮豫察 및 豫報研究

진해만을 비롯한 동·서·남해의 적조발생해역에 대하여 선박 및 항공 감시를 병행 실시하여 적조발생상황을 赤潮畫像분석 정보전송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적조발생의 시공간적 분포상황 파악 및 통신망을 이용한 적조화상 전송으로 수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3) 赤潮被害 對策研究

有害性 赤潮로부터 수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 적조생물과 오염물질과의 관계연구, 적조 상습 발생해역의 퇴적물 정화기술 연구, 어류 및 패류양식장의 自家汚染 및 적정 수용량 산정 기법을 연구하여 적정 어장 환경유지 및 지속적 생물생산을 도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2. 漁業資源調查

가. 沿近海 資源調查

연근해 어업자원의 持續的 生産과 合理的 管理를 위하여 沿近海主要 漁業資源에 대한 生物學的 조사와 資源動態調查를 실시하여 年齡과 成

長, 再生産力, 난치자 분포, 漁獲強度 등의 經年變動에 關하여 研究하고 있다.

주요 어업자원에 대한 신속한 資源量 推定과 時空間的 分포특성을 研究하기 위하여 과학어탐 및 어획시험에 의한 漁場群集 生態調査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의 安定的 生産을 유지하고 漁業 能率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어업별 어장형성 정보와 어황전망을 분석하여 주간 및 월간 漁況豫測을 실시하고 있다.

EEZ(배타적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어업대책의 일환으로 연근해 주요 12개어업의 어획실태 분석과 어종별 어획동향, 자원상태 평가 및 어종별 분포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경제수역 어업자원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중국해역에서 시험선을 통하여 저층트롤 어획시험, 과학어탐조사, 어란·치어조사,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 遠洋漁業

원양어업자원의 持續的 利用과 효율적인 國際的 漁業管理 기초를 위하여 원양 주요 어업 (트롤등 6개어업) 및 주요 어종 (황다랑어등 11개 어종)에 대한 자원변동 및 生物特性 調査, 어업자원 개관 작성 및 자원관리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어종별 생태학적 특성 파악, 자원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대서양 다랑어 보존위원회(ICCAT) 등 16개 국제수산기구와 원양어업 정책자료 및 조업선의 조업능률 향상 지원을 위한 자료로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공해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양어선(트롤, 다랑어연승, 선망, 쫄치붕수망, 오징어채낚기 등)에 승선하여 어업별 주요어종 및 부수어획종의 어획통계 조사, 생물학적 조사 등 원양어업 과학자 승선 조사 활동을 통하여 어종별 혼획상태, 어장 생물의 종별 분포와 어장 환경과의 관계

를 밝혀 公海上의 국제적 분쟁에 대처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유전학적 분석 방법(미토콘드리아 DNA의 분리 및 절편 이용)에 의한 원양어업 대상 자원의 단위 系統群 및 종확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시험 조사선 부산 851호를 이용하여 베링공해 및 보고 슬로프해역의 명태 자원을 대상으로 음향어탐 및 중층트롤 어업시험조사를 실시하여 자원상태 평가 및 국제자원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원양 출어선의 선장 교육을 통해 최신 국제어장환경의 변동상황 등의 최신 정보 제공 및 시험 연구 결과 등을 배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원양 어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第 4 節 水産技術 指導・普及

어촌지도사업 목표를 현장위주의 실용기술 중점 지도로 경쟁력제고 및 소득향상, 어장환경 및 경영방법 개선으로 안정생산 도모에 두고 전국 272명의 어촌지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국 1,719개의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경쟁력있는 실용기술보급, 환경개선과 어장 관리지도, 어업인 교육 및 어업 경영지도, 어촌 후계인력 육성사업지도, 수산기술홍보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유망품종을 高所得 戰略品種으로 육성하기 위해 천해양식 패류 9종, 해조류 5종, 어류 6종 등을 대상으로 種苗生産, 養成管理, 病害對策, 營漁活動등의 중점 지도를 할 계획이며, 어촌지도소별 1품종을 선정하고 指導所, 水檢, 市·郡, 水協 등과 연계하여 지역 으뜸품종(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 어업인들이 어업의 생산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험, 교습어장사업 5개소 5품종을 선정,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어업인에게 전수할 계획이다. 연안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共同漁場의 효율적 관리와 資源造成 事業의 효과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국 연안의 공동어장에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漁業人 意識 啓導, 水産種苗 撒布 및 유용해조류 번식조장, 어장청소, 해적생물제거 등의 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指導事業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漁村指導 基盤 造成을 위해 어촌지도소 2개소를 신·증축하고 지도용 장비 50종 440점을 보강할 계획이며, 기술지도선 1척을 건조 배치함으로써 신속하고 보다 과학적인 漁村 指導事業을 추진하여 지도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輸入開放에 대응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學界, 業界의 專門家 및 研究職 公務員을 초청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어업인후계자, 자원 어촌지도자, 전업어가를 대상으로 영어일지 제작배부, 영어설계 지도를 실시하고 기록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漁村의 정예 인력 확보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해 선정된 '97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를 집중 지도할 계획이며, 대국민 수산시책 및 새로이 개발된 研究結果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어업인의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어업인이 원하는 신속한 水産情報 提供을 위해 공중정보통신망(천리안)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양식기술지 2종 5,000부 및 수산소식지 52회 57,000부, 주간 해·어황정보, 어장관리지도 속보 등을 발간·배부하고, 수시로 신문·잡지·라디오 등의 매스컴을 통한 弘報活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어촌지도원의 자질향상으로 대어업인 신뢰도를 높이고자 魚類養

殖, 魚類疾病, 水質分析, 赤潮, 전복양殖 교육 및 국내 선진지 견학과 선진 수산국의 연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후 해양수산행정의 일원화된 집행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조직속에 어촌지도소를 배속시키고, 수산진흥원 어촌지도과를 본부로 이관시키는 등 어촌지도 조직의 재편성을 통해 어촌지도업무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第 5 節 水産特定研究開發事業

水産特定研究開發事業은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거 農漁村開發綜合對策의 일환으로 國·公立 研究機關, 學界, 産業界 등이 공동 참여하여 수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97년도 水産特定研究開發事業은 산업과 직결되는 實用技術 開發 및 品質·生産性 向上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97년도에는 사업비 900백만원을 확보하여 中央水産産·學協同審議會에서 선정된 "국내사료개발을 위한 효모균주의 기술개발" 등 총 13개과제(新規사업7건, 繼續사업 6건)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表 100〉

'97年度 水産特定研究開發事業課題

(單位 : 百萬元)

| 課 題 名 | 事業費 | 備 考 |
|---|-----|------|
| 계 | 900 | |
| 1. 국내 사료개발을 위한 효모균주의 기술개발 | 60 | 신규사업 |
| 2. 한국전통수산물 총람발간 | 65 | " |
| 3. 수출·입 수산물의 신선도 지표 및 비파괴방식에 의한 신선도 측정 | 70 | " |
| 4. 독도해양연구, 수산자원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 80 | " |
| 5. 선단조업어선의 생인력화에 관한 연구개발 | 70 | " |
| 6. 김, 미역, 다시마를 이용한 식품개발에 관한 연구 | 70 | " |
| 7. 우리나라 주요 양식종에 대한 종보존 및 유전자 은행관리 시스템 개발 | 65 | " |
| 8. 수산용약제 연구 | 75 | 계속사업 |
| 9. 양어사료의 어분대체품 개발에 관한 연구 | 80 | " |
| 10. 황해에서 폐기물 투기가 수산환경에 미치는 영향 | 80 | " |
| 11. 어류의 유집과 구집성 고성능 수중 스피커 개발 | 80 | " |
| 12. 집어등에 의한 정치망에의 어군유도에 관한 연구 | 25 | " |
| 13. 유전공학기법을 이용한 외국산 이식어류에 대한 바이러스 질병의 신속진단 기술개발 | 80 | "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촌지도과

第 6 節 水産技術訓練

1. 公務員 教育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봉사적 공직자 양성과 世界化·情報化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전문공직자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직급별 기본교육 10회 405명,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38회 1,420명의 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본교육은 5급 54명, 6급이하 351명에 대한 승진단계별 보수교육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소양의 함양,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전문교육은 4·5급 및 유관단체 임직원 31명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海運·港灣 産業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반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화시대에 대응한 현안 정책개발능력 배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補償行政實務班 2회 100명, 재무인사실무반 1회 50명, 어병지도실무반 1회 30명, 해면양식반 1회 50명, 해양환경관리실무반 3회 150명의 교육을 실시하여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별 실용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이 가능토록 하고있고, 특히 '97년에는 기획행정관리반, 해운항만행정반, 내수면어류양식반, 수산물유통실무반 각 1회 50명씩, 선박안전관리반, 토목실무반, 통신실무반 각1회 40명씩, 시설안전점검관리반, 해양조사실무반, 항로표지반 각 1회 30명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조직 통합에 따라 다양화된 직렬 및 업무영역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적극 개발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世界化·情報化 시대에 대비한 외국어구사능력 배양과 전공무원의 컴퓨터 운용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영어 초·중급반, 일본어중급반, 중국어초급반, OA종합반, 아래아 한글반, 한글엑셀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기능직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공무원반을 신설하였으며, 3급이상 공무원 및 유관단체 임원 95명에 대한 고위공직자 연찬회와 6급이하 공무원 400명에 대해 5회의 시책교육을 계획하여 해양수산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漁業人 教育

어업인 교육은 전업어가 대상의 경영기술 교육과 산업 기능요원에 대한 情報化 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업어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적인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업종별·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어선어업반, 어류양식반, 패류양식반, 해조류양식반 총 5회 240명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어촌후계인력의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해 정보화 초·중급반 총 8회 200명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후계자 협의회 중앙 및 지역별 간부와 임원을 대상으로 간부연찬반 1회 40명,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어촌종합개발사업반 1회 50명을 개설하여 어촌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지역을 통합한 건전한 협의회 육성으로 어업인후계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육하고 있다.

이외에 어촌의 미래 주역이 될 자영수고생 70명을 대상으로 시책반 2회를 계획하여 해양수산정책의 방향을 이해시키고 21세기 海洋水産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산제조·양식 기술자격 취득자 100명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자 보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제조기술과 양식기술을 보급하여 수산관련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주민 컴퓨터반을 신설하여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第 8 章 體制와 制度의 整備·改善

第 1 節 行政規制 改革

현 정부 출범후 우리부에서는 4년여동안 規制緩和課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제수산환경변화와 수산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산행정체도의 발전에 노력하여 '97. 6월말 현재 155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그중 147여건의 개별규제를 개선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表 101〉

規制改革 課題發掘 및 推進狀況
('93~'97. 6월 현재)

(單位 : 件)

| | 계 | 완 료 | 추 진 중 |
|----------|-----|-----|-------|
| 계 | 149 | 141 | 8 |
| 행정쇄신 | 73 | 70 | 3 |
| 경제행정규제완화 | 39 | 39 | - |
| 행정제도개선 | 32 | 27 | 5 |
| 어업인 불편해소 | 5 | 5 | - |

資料 : 해양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이에 우리부에서는 21세기 新海洋競爭時代에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미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수산인의 여론 수렴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로 발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불법어업 등 어업질서문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산인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第 2 節 水産關係 하위법령 및 EEZ 關聯法令

1. 水産業法 下位法令 改正

世界化, 地方化時代에 맞추어 바다환경을 살리면서 수산업의 競爭力을 키우기 위해 기르는 어업의 集中育成 및 어촌의 綜合整備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를 뒷바침 하고 있는 水産基本制度가 변화된 漁業與件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95년도에 水産業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水産業法이改正되어 '96년부터 동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 '97. 3월 현재까지 改正된 하위법령 및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漁業免許및漁場管理에관한規則

수산업법이 개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되고, 동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 및 수산자원보호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2호)이 개정됨에 따라 대단위개발수면과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의 범위 등 동법·동법시행령 및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어장이용개발의 제한수역 및 제한품종 등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어업면허 신청시 면허를 받은 후 당해 수면에 설치할 시설의 설계도 또는 세부계획서,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계의 총회 의사록과 국립수산물진흥원장·수산연구소장 또는 어촌지도소장의 양식漁場適地調査書를 첨부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어업인의 편익과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였고,

셋째,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는 60헥타르이상으로 하고, 대단위개발수면의 합리적 운영과 어업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구별조합에 11인이상의 위원으로 대단위개발수면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어업권자가 작성·비치해야 하는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어장관리에 관한 총회 의사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였고,

다섯째,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이 취득한 어장의 행사 또는 入漁契約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1년이상 3년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이상 3년이내로 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 有料낚시터 및 體驗漁場의 指定·管理에 관한 規則

수산업법이 개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되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이 개정됨에 따라 체험 어장의 지정·운영과 이용료의 징수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을 당해 지역어업인들이 운영하도록 하여 어촌지역 소득향상

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업법 개정으로 공동어업이 마을어업과 協同養殖漁業으로 구분됨에 따라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안에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 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둘째, 體驗漁場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법령이 허용하는 어업의 방법에 따라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낚시터 또는 體驗漁場의 관리자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 관리자가 낚시어선업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어선을 포함 시키고, 동 어선에 낚시자 및 體驗漁場의 이용자도 승선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EEZ關聯 下位法令 制定

海洋法에 관한 UN海洋法協約의 發效('94. 11. 16)에 따른 일본 등 주변국의 EEZ선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 漁業資源을 능동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동 수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어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96. 8. 8 공포한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外國人漁業등에대한主權的權利의行事に관한法律」의 시행을 위한 同法施行令을 제정, '97. 8. 7부터 시행하였으며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産資源保護 및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금지되는 東·西海特定海域 및 人韓海峽중 일부 해역을 特定禁止區域

으로 설정하고,

둘째, 排他的經濟水域에서 漁業活動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附屬船의 척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어업인들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入漁料를 基本入漁料와 豫想漁獲量에 따른 入漁料로 구분하되, 기본입어료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中央水産調整委員會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하게 함으로써 입어료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넷째, 刑事訴訟法에 의한 司法警察官과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漁業監督公務員을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정하여 이 법을 위반한 선박 등에 대한 司法節次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同法律의 施行日을 '97. 8. 7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되, 中國國民에 대하여는 양국간 漁業協定 締結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이고, 중국의 EEZ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1년후인 '98. 8. 7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第 9 章 漁業人 支援 強化

第 1 節 水産資金 供給 擴大

1. 營漁資金

'97년도 營漁資金 供給規模는 '96년도에 比하여 1,000억원이 증가한 9,500억원으로 沿近海部門에 850억원이 늘어난 8,350억원, 遠洋部門에는 150억원을 늘려 1,1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營漁資金은 어업활동에 필요한 經常的 經費를 어업별 규모별로 適期에 低利로 지원하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도록 함은 물론 어업인의 金融費用 부담경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어업 규모별 지원기준을 差等化하여 偏重支援을 방지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미약한 영세 소규모 어업 및 공동 신고어업 어업인 등 자금소요가 적을수록 소요액에 대한 支援比率을 優待하고, 農林水産政策資金 貸出制度도 어업인 위주로 운용하여 2,000만원 이하(無保證 1,000만원 포함)의 자금은 1인 立保를 원칙으로 信用貸出토록 하고, 擔保 부족자는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制度의 적극 활용과 2,000만원 이하의 少額資金은 分割支給을 억제토록 하고 있다.

〈表 102〉

營漁資金 供給 計劃

(單位 : 億圓)

| | | '96 | '97 | 增 △ 減 |
|---------|-------------|--------|--------|-------|
| 所 要 額 | | 20,817 | 25,109 | 4,292 |
| 供 給 額 | | 8,500 | 9,500 | 1,000 |
| (供 給 率) | | (41%) | (38%) | (△3%) |
| 調 達 | 財 政 資 金 | 3,473 | 4,553 | 1,080 |
| | 韓 銀 借 入 金 | 1,143 | 563 | △580 |
| | 水 協 自 體 資 金 | 3,384 | 3,684 | 300 |
| | 相 互 金 融 | 500 | 700 | 200 |
| 運 用 | 沿 近 海 漁 業 | 7,500 | 8,350 | 850 |
| | 遠 洋 漁 業 | 1,000 | 1,150 | 150 |

資料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 融資事業 支援

農漁村構造改善事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는 '97년에 2,192억원을 融資하여 廢鹽田活用새우양식시설, 어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수협중 경영상태가 어려운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합경영개선자금, 수출 수산물과 관련한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수출활어 축양시설 등의 신규사업과 연근해어업構造調整, 양식어장개발, 水産物 流通施設 및 漁撈施設에 중점 확대지원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있다.

<表 103>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 融資事業 規模

(單位：百萬圓)

| | '96 | '97 | 融 資 條 件 (年利, 据置/償還) |
|----------------|---------|---------|------------------------|
| 計 | 152,848 | 219,201 | |
|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 149,354 | 215,707 | |
| ○ 養殖漁場 開發支援 | 4,703 | 6,789 | 5%, 3/7 |
| ○ 굴貝殼 處理工場 | - | 3,200 | 5%, 5/10 |
| ○ 가두리養殖場 陸上轉換 | 1,000 | 1,600 | 5%, 5/10 |
| ○ 養魚場 水質淨化施設 | 400 | 400 | 3%, 5/10 |
| ○ 淡水魚 養魚場 施設 | 1,680 | 1,680 | 5%, 3/5 |
| ○ 大單位淡水魚養殖圃地造成 | 1,820 | 1,820 | 5%, 5/10 |
| ○ 養殖用機資材供給 | 300 | 236 | 5%, 1/4 |
| ○ 沿近海 漁業 構造調整 | 3,454 | 9,645 | 3%, 5/10 |
| ○ 漁船建造 및 設備現代化 | 34,232 | 37,383 | 5%, 1~3/4~10 |
| ○ 漁船用機械供給 | 1,350 | 1,094 | 5%, 1/4 |
| ○ 漁船用機資材生産 | 1,200 | 1,200 | 8%, 0/1 |
| ○ 漁網 生産 | 6,300 | 8,000 | 5~8%, 0/1 |
| ○ 水產物 流通 施設 | 7,371 | 9,974 | 5%, 3/5~7 |
| ○ 流通 補給 施設 | 1,303 | 1,206 | 3~5%, 3/7 |
| ○ 漁村 觀光 開發 | 600 | 750 | 5%, 3/7 |
| ○ 漁村 所得源 開發 | 1,386 | 1,386 | 5%, 3/7 |
| ○ 水產物 加工 運營 | 12,180 | 14,400 | 8%, 0/1 |
| ○ 水產物處理·貯藏·加工 | 38,400 | 53,946 | 5~8%, 3~5/7~10 |
| ○ 漁業人 後繼者 | 18,725 | 22,928 | 5%, 5/5 |
| ○ 專業 漁家 育成 | 12,152 | 14,600 | 5%, 5/5 |
| ○ 先導漁業經營體 育成 | 800 | 1,200 | 3%, 5/10 |
| ○ 組合經營改善資金 | - | 20,000 | 5%, 3/7 |
| ○ 수출수산물가공施設현대화 | - | 2,000 | 5%, 3/7 |
| ○ 수출 活漁蓄養시설 | - | 210 | 5%, 3/7 |
| <農特稅轉入金事業計定> | 3,494 | 3,494 | |
| ○ 養殖漁場 開發 | 3,494 | 3,494 | 5%, 3/7 |

資料：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第 2 節 漁業人 負擔 輕減

'86년부터 실시한 政府의 農漁村綜合對策, 農漁家負債輕減對策 및 農漁村發展綜合對策 등 특별대책과 農漁家負債輕減에關한特別措置法, 自然災害對策法 및 農漁業災害對策法 등에 의한 수산자금의 金利引下, 償還延長 및 利子免除를 위해 '97년에 총 385억원의 이차보전을 하므로서 漁家에 대한 低利資金 공급과 制度圈 金融費用 및 負債償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第 3 節 水産關聯 稅制改善

1. 推進方向

정부의 조세감면 범위를 축소하려는 조세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어촌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차원의 지원을 통한 세부담 경감을 올해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漁業用機資材 附加價值稅 零稅率 適用, 免稅油類 供給對象 擴大, 어업인·수협·영어조합법인 관련 지방세 감면등 직접적인 어업 생산비 절감을 이룰수 있는 세제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UN해양법 발효로 주변 연안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97.7부터 수산물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세제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협의 추진중에 있다.

2. 漁業用機資材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對象 擴大

현재 어업용기자재중 로프, 통발, 연승, 양어용배합사료등 16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양식어업용기자재는 대부분 제외되어 정부의 기르는 어업육성 정책에 상치되므로 이를 확대코자 미 적용 43개품목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중에 있다.

3. 地方稅 減免 存置 및 擴大 推進

어업인, 수협관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등 지방세 감면시한이 '97.12.31 만료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UN해양법협약 발효와 수입수산물 완전개방등 최근 수산업계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지방세 감면준치 및 시한연장을 내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97. 9 이를 반영한 개정 지방세법이 공포된 바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영어조합법인도 어업인과 같은 수준으로 혜택 받을수 있도록 하였다.

4. 免稅油類 供給 擴大

'97년도 면세유류 공급계획량은 7,000천드럼으로 어업인 수혜액이 1,2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낙도, 벽지 소형어선에 480천드럼을 공급하여 낙후된 落島 僻地의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내수면양식시설 및 툫 건조·사육시설도 포함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 추진중에 있다

<表 104>

'97 免稅油類 供給計劃

(單位 : 千드림, 億원)

| | '95 | '96 | '97 | '97/'96 |
|---------|-------|-------|-------|---------|
| 計 | 6,511 | 6,896 | 7,000 | 102 (%) |
| 輕油 | 5,679 | 5,988 | 6,075 | 101 |
| 輕質重油 | 700 | 750 | 761 | 101 |
| 重油 | 14 | 12 | 17 | 142 |
| 揮發油 | 78 | 109 | 109 | 100 |
| 其他 | 35 | 37 | 38 | 103 |
| 漁民負擔輕減額 | 900 | 1,264 | 1,267 | 100 |

資料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第 4 節 漁船員 共濟料 支援

漁業人の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제료를 延滯하였을 경우에 종전에는 기일예고통지후 공제를 해지하기 전에 효력상실예고안내만을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별도로 納入催告 및 解止豫告通知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므로서 가능한 공제료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납입유예기간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다. '97년에도 2,914백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율은 어선주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톤수별 지원율을 달리하여 소형어선인 30톤미만 어선은 50%, 30~50톤은 20%, 50~100톤은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表 105>

漁船別 共濟料 支援率

(單位 : %)

| 톤 수 별 | 30톤 미만 | 30~50톤 | 50~100톤 |
|-------|--------|--------|---------|
| 지 원 율 | 50 | 20 | 10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업인육성과

第 10 章 新海洋秩序에 對應한 水産業 構造改善 方向

第 1 節 背景

1994년 11월 발효된 UN해양법협약과 1995년 1월 출범한 WTO 체제에 대응하여, 지금까지 정부는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994년부터 연안어업중심의 漁船 減縮을 추진하고 고소득 新品種 양식 어업을 개발하며,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漁村綜合開發을 추진하는등 부분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96.2.20일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방침을 결정하고, 일본이 동년 7월20일 EEZ유보수역에 대한 관할권 선포에 따라 우리나라도 동년 동년 8월8일 EEZ를 선포하였고 '96.5.15일 중국도 EEZ선포방침을 발표하는등 韓·中·日간에 EEZ 선포가 가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해양질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추가로 안게 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전개되는 주변수역의 어업질서속에서 21세기 선진수산업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우리 수산업의 구조를 EEZ체제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유류오염, 적조등으로 인해 날로 확산되고 있는 해양오염과 지속적인 연근해어업 생산성의 저하, 어촌의 定住環境 취약 및 어촌인력의 감소와 같은 문제가 위기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어장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신해양질서에 맞는 구조개선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그 장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第 2 節 新海洋秩序에 對應한 水産業 構造改善方向

1. 沿近海漁業 生産性 復元

70년대 이후 수산물 증산정책에 치중해 온 결과 연근해 어족자원의 濫獲과 어장환경의 악화등으로 인해 연근해어업의 생산성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70년대에는 연근해어선 톤당 생산량이 4.1톤이던 것이 80년대에는 3.5톤, 94년에는 3.3톤으로 낮아져 어선어업의 비효율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생산성을 70년대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근해 어선세력을 새로운 EEZ체제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94년에서 2004년까지 3,035척 115천 톤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의 관할수역인 EEZ 내에서의 자원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근해어선 船腹量 제한제도 및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등을 도입하고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규제를 제도화하는 등 새로운 자원관리제

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어선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로시설 및 漁具漁法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2. 기르는 어업 生産構造 調整

'96년 현재 27%인 기르는 어업의 생산비중을 2004년까지 40%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친환경적 농작형 바다목장화 조성, 적극적인 자원조성, 고효율 양식장 개발과 양식기술 첨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지정리식 어장정비를 위한 기본도를 작성하여 지역별, 양식단지별로 어장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어장 108ha를 灣 단위로 단계적으로 淨化, 정비하며 無免許, 密殖施設 등의 정비 강화 및 양식장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한편, 이의 추진을 위한 가칭 「沿岸漁場整備法」의 제정과 어장정비전문단체의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漁村 定住生活圈 開發

어촌을 어항중심으로 한 어촌소득원 개발 및 정주생활공간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어촌계 중심의 160개 권역의 조기개발을 추진하되 어항개발계획과 連繫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서 어항이 주변지역의 유통 및 관광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어항으로 개발이 필요한 소규모 港·浦口를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어촌경제권과 도시권 도매시장과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어촌의 특성에 따라 지역경제권과 전국경제권역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어촌지역의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문화·휴양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므로서 어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해 나갈 것이다.

4. 水産物 流通 및 消費構造 改善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통단계에서 物流費用을 줄이고 수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단계에서 관련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良質의 값싼 수산물을 공급할수 있는 宅配(Port to Door)유통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물류·가공기지의 건설과 產地·消費地間의 유통시설 및 유통기능 확충을 통해 소비지에의 직공급체제를 확립하고 유통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통경로 다원화를 위한 연근해어획물 自由販賣制의 조기 정착 등 유통체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유통정보망 확보을 위한 각종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海外漁場의 安定的 確保

주요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강화추세등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원양어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어장 개발 및 合作進出을 확대하여 해외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어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입어하고 있지 않은 연안국에의

입어를 추진하고 東南亞漁場, 印度洋南部 高緯度漁場, 南氷洋漁場 등 경제성 있는 어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해외어장에서의 정보 수렴 및 시험조사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해도 명태트롤어업 등 EEZ선포시 경쟁력이 약하고 국제적 규제업종에 대해 점진적인 전업 또는 감척을 지원하는 한편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와의 어업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第 11 章 海洋水産部 組織改編

第 1 節 背景

'96. 8. 8일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해양수산행정의 일원화에 부응한 바다행정의 실질적인 통합으로 해양수산부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97. 5.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第 2 節 主要內容

UN海洋法協約 發效, EEZ선포등 새로운 국제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력한 해양정책구현으로 일류 해양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을 대폭강화하였고 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한 업무와 기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동일 부서내의 상호 이질적인 업무관장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으며, 해운항만 및 수산행정 일선기관의 정책 집행능

력을 제고하고 조직 구성원간의 화학적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부의 경우, 신항만건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港灣建設局과는 별도로 신항만건설을 전담하는 신항만기획관을 설치하였으며, 동일기구(局)내 이질적인 업무관장 등으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현행 직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港灣政策局(항무국을 항만정책국으로 개편)의 선원행정을 海運船員局(해운선박국을 해운선원국으로 개편)으로 이관하고, 해양안전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海運船員局의 선박관련 조직을 海洋政策室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연안역관리의 통합조정 및 통제기능이 미흡하고, 연안역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연안역관리과를 신설하는 한편 해난사고 예방·수습, 재난관리,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업무, 오염사고 수습, 오염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실제 업무 수행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업무처리의 한계가 있어 재해관련 대책업무 총괄 및 해난, 오염사고와 재해발생시 손해배상업무등 일련의 업무를 총괄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어장보전과를 해양방재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항만의 물류체제 개선을 위한 항만구역 기계화 및 신항만건설에 따른 항만장비의 설치가 대폭증가할 전망이나 별도의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항만장비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수행이 어려워 이를 전담할 항만장비과를 신설, 항만장비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강력한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수산행정조직을 기능별로 재정비하여 『水産政策局』, 『漁業振興局』, 『漁村開發局』으로 개편하고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은 연근해과를 2개과(어업제도과, 어업관리과)로 분리하였으며, 어촌지도업무의 활성화와 어촌지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립수산진흥원

의 어촌지도기능을 본부로 이관하여 어촌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능을 보강하여 2실 6국 7관 5담당관 6담당 36과에서 2실 6국 7관 5담당관 9담당 37과 체제로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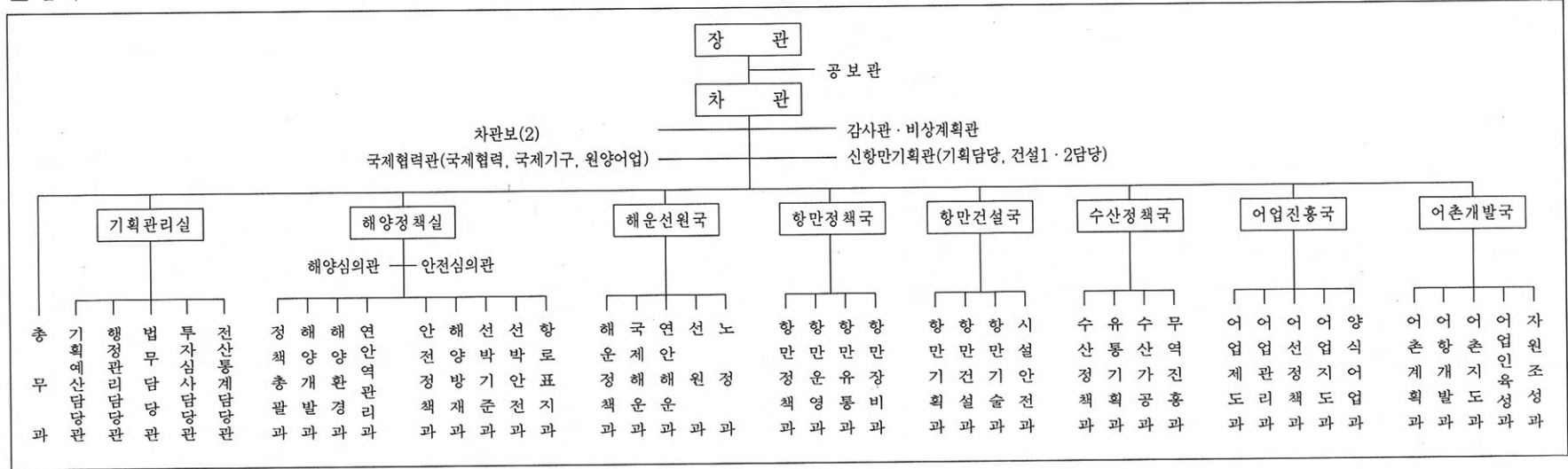
지방조직의 경우는 해운항만 및 수산행정 일선기관의 정책집행능력을 제고하고 조직구성원간의 화학적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방해운항만청(11개), 어항사무소(3개), 어촌지도소(27개)를 통합하여 11개 『地方海洋水産廳』체제로 개편하였다.

<표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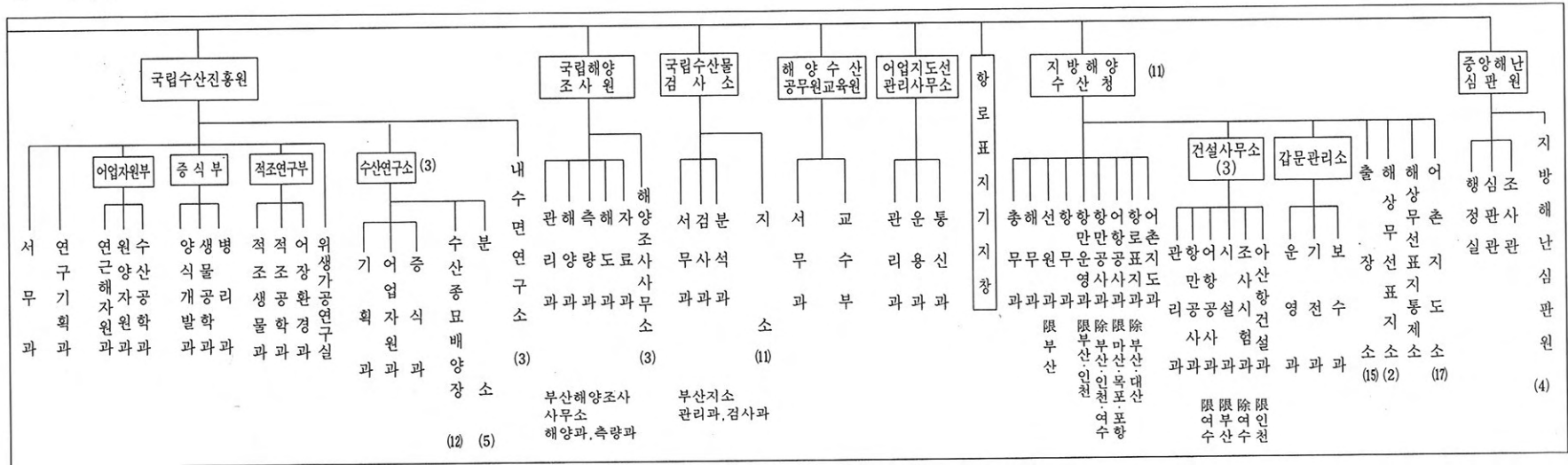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조직도표

'97.5.24

■ 본부



■ 소속기관



統計로 본 水産業 動向

1. 國 民 經 濟 主 要 指 標
2. 產 業 別 經 濟 成 長 率
3. 產 業 構 造
4. 總 人 口 斗 漁 家 人 口
5. 漁 船 勢 力
6. 水 產 物 生 產
7. 水 產 物 需 給
8. 水 產 物 輸 出
9. 漁 家 所 得
10. 漁 業 粗 收 入 及 經 營 費

1. 國民經濟 主要指標

| | 國民總生產 | | 1人當 GNP | | 디플레이터 | | 成長寄與率 ('90不變 %) | |
|-------|--------------|-------------|------------|------------|----------------|-----------------|---------------------|------|
| | 經常 (10億원) | 經常 (億\$) | 經常 (千원) | 經常 (\$) | GNP '90=100 | 農林漁業 '90=100 | 農林 漁業 | 鑛工業 |
| 75 | 10,129.2 | 209 | 287 | 594 | 19.1 | 19.7 | 14.4 | 40.6 |
| 80 | 36,857.0 | 606 | 971 | 1,597 | 50.2 | 49.1 | △11.1 | 7.4 |
| 82 | 52,460.5 | 717 | 1,341 | 1,834 | 62.9 | 56.2 | 16.4 | 24.7 |
| 83 | 62,086.0 | 800 | 1,563 | 2,014 | 66.4 | 56.1 | 9.7 | 35.3 |
| 84 | 71,044.6 | 881 | 1,763 | 2,187 | 70.0 | 61.7 | △2.4 | 54.9 |
| 85 | 79,301.1 | 911 | 1,952 | 2,242 | 73.3 | 66.4 | - | - |
| 86 | 92,909.3 | 1,054 | 2,264 | 2,568 | 76.8 | 66.2 | 5.6 | 43.2 |
| 87 | 109,726.5 | 1,334 | 2,647 | 3,218 | 80.7 | 75.0 | △6.9 | 46.0 |
| 88 | 131,971.3 | 1,798 | 3,138 | 4,295 | 86.3 | 82.2 | 6.7 | 35.5 |
| 89 | 147,941.6 | 2,204 | 3,498 | 5,210 | 90.9 | 88.0 | △1.7 | 19.3 |
| 90 | 178,262.1 | 2,518 | 4,165 | 5,883 | 100.0 | 100.0 | △4.9 | 29.3 |
| 91 | 214,239.9 | 2,920 | 4,957 | 6,757 | 110.2 | 105.7 | 0.4 | 29.0 |
| 92 | 238,704.6 | 3,057 | 5,471 | 7,007 | 116.9 | 107.2 | 9.5 | 28.0 |
| 93 | 265,517.9 | 3,308 | 6,031 | 7,513 | 122.8 | 116.8 | △4.1 | 25.1 |
| 94 | 303,772.6 | 3,780 | 6,837 | 8,508 | 129.6 | 131.2 | 1.4 | 35.9 |
| 95 | 348,284.3 | 4,517 | 7,769 | 10,076 | 136.7 | 137.0 | 2.1 | 35.2 |
| 96(p) | 386,640.4 | 4,804 | 8,487 | 10,548 | 142.0 | 139.2 | 3.3 | 30.9 |

資料 : 국민계정, 조사통계월보(BOK)

2. 産業別 經濟成長率

| | 國民 總生産 | 農 林 漁 業 | | | 鑛工業 | 建設및 電氣가스 水道事業 | 서어비 스業 | |
|--------|-----------|---------|-------|-------|------|---------------------|-----------|------|
| | | 農業 | 林業 | 漁業 | | | | |
| '90不變% | | | | | | | | |
| 75 | 6.6 | 3.7 | 5.5 | △5.8 | △4.5 | 12.4 | 8.6 | 7.2 |
| 80 | △2.7 | △19.4 | △24.1 | 21.1 | 3.7 | △1.7 | △0.5 | 2.1 |
| 82 | 7.6 | 7.2 | 10.3 | △17.4 | 0.6 | 5.9 | 16.7 | 7.7 |
| 83 | 11.5 | 7.8 | 7.9 | 24.9 | △2.9 | 14.8 | 21.7 | 11.0 |
| 84 | 8.7 | △1.4 | △2.2 | 2.6 | 3.6 | 16.3 | 8.3 | 10.3 |
| 85 | 6.5 | 3.6 | 4.4 | △8.7 | 6.2 | 6.1 | 6.8 | 9.0 |
| 86 | 11.6 | 4.7 | 5.2 | △16.1 | 13.8 | 19.0 | 6.4 | 13.2 |
| 87 | 11.5 | △6.1 | △7.2 | 5.2 | △2.2 | 18.9 | 12.5 | 14.3 |
| 88 | 11.3 | 8.9 | 11.1 | △7.5 | 0.2 | 13.4 | 8.9 | 12.6 |
| 89 | 6.4 | △1.0 | △1.6 | △7.1 | 6.2 | 4.0 | 14.2 | 8.4 |
| 90 | 9.5 | △4.6 | △4.9 | △9.3 | △0.2 | 9.3 | 24.4 | 9.9 |
| 91 | 9.1 | 0.4 | 1.4 | △14.2 | △1.2 | 8.9 | 13.7 | 10.9 |
| 92 | 5.1 | 6.0 | 5.8 | 5.9 | 8.1 | 4.8 | 0.5 | 6.9 |
| 93 | 5.8 | △2.9 | △4.0 | △9.8 | 8.0 | 4.9 | 9.1 | 7.0 |
| 94 | 8.4 | 1.6 | 0.0 | 8.0 | 3.7 | 10.4 | 6.0 | 10.8 |
| 95 | 8.7 | 2.8 | 4.4 | △9.9 | △5.1 | 10.6 | 9.8 | 10.0 |
| 96(p) | 7.1 | 3.5 | 3.3 | 1.9 | 5.4 | 7.3 | 8.7 | 8.2 |

資料 : 국민계정(BOK)

3. 産業 構造

| | 國民 總生産 | 農 林 漁 業 | | | | 鑛工業 | 建設및 電氣가스, 水道事業 | 서어비 스業 |
|-------|---------------------|---------|------|-----|-----|------|----------------------|-----------|
| | | % | 農業 | 林業 | 漁業 | | | |
| 75 | 經常 10億원 10,295.5 | 24.9 | 22.0 | 1.3 | 1.6 | 27.5 | 5.9 | 41.7 |
| 80 | 38,148.4 | 14.7 | 12.7 | 1.0 | 1.2 | 29.7 | 10.1 | 45.5 |
| 82 | 54,721.0 | 14.4 | 12.7 | 0.8 | 1.2 | 29.5 | 9.8 | 46.3 |
| 83 | 64,196.5 | 13.2 | 11.5 | 0.9 | 1.2 | 30.3 | 10.4 | 46.1 |
| 84 | 73,605.1 | 12.5 | 11.0 | 0.9 | 1.1 | 31.0 | 10.5 | 45.9 |
| 85 | 82,062.1 | 12.5 | 10.6 | 0.7 | 1.2 | 30.5 | 10.6 | 46.5 |
| 86 | 95,736.4 | 11.2 | 9.3 | 0.6 | 1.3 | 31.8 | 10.2 | 46.8 |
| 87 | 112,130.3 | 10.1 | 8.4 | 0.6 | 1.2 | 32.3 | 10.3 | 47.2 |
| 88 | 133,184.2 | 10.2 | 8.7 | 0.5 | 1.1 | 32.9 | 10.4 | 46.6 |
| 89 | 149,164.7 | 9.6 | 8.1 | 0.4 | 1.1 | 31.7 | 11.5 | 47.2 |
| 90 | 179,539.0 | 8.7 | 7.4 | 0.4 | 0.9 | 29.7 | 13.7 | 47.9 |
| 91 | 215,734.4 | 7.7 | 6.5 | 0.3 | 0.9 | 29.0 | 16.0 | 47.3 |
| 92 | 240,392.2 | 7.4 | 6.3 | 0.3 | 0.8 | 28.1 | 15.9 | 48.6 |
| 93 | 267,146.0 | 7.1 | 6.0 | 0.3 | 0.8 | 27.3 | 16.2 | 49.4 |
| 94 | 305,970.2 | 7.0 | 5.9 | 0.3 | 0.8 | 27.2 | 15.8 | 49.9 |
| 95 | 351,294.8 | 6.6 | 5.6 | 0.3 | 0.7 | 27.2 | 16.4 | 49.8 |
| 96(p) | 386,640.4 | 6.3 | 5.4 | 0.2 | 0.6 | 26.1 | 16.7 | 50.9 |

資料 : 국민계정(BOK)

4. 總人口와 漁家人口

| | 總 人 口 | | 漁 家 人 口 | | | 漁 業 家 口 | | |
|----|--------|-------|---------|-------|-------|---------|-------|---------|
| | 千名 | 增加率 % | 千名 | 構成比 % | 增加率 % | 千名 | 構成比 % | 家口當人口 名 |
| 75 | 35,281 | 1.70 | 894 | 2.5 | △2.2 | 154 | 2.3 | 5.82 |
| 80 | 38,124 | 1.57 | 844 | 2.2 | 6.7 | 157 | 2.0 | 5.38 |
| 82 | 39,326 | 1.53 | 755 | 1.9 | △2.7 | 146 | - | 5.16 |
| 83 | 39,929 | 1.46 | 739 | 1.9 | △2.1 | 147 | - | 5.01 |
| 84 | 40,406 | 1.34 | 716 | 1.8 | △3.1 | 147 | - | 4.88 |
| 85 | 40,806 | 0.93 | 689 | 1.7 | △3.8 | 145 | 1.5 | 4.75 |
| 86 | 41,184 | 0.93 | 666 | 1.6 | △3.3 | 144 | - | 4.63 |
| 87 | 41,575 | 0.96 | 635 | 1.5 | △4.7 | 141 | - | 4.50 |
| 88 | 41,975 | 0.97 | 602 | 1.4 | △5.2 | 138 | - | 4.36 |
| 89 | 42,380 | 0.96 | 561 | 1.3 | △6.8 | 134 | - | 4.18 |
| 90 | 42,869 | 0.98 | 496 | 1.2 | △11.5 | 122 | 1.1 | 4.09 |
| 91 | 43,268 | 0.93 | 470 | 1.1 | △5.4 | 120 | - | 3.92 |
| 92 | 43,663 | 0.91 | 425 | 1.0 | △9.5 | 116 | - | 3.66 |
| 93 | 44,056 | 0.90 | 405 | 0.9 | △4.8 | 114 | - | 3.56 |
| 94 | 44,453 | 0.90 | 382 | 0.9 | △5.6 | 110 | - | 3.46 |
| 95 | 44,606 | 0.34 | 347 | 0.8 | △9.2 | 104 | - | 3.33 |
| 96 | 45,545 | 2.1 | 330 | 0.7 | △4.8 | 102 | - | 3.25 |

資料 : 해양수산통계연보

주 : 1) 총인구는 연양인구(7.1기준)

2) 어가인구는 해면어업 '90년부터 피고용어가 제외

5. 漁船勢力

| | 計 | | | 動力船 | | | 無動力船 | |
|----|-------|------|--------|------|-----|-------|------|-----|
| | 隻數 | 噸數 | 隻當平均噸數 | 隻數 | 噸數 | 馬力 | 隻數 | 噸數 |
| | 千隻 | 千G/T | G/T | | | 千HP | | |
| 75 | 67.7 | 648 | 9.57 | 19.7 | 581 | 1,587 | 48.0 | 67 |
| 80 | 77.6 | 771 | 9.94 | 51.1 | 740 | 2,462 | 26.5 | 30 |
| 82 | 86.5 | 808 | 9.33 | 67.1 | 785 | 2,797 | 19.4 | 23 |
| 83 | 88.5 | 828 | 9.35 | 69.3 | 806 | 2,973 | 19.3 | 22 |
| 84 | 90.4 | 852 | 9.42 | 71.6 | 830 | 3,213 | 18.8 | 22 |
| 85 | 90.9 | 858 | 9.43 | 71.8 | 836 | 3,353 | 19.1 | 22 |
| 86 | 93.0 | 884 | 9.50 | 73.9 | 862 | 3,607 | 19.1 | 22 |
| 87 | 94.2 | 912 | 9.69 | 74.8 | 890 | 4,027 | 19.3 | 22 |
| 88 | 99.0 | 948 | 9.57 | 78.4 | 925 | 4,701 | 20.6 | 23 |
| 89 | 98.5 | 963 | 9.77 | 78.3 | 941 | 5,037 | 20.2 | 22 |
| 90 | 99.7 | 977 | 9.80 | 79.4 | 955 | 5,449 | 20.3 | 22 |
| 91 | 103.8 | 983 | 9.46 | 84.0 | 962 | 6,198 | 19.8 | 21 |
| 92 | 94.1 | 959 | 10.19 | 76.8 | 940 | 6,910 | 17.3 | 19 |
| 93 | 87.5 | 920 | 10.52 | 72.9 | 904 | 7,279 | 14.6 | 16 |
| 94 | 77.4 | 940 | 12.15 | 70.1 | 930 | 8,135 | 7.3 | 10 |
| 95 | 76.8 | 959 | 12.48 | 71.0 | 951 | 8,842 | 5.8 | 8.0 |
| 96 | 75.2 | 972 | 12.92 | 69.2 | 965 | 9,192 | 6.0 | 7.0 |

資料 : 해양수산부 어선정책과

6. 水産物 生産

(단위 : 千톤)

| | 計 | 沿 岸 | 近 海 | 遠 洋 | 養 殖 | 內 水 面 |
|-------|-------|-----|-----|-------|-------|-------|
| | 千톤 | | | | | |
| 65 | 637 | 365 | 189 | 9 | 74 | - |
| 70 | 935 | 455 | 271 | 90 | 119 | - |
| 75 | 2,135 | 819 | 390 | 566 | 351 | 9 |
| 80 | 2,410 | 803 | 569 | 458 | 541 | 39 |
| 82 | 2,644 | 822 | 653 | 528 | 596 | 45 |
| 83 | 2,793 | 773 | 714 | 615 | 644 | 47 |
| 84 | 2,910 | 804 | 720 | 658 | 678 | 50 |
| 85 | 3,103 | 838 | 657 | 767 | 788 | 53 |
| 86 | 3,660 | 891 | 835 | 930 | 947 | 57 |
| 87 | 3,332 | 850 | 676 | 883 | 866 | 57 |
| 88 | 3,209 | 757 | 755 | 774 | 887 | 36 |
| 89 | 3,319 | 765 | 745 | 930 | 848 | 31 |
| 90 | 3,275 | 798 | 744 | 925 | 773 | 35 |
| 91 | 2,983 | 801 | 503 | 874 | 775 | 30 |
| 92 | 3,289 | 759 | 536 | 1,024 | 936 | 34 |
| 93 | 3,336 | 899 | 627 | 741 | 1,038 | 31 |
| 94 | 3,477 | 921 | 566 | 887 | 1,072 | 31 |
| 95 | 3,347 | 814 | 611 | 897 | 997 | 29 |
| 96 | 3,220 | 800 | 600 | 840 | 940 | 40 |
| 97(p) | 3,244 | 800 | 600 | 715 | 875 | 30 |

資料 : 해양수산물통계연보

7. 水産物 需給

| | 供 給 | | | 計 | 消 費 | | | 1人當 |
|----|-------|-------|-----|-------|-------|-------|-----|------|
| | 生産 | 輸入 | 在庫 | | 國內消費 | 輸入 | 移越 | 消費 |
| | | | | 千톤 | | | | kg |
| 70 | 935 | - | - | 935 | 810 | 125 | - | 17.3 |
| 75 | 2,135 | - | - | 2,135 | 1,562 | 573 | - | 29.9 |
| 80 | 2,410 | 41 | 68 | 2,519 | 1,746 | 696 | 77 | 27.0 |
| 81 | 2,812 | 48 | 77 | 2,937 | 2,096 | 731 | 110 | 33.2 |
| 82 | 2,644 | 61 | 110 | 2,815 | 2,007 | 721 | 87 | 31.6 |
| 83 | 2,793 | 66 | 87 | 2,946 | 2,147 | 699 | 100 | 38.1 |
| 84 | 2,910 | 84 | 100 | 3,094 | 2,245 | 764 | 85 | 37.7 |
| 85 | 3,103 | 91 | 85 | 3,279 | 2,318 | 867 | 94 | 37.2 |
| 86 | 3,660 | 127 | 94 | 3,881 | 2,543 | 1,236 | 102 | 41.9 |
| 87 | 3,332 | 422 | 102 | 3,856 | 2,407 | 1,272 | 177 | 37.1 |
| 88 | 3,209 | 452 | 177 | 3,838 | 2,336 | 1,303 | 199 | 33.6 |
| 89 | 3,319 | 404 | 199 | 3,922 | 2,526 | 1,120 | 276 | 36.0 |
| 90 | 3,275 | 380 | 276 | 3,931 | 2,583 | 1,058 | 290 | 36.2 |
| 91 | 2,983 | 554 | 290 | 3,827 | 2,235 | 1,284 | 308 | 35.9 |
| 92 | 3,289 | 410 | 308 | 4,007 | 2,327 | 1,300 | 380 | 40.0 |
| 93 | 3,336 | 488 | 380 | 4,204 | 2,842 | 1,002 | 360 | 43.3 |
| 94 | 3,477 | 792 | 360 | 4,629 | 3,104 | 1,065 | 460 | 44.9 |
| 95 | 3,348 | 948 | 395 | 4,691 | 3,150 | 1,170 | 371 | 46.0 |
| 96 | 3,244 | 1,205 | 371 | 4,820 | 3,202 | 1,191 | 427 | - |

資料 : 해양수산물통계연보

주 : 1인당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 자료이며 순식품 기준임.

8. 水産物 輸出

| | 計 | 活鮮魚 | 冷凍品 | 海藻鹽辛品 | 통조림 | 遠洋魚類 | 其他水産物 | 漁網類 |
|----|-------|-----|-----|-------|-----|------|-------|-----|
| | 百萬\$ | | | | | | | |
| 70 | 90 | 11 | 6 | 17 | - | 38 | 11 | 7 |
| 75 | 429 | 62 | 58 | 32 | 10 | 183 | 54 | 30 |
| 80 | 871 | 128 | 103 | 27 | 28 | 352 | 63 | 112 |
| 82 | 947 | 151 | 131 | 122 | 51 | 329 | 78 | 85 |
| 83 | 908 | 145 | 134 | 83 | 55 | 315 | 95 | 81 |
| 84 | 956 | 155 | 124 | 83 | 61 | 354 | 104 | 78 |
| 85 | 970 | 155 | 124 | 97 | 55 | 328 | 132 | 79 |
| 86 | 1,384 | 253 | 165 | 108 | 72 | 465 | 219 | 102 |
| 87 | 1,731 | 369 | 234 | 128 | 95 | 571 | 223 | 111 |
| 88 | 2,047 | 476 | 260 | 150 | 137 | 618 | 270 | 136 |
| 89 | 1,821 | 391 | 252 | 167 | 114 | 540 | 226 | 131 |
| 90 | 1,637 | 328 | 202 | 156 | 85 | 475 | 267 | 124 |
| 91 | 1,634 | 349 | 272 | 156 | 95 | 513 | 258 | - |
| 92 | 1,518 | 356 | 160 | 156 | 99 | 504 | 243 | - |
| 93 | 1,497 | 343 | 144 | 154 | 123 | 454 | 279 | - |
| 94 | 1,647 | 376 | 214 | 171 | 117 | 477 | 292 | - |
| 95 | 1,722 | 395 | 237 | 157 | 127 | 489 | 316 | - |
| 96 | 1,635 | 328 | 410 | 128 | 107 | 312 | 350 | - |

資料 : 해양수산물통계연보

主 : '91년부터 어망류 제외됨.

9. 漁家所得

| | 漁家 所得 | 漁業所得 | | | 漁業外所得 | | | 移轉 收入 | 漁業外 所得 構成比 |
|-------|----------|-----------|-----------|-------|----------|-----------|-------|----------|------------------|
| | | 漁業 粗收入 | 漁業 經營費 | | 兼業 所得 | 事業外 所得 | | | |
| | 千원 | | | | | | | | % |
| 77 | 1,391 | 890 | 1,797 | 907 | 501 | 365 | 136 | - | 36.0 |
| 78 | 1,529 | 829 | 2,291 | 1,462 | 700 | 506 | 194 | - | 45.8 |
| 79 | 1,923 | 1,296 | 2,519 | 1,223 | 627 | 360 | 267 | - | 32.6 |
| 80 | 2,596 | 1,752 | 3,090 | 1,338 | 844 | 392 | 452 | - | 32.5 |
| 81 | 3,042 | 1,978 | 3,475 | 1,497 | 853 | 524 | 329 | 211 | 28.0 |
| 82 | 3,279 | 1,960 | 3,513 | 1,553 | 960 | 607 | 353 | 359 | 29.3 |
| 83 | 4,109 | 2,570 | 5,415 | 2,845 | 1,185 | 772 | 413 | 354 | 28.8 |
| 84 | 4,508 | 2,582 | 5,589 | 3,007 | 1,480 | 1,051 | 429 | 446 | 32.8 |
| 85 | 4,869 | 2,815 | 6,047 | 3,232 | 1,553 | 1,045 | 508 | 501 | 31.9 |
| 86 | 5,402 | 3,219 | 7,155 | 3,936 | 1,581 | 1,011 | 570 | 602 | 29.3 |
| 87 | 6,166 | 3,420 | 7,577 | 4,157 | 1,814 | 1,320 | 494 | 932 | 29.4 |
| 88 | 6,821 | 3,451 | 7,882 | 4,431 | 2,159 | 1,597 | 562 | 1,211 | 31.7 |
| 89 | 8,079 | 4,152 | 8,863 | 4,711 | 2,508 | 1,784 | 724 | 1,419 | 31.0 |
| 90 | 10,023 | 5,216 | 10,367 | 5,151 | 3,192 | 2,200 | 992 | 1,615 | 31.8 |
| 91 | 11,309 | 5,285 | 10,255 | 4,970 | 3,776 | 2,431 | 1,345 | 2,248 | 33.4 |
| 92 | 12,371 | 6,036 | 11,021 | 4,985 | 4,217 | 2,441 | 1,776 | 2,118 | 34.1 |
| 93 | 14,432 | 6,222 | 12,276 | 6,054 | 4,685 | 2,583 | 2,102 | 3,525 | 32.5 |
| 94 | 17,110 | 8,665 | 15,214 | 6,549 | 5,719 | 4,007 | 1,712 | 2,726 | 33.4 |
| 95 | 18,780 | 9,437 | 17,152 | 7,715 | 6,075 | 3,975 | 2,100 | 3,268 | 32.3 |
| 96(P) | 19,039 | 10,526 | 18,015 | 7,489 | 5,410 | 3,394 | 2,016 | 3,103 | 28.4 |

資料 : 해양수산통계연보

10. 漁業粗收入 및 經營費

○ 漁業粗收入

(單位:千圓)

| | 計 | 漁業收入 | | | 在庫增減 | |
|-------|--------|--------|--------|-------|-------|-----|
| | | 漁撈 | 養殖 | 水産加工 | | |
| 77 | 1,797 | 1,798 | 1,574 | 224 | - | △1 |
| 80 | 3,090 | 3,092 | 2,133 | 848 | 111 | △2 |
| 85 | 6,047 | 6,035 | 4,588 | 1,211 | 236 | 12 |
| 90 | 10,367 | 10,003 | 6,008 | 3,043 | 952 | 364 |
| 91 | 10,255 | 10,241 | 5,613 | 3,517 | 1,111 | 14 |
| 92 | 11,021 | 11,031 | 6,746 | 2,747 | 1,538 | △10 |
| 93 | 12,276 | 12,285 | 8,075 | 2,627 | 1,583 | △9 |
| 94 | 15,214 | 15,202 | 10,651 | 3,287 | 1,264 | 12 |
| 95 | 17,152 | 17,180 | 11,740 | 3,896 | 1,544 | 27 |
| 96(P) | 18,015 | 18,014 | 12,683 | 3,749 | 1,582 | 1 |

資料 : 해양수산부, 어가경제통계

○ 漁業經營費

(單位:千圓)

| | 計 | 漁業支出 | | | 減價 償却費 | 在庫生産 資材增減 | |
|-------|-------|-------|-------|-------|-----------|--------------|----|
| | | 漁撈 | 養殖 | 水産加工 | | | |
| 77 | 907 | 855 | 830 | 25 | - | 52 | - |
| 80 | 1,338 | 1,225 | 985 | 221 | 19 | 114 | △1 |
| 85 | 3,232 | 3,031 | 2,592 | 362 | 77 | 198 | 3 |
| 90 | 5,151 | 4,792 | 2,779 | 1,609 | 404 | 365 | △6 |
| 91 | 4,970 | 4,557 | 2,550 | 1,569 | 438 | 369 | 44 |
| 92 | 4,985 | 4,502 | 2,702 | 1,233 | 567 | 487 | △4 |
| 93 | 6,054 | 5,573 | 3,745 | 1,306 | 522 | 477 | 4 |
| 94 | 6,549 | 5,979 | 3,954 | 1,737 | 288 | 546 | 24 |
| 95 | 7,715 | 7,212 | 4,525 | 2,330 | 357 | 510 | △7 |
| 96(P) | 7,489 | 6,801 | 4,645 | 1,743 | 413 | 648 | 40 |

資料 : 해양수산통계연보

1997年度 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97년 9월 일 印刷

1997년 9월 일 發行

編輯 : 海洋水産部 水産政策課

發行 : 海洋水産部

印刷 : 주식회사 문원사

☎ 739-3911~5

〈 非賣品 〉

